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711-01

2018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2018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8. 12.

연구수행기관 : 사단법인 두루
연 구 책 임 자 : 최 정 규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연 구 원 : 강 정 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 수 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박 보 희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전 미 아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연구원)
정 병 수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현 소 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 구 보 조 원 : 김 희 진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
이 샘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연구요약

제1부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가. 연구 목적

- 소년사법제도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알고, 그 목적을 이해하고자 한다.
- 국내 소년사법 법·제도 현황을 확인하고,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아동 및 관계 종사자에 대한 설문 및 면접조사를 통해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인권 이행실태를 파악한다.
- 아동인권에 기반한 소년사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소년사법제도 관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인권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향후 실효적인 소년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나. 연구 필요성

-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폭화, 높은 재범률 등이 문제로 지적되며 일각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사법제도 폐지 · 처벌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사법제도의 폐지, 축소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소년사법은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범죄를 행한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소년사법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명료화하고, 목적에 따라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연구가 필요하다.
- 무엇보다 아동 간, 아동과 종사자 간에 다양한 갈등상황이 우려될 수 있는 소년사법제도에 있어 관계 종사자들의 아동인권 이해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아동인권교육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 본 연구의 수행체계는 크게 3단계로 구성하였다. 먼저 국제인권규범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소년사법 관련 국내 · 외 법 · 제도의 현황을 조사하고, 다음으로 아동인권에 기

반한 소년사법제도의 국내 이행실태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년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 관련 종사자 대상 아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다만 본 연구용역의 대상이 비행예방이 아닌 비행 후 처분에 한정되어 있어 '사회복귀와 회복'은 매우 중요한 쟁점임에도 연구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소년사법제도의 국내 이행실태 조사는 다시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째,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해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둘째, 아동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파악한 아동의 관점과 현재 국내·외 법·제도의 현황을 바탕으로 소년사법제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양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종사자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양적조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연구 단계	주요 내용
제1단계	○ 문헌조사 - 국제인권규범 분석, 검토 - 국내 법령 체계 및 현황 조사 - 국외 사례 분석
제2단계	○ 국내 소년사법제도 이행실태 조사 - 아동 대상 심층면접조사 : 소년사법제도 경험 아동·청소년 총 20명 -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 분석 총 484명 (판사 14명, 국선보조인 49명, 소년원 종사자 380명, 보호관찰 종사자 41명) - 종사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 총 16명 (판사 3명, 국선보조인 5명, 소년원 종사자 4인, 보호관찰소 종사자 4인)
제3단계	○ 법·제도 개선방향 제시 - 전문가 자문 - 정책토론회 ○ 소년사법 종사자를 위한 아동인권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파일럿 통한 교육 교재안 보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Ⅱ.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국제인권규범

- 연구진은 아동인권에 기반한 소년사법제도의 국제인권규범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국내 소년사법제도의 이행실태와 국제인권규범 간의 간극을 확인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소년사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는데 있으므로, 이행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의 도출에 있어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은 본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내 이행의 실태를 분석·검토하는 기준이자 틀이다. 본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소년사법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인권규범을 그 내용에 따라 ① 소년사법 대상 아동에 대해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소년사법의 일반원칙, ② 시설수용처분 등으로 인해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사법 대상 아동에 대해 준수되어야 하는 규범, ③ 소년사법 대상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행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규범 및 ④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규범으로 나누어 검토하여 보았다.
-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법제상 보장이 특히 취약한 아동의 10대 인권 유형을 추출하였다. 10가지 유형의 아동인권은 소년사법 관련 국제규범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도, 학계와 실무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온 빈도, 개선방안의 실현 가능성, 소년보호·형사사건 이원화 구조 등을 고려한 결과로서, ① 정보접근 및 알 권리, ②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④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 ⑤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⑦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⑧ 모니터링 및 진정에 관한 권리, ⑨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⑩ 사회복귀의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본 연구용역의 대상이 비행 '예방'이 아닌 '비행 후 처분'에 한정되어 있어, 10가지 유형 중 '10. 사회복귀의 지원'은 이행실태 점검 시 고려하지 않았다.
- 이하에서는 현행 소년사법 법제가 9가지 유형의 아동인권에 관해 어떠한 내용의 법규범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것이 현실에서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내용의 입법이 부족한 상황이며, 아동을 포함해서 소년사법제도의 관계자들은 이 중 어느 부분에 대한 개선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지 여부 등 국내 법규범의 현황과 그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1. 정보 접근 및 알 권리

- 적절한 시기에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
- 아동 측의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에 대한 접근권
- 필요한 경우 통역 또는 번역을 제공받을 권리
- 수사·조사·재판시 아동친화적 면접 및 환경 보장

2.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 적절한 시기에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참여권과 의견청취권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자유롭게 변호사와 접촉하고, 조력을 받을 권리
- 변호사 접견시 비밀 보장을 받을 권리
-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

4.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

- 신속한 수사와 재판의 원칙
- 이송에 따른 재판 지연 방지

5.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 아동의 최선의 이익 고려
- 개별 면접 및 상담조사에 따른 개별적 수요의 평가
- 다이버전 등 다양한 대안적 조치의 제공
- 처분 또는 재판 후 정기적 심사

6.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수사·조사·심리 등 절차의 비공개
- 기록 보존 여부
- 언론보도에 따른 낙인 예방

7.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 자유박탈 조치의 보충성과 최소성
- 자유박탈 중인 아동의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 자유박탈 중인 아동을 위한 특별한 보호(교육과 사회복귀)

8. 모니터링 및 진정에 관한 권리

- 정기적 모니터링과 신뢰성 제고
- 진정 제도의 마련과 아동의 접근 가능성 제고

9.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다학제적 접근 채택의 필요성
-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에 의한 제도 운영
- 전문가 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Ⅲ. 국내 소년사법제도 이행실태

1. 국내 소년사법체계

소년사법의 각 단계별로 나누어 국제규범이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인권 유형에 관한 현행 법 규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가. 수사단계

① 정보접근 및 알 권리

- 소년사법의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변호사 선임권 · 진술거부권 등에 관해 고지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문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아동이 체포나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아직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부모 기타 보호자와 동석하거나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정보를 아동에게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조문도 존재하지 않는다. 수사절차 전반의 과정이나 각각의 과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 아동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제공할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②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 수사단계에서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경찰수사단계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규정의 법적 성격이 '예규'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다. 통지의 대상이나 방법, 적용범위와 예외 등도 명백하지 않다. 검찰수사단계에서는 그나마 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소년사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아동에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하지만 필수적 국선변호인 제도는 아동이 체포 또는 구속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무료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받을 권리

- 소년사법의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도 헌법에 따라 신속한 수사를 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나, 신속한 수사를 실효성 있게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령 수사기간의 법정화, 소년사건 우선처리의 원칙, 수사기간 통계조사 의무화 등)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⑤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 경찰 조사시에는 소년환경조사서 작성 관련 조문이, 검찰 조사시에는 결정전 조사제도 및 다이버전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소년환경조사서는 개별적 처우에 필요한 요인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만한 요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결정전 조사 제도의 활용은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다. 경찰단계에서 선도조건부 훈방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법적 근거나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수사단계에서 소년사법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인적 사항 등 기타 수사와 관련된 비밀유지 및 비공개 의무와 관련된 조문들이 여럿 마련되어 있다.

⑦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소년인 경우에도 인신구속의 남용을 피하기 위한 각종의 제도가 적용된다.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나 영장실질심사 제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체포 또는 구속이 된 경우에 성인과의 분리구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결과 범죄 오염이나 학대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⑧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수사단계에서는 아동 전문 인력에게 소년사법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규정이나, 기존의 인력에게 아동의 인권이나 특수성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나. 재판단계

① 정보접근 및 알 권리

- 재판을 받고 있는 아동에게 변호사 선임권·진술거부권 등에 관해 고지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문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는 접수된 때부터 보호처분이 있을 때까지 각종의 결정과 처분의 취지 등에 대해 아동친화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촘촘하게 정비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년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사선임권·증거조사 등과 관련하여 성년인 피고인과 동일한 정도의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뿐이며, 아동을 위한 특별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에 관한 열람·복사권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

②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소년사법의 대상이 되는 소년에 대한 각종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 부모 기타 보호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조문이 마련되어 있으며, 부모 기타 보호자는 보조인의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인 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부모 기타 보호자는 보조인 또는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의 지위에서 임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게 참여의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소년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모든 미성년자에게 필수적 국선변호제도가 적용되는 반면,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필수적 국선변호제도는 아동의 신체적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④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

- 「대한민국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정작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부에 의한 검찰청으로의 송치 제도나 형사법원에 의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어 절차의 신속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⑤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조사관을 통한 조사와 전문가 진단,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통한 분류심사 등 개별처우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보호처분의 유형이 획일화·경직화되어 있고, 다이버전 조치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도입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역시 조사관에 의한 조사 제도가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작 형벌의 부과는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처우의 원칙이 충분히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재판단계에서 소년사법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비공개의 원칙·관련 기록의 폐기 등과 관련된 조문들이 다수 마련되어 있다.

⑦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 「소년법」은 소년사법의 대상이 되는 소년에 대한 인신구금의 보충성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나, 전문가 진단을 위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우회할 수 있는 장치도 법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관찰되었다. 특히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처분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체포·구금과 달리 이의제기 절차나 항고 절차에 관한 규정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연령 구분 없이 구치소 수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결과 소년형사재판 과정에서 성인과의 분리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은 수사단계에서와 같다.

⑧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는 전담법관 제도 및 조사관 제도 등 관계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담당법관 등의 역량, 특히 아동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교육 등과 관련된 조문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았다. 소년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법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어떠한 조문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 형의 집행단계

① 정보접근 및 알 권리

-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경우에는 성인에 준하여 수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에 관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나, 소년원의 경우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내용의 정보접근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②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 현행법상 소년교도소에 수용되거나 소년원에 입소한 경우에 관련 사실에 대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조문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수용 또는 입소의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통지일 뿐이며, 수용기간 내지 입소기간 중에 소년에게 발생한 각종의 사항, 특히 의료적 조치나 징계 등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통지와 관련된 조문이 미비한 상황이다.

③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 소년사법의 이념은 회복과 사회복귀에 있으므로, 형 또는 보호처분의 집행단계에서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현재의 처분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종결시키거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집행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변경이나 형집행의 종료·가석방 제도 등을 두고 있을 뿐, 처분의 적절성에 대한 정기적 심사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④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형 집행단계에 관여하는 관계인들은 소년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엄수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과 달리 형사재판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형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므로, 사생활의 보호에 다소간 맹점이 있는 상황이다.

⑤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 입소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 있는 소년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가령 아동의 사생활보호·실외운동·의료적 조치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규정들은 하위법령의 단계에서 지

극히 임의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방식으로 조문화되어 있으며, 징계절차와 관련된 규정도 최근 일부 정비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성년 수용자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다.

⑥ 모니터링과 진정에 관한 권리

-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양쪽 모두 소년의 청원과 관련된 조문들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소년원의 경우에는 그 규정이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원장에게 청원서 폐기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사실상 소년의 청원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⑦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형 집행단계의 담당자들은 소년의 회복과 사회복귀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종사자·보호관찰 종사자의 아동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2. 소년사법제도 아동 당사자 조사

가. 조사 개요

- 아동 당사자 면접조사는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아동기에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현재 24세를 도과하지 않은 20명(남성 12명, 여성 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령은 면접조사 일시를 기준으로 만 12세에서부터 20세까지이고, 참여자가 소년사법을 경험한 때의 최저연령은 만 10세였다. 조사는 본 연구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국제아동인권센터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눈덩이표집' 방법을 사용해 진행되었다.
- 아동기에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당사자 대상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사법제도의 절차 단계에 따른 아동인권 보장 현황을 검토했다. 수사 단계,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재판 단계, 보호처분 집행단계로 나누어, 소년사법 절차상 보장되어야 할 10가지 아동인권 유형별로 분석내용을 제시하였다. 10가지 유형 중 각 절차에서 특별히 고려되지 않은 권리유형은 생략하여 기술하였으며, 면접조사에서 직접 소년형사재판을 경험한 참여자는 없었으므로 소년형사재판 단계는 언급하지 않았다.
- 본 연구는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아동의 특성상 조사 대상자의 공개적 모집과 표본선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정이 어려운 현실적인 점을 고려하여, 최초 참여자들을 통해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다른 당사자들을 소개받아 조사하는 '눈덩이 표집' 방법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심층면접 참여자들이 수도권 소재 거주자였으며, 10세-12세 전후 연령의 아동 및 여자 아동에 대한 응답 내용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전국 10개 소년원 중 4개 소년원에 대한 경험만 청취할 수 있었다. 또한 공통문항을 활용하였지만, 면접조사의 특성상 참여자의 개별적 상황과 성향에 따라 구체적인 답변 내용이 달라지는 경향도 있다. 동일한 절차와 처분이 적용된 경우에도 경험한 연령 및 시기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진 측면도 있다.

- 그러나 본 연구는 소년사법제도 전반에서 개별 아동이 느끼고 경험한 내용을 청취함으로써 제도가 적용되는 실태를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연구 결과로서 아동인권이 보장되는 소년사법제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관계자 대상 아동인권교육훈련에 제공되어야 할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심층면접은 가능한 아동 임상심리전문가가 조사를 진행하거나, 아동과 신뢰관계 있는 성인의 협조를 받는 등 참여자들이 사용한 표현방법 및 사용단어의 표면적인 내용 이면에 자리한 아동의 진정한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는 고민과 노력을 병행하였다.

나. 조사 내용

(1) 수사 단계

① 정보접근 및 알 권리

-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및 진술거부권 등은 일반적으로 잘 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령이 어린 아동이 해당 절차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하는 노력은 부족한 현실이었다.

②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 보호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된 많은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를 행하여 조사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우선된다 할 것이며, 아동의 행위에 대한 사회공동의 책임 또는 가정환경 회복을 지원받을 아동의 권리를 포함하는 소년사법의 요청은 실천되지 않았다.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경찰조사 직후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미결구금 중 소년부로 송치된 경험이 있는 참여자 중 국선변호인의 조력과 관련한 내용을 기억하거나 언급한 경우는 참여자 7의 응답이 유일했다. 실제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식한 참여자는 없었던 것을 나타낸다. 단순히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의 특성을 민감하게 고려하여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할이 수행되지 못하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

-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소년사법제도에서 범죄소년의 기소나 소년부 송치 여부는 검사가 결정한다.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유치장에 8일 가량 머무른 참여자가 있었고, 구속되어 구치소에 6개월 가량 미결구금된 참여자도 있었다. 구치소에서의 불성실한 생활태도가 미결구금 일자가 연장된 사유인 것 같다는 응답은 있었으나, 구금기간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는 참여자는 없었다. 이후 법원에서 소년부 송치가 결정된 결과, 다시 소년분류심사원에 2-3주 임시위탁되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등 최초의 행위로 수사가 개시된 때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처분을 집행되는 현실이었다.

⑤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 사회복귀와 회복이라는 소년사법의 목적에 따라, 소년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는 소년이라는 한 아동의 성격 · 태도 · 경력 · 학업수준 및 가정환경을 포함하는 개별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소년법」 및 「소년업무규칙」(경찰청예규)에서 위와 같은 수사 관계자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 전반이 해당 소년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범죄의 동기 및 과거의 문제행위, 부정적인 교우관계에 따른 '문제아'라는 낙인으로 귀결되는 현실이었으며, 많은 경우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성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들을 심리적 · 사회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폭넓은 고려는 실천되지 못했다.

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수사단계에서 아동의 개인정보가 언론을 포함한 외부에 노출되어 특별히 문제된 사례는 없었다.

⑦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 경찰조사 단계에서 소년은 임의출석 대상임에도, 조사를 위한 이송 및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경험한 참여자가 다수였다. 신체구속 사유 및 기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까지 유치장에 구금되고, 이때 성인과 함께 수용된 참여자도 있었다.

⑧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소년업무규칙」(경찰청예규) 제23조에 따라 경찰 조사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지만, 실제로 전문가 동석을 경험한 참여자는 없었다. 검사는 「소년법」 제49조의2에 근거하여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소년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 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특별히 아동인권에 기반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긍정적인 사례도 확인할 수 없었다.
- 무엇보다 경찰 및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행하는 반말, 법 위반행위를 확신하고 재비행 가능성을 단정하는 편견, 구속과 구금을 수단으로 하는 처우 등은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아동을 동등한 인격적 주체로 고려하지 않는 현실을 나타낸다.

(2) 소년보호사건에서의 재판 단계

① 정보접근 및 알 권리

- 참여자 대부분 소년재판 당시 범죄사실 및 진술거부권, 보호처분 내용은 고지 받았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기 전부터 자신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며, 보조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점 또는 관련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참여자는 없었다. 처분을 할 경우에도 단순히 '처분을 결정한다, 6호 시설 또는 소년원에 다녀와라'는 식으로 보호처분 결정내용이 통지되었으며, 그 이유 및 시기, 내용은 해당 소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항소를 해도 의미가 없다거나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항소를 할 수 없는 줄 알았다는 참여자의 응답은 항소할 권리에 대한 안내가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는 현실을 나타내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보조인이 선임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소년재판에서 국선보조인 신청권에 대한 정보의 부재를 뒷받침한다.

②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 수사 단계와 마찬가지로 보호자에 대한 통지는 법원이 파악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된 시점에 소년이 가출 중이거나 보호자와 갈등상황에 있는 경우에 보호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원의 역할은 확인할 수 없었다.
-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 대한 시설장의 통고로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된 경우, 아동의 사실상·법률상 보호자인 시설 종사자가 소년보호재판 절차에 잘 참여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참여한 경우에도 소년의 사회복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유로 고려되지 않았다. 오히려 부모로 대표되는 가정환경이 부재한 경우로 취급되어, 비행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이 평가되고, 그에 따라 보호처분이 가중되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모두 국선보조인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나, 국선보조인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로 국선보조인이 소년분류심사원에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한 경우에도 그 시간은 대부분 30분을 넘지 않았으며, 참여자와 면담 없이 재판 당일에만 출석한 국선보조인도 있었다. 심리 당일에도 '선처를 바란다'는 형식적인 진술에 그치거나,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등 국선보조인에 대한 실망과 반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소할 수 있는지 몰랐다거나 6호처분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참여자의 경험은, 절차 전반을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안내하고 설명할 국선보조인의 역할이 적절히 제공되지 않는 현실을 뒷받침한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장이 국선보조인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었는데, 해당 참여자들은 국선보조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1호 감호위탁 처분 결정을 받았다. 형사특별절차로서 운영되는 소년사법제도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있지 않았다.

④ 절차를 신속하게 적용받을 권리

- 면접조사 참여자 중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소년부로 송치되며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외, 소년부에서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된 경우는 없었다. 다만, 형사사건 수사 중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다시 법원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임시조치 등 조사과정이 반복

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소년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부당하게 기간이 장기화되는 사례는 없었다.

⑤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 「소년법」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당시 심리검사, 성격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는 실시되는 것으로 보이나, 참여자 대부분 검사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검사 이후에도 결과를 받아본 적 없다거나, 결과지를 받기는 했는데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뒷받침할 수 없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아동의 구체적인 성향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낸다.

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소년재판이 언론에 노출되거나 보도되어 사생활이 침해된 사례는 없었으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시설수용 처분과 동일하게 생활 전반에서 사생활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었다.

⑦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

-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은 사실상 자유를 제한 및 박탈하는 구금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부모 방문면접 및 보조인 면접권 외 외부와 교류할 권리는 전면 차단되고, 규칙 위반시 독방 징계처분, 수갑과 포승줄을 활용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보호소년의 항소권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임시결정에 적용되지 않으며,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년분류심사원(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은 전국 6개 소년원에 위탁되어 사실상 소년원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참여자의 경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⑧ 모니터링 및 진정에 관한 권리

- 해당 권리에 대한 질문내용은 소년보호사건 및 시설수용에서 인권위 진정 및 침해구제 제도를 알고 있고, 실제로 행사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소년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이 고려된 경험을 한 참여자는 없었으며, 처분의 의미와 적절성을 이해하고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되었다고 답변한 참여자도 없었다.

⑨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앞서 열거한 아동의 권리보장은 소년보호재판에 관계하는 판사, 조사관, 소년분류심사원 종사자 모두의 전문성과 역량이 확보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용 현황은 소년의 개별적 처우를 고려하여 적절한 심사결과를 제시해야 할 의무이행을 저해한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참여자들이 기억하는 교육내용도 사실상 소년의 긍정적 사회복귀에 기여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상당한 재량과 권한을 행사하는 소년부 판사의 아동인권과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 수준도 확인할 수 없었다.

(3) 소년보호사건 처분 단계

① 정보접근 및 알 권리

- 6호 아동복지시설 감호위탁 및 9·10호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경우는 물론,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1호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집단생활로 인한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규율로 통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설수용에 있어 기간 및 면회·편지·외출 규칙, 징계규정, 일과 등의 권리와 의무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과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 참여자 중에는 소년원에 있는 동안 독방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보호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부모에게는 징계로 인한 면회가 불가한 사실이 전달된다고 하나, 그 밖에 면회 가능한 보호자 등에게 사전에 통지되지는 않았다. 징계를 '통지'하는 것 외에 사전에 보호자와 상담하여 결정한 사례도 없었다. 시설에서의 생활 전반에 보호자의 참여는 상당히 제한되었다.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현행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 선정 제도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보호처분이 결정된 이후, 항고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접근권은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다.

④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받을 권리

-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권을 행사한 참여자는 없었지만, 특히 구치소 구금 이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기까지 자유박탈이 장기화되는 현실에 불만을 표한 참여자는 있었으며, 이는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소년의 긍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해야 할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반한다.

⑤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 남성과 여성은 물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소년원생과 분리수용되며, 최초 시설 수용 당시 다양한 조사 및 상담전문가와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변화를 판단하고 적절한 처우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초 상담 외에는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담을 받았으며, 이때에도 어떤 검사나 상담을 받았는지 의미 있었다고 기억하는 참여자는 없었다.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임신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개별 소년의 욕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시설 부적응은 독방(개별실) 처분 사유였다. 소년의 특성에 따른 교육 및 직업훈련, 심리서비스 등은 사실상 제공되지 않았고, 「보호소년법」 제3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 밖 학교 통학이 가능한 경우는 없었다. 집단생활시설에서 규율과 통제만으로 소년의 반성과 회복을 강요하며, 소수 담임교사의 헌신과 노력에 의존하는 현실이었다.

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6호 시설 및 소년원에서 사생활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었다. 일체의 개인 소지품 소지는 불가하며, 편지 왕래도 대상자, 내용 등에 대한 검사를 거친 뒤에만 가능하다. 최근 화장실과 샤워실 CCTV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는 참여자의 보고도 있었지만, CCTV를 통한 통제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었다. 참여자 또한 다소 불편할 뿐 스스로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았다. 보호를 명목으로 최소한이 아닌 과도하게 보호소년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현실이다.

⑦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 「보호소년법」 제15조는 징계의 종류 및 목적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 교육적 목적을 넘어서 신체적·물리적 구속 조치가 과도하게 취해지고 있었다. 「보호소년

법」 제14조의2에 따라 폭언·난동 또는 이송, 소년원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수갑이나 포승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적정한 기준이나 절차를 확인할 수 없었다.

⑧ 모니터링 및 진정에 관한 권리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함의 존재와 목적은 모든 참여자가 알고 있었으나, 진정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신뢰는 없었다. 진정함의 위치가 어떻든 집단생활시설에서 교사를 포함한 모든 동거하는 소년들도 모르게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며, 더욱이 **소년원에서는 진정서를 교사에게 받아야 하는 결과 '진정서 작성행위'가 비밀이 될 수 없었다. 교사가 진정내용을 확인한 뒤 개별면담을 진행하는 사실은 진정의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외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권을 알고 있는 참여자는 없었다. 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내·외부 인권감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시적인 처우 개선, 자연스러운 답변을 통제하는 분위기 조성 등 진정한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⑨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참여자의 응답에서 나타난 6호 시설과 소년원 종사자, 보호관찰관 등의 전문성과 역량은 상당히 낮았다. 성소수자인 참여자의 경험은 아동인권 및 젠더감수성에 기반한 종사자의 낮은 민감성을 나타내고, 존중과 배려, 실수를 만회할 기회의 인정보다는 직·간접적인 비난과 통제, 경멸과 모욕이 일상화되어 있는 교사의 태도는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을 반증한다. 이러한 현실은 아동 당사자를 포함한 대중이 소년사법제도의 실효성과 효용성을 신뢰할 수 없게 하는 원인이라 할 것이다.

⑩ 사회복귀를 지원받을 권리

- 사회통합 및 재사회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귀를 지원받을 권리는 소년사법제도의 핵심 중 하나이다. 그러나 시설수용 중 사회복귀 지원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6호 시설은 학적만 연계될 뿐, 일반 교과과정 학업은 완전히 중단된다. 소년원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이 제공되나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못하고 소년의 학업에 대한 의지를 독려하지 못하는 현실이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검정고시 준비로 대체되며, 직업훈

련과정도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소년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기술습득을 지원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무엇보다 6개월에서 2년간 세상과 단절된 직후 시설에서 퇴원한 아동의 사회복귀는 충분히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6호 시설 및 소년원 교사, 보호관찰관 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정보를 전달받았다거나, 심리적 지지를 받았다거나,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인정받았다는 등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한 참여자는 없었다. 소년원에서 지정되는 멘토가 아동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나, 사회적 지지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때에도 공적기관이 아닌 외부자원의 선의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

3. 소년사법제도 관계 종사자 조사

가. 종사자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 설문조사는 2018. 10. 8.부터 10. 29.까지 소년사법과 관련된 종사자 중에서 전국에 있는 ① 판사[2018. 10. 기준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보호사건 담당 법관(항고심 제외) 25명], ② 국선보조인(각 법원별 국선보조인 2016년 기준 약 690명), ③ 보호관찰소 소년 담당 종사자(2017. 12. 기준 57개 기관, 총 223명), ④ 소년원 종사자 중 보호소년을 생활지도, 교육, 상담, 보호하는 종사자[전국 10개 소년원 관리자(원장, 과장) 59명 및 감호·교육(보호직, 전문경력관) 종사자 360명을 합한 총 419명, 시설·행정직(기술직)은 제외]로 설정하였다. 설문지 응답은 소년원 종사자 380부, 보호관찰소 종사자 41부, 국선보조인 49부, 판사 15부로 총 485부였으나, 1부는 일반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제외하고, 총 484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 수집된 자료는 IBM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자료 분포형태, 문항의 방향성, 결측값(무응답) 및 극단치 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과 경력별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다양한 직역의 종사자에게 공통된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종사자별 응답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2) 제한점

- 첫째, 설문조사에 응답한 각 종사자 비율이 불균등한 양상을 보인다. 분석에 활용된 응답내용은 총 484부였으나, 각 종사자별 대상 숫자의 편차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응답수는 14부, 보호관찰관은 41부, 국선보조인은 49부였으나, 소년원 종사자 응답 수는 380부였다. 이는 각 직역별 종사자 규모가 다른 점에 기인한다. 전국의 소년보호사건 담당 판사는 총 25명에 불과하며, 관리자를 포함한 소년원의 감호・교육 종사자 419명에 이른다. 각 종사자별 대상 숫자의 편차가 큰 결과, 종사자의 응답 평균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소년사법제도 관계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각 종사자에 대한 개별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되, 연령과 경력, 아동권리교육 경험과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 여부 등 종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변화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응답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고려할 필요를 제안한다.
- 둘째, 설문조사가 자기보고 방식으로 수행됨에 따라, 실제보다 긍정적인 답변이 제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년사법제도는 각각의 전문기관이 연속적으로 관여하는 특성상 다른 종사자와 교류가 제한적이며, 다른 직역의 업무를 잘 알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범죄행위 등 여론에 영향을 받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다른 직역을 평가할 경우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응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본 조사는 종사자에게 자신이 속한 기관・직역이 아동권리의 일반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 등의 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응답자가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응답하도록 설계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을 의식한 결과 실제와 다르게 답변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응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에 기반한 공적 자료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3) 조사 결과 및 시사점

① 소년사법제도 종사자의 통합적 이해 부족

- 소년사법제도에는 다양한 직역의 종사자들이 각기 다른 단계에서 복합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각 단계별 종사자가 이해하는 소년사법제도 및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정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소년사법절차가 '처벌 중심의 처분'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종사자가 동의했지만, 집행단계에서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거나 함께 생활해야 하는 소년원 종사자와 보호관찰관은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재범소년 비율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답했다. 반면 판사와 국선보조인은 '비행예방을 위한 시스템 내지 보호처분이 종료된 이후 아동보호체계가 미비한 점'을 재범 증가사유로 답변하였는데, 아동과 일상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업무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4세 미만으로 정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종사자에 따른 인식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판사는 92.3%(13명)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소년원 종사자, 보호관찰관 및 소년원 종사자, 국선보조인은 60~70% 가량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소년사법제도 종사자가 위치한 단계에 따라 소년사법의 목적에 대한 이해, 아동에 대한 관점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실을 시사한다. 그 결과 소년사법제도가 각 종사자에 따라 분절적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며, 성인에 이르는 연속적인 과정에서 적절한 공적개입 및 민관협력을 통해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소년사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실태이기도 하다. 행위시부터 처분, 사회복귀에 이르는 지속적인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종사자 간의 통합적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소년사법제도 종사자 대상 아동권리교육 제도화 필요성

- 판사, 보호관찰관, 소년원 종사자는 '소년범죄의 특수성'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이 평균 수준으로 적절하게 제공된다고 답변한 반면, 국선보조인은 관련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적기관으로 개입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년사법의 개념 및 원칙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적 조치가 제공된다고 할 것이나, 국선보조인 제도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한편, 14세로 정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규정에 대하여 판사를 제외한 다른 직역 종사자들은 모두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범죄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우범소년' 규정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결과는 소년사법제도 종사자들의 아동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을 나타낸다. 즉, 소년사법제도 현장에서 아동이 성인과 차별받지 않을 비차별의 원칙이, 아동의 발달하는 능력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아동최상의 이익이 실천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등 소년사법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에 종사자에 대한 아동권리교육을 제도화하여,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종사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③ 회복적 사법을 실천할 수 있는 다이버전 개발

- 아동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판사의 35.7%(5명)은 다이버전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보호처분은 소년사법제도가 규정하는 다이버전의 한 형태에 해당하나, 응답자 1명을 제외한 판사의 92.9%(13명)는 현행 보호처분 유형이 부적절하다고 답하였다. 아동에 대한 대안적 조치로 보호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의 유형 및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한 것이다. 국선보조인 또한 53.3%(24명)만 현행 보호처분 유형이 적절하다고 보고하여, 다양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는 보호처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현행 보호처분은 그 내용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정 전반이 피해자의 회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단순히 '소년에 대한 사법 외 처우'만을 결정할 뿐,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기 위한 피해자의 개입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은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별 기관 및 관계자의 의지에 따라 임의적으로 실천되고 있을 뿐이다.
- 현행 보호처분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되, 각 처분이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며, 다양한 다이버전이 절차 전반에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이버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좀 더 구체적인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는 본문을 참고하면 된다.

나. 종사자 면접조사

(1) 조사 개요

- 종사자 면접조사는 설문조사에서 담지 못했던 직종 유형별 의견과 욕구를 파악하고 소년사법제도에서 아동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종사자 설문조사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자 실시했다. 종사자 면접조사는 2018. 9. 12.부터 11. 9.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성별, 지역, 관련 경력, 소속기관 등을 고려해 총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남자 8명, 여자 8명이 조사되었고,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

는 판사 3인,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선보조인 5인, 소년원 종사자 4인, 보호관찰소 소년 담당 종사자 4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소년사법 절차상 보장되어야 하는 아동인권 10가지 유형을 공통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했다. 추가적으로 설문조사 문항을 고려하여 ① 형사책임연령, 촉법·우범소년제도, ②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통합, ③ 아동친화적인 사법환경에 대해 선택적으로 조사했다. 판사, 국선보조인, 소년원 종사자, 보호관찰소 종사자의 심층면접조사 응답을 종합해 10가지 아동인권유형별로 분류해 정리했다.

(2) 조사 결과

① 정보 접근 및 알 권리

- 종사자들은 대부분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고 설명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소년사법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이 비중 있게 고려되는 경험은 찾기 어려웠다.
- 재판 과정이 아동의 의사가 표현되기 힘든 환경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법원이 사건처리의 수를 줄여 좀 더 아동을 들여다 볼 시간과 여력을 확보하고, 아동의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두는 등 아동친화적인 재판환경을 만들기 위한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소년보호사건 결정서(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동의 정보 접근 및 알 권리뿐만 아니라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조치에 대한 불복절차의 경우, 소년부 판사만이 결정으로써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소년법」 제18조 참조), 아동이 직접 다툴 방법이 없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조치를 다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국선보조인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에서 아동이 범죄사실을 다투는 경우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호소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무죄를 받지 않을 경우 전과가 남는 반면, 다소 억울해도 소년보호재판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이 이원화되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 이주배경 아동, 외국인인 경우 통역·번역지원에 대한 체계가 없이, 종사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 종사자 모두 보호자의 참여 정도가 소년보호사건 처분 결정 및 아동의 회복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답변했다.
- 보호자의 보호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시설 내 처우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도 확인되었다. 보호자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찾아가는 상담, 야간프로그램 등으로 보호자특별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시설 내 처우를 받은 경우 보호자가 정기적으로 면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아동이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아동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답했다.
- 소년원의 경우 징계를 받는 경우 보호자 면회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가족과의 접촉 제한 내지 거부는 그 어떤 목적으로든 금지된다는 점에서, 징계의 수단으로 보호자 면회를 제한하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때 좀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는 점도 발견되었다. 별다른 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시설에서 보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동양육시설의 장이 통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시설장 통고로 소년원에 온 사례도 확인됐다. 소년보호재판으로 시설 처분을 받은 시설 거주 아동의 경우 비시설아동에 비해 보호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종사자들은 소년사법제도에서 아동의 권익을 옹호해 줄 법률 조력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있었다.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에 의해 국선보조인이 선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보호처분 결정 이후에는 국선보조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더라도 시기를 앞당겨 수사 초기부터 국선보조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 초기에서부터 처분 결정 이후까지 국선보조인이 개입, 조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 국선보조인 역량의 편차가 크다는 점이 다수 보고되었다.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차이 및 아동에 대한 이해 부족, 범죄사실을 다투는 경우 미흡한 대응, 비변호사 국선보조인의 법률적 조력 부족 등이었다. 아동 전문 변호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도 지적되었다. 국선보조

인이 사건에 접근하고 개입할 수 있는 허용범위가 너무 좁다는 한계도 보고되었다. 국선보조인을 신속하게 선정해 국선보조인이 사건을 조력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선 비용을 실질화하며, 열람·등사범위를 넓혀야 한다.

④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

- 경찰단계에서 조건부 훈방 과정에서 진행되는 사랑의 교실, 검찰단계에서의 선도 교육, 형사조정, 법원단계에서의 수강명령 등 교육이 중복 부과되면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각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단계별 교육에 대한 기관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법원선의주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경찰, 검찰, 법원, 청소년회복지원시설, 6호 시설,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소년사법절차 과정에서 관련되는 기관이 많은 데다, 기관 간 연계가 잘 되지 않는 점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었다. 각 직역별로 소년전담인력을 양성해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기관 간 연계를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 지역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를 저해하는 큰 장애요소로 평가되었다. 우선 지방법원이 있는 지역은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나아가 각급 법원의 지원에서도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 아동이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구치소에서 성인과 분리되지 않고 수용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구치소에서 성인과 3-4개월 구금되고 나서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아동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구치소를 거치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위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이원화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는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형사절차를 거치고 나서 소년보호절차로 오게 될 경우 수용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다. 구치소, 교도소에 있는 기간은 소년보호사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 경찰에서 아동을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결심판은 조기 개입이 중요한 초범인 아동 상당수가 체계적인 소년사법시스템으로 편입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일 수 있다.
- 신속한 수사와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의 충실한 대응이 중요하

고 필요하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권이 보장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권, 방어권 등 다른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⑤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 대안적 처분(다이버전)을 확대해야 한다. 「소년법」에 명시된 10가지 보호처분을 담당하는 기관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이버전은 종사자 개인의 역량, 의지에 의존하고 있을 뿐, 조직·체계적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수사 초기부터 화해권고제도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별도의 조치, 처우가 필요하다. 특히 임신한 아동, 성매수범죄에 이용당한 아동, 성소수자인 아동에 대한 종사자의 부적절한 대처는 아동에게 2차, 3차 피해를 가할 수 있다. 임신한 아동, 성매수범죄에 이용당한 아동, 성소수자인 아동을 위한 기관 별 매뉴얼, 기존 지원체계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는 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보장할 수 없다. 특히 여성소년원의 경우 두 곳에 불과하다. 소년원 추가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
-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은 그 역할과 기능이 달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이 전국에 한 곳밖에 없어, 소년원에서 소년분류심사원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 소년사법 종사자의 인력이 부족해 처리할 사건의 수가 많다보니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하루에 약 50-60건, 보호관찰관은 상시 담당하는 소년이 약 110-120명이다. 소년사법 직역 별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의 확보,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소년재판을 받는 '우범소년' 통고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아동양육시설장의 통고 문제는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시설에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년부로 통고해 시설 내 처우를 받게 한 다음, 퇴원한 아동의 입소를 거부하는 것이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비시설 아동에 비해 사회로 복귀하는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 6호 시설의 경우 관리·감독기관이 명확하지 않고 국가지원이 미흡한 점, 시설마다 허용되는 자유의 범위가 균질하지 않은 문제가 지적되었다. 6호 시설이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6호 시설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소년원을 조기퇴원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시퇴원시 부과되는 보호관찰 또한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아동의 다양한 개별적인 욕구를 고려해 재편할 필요가 있다.
- 소년원에서의 정신과 치료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소년원에 오는 아동은 방임 등 학대, 폭력 등의 경험으로 인해 충동장애 등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비율이 높을 수 있다. 다만 각 소년원에 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년원 중 많게는 수용된 아동의 50% 정도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혓바닥을 검사하는 등) 약 복용이 강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소년원의 임상심리사 채용을 확대한 것이 아동의 개별 처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청소년기의 특성에 따른 감정의 기복, 과잉행동까지 모두 정신과적 문제로 치부되어 과도하게 정신과적 약물이 남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효과적인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지 정신과적 치료의 적절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소년사건에서 형사재판과 같은 양형기준표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더라도, 공식적으로 사례를 수집·축적하고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는 있다.

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언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보고되었다. 같은 행위를 성인이 했더라면 보도되지 않았을 사건이 소년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도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 소년부 송치는 전과는 남지 않지만, 검찰 기소유예와 달리 (법무부, 법원 내부) 기록이 삭제되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습성을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공소장에서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소년법원 송치처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한다. 향후 아동이 직업을 선택할 때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는 낙인과 연결된다. 아무리 소년사법 관계 종사자들이 소년보호절차 안에서 낙인을 막으려고 노력해도 아동들은 사회, 학교에서 범죄자로 취급되고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소년사법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사회에서 낙인 예방이 온전히 기능할

때 사회복귀와 회복, 재사회화라는 소년사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과밀수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CCTV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화장실, 목욕탕과 같이 내밀한 장소는 설치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CCTV 설치에 관한 정보는 아동 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영상정보의 수집, 보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외부에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소년교도소와 달리, 소년원 내 편지는 종사자가 미리 내용을 살펴본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보호의 명목으로 가하는 서신에 관한 검열은 아동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⑦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명확한 기준 없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건이 많아 재판할 시간이 없을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었다.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조치라는 점에서 위탁의 기준이 마련되고, 위탁조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소년분류심사원이 원래의 목적대로 조사와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밀수용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세심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을 고려할 때 개방형(출·퇴근 방식)으로 상담 및 조사,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6호 시설도 일정기간 이후에는 (예를 들어, 주말에는 집에 갈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법원(또는 검사)의 조사·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아동을 호송하는 경우 수갑, 포승줄이 사용되고 있다. 이탈을 방지하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소년원에서 신체구속 및 무력의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종사자의 부적절한 무력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제한할 방안이 없는 점도 지적되었다.
- 소년원에서의 최대 20일까지 부과되는 독방처우(근신)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하바나규칙은 독거구금 등 소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처벌을 포함한 징계조치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⑧ 모니터링 및 진정에 관한 권리

- 법원과 더불어 법무부 관할의 소년원, 보호관찰 등 소년사법 관련 기관의 경우 외부의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련 기관들의 모니터링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에 대한 별도의 법률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국선보조인이 법원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 소년보호사건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경우 법원과 여성가족부, 아동보호치료시설인 6호 시설은 보건복지부와 법원(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이 관할하는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법원이 관련 기관 지정 권한이 있어 감독을 실시하더라도 시설 조사 항목에 '아동의 인권침해' 항목은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 법원의 관련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권한을 확대하되,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게 될 전문조사관 인력 확충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소년원의 경우 징계, 퇴원 등 아동의 중요한 처우를 결정하는 처우심사위원회에 대해서도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위원을 의무적으로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아동 당사자가 직접 소년사법제도 관련 시설과 종사자,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 아동의 진정제도와 관련해서는 형식적으로 진정절차 정도를 안내하고 있었다. 종사자들은 아동의 진정절차가 악용되고 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성 있는 인권교육이 전제되었을 때 진정제도가 활성화되고 진정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⑨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종사자들은 공통적으로 소년사법은 별도의 전문성 있는 전담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실은 종사자 직역에 대한 역량의 편차, 전문성의 부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전담 인력은 곧 교육되고 훈련된 전문가를 말한다.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판사, 국선보조인, 소년원 및 보호관찰 종사자의 경우, 아동의 발달과 권리 등 아동에 특화된 아동인권에 관한 체계적, 정기적인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인권 교육·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종사자 역량의 문제는 지원체계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역량이 뛰어난 종사자들이 소년사법제도에 들어오고, 장기 근속하면서 전문성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 역량 강화를 매뉴얼에 의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매뉴얼을 실천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소년사법제도는 보호자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각 종사자들이 '보호자', 아동이 결국 돌아갈 가정환경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보호자의 기능 회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 지역 간 사법환경의 편차 문제도 심각했다. 한 지방법원의 경우 소년보호사건 담당 인력이 판사 1명, 위탁보호위원 1명, 조사관 2명이 전부였다. 소년보호사건 항고심의 (소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 법원 내의 전문조사관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 경찰단계 조사의 전문화도 필요하다. 범죄심리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는 '비행성 예측자료표' 작성 제도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소년업무규칙」 제25조).
- 관계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는 인력난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소년원, 보호관찰소 종사자의 경우 전국 순환보직 이동의 시스템으로 인해, 직역에 대한 전문성을 쌓을 시간이 부족했다. 아이들과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고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소년사법 관련 다양한 종사자 간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각기 다른 배경, 분야, 직무에 따른 어려움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하면서 지원, 보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종사자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동의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까지 소년사법 종사자 간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예를 들어 보호관찰소 종사자의 경우 국선보조인을 만나는 경험이 거의 없었다). 본 연구용역이 실시한 교육자문 당시, 종사자 간 교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피드백이 많았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 반면, 소년사법 종사자는 아동에 대한 다양한 역할이 부과되면서 부담과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보호관찰소나 소년원 종사자는 멘토, 보호자, 상담가,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아동을 구인시키거나 통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아동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어야 하는 동시에 아동의 신체를 구속하고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안정성을 야기한다고 했다.

⑩ 사회복귀의 지원

- 사회복귀를 막는 문제로 지원체계의 분절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처분하는 집행기관 간, 소년사법시스템과 아동복지시스템 간, 아동을 지원하는 단체・기관 간, 종사자 간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상 아동들의 특성과 생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재편해야 한다고 답했다. 부처 간 분절로 인해 지원체계가 연결되지 못하고, 기존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다.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one-stop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아동 및 종사자에게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 종사자들의 사회복귀에 대한 이해가 다른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복귀의 문제는 소년사법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의 문제라고 응답한 종사자도 있는 반면,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 모두 아동의 사회복귀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한 종사자도 있었다. 소년원 직업훈련이 실제 취업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문제와 같이 소년사법 안과 밖 지원체계의 분절 문제도 지적되었다.
- 소년사법을 경험한 아동에 대한 낙인, 대중의 부정적인 시선, 편견이 아동의 사회복귀를 저해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 사회복귀지원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복지지원체계와 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궁극적으로 아동의 자립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소년재판을 경험한 아동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성취감 등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더불어 소년원이 교육적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 제한점

- 첫째, 아동 대상 면접조사의 한계로 제시한 것과 같이, 종사자 대상 면접조사에 참여자들의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면접조사 참여자들의 경력과 근무지역,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협력관계 등에 따라 소년사법제도 운영에 관한 각 종사자간 활동 내용에 편차가 나타나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종사자 대상 조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를 직역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지방자치단체 권역별, 활동경력 및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정도를 기준으로 참여자를 분류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 둘째, 자기보고에 따른 답변내용으로서, 스스로의 주관적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응답내용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제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아동 및 종사자 대상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년사법제도 전반에서 모니터링과 진정에 대한 권리는 거의 실천되지 않았다. 객관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관계 종사자들의 인식 부족을 나타낸다. 대외적 시선을 의식해 '아동보호 및 교육'을 명목으로 실제와 다르게 답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향후 보완된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모니터링 제도가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조사 내용의 객관성과 진실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4) 시사점

- 종사자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10가지 아동의 권리유형이 분절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정보 접근 및 알 권리'는 모든 권리 보장의 출발점이다. 아동이 자신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권리 보장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
-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를 잘 제공하고 설명해 '정보접근 및 알 권리'가 실현되는 것은 곧 개별적 욕구의 충족으로 이어져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보장에 가까워진다.
-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를 잘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에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소년사법 절차의 지연은 '사회복귀'의 방해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 면접조사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소년사법제도 종사자의 인력 부족을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꼽았다.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이 강화'되어 전문성이 보장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고, 확보된 인력이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소년들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받을 수 있게 되고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제한받아 소년사법을 경험한 아동이 낙인, 대중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점은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했다. 바꾸어 말하면 사생활을 잘 보호해 낙인을 예방하는 일이 곧 아동의 사회복귀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 소년재판을 받는 아동은 보호자의 보호상황이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변호인이 법률적 조력'을 충분히 해낼 경우 '보호자의 참여권'이 보완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보호자의 보호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자신의 권익을 옹호해 줄 변호사가 있는 경우 소년사법절차에서 상당부분 조력권이 해결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Ⅵ.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방안

1. 소년사법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 소년범죄의 비행률, 재범률 증가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지 않고 소년사법의 대상 아동을 비난과 낙인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엄벌주의를 내세우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재범률 등의 증가는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이라는 소년사법의 목적과 국제기준에 합치되지 않은 제도 운영의 현실을 반증한다. 국내 소년사법제도가 국제인권규범에 완전히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소년사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국제인권규범이 제시하고 있는 소년사법의 이상적 모델로부터 아동의 10대 인권 유형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수사 단계·소년보호사건에서의 조사 및 심리 단계·소년형사사건에서의 조사 및 심리 단계·재판 단계에서 각 유형의 인권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고 있으며, 어느 영역이 특히 취약한지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아동 대상의 심층면접과 관계 종사자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해 문제의식을 보충, 심화할 수 있었다.
- 우리의 소년사법제도를 국제적 인권 규범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각 절차단계별로 살펴보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형사절차단계별 개선방안

가. 수사 또는 조사단계

(1) 수사 대상이 된 아동 피의자에 대한 필요적 국선변호, 국선보조

- 체포, 구속되지 않은 아동 피의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적 조력의 제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처음 범죄용의자로 특정된 시점부터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경찰·검찰·법원 등 모든 형사사법절차에서 필수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비추어 보아도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 특히 아동친화적 소년사법을 구현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필수적 국선변호인은 단순한 법률적 조력을 넘어 아동의 알 권리(자신에게 내려지는 각종 처분의 의미)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2)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보장

- 수사단계에서 부모 등 보호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도를 이용하여 수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보호자에게 이 제도를 사전에 알리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취지는 아니다.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실태조사 결과 수사시 아동이 원하지 않으면 구체적 사정 고려 없이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이상 아동의 조사, 수사시 부모 기타 보호자의 동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는 단지 아동의 의사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아동의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는 주체, 기준, 부모의 참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할 경우 보호자 역할을 해줄 사람을 선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세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3) 전문적 조사제도 실질화

-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실현과 관련하여 아동이 소년사법제도를 최초로 접하게 되는 경찰 단계에서 대상 아동이 개별 면접 및 상담조사에 따른 개별적 수요 평가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초기단계에 첫 번째 조사가 충실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초기 전문조사에 기초한 적시 상담 및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조사라는 이유로 동일한 내용의 조사가 절차나 단계별로 반복되는 것은 오히려 아동에게 해악이 될 수 있다.
- 경찰의 소년환경조사, 검찰의 결정전 조사제도의 실질화를 위해 조사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경찰 단계에서 아동의 개별적 사정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

(4) 선도조건부 훈방 조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현재 실무상 활용되고 있는 경찰의 선도조건부 훈방 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다이버전의 일종으로 경찰 훈방을 인정하고자 한다면 법률에서 그 요건과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선도 프로그램 및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찰의 전문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나. 재판단계

(1) 필요적 보조사건의 범위 확대 및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 필요적 보조사건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소년보호사건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선보조인 제도는 보조인을 변호사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조력하는 비변호사 국선보조인의 강점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현행 국선보조인 제도 자체가 변호인 조력권과 충돌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다만, 비변호사 보조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법률적 한계(예컨대, 소년보호사건에서 무죄를 다투는 아동에게 비변호사 국선보조인이 선정되었을 때),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최근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은 모든 형사사법절차에서 필수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 비변호사 보조인 제도 도입이 아동에 대한 이해가 깊은 변호사 수의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률적 측면에서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고 이익을 옹호하는 국선보조인 역할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가급적 변호사 국선보조인의 선정이 확대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전문 변호사의 양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2) 신속한 국선보조인의 선정, 수사 재판기록의 열람, 등사범위 확대

- 국선보조인이 사건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선정시점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 기록의 열람, 등사 범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소년법」 제30조의2는 심리개시결정 전에는 보조인이라도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고, 심리결정 후라도 등사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실제로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한 기록의 범위는 극히 한정적이다. 종사자 면접조사에 따르면, 국선보조인이 등사할 수 있는 기록은 피의자신문조서 정도에 불과했고 판사가 허가하지 않으면 조력에 필요한 필수적 자료인 수사보고서, 소년분류심사원 보고서도 열람·등사할 수 없어 사실관계나 주변환경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동을 조력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되도록 수사·재판기록의 열람, 등사범위가 현재 관행보다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3) 임시조치 결정의 요건 마련 및 이의제기권 보장

- 구금의 최후수단, 보충성과 관련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임시조치의 개선이 필요하

다. 우선 임시조치의 요건(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특히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아동의 경우가 문제다. 수사 또는 형사재판 단계의 인신구속과 관련된 요건과 미결수용자 처우 규정이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는 점과 대비된다. 더구나 현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비율이 매우 높고, 기간도 장기가 많다.

- 구금처우에 의존할 위험과 일종의 충격구금으로 남용될 위험성을 고려할 때,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할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소년법 규정은 개정이 필요하며, 허용 여부에 관한 별도의 가중된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아동 측에서 그 결정의 취소나 변경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을 법에 명시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다.

(4) 소년보호사건 결정서 이유 기재 개선

-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판사가 결정을 할 때 주문 이외에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소년심판규칙」 제2조 제2항). 실무상 거의 모든 결정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아동의 정보 접근 및 알 권리 뿐만 아니라 적정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는 제외하는 방법으로) 결정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는 법관의 역량강화 및 인력 충원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5) 보호처분의 다양화

- 소년법이 정하는 10가지 보호처분을 다양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기관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보호처분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의 재범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과 같이 현행 보호처분의 한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다. 영국의 '강화된 가정위탁(intensive fostering)'과 같이 법원이 아동에게 사회복귀명령을 하면서 가정위탁프로그램(최소 6개월 이상 다면적 치료위탁 양육프로그램의 구조적・집중적 실시)을 병과하는 프로그램은 고려할 만하다.

(6) 회복적 사법 실천을 위한 다이버전(대안적 처분)의 제도화

- 형벌을 대체할 다양한 대안적 처분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아동이 지역사회 구성원으

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아동의 반성과 회복을 위한 변화과정이 피해자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 즉, 다이버전(대안적 처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원과 기존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체계와 긴밀한 연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현재 재판단계의 다이버전(대안적 처분)은 판사 개인의 의지와 역량에 의존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법원과 법무부 차원에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아동의 개별적 특성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그 적용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국외사례에서 제시한 벨기에의 '서면 제안에 따른 처분'은 도입 가능한 예로 고려할 수 있다. 판사는 아동에게 스스로 활동계획을 제안할 기회를 주고, 아동이 서면으로 제안한 활동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7) 소년보호재판의 관할 개선

- 현재 소년보호재판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담당하고 있다(「소년법」 제3조 제2항).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법원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넓은 지역을 관할하다보니 재판을 받기 위해 아동이 3시간 가까이 이동해야 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는 조속히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에서도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 집행단계

(1)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원의 지역별 확대설치, 과밀화 해소

-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시설 대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화 현상으로 개별처우와 인도적, 인격적 존중을 통한 사회복귀가 쉽지 않다.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역시 형해화되고 있다.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는 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보장할 수 없다.
- 1인 1실을 원칙으로 소규모 시설로 재편하고, 설치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 분역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정되어야 한다.

(2) 소년분류심사원의 증설 및 독립적 운영

-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현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제외하고는 소년원이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년분류심사 업무의 독립적 운영이 필요하다. 소년원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업무를 분리해 소년분류심사원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3) 수용 아동의 면회, 서신 교류의 실질적 보장

- 「보호소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회 등을 제한할 수 있어 매우 폭넓은 기준에 따라 면회나 서신 교류가 사실상 허가사항으로 규율되고 있다. 면회시에도 소속 공무원이 언제나 참석하여 지도할 수 있고, 면회를 중지할 수도 있다. 면회와 서신 교류는 외부와의 기본적 소통수단이므로, 형집행법에서 보장하는 수준에 준하여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징계의 일환으로 면회, 서신왕래, 전화통화 등을 제한하는 관행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소년원에 수용된 아동이 가족과 면회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참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실태조사 결과 보호소년에 대한 서신검열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 있음이 확인되었는바, 검열의 근거사유인 '보호소년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 지나치게 남용될 수 있는 서신의 내용검열을 제한해야 한다.

(4) 처분변경을 위한 정기적 심사를 받을 권리 보장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자신에 대한 결정에 관해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기회를 보장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은 보호처분에 대해 위탁받은 자 또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 변경을 허용하고 있을 뿐(「소년법」 제37조), 아동에게 처분 변경을 위해 적법절차에 따라 정기적 심사를 받을 권리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처분 이후 아동의 성행 교정 또는 환경 조정에 따라 그 처분이나 재판이 변경될 가능성이 현저히 제약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소년사법제도의 이념이 회복과 사회복귀에 있는 이상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보호처분의 유형이나 기간 등을 조정하는 조치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의 처분변경을 위한 심사 신청권과 정기적인 심사의무를 소년법에 명문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7호 처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법원의 집행감

독 조사를 확대해, 모든 사건에 대해 정기적·수시적으로 조사관이 아동의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아동의 정기적 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5) CCTV 등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관리방식의 개선

- 과밀수용과 소년원 종사자들의 인력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CCTV 등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관리 및 계호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사고발생의 우려, 관리·감독 문제는 소년원이 1인 1실을 마련해 각 생활실에 화장실과 샤워실을 개별적으로 구비하거나 1명씩 개별 이용이 가능하도록 화장실과 샤워실 구조를 리모델링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 다만 현실적인 고려에 따라 당장 CCTV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화장실, 목욕탕과 같은 내밀한 장소까지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할 수 있도록 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보호소년법」에 따르면, 자해의 우려가 큰 때에만 목욕탕, 화장실에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감호는 동성의 소속공무원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보호소년법」 제14조의3), 하위 법령 및 훈령이 법의 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일부 소년원의 CCTV는 음성형으로 설치장소에 큰 소리가 나면 이를 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설치된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CCTV의 녹음기능을 금지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 CCTV 설치에 관한 정보는 아동 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성별이 다른 종사자가 CCTV를 통해 상시 감시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고, 영상정보의 수집, 보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외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6) 진정제도에 관한 아동 접근가능성 확대

- 성년자와 마찬가지로 청원에 관한 권리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게 완비되어 있는 소년교도소와 달리 소년원의 경우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라는 추상적인 규정이 있고(「보호소년법」 제11조), 보호소년 처우지침은 청원 대상을 소년원장이 제한하면서 일정한 경우 청원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함 또는 형식적인 설치에 그치는 현실이었다. 진정제도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 및 구체화가 필요하다.

(7) 미결구금시 성년자와의 분리구금

- 아동의 신체구속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이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 성년자와 분리수용하는 것이 원칙이고(「소년법」 제55조 제2항), 이는 소년사법과 관련된 거의 모든 국제규범이 일치하여 강조하는 사항이다. 성년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 범죄오염의 가능성이나 성년자에 의한 인권침해의 위험이 매우 높아 회복과 사회복귀라는 이념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집행법 제11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의 경우 연령 구분 없이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치소에서 성인과 함께 3-4개월 동안 함께 수용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구치소뿐만 아니라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에서의 성인과 혼거수용 문제 또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8) 소년분류심사원, 6호 처분 시설, 소년원의 개방적 운영

- 소년분류심사원과 6호 처분시설 및 소년원이 '조사와 교육'이라는 주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아동들이 개방형(출·퇴근 방식)으로 상담 및 조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 면접조사를 통해 소년분류심사원과 6호 처분 시설의 개방적 운영가능성을 적극 고려하자는 점이 제안되었다. 소년에 대한 조사와 교육은 반드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신병 확보는 관련 시설을 소규모화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해결될 수 있다.

(9) 소년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임상심리 전문인력 충원

- 종사자 면접조사를 통해 소년원에 상근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게는 수용된 아동의 50% 가까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년원에 오는 아동은 방임 등 학대, 폭력 등의 경험으로 인해 충동장애 등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비율이 높을 수 있다. 다만 청소년기의 특성에 따른 감정의 기복, 과잉행동까지 모두 정신과적 문제로 치부되어 과도하게 정신과적 약물이 남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효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진행되고 있는 지 정신과적 치료의 적절성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소년원에 추가 배치된 임상심리사가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면접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임상심리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상담의 질을 높이는 것도 과도한 정신과적 치료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 구치소 수용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에 따라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된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이 반영된 규정이다. 즉, 소년형사사건에 따른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보아 집행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소년법」 제61조)은 그 실질이 자유박탈에 해당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의 성격을 뒷받침한다.
- 그러나 아동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가 법원이 「소년법」 제50조에 의해 소년부로 송치하여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경우, 미결구금일수는 소년원에의 수용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아동이 소년분류심사원을 거쳐 6호 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호처분의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박탈 조치에 해당함에도 역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이 보호처분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 자유박탈의 최소화를 천명한 국제인권규범의 지향점을 고려할 때,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불문하고 유치장, 구치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모두를 포함하는 수용처분 기간은 보호처분 또는 형 집행기간에 산입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수용시설로 기능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운영의 변화, 시설 수용 처분 외 다양한 대안적 처분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11) 신체구속과 무력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대안적 조치 활용

- 시설 수용 처분에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없이 종사자의 임의적 판단에 기초한 신체구속 및 무력을 사용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소년사법제도 전반에서 누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무력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징계조치 과정에서 해당 소년의 의견진술 및 의견청취권을 보장하며, 대안적 조치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 형사절차 단계 전반

(1) 소년전문법원의 설립

- 실태조사를 통해 구치소에서 3-4개월 성인들과 함께 구금되어 형사재판을 받다가 결국 소년부로 송치되면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구치소에 이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원에 송치되는 동안 자유박탈 기간도 장기화되었다. 조건부 기소유예가 취소되어 소년부로 송치되는 사건의 경우, 특히 절차지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제도의 영향이다.
-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기까지 경찰단계에서 사랑의 교실 등을 통해 훈방되거나 검찰단계에서는 선도 교육, 법원단계에서 조사, 보호처분 등 중복된 서비스가 과하게 부과되면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종사자들은 소년사법 영역은 별도의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소년사법체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소년전문법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나아가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절차를 통합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형사절차 단계별 소년사법 전담 인력의 확보

- 실태조사 결과 종사자들은 소년사법 종사자에 대해 역량의 편차, 전문성의 부족을 공통으로 지적하면서 소년사법 영역은 아동 및 소년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전담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검사, 판사는 오직 소년사건만을 전담하고 있지 않다. 특히 소년사건에서 상당한 권한과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법원의 경우 순환보직에서 자유롭게 소년보호사건만을 전담하는 판사 및 가사조사관 인력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훈련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종사자 아동인권교육・훈련 실시, 아동권리 교육체계 마련

-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도화되고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전문가 대상 아동인권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일반논평 제10호는 소년사법 집행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소년사법 관련 모든 전문가, 특히 법집행과 사법부의 전문가 집단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 전반의 내용과 의미에 관해 교육을 받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베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이징규칙은 소년사건을 취급하는 모든 종사자는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한다.

- 아동인권교육과 훈련을 정기화, 의무화하고, 관련 전문가 확보와 교육매뉴얼 마련, 관련 교육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법원을 매개로 한 종사자 간 교류와 협력 제도화

- 소년사법절차에는 각기 다른 단계에서 여러 종사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에게 개입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종사자 간 교류의 기회가 거의 없을 뿐더러 각 단계에서의 프로그램이나 조사, 교육 내용이 종사자 간 서로 공유되지 않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종사자 간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하며, 이때 소년사법절차에 관한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을 직접 결정하고, 보호처분 이후 단계까지 개입할 수 있는 법원이 컨트럴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례회의를 상설화하고 소년보호협의회를 실질화하는 등 종사자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관련 법 정비방향

- 소년사법제도의 단계별 개선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법 개정 또는 근거조문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로 「소년법」과 「보호소년법」에 해당한다.

가. 초기 단계 아동에 대한 법적 조력 보장 및 확대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여부와 무관하게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된 모든 아동에 대해 국선보조인 선임제도를 도입하려면 「소년법」 제17조의2에 규정된 필요적 국선보조사건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 또한 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되기 전에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 국선변호인 또는 보조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소년법」 또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조치 요건 마련 및 이의제기권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 결정 허용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부가하려면 「소

년법」 제18조 등에 근거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 아동 측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소년법 제18조 제6항 등에 적절히 명시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 일반논평 제10호는 아동의 자유박탈 조치는 법에 따라 오직 마지막 수단으로서 적절한 최단기간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미결구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b항의 심각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사실상 구금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미결구금이 필요하다면 영장실질심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아동의 처우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분리

-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해 비행·범죄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보호처분 결정을 받기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된 아동과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과 처우가 필요하다. 소년분류심사원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소년원과 같은 법률로 규율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접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을 하나의 법으로 같이 규율하고 있는 「보호소년법」을 개정하여, 각각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예산 등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라.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징계결정을 위한 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징계, 퇴원과 같이 아동의 중요한 처우를 결정하는 처우심사위원회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보호소년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종사자 면접조사를 통해 현재 처우심사위원회를 모니터링하는 단위가 없으며 소년원 내부 인력으로만 주로 구성되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 처우심사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위원을 일정 수 이상 의무적으로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정기적인 외부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 징계로서 독방처우의 금지

- 징계로서 독방 처우를 금지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하바나규칙은 독거구금

등 소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징계조치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종사자와 아동 면접조사를 통해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에서 징계, 처벌의 일환으로 독방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아동 면접조사에서는 독방처우와 관련해서, 독방에 있는 동안 독서와 반성문 작성 외에 운동을 포함한 일체의 활동이 금지되고 면회나 편지도 받아 볼 수 없었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종사자 설문조사에서 소년원 종사자는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할 원칙 14가지 항목 가운데 '독방처분 등의 징계절차'가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바. 처분변경을 위한 정기적 심사를 받을 권리 보장

- 현행법은 보호처분에 대해 위탁받은 자 또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 변경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소년법」 제37조). 아동에게 처분 변경을 위해 적법절차에 따라 정기적 심사를 받을 권리 자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소년법」 제37조의 수정 또는 심사신청권, 정기적 심사의무를 반영한 조문이 신설되어야 한다.

사. 수용 아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 기타 기본적 사항에 대한 고지 규정 마련(알 권리 보장)

- 실태조사를 통해 소년원 규칙, 면회 및 서신 등 외부와 소통할 권리, CCTV의 필요성 및 위치 등을 아동에게 안내하는 공식적인 절차는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하바나 규칙이 요구하는 것과 같이, 소년원에 입소하는 아동에게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접견·서신 등 수용자의 권리, 진정 등 권리구제, 징계·규율 등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의 고지에 대한 근거 조문을 보호소년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입자와 다른 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형기, 접견·서신, 청원과 진정, 징벌·규율 등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형집행법」 제17조를 참고할 수 있다.

아. 실외운동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 입소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 있는 소년들에게 실외운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바나규칙은 모든 소년은 기후가 허용하는 한 매일 밖에서 적절한 시간 동안 자유로운 운동을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밝

히고 있다.「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는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을 매일 1시간 이내 원칙으로 보장해야 하고, 심지어 소년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동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반면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아동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훈령에 "휴일에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40조 참조).

자.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

-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종사자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판사의 경우 92.3%가 14세가 되지 아니한 아동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규정은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 '촉법소년' 규정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든 종사자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실태조사에서 종사자들은 소년사법의 문제는 연령이나 처벌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과 회복가능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년범죄 중 14세 미만 비율은 0.1%에 불과하며 14세 이하 저연령 소년범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2012년 12.9%에서 2016년 10%로 감소).

차. 우범소년 규정 삭제

-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재판을 받는 우범소년 규정(「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을 삭제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우범소년으로 통고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사례가 여럿 확인되었다.
- '우범소년' 이 규율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문제는 사법시스템이 아닌 복지지원체계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우범소년' 규정 삭제는「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의 개정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 밖 청소년 등을 위한 지원, 보호대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점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제2부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를 위한 아동인권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는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판사, 국선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 종사자, 1~10호 관련 시설 종사자, 보호관찰관, 경찰 등)의 아동인권 옹호역량과 아동인권감수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아동인권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본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연구보고서에 기반하여 개발되었으므로 교육실시 전, 연구보고서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가급적 소년사법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의 종사자가 함께 참여할 때 보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아동과 소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소년사법제도와 관련된 국제인권규범 등을 다루고 있으며, 민주적 참여식 교육훈련을 통해 전달력 및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전체 프로그램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정원 25-30명, 5-6개의 모둠(1모둠 당 5-6명)을 기준으로 16시간이며, 총 8개의 프로그램, 18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목 차

제1부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Ⅰ. **서론** ····· 3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3
   가. 연구 목적 ····· 3
   나. 연구 필요성 ····· 3
2. 연구 내용과 방법 ····· 11
3. 선행연구 검토 ····· 13
   가. 선행연구 ····· 13
   나. 검토 ····· 20

Ⅱ.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국제인권규범** ····· 21

1.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의 종류와 내용 ····· 21
   가. 국제인권규범의 종류 ····· 21
   나. 소년사법절차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범 ····· 24
   다. 자유박탈처분을 받은 소년사법 대상 아동에 관한 규범 ····· 41
   라. 비행예방을 위한 규범 ····· 48
   마.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규범 ····· 50
2.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소년사법제도 ····· 55
   가. 아동인권 관점에 입각한 분석의 필요성 ····· 55
   나. 벨기에 국제아동옹호팀의 분석 툴(Tool) ····· 55
   다. 소년사법 절차상 보장되어야 하는 아동인권의 유형 ····· 58
3. 국외 사례 ····· 62
   가. 벨기에 ····· 62

나. 영국 ····· 69
4. 소결 ····· 75

Ⅲ. 국내 소년사법제도 이행실태 ····· 78
1. 국내 소년사법체계 ····· 78
가. 국내 법령 체계 및 현황 ····· 78
나. 형사절차단계에 따른 국내 소년사법체계 검토 ····· 82
다. 소결 ····· 110
2. 소년사법제도 아동 당사자 조사 ····· 116
가. 참여자와 조사 목적 ····· 116
나.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117
다. 조사 내용 ····· 117
라. 조사 결과 ····· 119
마. 소결 ····· 154
3. 소년사법제도 관계 종사자 조사 ····· 167
가. 종사자 설문조사 ····· 167
나. 종사자 면접조사 ····· 235
4. 결론: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본 국내 소년사법체계의 한계 ····· 294

Ⅵ.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방안 ····· 310
1. 소년사법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 310
2. 형사절차단계별 개선방안 ····· 311
3. 관련 법 정비방향 ····· 324
4. 결론 ····· 328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제2부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를 위한 아동인권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Ⅰ. **교육훈련 프로그램 필요성** ····· 333

Ⅱ.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요** ····· 334

1. 교육 대상 ····· 334
2. 개발 목적 ····· 334
3. 교육 목표 및 기대효과 ····· 335
4. 프로그램 특징 ····· 335
5. 프로그램 구성 ····· 336

Ⅲ. **교육훈련 프로그램 세부내용** ····· 339

[프로그램 1] 아동과 소년 ····· 339
[프로그램 2] 인권과 아동인권 ····· 345
[프로그램 3] 소년과 나 ····· 355
[프로그램 4] 소년사법의 현재 ····· 361
[프로그램 5] 소년사법과 나 (part1) ····· 370
[프로그램 6] 소년사법에서의 국제인권규범 (part1) ····· 378
[프로그램 7] 소년사법에서의 국제인권규범 (part2) ····· 386
[프로그램 8] 소년사법에서의 국제인권규범 (part3) ····· 393

Ⅳ.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동지** ····· 400

Ⅴ.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동 교구** ····· 419

■ **참고문헌** ····· 429

■ **별첨자료** ····· 433

[별첨1] 아동의 권리 기준 소년사법 국제인권규범 분류표 ····· 435

[별첨2] 아동 면접조사 조사지 ····· 443

[별첨3] 종사자 설문조사 조사지 ····· 448

[별첨4] 종사자 면접조사 조사지 ····· 48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목 차

[표 Ⅲ-1] 소년사법 관련 국제인권규범의 비교 ····· 118
[표 Ⅲ-2] 소년사건의 일반적 요소 및 소년사법 단계별 권리목록 ····· 118
[표 Ⅲ-3] 아동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 120
[표 Ⅲ-4] 종사자 설문조사 응답 비율 ····· 168
[표 Ⅲ-5] 종사자 설문조사 문항 분석 ····· 170
[표 Ⅲ-6] 성별 및 연령대 ····· 174
[표 Ⅲ-7] 경력 ····· 175
[표 Ⅲ-8] 재범소년 증가 원인 우선순위 : 전체의견 ····· 176
[표 Ⅲ-9] 재범소년 증가 원인 우선순위 : 전체의견 ····· 177
[표 Ⅲ-10] 재범소년 증가 원인 우선순위 : 소년원 종사자 ····· 178
[표 Ⅲ-11] 재범소년 증가 원인 우선순위 : 보호관찰관 의견 ····· 179
[표 Ⅲ-12] 재범소년 증가 원인 우선순위 : 국선보조인 의견 ····· 179
[표 Ⅲ-13] 재범소년 증가 원인 우선순위 : 판사 의견 ····· 180
[표 Ⅲ-14] 재범소년 증가 원인 기타 의견 ····· 181
[표 Ⅲ-15]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도움 정도 ····· 181
[표 Ⅲ-16] 충분한 물적 자원(시설 등) 보유 여부 ····· 182
[표 Ⅲ-17] 충분한 인적 자원 보유 여부 ····· 183
[표 Ⅲ-18] 충분한 예산 보유 여부 ····· 183
[표 Ⅲ-19] 낙인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여부 ····· 184
[표 Ⅲ-20] 소년범죄의 특수성에 관한 충분한 교육 제공 여부 ····· 185
[표 Ⅲ-21] 아동의 권리에 관한 충분한 교육 제공 여부 ····· 185
[표 Ⅲ-22] 형법 제9조의 적절성 여부 ····· 186
[표 Ⅲ-23]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적절'한 이유 종사자별 비교 ····· 187
[표 Ⅲ-24]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부적절'한 이유 종사자별 비교 ····· 187
[표 Ⅲ-25]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적절성 여부 ····· 190
[표 Ⅲ-26]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절'한 이유 종사자별 비교 ····· 191
[표 Ⅲ-27]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부적절'한 이유 종사자별 비교 ····· 191

[표 Ⅲ-28]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적절성 여부 ····· 194
[표 Ⅲ-29]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적절'한 이유 종사자별 비교 ····· 195
[표 Ⅲ-30]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부적절'한 이유 종사자별 비교 ····· 195
[표 Ⅲ-31] 성별에 따른 차별적 처우 여부 ····· 198
[표 Ⅲ-32] 보호자의 보호력에 따른 차별적 처우 여부 ····· 199
[표 Ⅲ-33] 아동친화적인 환경 보장 여부 ····· 200
[표 Ⅲ-34] 아동 최상의 이익에 입각한 처분 여부 ····· 200
[표 Ⅲ-35] 소년원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준수 여부 ····· 201
[표 Ⅲ-36] 보호관찰관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원칙 준수 여부 ····· 203
[표 Ⅲ-37] 국선보조인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준수 여부 ····· 204
[표 Ⅲ-38] 법원에서 준수해야 하는 원칙 준수 여부 ····· 205
[표 Ⅲ-39]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분리 진행의 적절성 여부 ····· 206
[표 Ⅲ-40]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분리 부적절한 이유 ····· 206
[표 Ⅲ-41] 소년형사사건 절차 진행 과정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 ····· 208
[표 Ⅲ-42] 소년보호사건 절차 진행 과정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 ····· 211
[표 Ⅲ-43]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처분(8호)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의 적절성 ····· 215
[표 Ⅲ-44]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9호)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의 적절성 ····· 216
[표 Ⅲ-45]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10호)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의 적절성 ····· 218
[표 Ⅲ-46] 소년원 송치처분의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 ····· 219
[표 Ⅲ-47] 보호관찰처분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의 적절성 ····· 220
[표 Ⅲ-48] 소년형사사건에 관한 보호관찰 담당여부 ····· 222
[표 Ⅲ-49] 소년형사와 소년보호 보호관찰 업무대응방식의 차이 ····· 222
[표 Ⅲ-50] 소년보호처분 유형의 적절성에 대한 국선보조인 응답 ····· 223
[표 Ⅲ-51] 소년보호처분 결정의 영향 정도에 대한 국선보조인 응답 ····· 225
[표 Ⅲ-52] 법원의 다이버전 제공 여부 ····· 226
[표 Ⅲ-53] 소년보호처분 유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소년부 판사 응답 ····· 226
[표 Ⅲ-54] 소년보호처분 결정의 영향 정도에 대한 소년부 판사의 응답 ····· 228
[표 Ⅲ-55] 소년보호처분 결정의 영향 정도에 대한 응답 비교 ····· 229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그 림 목 차

[그림 Ⅲ-1] 연령대 ····· 173
[그림 Ⅲ-2] 경력 ····· 175
[그림 Ⅲ-3] 재범소년 증가 원인 우선순위 : 전체의견 ····· 177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제1부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가. 연구 목적

소년사법제도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알고, 그 목적을 이해하고자 한다. 국내 소년사법 법·제도 현황을 확인하고,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아동[1] 및 관계 종사자에 대한 설문 및 면접조사를 통해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인권 이행실태를 파악한다. 아동인권에 기반한 소년사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소년사법제도 관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인권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향후 실효적인 소년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나. 연구 필요성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폭화, 높은 재범률 등이 문제로 지적되며 일각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사법제도 폐지·처벌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사법제도의 폐지, 축소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소년사법은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범죄를 행한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소년사법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명료화하고, 목적에 따라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아동 간, 아동과 종사자 간에 다양한 갈등상황이 우려될 수 있는 소년사법제도에 있어 관계 종사자들의 아동인권 이해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아동인권교육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년사법제도 운영 현실에 대한 문제 인식

2017년에는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 중학생·강릉 고등학생 집단폭행 사건이

---

1) 「소년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여, 법적으로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 연소자, 자녀, 어린이 등으로 불리는 사람을 포함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아동'으로 통일하여 지칭하기로 한다.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며 소년범죄 처벌 강화, 소년법 폐지 청원 등 국내 소년범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과열되었다.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제20대 국회에서는 소년사법제도의 축소, 폐지 등에 관한 다양한 개정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촉법소년을 포함한 보호대상인 소년의 연령 하향, 소년에 대한 형 완화규정 상향 또는 폐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소년법 특례규정 폐지 등이 그러한 내용이다(「소년법」,[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3] 「형법」[4]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 강화의 입법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개정법	법안	주요내용
소년법	2009133 하태경의원 등 12인 (2017. 9. 6.)	① 현행법상 보호대상인 소년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②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형의 완화를 15년에서 20년으로 변경
	2009168 장제원의원 등 11인 (2017. 9. 7.)	촉법소년의 연령을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조정
	2009183 김정우의원 등 12일 (2017. 9. 8.)	①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경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진행 ②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3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는 등 처벌 강화
	2009187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7. 9. 8.)	① 범죄의도, 잔혹성, 수법에 따라 형량을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소년원 보호기간을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상향 조정

2) 2009133 하태경의원 등 12인(2017. 9. 6.), 2009168 장제원의원 등 11인(2017. 9. 7.), 2009183 김정우의원 등 12인(2017. 9. 8.), 2009187 전혜숙의원 등 10인(2017. 9. 8.), 2009192 김도읍의원 등 11인(2017. 9. 8.), 2009212 이석현의원 등 27인(2017. 9. 8.), 2009314 박덕흠의원 등 10인(2017. 9. 13.), 2009318 손금주의원 등 14인(2017. 9. 13.)

3) 2008283 표창원의원 등 29인(2017. 7. 31.), 2009184 김저우의원 등 12인(2017. 9. 8.), 2009191 전혜숙의원 등 10인(2017. 9. 8.), 2009207 이석현의원 등 18인(2017. 9. 8.), 2009210 김도읍의원 등 11인(2017. 9. 8.), 2009320 박덕흠의원 등 10인(2017. 9. 13.)

4) 2009164 장제원의원 등 11인(2017. 9. 7.), 2009215 김도읍의원 등 11인(2017. 9. 8.), 2009221 이석현의원 등 27인(2017. 9. 8.), 2009319 박덕흠의원 등 10인(2017. 9. 13.)

개정법	법안	주요내용
소년법	2009192 김도읍의원 등 11인 (2017. 9. 8.)	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 ② 2회 이상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거나, 4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소년재범자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 ③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범할 경우 형량을 25년으로 상향 ④ 부정기형의 형량을 10년에서 15년으로, 5년에서 7년으로 상향 조정 ⑤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 받은 경우 가석방이 가능한 형의 집행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15년에서 25년으로 3년에서 4년으로 상향 조정 (형의 집행기간 연장) ⑥ 사형 및 무기형의 죄를 범한 경우 전과로 기록
	2009212 이석현의원 등 27인 (2017. 9. 8.)	①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12세로 하향조정 ② 소년부 사건 심리시 사건 본인과 보호자 필수적 참석
	2009314 박덕흠의원 등 10인 (2017. 9. 13.)	①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13세로 하향 조정 ②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의 완화를 15년에서 22년으로 상향 조정
	2009318 손금주의원 등 14인 (2017. 9. 13.)	수사에 필요한 경우 소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8283 표창원의원 등 29인 (2017. 7. 31.)	①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소년법의 형량완화 특칙 적용하지 않음 ②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소년법의 형량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2009184 김정우의원 등 12인 (2017. 9. 8.)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 시 처벌 상한선(유기징역 20년) 삭제
	2009191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7. 9. 8.)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최대 30년의 유기징역 선고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 ② 부정기형의 기간을 장기 20년, 단기 10년으로 상향 조정
	2009207 이석현의원 등 18인 (2017. 9. 8.)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6세 이상 소년범에 대하여 소년법 적용 배제
	2009210 김도읍의원 등 11인 (2017. 9. 8.)	사형 또는 무기형, 부정기형을 선고 받는 경우 형량을 상향 조정
	2009320 박덕흠의원 등 10인 (2017. 9. 13.)	18세 미만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처벌을 유기징역 28년으로 상향 조정

개정법	법안	주요내용
형법	2009164 장제원의원 등 11인 (2017. 9. 7.)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12세로 하향 조정
	2009215 김도읍의원 등 11인 (2017. 9. 8.)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12세로 하향 조정
	2009221 이석현의원 등 27인 (2017. 9. 8.)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12세로 하향 조정
	2009319 박덕흠의원 등 10인 (2017. 9. 13.)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13세로 하향 조정

여론의 우려와는 달리, 2016년 기준 전체 소년범죄에서 소년강력범죄(흉악: 살인, 강도, 방화, 강간)가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불과한 반면 재산범죄(생계형 절도)가 약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소년범죄 중 14세 미만 비율은 0.1%에 불과하며 14세 이하 저연령 소년범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2012년 12.9%에서 2016년 10%로 감소).[5] 다만, 4범 이상 재범율이 2006년 6.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15.2%로 나타난 결과는 소년범죄가 상습화되어가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6] 이는 소년사법제도가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반증한다. 소년사법제도가 그 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연구가 필요하다.

2) 소년사법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

국내에도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범죄를 행한 아동을 성인과 달리 처우하는 법률과 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국내 법·제도가 국제사회가 제

5) 박준휘 외 30명/이승현 집필부분,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8), 103-128면.

6) 이승현, "소년 강력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실천적 대응 방안", 『소년 강력범죄 대책과 입법 개선 방안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2017), 8-9면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시하는 소년사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예컨대, 아동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고려하기 위해 설치된 소년분류심사원은 전국에 하나 밖에 없다. 대전, 대구, 부산, 광주 4개의 지역에 설치해 운영 중이던 소년분류심사원(당시 명칭은 '소년감별소')은 소년보호기관의 기능 조정을 이유로 2007년까지 4개 기관을 폐쇄하고 현재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한 곳만 남겨 두었다.[7] 전국 6개 소년원에서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으며, 아동의 연령과 발달적 특성 및 개별적 성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인적요건,[8] 물리적 요건(생활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시행하는 아동권리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성인·아동 모두 '성인과 다른 사법절차를 적용받을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9]

소년사법 영역에서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를 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해, 조정 등 당사자의 자주적 의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현재 사법제도의 큰 흐름이다. 「소년법」의 화해권고제도, 경찰 단계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년선도심사위원회와 같은 대안처분 내지 형벌대체제도(다이버전, Diversion)는 그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소수자, 사회구조적 피해자이기도 하다. 가해자와 피해자 및 지역사회 공동체, 법률전문가 각 주체가 화해와 조정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회복적 사법은 '사회복귀와 회복'이라는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실천을 위한 핵심적 가치이다.

소년사법(juvenile justice)이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아동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의미한다.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년사법의 주요 목적은 사회복귀(rehabilitation)와 회복(restoration) 내지 사회재적응(reintegration)으로,[10] 아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하기 위한 역량을

---

7) 김철호,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과 역할 강화", 『소년범죄 감소를 위한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정책토론회』, 2015, 4면 참조.

8) 2014년 기준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관 1인당 1일 평균 조사건수가 1.2건으로, 적정수준 0.5건의 2.4배를 초과하고 있다(김철호, 위의 글, 12면 참조).

9) 국제아동인권센터, 『보건복지부 위탁 아동인권증진사업 2017 아동권리인식도조사 자료집』, 보건복지부(2017), 55면 참조.

10)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실(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국제인권법과 사법, 국제인권법연구회(2014), 505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0조(1) 참조; 김경태, "소년사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경찰학논총 제12권제4호(2017), 162면; 박호현/김종호, "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소년사법의 보호이념 강화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강화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잘못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받음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관계,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자율적 주체로서의 생활, 온전한 자유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적응과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년사법제도가 존재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내 소년사법제도가 목적에 부합하여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년사법제도는 특정 아동을 위한 특별한 체계이기도 하지만, 연속적인 발달과정에 있는 모든 아동의 회복력과 잠재성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전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소년사법제도는 특정 아동을 위한 특별한 체계이기도 하지만, 아동인권에 기반한 소년사법제도는 연속적인 발달과정에 있는 모든 아동의 회복력과 잠재성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전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지적·사회적·정서적 충족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인간다운 삶은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존중되는 통합적 기반 위에서 가능할 수 있다.[11)]

3) 소년사법제도 관계 종사자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훈련의 필요성

1978년 비엔나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회의는 "인권교육은 인권에 내재되어 있는 관용과 존중, 연대의 태도를 배양하고, 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 인권에 관한 지식과 이행을 위한 체계를 알려주어야 하며, 국내적·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이 사회적·정치적 현실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각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1994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은 "행동계획에 열거된 기타의 모든 원칙과 그 원칙들이 기반하고 있는 국제인권법과 일관성을 가지면서 학습자에게 기술과 지식을 주는 동시에 학습자의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라고 확인하였다. 그러한 인권교육은 인권에 관하여(about), 인권을 위해(for), 인권을 통한(through) 방법으로서(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자신과 타인의 권리

제78호(2018), 2-3면; 현소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소년사법 제도", 가족법연구 제30권 제2호(2016), 217면 참조.

11) 위 아동권리의 내용은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을 근거로 한 Fact Sheet No.10 (Rev.1), The Rights of the Child(1993)에서 인용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 https://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FactSheet10rev.1en.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종방문: 2018. 11. 22.).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를 존중·보호·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한다.

아동 간, 아동과 종사자 간에 다양한 갈등상황이 유발될 수 있는 소년사법제도 운영에 있어 아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호존중을 비롯한 인권에 기반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태도와 기술은 아동의 사회복귀와 함께 종사자 당사자들의 인권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계 종사자들의 아동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아동인권교육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대한 제5·6차 심의 대응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 및 심의를 받을 의무를 부담한다. 현재까지 총 세 차례의 심의를 받았으며,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2011년 제3·4차 심의에 있어, 소년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소년전문법원 설립, 법률지원을 비롯한 충분한 조력, 아동친화적인 보호시설 조성 및 대안적 조치 확대 등을 권고 받았다.[12] 소년사법제도와 관련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는 다음과 같다.

[2011년 제3·4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80. 위원회는 **대한민국 내 소년비행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재범률** 등 소년 범죄율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비행아동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원인을 다루기보다 성인 구금시설에 비행아동을 구금하는 등, **범죄를 행한 아동이 효과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조치 대신 징계조치를 늘리는 식으로만 대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소년전담검사 임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들이 실제 소년사법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81.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소년범죄 및 높은 수준의 재범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소년사법제도 운영이 특히 협약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를 비롯한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베이징규칙),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지침(리야드 가이드라인),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하바나규칙), 형사사법제도 하에서의 아동을 위한 비엔나 행동지침, 소년사법에서의 아동권리에 관해 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제10호(2007) 등을 포함한 여타 관련 기준에 완전히 합치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2) CRC/C/KOR/CO/3-4, paras.80-81.

(a) 대한민국 전역에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전문법원을 설립하라.
(b) 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동에게 법적 절차 초반 및 전반에 걸쳐 충분한 법률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라.
(c)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교화시설 혹은 구금시설에 있는 아동이 절대로 성인과 함께 구금되지 않고, 안전하고 아동을 배려하는 환경에 있으며,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음식, 교육, 직업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라.
(d)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자신의 배치에 대한 결정을 주기적으로 검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e) 구금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하며, 가능한 한 자유박탈 대신 다이버전(diversion), 보호관찰, 상담, 사회봉사, 집행유예 등 다른 대안을 장려하라.
(f) 소년사법 정의에 관한 유엔기구 패널과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및 비정부기구 등의 회원기구들이 개발한 기술적 지원도구를 활용하고, 패널 회원기구로부터 소년사법 분야의 기술적 지원을 구하라.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은 제5·6차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2017년 12월 제출된 국가보고서는 소년사법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시하고 있다.[13)]

[2017년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184. 현재 소년사건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내 소년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국에 6개의 가정법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이 있고, 두 개의 가정법원(울산, 수원)을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년사법 관계자의 아동인권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전문법원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85. 아동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국선보조인 제도, 신뢰관계인(보조인) 동석제도 등을 활용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아동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유치된 경우만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년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18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과 19세 미만 소년은 분리 수용된다. 소년 수형자에 대한 전문적 수용 처우와 구분 수용을 위해 **김천소년교도소를 소년 수형자 전담 교정시설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과밀수용 문제 해소 및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13년부터 **소년원의 집단생활실을 소규모실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설 규모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다. 정부는 소년원 내 정신질환자의 전문적 의료처우를 위해 **의료전담 소년원을 2020년까지 신설할 예정**이다.

13) CRC/C/KOR/5-6, paras.184-190.

187. 정부는 소년 수용자가 수용생활 중에 면회, 서신 및 전화를 이용하여 수시로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족사랑캠프 및 주말가정학습 등 다양한 가족기능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 소년원에 2~3일간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가정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들에게 교과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188. 정부는 2013년부터 소년원 출원생의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담임교사가 출원 후 6~12개월 동안 방문상담, SNS 상담, 생활 실태 등을 점검하는 '희망도우미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년원 출원생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하는 사회정착지원센터(YES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89. 소년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의 처우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청원할 수 있다. 정부는 구금을 최소화하고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 등 다양한 대안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190.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 항고 결과 송치기간이 감형되는 경우에도 형사절차상의 형벌인 구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판결에 따른 소년원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집행과정상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 이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5년에 「소년법」을 개정하여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에도 원판결에 따른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소년전문법원 부재, 소년에 대한 충분한 법적·기타 지원 부족, 대안적 조치의 한계와 구금방법이 활용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노력의 정도'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현실적인 한계가 무엇인지, 아동인권을 반영한 변화과정이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 즉,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대한 제5·6차 국가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아동인권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심의과정(UN CRC Reporting Process)이 시작된 현 시점에서, 소년사법제도의 운영실태 및 법·제도와의 격차를 확인하고, 아동인권에 기반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국내 소년사법제도의 이행실태와 국제인권규범 간의 간극을 확인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소년사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수행체계는 크게 3단계로 구성하였다. 먼저 국제인권규범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소년사법 관련 국내 · 외 법 · 제도의 현황을 조사하고, 다음으로 아동인권에 기반한 소년사법제도의 국내 이행실태를 조사하였다. 마지

막으로 소년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 관련 종사자 대상 아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다만 본 연구용역의 대상이 비행예방이 아닌 비행 후 처분에 한정되어 있어 '사회복귀와 회복'은 매우 중요한 쟁점임에도 연구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소년사법제도의 국내 이행실태 조사는 다시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째,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해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둘째, 아동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파악한 아동의 관점과 현재 국내·외 법·제도의 현황을 바탕으로 소년사법제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양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종사자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양적조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단계	주요 내용
제1단계	○ 문헌조사 - 국제인권규범 분석, 검토 - 국내 법령 체계 및 현황 조사 - 국외 사례 분석
제2단계	○ 국내 소년사법제도 이행실태 조사 - 아동 대상 심층면접조사 : 소년사법제도 경험 아동·청소년 총 20명 -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 분석 총 484명 (판사 14명, 국선보조인 49명, 소년원 종사자 380명, 보호관찰 종사자 41명) - 종사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 총 16명 (판사 3명, 국선보조인 5명, 소년원 종사자 4인, 보호관찰소 종사자 4인)
제3단계	○ 법·제도 개선방향 제시 - 전문가 자문 - 정책토론회 ○ 소년사법 종사자를 위한 아동인권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파일럿 통한 교육 교재안 보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3. 선행연구 검토

가. 선행연구

‘최근 소년범죄의 현황’을 분석한 연구로는 박준휘 외 30명,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8)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검찰청 「범죄분석」,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법원행정처 「사법연감」등에 기초하여 최근 10년간 소년범죄의 발생 및 처리, 소년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소년범죄의 발생현황과 소년범죄의 특징, 소년범죄의 처리현황을 검토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소년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저연령화 현상은 오히려 둔화되었으나, 특히 4범 이상의 재범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 재범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 생계형 절도의 비중이 높은 점, 소년강력범죄는 소년범죄 전체 가운데 낮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성인범죄와 비교할 때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처리현황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경우 2016년 이후 강력 대응으로 소년범 송치 비율이 감소하고 기소율이 증가하고 있고, 법원은 전체 소년보호사건 중 보호처분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70% 이상, 심리불개시결정 사례가 16%에 이르고 있으며, 소년형사사건에서도 소년부 송치비율이 최근 몇 년간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소년범 개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에 대한 변화와 개입을 통해 범죄의 근본적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14]

‘소년사법제도의 국제인권규범’과 관련된 최근 연구로는 현소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소년사법 제도”, 가족법연구 제30권 제2호(2016)를 꼽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소년사법 관련 내용과 실천방안을 밝히고, 국내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소년전문법원의 설립 필요성(소년형사와 보호사건의 통합), ② 국선보조인(변호인) 등 초기단계아동에 대한 법적 기타 지원절차의 확대, ③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교화・구금시설에 있는 아동을 위한 보호 강화, ④ 촉법아동의 자유 박탈 문제, ⑤ 소년분류심사원의 개선, ⑥ 우범소년과 촉법소년 문제 등을 다루었다. 「소년법」은 형사법의 지

14) 박준휘 외 30명/이승현 집필부분,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8), 103-128면.

배이념인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의 원리 및 무죄추정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고, 소년사법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소년범죄의 '예방'이어야 한다는 점, 소년사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밖에 소년사법제도 관련 국제인권규범을 연구한 자료로는 (1) 최병문, "한국의 소년사법과 국제준칙",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2호(2008), (2) 오영희, "국제인권규약상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고찰: 소년사법제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9), (3) 장민영, "우리 소년분류심사원 감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제법상 아동의 자유 박탈에 관한 기본원칙들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2014), (4) 현소혜, "「UN 아동권리협약」 제4조의 이행상황", 법조 통권 713호(2016) 등이 있다. (5)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 소년사법을 위한 제안서"(2017)에서는 소년사법 관련 국제인권기준을 제시하고, 아동친화적 소년사법 체계 구축을 위한 40개의 이행과제를 담았다.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국제인권법과 사법, 국제인권법연구회(2014)에서는 '사법 운용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장을 별도로 두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소년사법체계의 전체적인 목표는 아동 그 자신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아동의 존중의식을 포함하여, 아동의 사회재적응 및 사회복귀를 증진시키는 데에 있으며, 소년사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으로는, 아동의 복리증진과 비례의 원칙을 지적한다. 특히 사법운용에서의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모든 쟁점들을 고려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네 가지 원칙인 (1) 비차별 원칙, (2) 아동의 최선의 이익, (3) 생명·생존 및 발달에 관한 아동의 권리, (4) 아동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를 밝히고 있다.

'소년사법제도의 외국 법·제도 및 사례'와 관련해서는, 이승현·박성훈,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7)을 살펴보면, 국내 소년강력범 대응실태와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난 뒤, 대한민국과 유사한 경험사례를 갖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를 분석하여, 소년강력범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소년강력범에 대한 강력처벌과 형사책임 연령 인하만으로는 강력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는, ① 독일과 같은 조건부 양형제도의 도입, 소년사법 적용 연령을 18세 이상 21세 미만 연령('청년층')까지 포함해 소년사

법과 형사사법 선택 방안 마련, ② 개입초기단계부터 개입기준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 개입 확보(경찰훈방 법적근거 마련, 시설 내 구금 최소 처분기준 마련 등), ③ 미국의 관할포기 이송제도를 활용하여 사건처리의 신속성 확보, 선도프로그램 강화, 가족기능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호처분의 다변화, 소년형사재판 양형의 현실화를 위한 양형기준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외국 법・제도 및 사례와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연구 이외에도 (1) 최종식, "일본의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원재판의 동향", 소년보호연구 제15호, 한국소년정책학회(2010), (2) 이승현, "영국 소년사법제도의 최근 동향", 소년보호연구 제18호, 한국소년정책학회(2012), (3) 박재현, "노르웨이 소년사법 절차 고찰", 청연논총 제10집, 사법연수원 교수논문집(2013), (4) 류여해, "소년사법제도와 법령상 기준 연령에 관한 고찰: 각국의 소년사법제도와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소년보호연구 제25호, 한국소년정책학회(2014), (5) 오향숙, "캐나다 소년사법과 회복적 사법",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소년정책학회(2015), 바) 류병관, "최근 미국소년사법의 현황과 전망",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소년정책학회(2015), (6) 손진희, "긍정적 청소년 발달과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고찰: 미국의 소년사법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통권 제7호, 사회복지법제학회(2016), (7) 박진애, "독일의 청소년사법제도 관련 입법례: 청소년법원조직과 청소년형사절차",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71호(2017), (8) 강경래, "미국소년사법제도의 선의권의 변화: 엄벌화 정책에서 보호주의로의 회귀", 소년보호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소년정책학회(2017), (9) 강경래, "미국소년사법과 수정헌법 제8조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30권 제2호, 한국소년정책학회(2017) 등이 있다.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과 관련된 연구로는 황지태 외 3인,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6)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① 소년 국선보조인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하기 위해 2016년 기준 전국 국선보조인 689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② 국선보조인의 활동에 대한 소년들의 평가를 위해 전국의 소년원에 입소한 소년 전원과 분류심사원 및 소년원 위탁 중인 소년 총 1,548명 대상(사용설문 1,227부)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③ 국선보조인(6명)과 판사(3인), 분류심사원 종사자(3명), 소년(2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조사에 따르면 소년들의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정책 제언으로는, 국선보조 사례 공유, 보조인 교육

의 전문성과 내실화, 보조인 전문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지침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진행될 아동 당사자 및 관계종사자 조사에 있어 활용할 만하다. 그 밖에 국선보조인을 다룬 연구로는, 원혜욱, "소년사건에서의 보호이념과 국선보조인제도", 형사정책 제28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2016) 등이 있다.

소년사법제도에서 '적법절차원칙'과 관련해서는 최영승,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구현", 소년보호연구 제24호(2014)를 살펴보면, 소년보호절차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단계에서는 촉법·우범소년 진술거부권 불고지, 관계기관 송치 또는 통고 시 임의적 통지, 경찰단계 소환 동행영장제도 부재 등을, 법원 단계에서는 긴급동행영장 발부요건의 추상성, 긴급동행영장 집행절차 근거 법률의 부재, 위탁임시조치의 요건과 절차 불명확성 및 영장주의원칙 고려 미흡, 미결구금일수 산입 및 분류심사원 위탁기간 산입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소년사법제도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다룬 논문은 그밖에도 (1) 김혁, "소년사건에서의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연구", 경찰학 연구 제12권 제4호(2012), (2) 고명수, "소년사법과 적법절차의 원칙", 고려대학교 대학원(2012), (3) 조기영, "소년사법과 적법절차의 원칙", 소년보호연구 제23호, 한국소년정책학회(2013), (4) 박영규, "소년사건처리의 적법절차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소년정책학회(2016) 등 다수 있다.

'회복적 사법(정의)'과 관련된 연구도 다수 있다. 최신 연구 중심으로만 살펴보면 (1) 강경래, "소년사법과 회복적 사법",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2009), (2) 정현미, "소년사법에서 회복적 사법의 운영모델: 경찰과 검찰단계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15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2010), (3) 김혁, "회복적 사법의 이념 구현을 위한 경찰의 경미소년사건처리", 경찰학연구 제11권 제1호 통권 제25호(2011), (4) 장규원·윤현석, "회복적 사법과 소년보호관찰", 소년보호연구 제17호, 한국소년정책학회(2011), (5) 김성중, "경찰단계 회복적 소년사법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5), (6) 정혜원, "국내 회복적 소년사법에 대한 연구동향 및 과제: 예비적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소년정책학회(2015) 등이 있다.

소년사법제도에서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연구로는 (1) 박수선, "한국에서의 회복적 사법 '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 시범운영사례", 법학논집 제15권 제1호, 이화여

자대학교 법학연구소(2010), (2) 류병관, “미국 소년사법에 있어 범죄피해자권리 등장에 따른 논의”, 소년보호연구 제17호, 한국소년정책학회(2011), (3) 최영승,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소년피해자보호”, 소년보호연구 제29권 제4호, 한국소년정책학회(2016), (4) 김혁, “소년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2016) 등이 있다.

소년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원’ 논의 자료로는 2005년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자료집을 먼저 제시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자료집(Ⅰ) -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백서」(2005)에서는 소년사건을 다룬 제3분과위원회에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에 의한 교화를 우선하고, 종래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심리 장기화 등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년범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을 소년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고, 소년부는 심리결과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만 소년법원 형사부에 이송하는 조항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소년법이 소년범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조항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소년범죄의 연소화추세에 맞추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소년범과 촉법소년의 연령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관련조항을 정비하였다.

2013년 서울가정법원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도 참고할 만하다. “가정법원 50주년 기념 논문집”, 서울가정법원(2013)에서는 가사, 소년, 가정보호, 국제학술대회를 주제로 다루었다. 그 중 ‘소년’과 관련해서는 (1) 저연령 보호소년과 소년사법, (2) 저연령 보호소년의 보호처분 현황 및 개선 방안, (3) 보호처분 결정과 관련한 중요기준 등 인식에 관한 연구, (4) 소년보호사건에서 자주 접하는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 (5) 소년보호재판에서 국선보조인의 역할, (6)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의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 확산을 위한 제언, (7) 위탁보호위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이렇게 7가지 주제에 관하여 다루었다. 특히, 한영선, “보호처분 결정과 관련한 중요기준 등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위탁소년과 소년원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보호처분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는, 판사(75.2%)와 소년분류심사관(16.0%)을 꼽았고, 소년원 송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국선변호사(8.3%), 소년원 송치 이유에 대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인식이 6.2%, 또한 보호처분을 ‘처벌’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차경환, “소년보호재판의 개선방안”, 사법 제10호, 대법원 사법발전재단(2009)에서는 소년전담법관이 소년재판실무를 하면서 고민해왔던 소년보호재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었다. 소년보호재판의 관할, 소년부 판사와 조사관의 전문화, 심리기일의 내실화, 환경조사의 적극적 활용, 동행영장의 집행과 심리불개시결정의 개선, 소년보호재판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참여권 보장, 화해권고제도의 활성화, 소년사법회합제도의 도입 등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소년사법에서 법관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은 막대하다는 점에서 실무판사의 고민을 담은 연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소년사법제도와 관련해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로는, (1) 오영근 외, “소년사법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방안”,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다음으로는, (2) 최병각 외,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2007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3) 황옥경 외 6인, “아동청소년권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기초현황조사”, 2015년도 아동청소년 권리모니터링 연구용역보고서 등이 있다.

2002년 연구에서는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인권침해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년원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서울소년원과 춘천소년원에 수용된 405명 대상). 조사 결과, 소년사법절차 모든 단계에서 폭언, 구타, 협박, 차별대우와 같은 인권침해행위가 쉽게 발견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우범・촉법소년에 대한 행정적 복지처분 부과 방안 모색, 다양한 다이버전 수단 활성화, 검사선의주의에서 법원선의주의로의 전환, 재판단계에서 적법절차의 원칙 보장, 미결구금의 정비 및 형사보상의 마련, 집행단계에서 민간위탁시설의 활성화, 가석방・가퇴원 과정 차별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07년 연구용역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성립과 의의를 살피고, 소년사법의 지도원칙에서부터 구성, 적용대상, 제재수단의 완화, 적법절차의 보장 항목 순으로 연구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소년사법의 독자성과 전문성 확보, 촉법・우범소년의 소년복지 접근 필요,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 남용 금지 및 독립된 분리수용 확보, 소년보호절차에서도 무죄추정과 증거법칙 등 형사절차원칙 보장 등이다. 다만, 이 연구는 문헌조사 중심의 연구였다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최근 연구인 2015년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평가를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 별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는데, 소년사법 세션에서는 유엔아동권리

협약 소년사법 관련 조문의 의미를 분석하고 관련 법과 정책 현황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시사점으로는 사회복귀와 회복이라는 이념이 모든 아동에 관철될 수 있도록 소년사법제도를 개혁하고, '보호'라는 명목으로 비행소년에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성인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소년사법 국제인권규범을 분석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2017 아동인권 보고대회」(2017) 자료집, '아동청소년과 형사사법' 세션에서는 소년범의 특성과 소년사법의 현실, 소년사법 국제기준의 국내이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한미 인천가정법원 판사는 소년법원 설치와 법원 선의주의의 도입,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 확대,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집행감독사건의 확대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년사법의 발전방향으로 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 절차상 권리 보장(분류심사대상자의 이의제기 절차 보장, 형사소송법상 절차 규정 보완 등), 정확한 분류심사업무를 하기 위한 광역별 분류심사원 설치, 시설의 소규모화, 소년원과 분류심사원 관련 법 분리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소년사법제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도 최근 여러 연구를 수행해 왔다. 보건복지부, 「2016년도 아동인권증진사업 아동권리포럼」자료집(2016)에서는 소년사법과 관련하여 국선보조인 의견진술권 보장의 미흡, 소년보호시설 등에서의 아동 의견청취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고(제1차), 소년원 처우를 중심으로 소년사법제도에 편입된 아동의 참여권 보장실태를 분석하고, 보호소년 처우의 문제점(아동학대・가정폭력 경험자, 열악한 처우와 과밀, 가석방 심사에서 제외 등)을 검토했다(제3차).

그밖에 보건복지부,「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2016)에서는 '특별보호조치에 관한 개별법 개정안' 가운데 소년사법을 다루었다. ①「소년법」 일부개정안으로는 촉법소년 연령 상향, 우범소년 규정 삭제, 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을 소년원 수용기간에 산입, 사법경찰관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국선보조인 선임 확대를, ②「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는 보호소년의 알 권리 보장, 소년원 등의 점검, 보호장비의 사용 제한, 소년구금시설 생활환경 개선, ③「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는 보호장비의 사용 제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접견교통권 보장, 무기소지의 제한, 징계처분의 유형 정비 등을 제안하고 있다.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통합하는 내용의 「소년법」 전부개정안도 담았다.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관련 법 정비방향 연구

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소년사법제도 관련 국내법령을 검토한 자료로는, 홍관표, “소년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저스티스 통권 제161호(2017)를 제시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기준을 고려하면서, 소년사법 관련 국내 법령에서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이념의 충실한 구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소년사법제도 중 ‘소년보호사건 심판’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령에 한정하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뿐만 아니라 훈령 및 예규의 내용을 형사절차 및 교정 관련 법령과 비교하여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검토

이미 소년사법제도와 관련된 연구들은 상당히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외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회복적 사법, 적법절차의 원칙, 다이버전,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쟁점에서부터 최근에는 소년강력범죄가 연이어 언론에 노출되면서 저연령 보호소년 문제, 소년강력범죄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내용을 분석, 정리하는 것은 본 연구의 기틀을 다지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아직 소년사법제도를 국제인권규범을 기초로 분석, 검토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고, 소년사법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인권교육 관련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국내이행제도를 평가하고 종사자를 위한 아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본 연구가 더욱 중요하다.

특히 그 동안 가장 중요한 아동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조사는 매우 부족했다. 소년사법제도와 관련하여 문헌조사 외의 조사방법을 활용한 연구로는 ① 소년원생 대상 설문조사[오영근 외, 위 연구, 국가인권위원회(2002)]와 ②위탁소년과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영선, 위 논문, 서울가정법원(2013)] 정도가 있었을 뿐이다.

한편, 소년사법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수년 째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지만, 2000년대에 제안된 정책개선방안과 현재의 개선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쟁점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전히 사법부, 법무부와 같은 관련 부처들이 소년사법 정책의 목적과 이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국내 소년사법제도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검토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아동·청소년부터 현장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연구라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소년사법제도 종사자를 위한 아동인권교육훈련 교재 개발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Ⅱ.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국제인권규범

1.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의 종류와 내용

가. 국제인권규범의 종류

이하에서는 아동인권에 기반한 소년사법제도의 국제인권규범을 분석한다. 본 연구용역의 주된 목적은 대한민국 소년사법제도의 이행실태와 국제인권규범 간의 간극을 확인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소년사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데 있으므로, 이행실태 분석에 있어서도, 개선방안의 도출에 있어서도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은 국제인권규범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연도순).

1.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1985, 일명 '베이징규칙')
2.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3.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인권보호에 관한 유엔규칙(UN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1990, 일명 '하바나규칙')
4.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지침(UN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1990, 일명 '리야드 가이드라인')
5. 형사사법체계에서 아동을 위한 비엔나 행동지침(UN Guidelines for Action on Childre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1997)
6. 「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채택 일반논평 제10호(General Comment No. 10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7)
7. 유엔사무총장 안내지침: 아동을 위한 사법체계에 관한 유엔의 접근방식(Guidance Note of the Secretary-General: UN Approach to Justice for Children, 2008)

8. 제재 또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위한 유럽 규칙에 관한 각료 위원회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the European Rules for juvenile offenders subject to sanctions or measures, 2008)
9. 유럽평의회 각료회의 아동친화적 사법체계에 대한 지침(Guidelines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on a Child-Friendly Justice, 2010)
10. 형사절차에서 범죄혐의를 받거나 기소된 아동의 절차적 보호를 위한 EU 지침(Directive on Procedural Safeguards for Children Who Are Suspects or Accused Persons in Criminal Proceedings, 2016)

위 각 규범 외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4조 및 '청원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the Third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등도 소년사법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전자는 아동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절차 일반에 두루 적용되는 것이고, 뒤의 선택의정서는 대한민국이 아직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따로 검토하지 아니하였다.

(1) 적용대상에 따른 분류

위 각 규범은 적용대상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국 일반에 널리 적용되는 규범과 EU 회원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범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①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② '유엔아동권리협약', ③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인권보호에 관한 유엔규칙', ④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지침', ⑤ '형사사법체계에서 아동을 위한 비엔나 행동지침', ⑥ '일반논평 제10호' 및 ⑦ '유엔사무총장 안내지침'이 전자에, ① '유럽평의회 각료회의 아동친화적 사법체계에 대한 지침'과 ② '제재 또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위한 유럽 규칙에 관한 각료 위원회 권고', ③ '형사절차에서 범죄혐의를 받거나 기소된 아동의 절차적 보호를 위한 EU 지침'이 후자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은 1991. 11. 20.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므로, 전자에 해당하는 규범들은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EU 회원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3개의 규범은 대한민국에 대해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소년사법제도에 관해 선진적 태도를 취해온 EU가 채택한 지침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인권규범 기준의 최저한도를 넘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2) 규범의 효력에 따른 분류

위 각 규범은 규범력의 강약에 따라 경성법(Hard Law)과 연성법(Soft Law)으로 구별할 수 있다.[15] ① '유엔아동권리협약'과 ② '형사절차에서 범죄혐의를 받거나 기소된 아동의 절차적 보호를 위한 EU 지침'은 경성법에, ①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②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인권보호에 관한 유엔규칙', ③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지침', ④ '형사사법체계에서 아동을 위한 비엔나 행동지침', ⑤ '일반논평 제10호', ⑥ '유엔사무총장 안내지침', ⑦ '유럽평의회 각료회의 아동친화적 사법체계에 대한 지침', ⑧ '제재 또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위한 유럽 규칙에 관한 각료 위원회 권고'는 모두 연성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경성법·연성법을 불문하고 대한민국이 비준한 협약인 이상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본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분류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3) 규범의 내용에 따른 분류

위 각 규범은 그것이 다루고 있는 내용에 따라 ① 소년사법 대상 아동에 대해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소년사법의 일반원칙, ② 시설수용처분 등으로 인해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사법 대상 아동에 대해 준수되어야 하는 규범, ③ 소년사법 대상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행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규범 및 ④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규범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①에는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0조', '일반논평 제10호' 및 '형사절차에서 범죄혐의를 받거나 기소된 아동의 절차적 보호를 위한 EU 지침'과 '제재 또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위한 유럽 규칙에 관한 각료 위원회 권고'가, ②

---

15) 경성법(Hard Law)과 연성법(Soft Law)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전통적 의미의 법규범과 같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 규범을 경성법, 형식적 의미의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단순한 도덕 내지 국제예양을 넘어서 그것이 준수될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기대를 창설하는 유형의 국제 규범을 연성법이라고 한다.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박영사(2018), 75-78면 참조. 국제법상 연성법의 초기 개념 정립에 기여한 박스터(R. R. Baxter)는 국가 간 합의에 수용되었으나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지 아니하지만 다양한 정도의 타당성과 설득력 그리고 컨센서스를 갖춘 규범을 연성법이라고 설명하면서, 국가들이 이행하고 준수하기를 기대하는 조약상의 규칙들로 구성된 경성법(Hard Law)과 구별하였다고 한다. 정경수, "국제법상 연성법의 재인식", 안암법학 제34권 하(2011), 935-958면 참조.

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와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인권보호에 관한 유엔규칙'이, ③에는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지침'이, ④에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아동을 위한 비엔나 행동지침', '유엔사무총장 안내지침'과 '유럽평의회 각료회의 아동친화적 사법체계에 대한 지침'이 각 포함된다. 나. 이하에서 상세히 소개한다.

나. 소년사법절차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범

(1)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1985, 이하 '베이징규칙'이라고 한다.)[16]

국제사회는 일찍부터 수형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다양한 인권 문제를 검토하면서 고문 및 비인도적인 행위 금지, 피구금자 처우 보장,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대한 존중을 확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국제준칙에 관해 논의하였다. 그러한 흐름 속에 범죄를 행한 아동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었고, 유엔은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여 1979년을 '세계 아동의 해'로 선포하고, 카라카스에서 개최된 '제6회 범죄 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에서 최초로 소년사법의 운영에 관한 최저기준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그 결과 1984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7회 범죄 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에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 규칙」의 초안이 제출되었으며, 1985. 11. 29. 드디어 유엔총회에서 베이징규칙이 채택되었다. 베이징규칙은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최초의 국제인권규범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베이징규칙은 범죄를 행한 아동인 경우에도 발달하는 능력(evolving capacity)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그 가능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며, 소년의 인권 보장을 통한 사회복귀와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적 조치의 최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이징규칙은 총칙에서 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9개의 규칙을 선언하였다. ① 소년사법의 기본이념과 목적, ② 규칙의 적용범위, ③ 지위비행과 갓 성년이 된 범죄자에 대한 확대 적용, ④ 형사책임의 최저연령, ⑤ 아동의 복리와 공정성 실현의 요청, ⑥ 종사자의 재량권 보장과 전문성 확보, ⑦ 절차적 기본권의 보장, ⑧ 낙인예방 및 사생활의 보호, ⑨ 다른 국제규범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 등이 그것이다.

---

16) A/RES/40/33. 베이징규칙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국내 문헌으로 최병문, "한국의 소년사법과 국제준칙,"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2호(2008), 636면 이하 참조.

제1부[총칙]
제1규칙: 소년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며, 비행예방 및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할 것 제2규칙: 규칙은 범죄를 행하였다고 추정되거나 범죄를 행한 아동·청소년 등 당사국 법이 정의하는 모든 소년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규칙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 제3규칙: 당사국의 소년사법제도가 정하는 지위비행에도 규칙의 최저기준이 적용되고, 사법 외 절차, 가능하다면 젊은 성년 범죄자(young adult offenders)에게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4규칙: 정서적·정신적·지적 성숙도를 고려하여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지 말 것 제5규칙: 소년사법제도는 소년의 복지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공정할 것 제6규칙: 소년사법제도 전반에서 종사자의 적절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다만 종사자의 책임 및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제7규칙: 형사법에서의 기본적인 절차적 권리(무죄추정, 범죄사실을 고지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 보호자의 알 권리, 증인신문 및 상소권)가 보장될 것 제8규칙: 낙인예방 및 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사생활 보호가 존중될 것 제9규칙: 본 규칙 해석에 있어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 규칙 및 소년 지원과 보호에 관한 국제인권규준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을 것

위와 같은 총론적 원칙하에 베이징규칙은 소년사법 각 단계에 있어 소년의 절차적 기본권, 수사 및 기소, 재판 및 처분, 시설 외 처우와 시설 내 처우, 지속적인 조사·연구, 계획 및 정책수립과 평가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제2부 [수사 및 기소]	
10. 최초의 접촉	- 소년을 체포하는 즉시 부모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법관 및 관계자는 지체없이 소년의 석방을 고려해야 한다. - 법 집행기관은 소년의 법적 지위를 존중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소년을 해하지(물리적 폭력, 폭언, 사생활 침해 등) 않아야 한다.
11. 다이버전	-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식재판이 아닌 방법으로 소년에 대한 처분을 고려해야 한다. - 경찰·검찰 및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에게 재량으로 사건을 처리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단 이러한 재량은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기관 등에의 위탁을 포함한 모든 다이버전은 소년이나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피해자에 대한 배상프로그램 등 소년에 대한 사법처분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12. 경찰의 전문성	- 소년범죄 예방을 전담하는 경찰부서가 있어야 하며, 특별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13. 재판을 위한 신체구속	- 재판을 위한 신체 구속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 이러한 신체구속은 모니터링되어야 하며, 언제든지 가정위탁 또는 교육시설 수용 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에 따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소년은 성인과 분리되어야 한다. - 신체구속된 소년은 연령, 성별 및 발달적 특성에 따라 필요한 모든 개별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제3부 [재판 및 처우]	
14. 심판권자	- 다이버전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평하고 적정한 심리 원칙(무죄추정, 증인 소환 및 심문, 일반적인 방어권, 진술거부권, 최후진술권, 상소권 등)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 - 이 절차는 소년에게 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소년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분위기에서 행해져야 한다.
15. 변호사, 부모·보호자	- 소년은 모든 절차에서 무료로 법률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부모나 보호자는 아동 최상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소년사법 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16. 사회조사	- 소년재판에서 권한있는 최종 처분을 내리기 전에, 소년의 사회적·가정적 배경을 비롯한 성장환경 및 범죄가 행해진 상황 등을 적절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17. 처분의 지도 원리	- 소년에 대한 처분은 범죄행위의 중대성뿐 아니라, 사회의 수요와 함께 소년의 상황 및 소년의 수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소년에 대한 신체 자유 제한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 신체의 자유박탈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소년에 대한 사형은 금지되며, 신체형(corporal punishment)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도 안 된다. 권한 있는 기관은 언제라도 절차를 중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18. 다양한 처분	- 관련 기관들은 다양한 처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지도 및 감독, 보호관찰, 사회봉사,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중간처우, 집단상담, 지역사회 교육시설 위탁 명령 등). - 부모는 소년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소년을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19. 최소한의 시설 수용	- 소년의 시설 수용 처분은 항상 최후 수단이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그쳐야 한다.
20. 신속한 운영	- 각 사건은 불필요한 지체 없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1. 기록	- 소년의 기록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 소년의 범죄기록은 성인이 된 후의 사건 처리 절차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2. 전문성 및 교육·훈련	- 소년사법 관계 종사자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담당자는 소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배치되어야 한다.

제4부 [시설 외 처우]	
23. 효과적인 실시	- 소년에 대한 심판권자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해당 기관은 이를 감독해야 한다. 또한 심판권자는 소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령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24. 필요한 지원	- 소년사법의 모든 단계에서 소년에게 숙소, 교육 또는 직업훈련, 고용, 기타 필요한 지원 등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25. 지역사회 서비스 활용	- 소년의 교화과정은 가능한 가정에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기관, 지역사회 시설 및 기타 지역사회 내부의 사회자원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5부 [시설 내 처우]	
26. 시설 내 처우의 목적	- 시설수용의 목적은 소년의 관리, 보호, 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해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지원하는 것에 있다. - 시설에 수용된 소년은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심리적, 의학적 및 신체적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아야 한다. - 소년은 성인과 분리되어 수용되어야 하며, 성인과 같은 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구획을 달리하는 장소에 수용되어야 한다. - 여자 소년범죄자의 시설 수용은 특별한 배려를 요한다. - 부모나 보호자는 수용된 소년의 이익과 복지에 관하여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 시설 수용으로 인해 교육상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한 교과 교육,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하도록 부처 및 부서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27.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 규칙 적용	-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및 관련 권고는 미결구금 및 시설 수용 소년의 처우에 관련되는 한 적용되어야 한다(숙박설비, 건물, 침구, 의복, 청원과 진정, 외부와의 교류, 식사, 의료, 종교, 연령에 의한 분리, 직원, 노동 등). - 소년의 연령, 성, 인격에 따른 개별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에 정해진 관련 원칙을 가능한 최대한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8. 가석방의 확대실시	- 소년의 사회복귀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석방은 적절한 부서에 의해 가능한 적극적으로, 되도록 조기에 허가되어야 한다. - 가석방된 소년은 지원과 감독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9. 반(半) 구금적 조치	- 사회복귀 훈련시설, 교육시설, 주간교육센터 등 소년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반 구금적 조치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6부 [연구, 계획, 정책수립 및 평가]	
30. 계획,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 효과적인 계획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로서 필요한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 소년에 의한 범죄·비행의 경향, 문제 및 원인과 구금 중인 소년의 다양한 수요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소년사법행정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연구를 실시하여, 행정체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년사법행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서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1989)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은 1989. 11. 20.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1990. 9. 2.부터 발효되었다. 협약은 제37조 및 제40조에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은 이미 유엔이 베이징규칙에서 채택하였던 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인권에 관한 내용들을 반영한 것이다. 이 중 특히 소년사법 절차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협약 제40조이다.

협약 제40조는 사회복귀와 재활이라는 소년사법제도의 이념과 함께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소년사법 절차 내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아동의 절차적 기본권,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보호자에 대한 통지와 지원·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진술거부권과 무기대등의 원칙·상소권의 보장·사생활의 존중 등을 열거하는 한편, 아동의 발달기적 특성을 고려한 최저연령기준·다이버전 기타 대안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b.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ⅰ)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
      (ⅱ)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ⅲ)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ⅳ)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ⅴ)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ⅵ)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ⅶ)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a.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b.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 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 밖의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3) 「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채택 일반논평 제10호(2007, 이하 '일반논평 제10호'라고 한다.)[17]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이란 유엔의 국제인권법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조약기구가 해당 조약 내용에 대한 포괄적 해석이나 지침 등을 제시하는 일종의 유권해석을 말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해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위 위원회는 2007. 4. 25. 「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10호를 채택하면서 소년사법제도를 협약에 맞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협약 제37조 및 제40조와 함께 제2조(비차별), 제3조(아동 최상의 이익), 제6조(생명·생존 및 발달) 및 제12조(아동참여와 의견존중) 등이 더불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일반논평은 특히 소년사법제도가 협약의 정신에 따라 운영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6가지 핵심 요소를 확인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식제고와 교육,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평가·연구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권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반논평이 선언하고 있는 6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소년사법제도의 핵심 요소〉

A. 비행 예방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비추어, 아동이 범죄행위에 관계할 가능성이 높거나 안정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은 아동권리 보장에 적절하지 않다. 즉, 아동의 비행예방을 위한 국가정책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하고,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장받으며,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적절한 돌봄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보장조치로서, 아동의 사회복귀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사법제도에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B. 개입/다이버전
아동이 범죄를 행한 경우, 가능한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조치가 요청된다. 소년의 대부분이 경범죄를 행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내부에서 아동의 사회복귀와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다이버전 등 대안적 조치가 원칙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이는 소년에 대한 낙인예방 및 아동의 심리적·정서적·사회적 회복을 조력하며, 나아가 공공안전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한다. 사법절차에 의할 때에도, 자유박탈은 최후의 수단으로 엄격히 결정되어야 하며, 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주된 내용으로 소년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7) CRC/C/GC/10.

C. 형사책임 최저연령

소년사법은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회복가능성을 인정하는 특별한 제도로서, 형사책임 최저연령은 아동의 성숙도에 대한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사법외적 처분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운영에 기여한다. 즉, 형사책임 최저연령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설정한 형사책임 최저연령이 12세 미만일 경우, 최소한 12세로 높이고,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D. 공정한 재판 보장

제40조 제2항이 명시하는 소년에 대한 공정한 재판 보장은 경찰, 검사, 변호사, 판사, 보호관찰관 및 사회복지사 등 소년사법제도 관계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들이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존엄성 및 가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행동할 때, 타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 또한 강화될 수 있으며, 아동의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급적용 금지(제40조 2항 (a))
무죄추정(제40조 제2항 (b)(ⅰ))
의견청취권 (제12조)
사법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권리 (제40조 제2항 (b)(ⅳ))
피의사실에 관한 신속하고 직접적인 통지 (제40조 제2항 (b)(ⅱ))
법적 또는 여타 적절한 지원 (제40조 제2항 (b)(ⅱ))
보호자 참여 및 지체 없는 결정 (제40조 제2항 (b)(ⅲ))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제40조 제2항 (b)(ⅲ))
증인의 출석과 심문 (제40조 제2항 (b)(ⅳ))
항소권 (제40조 제2항 (b)(ⅴ))
통역사의 무상지원 (제40조 제2항 (b)(ⅵ))
사생활의 완전한 존중 (제40조 제2항 (b)(ⅶ))

E. 조치

시설수용 등 자유의 박탈은 오직 마지막 수단으로 가능한 최단기간 동안 사용되어야 하며, 법원의 유죄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검찰은 대안적 조치의 가능성을 거듭 고려하여야 한다. 처벌 및 제재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협약에 명백히 반한다. 아동에 대한 사형·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는 금지되며, 이는 범행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F. 미결구금과 기결수감 등 자유박탈

협약 제37조에 따라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자유박탈은 입법적 조치로 명시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미결구금이 처벌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미결구금된 경우에도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구금 여부가 재고되어야 하며, 독립적이며 공정한 사법기관에서 신속하게 재판 및 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시설수용 등 자유박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아동 최상의 이익에 입각한 성인과의 분리수용, 아동친화적인 환경 및 가족과의 관계유지 등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을 참고하여 아동의 사회복귀와 재사회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중 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① 의견청취권

소년의 의견청취권은 공정한 재판에 필수적이다. 협약 제12조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였다(제1항).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도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 진술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제2항). 제12조에 따른 의견표명권, 참여권 및 의견청취권은 재판 전 단계에서부터 심리 중인 판사에게 견해를 진술하는 단계, 판결 및 판결에 따른 처분의 이행 단계까지 소년사법 모든 단계에서 완전히 존중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통지 및 사법절차와 예산 가능한 조치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은 아동의 참여권과 의견청취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아동이 자유롭게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 아동에게 위협적·적대적이고 민감하지 않거나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면 아동의 의견청취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청취된 아동의 견해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사법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권리

범죄를 행한 아동이 재판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범죄사실 및 예상되는 결과와 처분에 대한 이해는 사법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청이다. 스스로에 대한 사법절차의 내용을 이해할 때, 법적 대리인을 정하고, 증인을 찾으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증거와 증언 등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규칙 제14조가 명시하였듯이, 소년사법 절차는 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아동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의 연령과 개별적 성숙도를 고려한다면, 법적절차와 관행 또한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

③ 피의사실에 관한 신속하고 직접적인 통지

소년은 자신에게 제기된 피의사실을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즉, 검사 또는 판사는 아동에 대한 재판절차가 처음 시작될 때 가능한 빨리 아동에게 피의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법절차가 아닌 대안적 처분에 의해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아동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처분의 결정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이러

한 권리는 법적 보호조치를 완전히 존중해야 한다는 협약 제40조 3(b)항의 이행이기도 하다. 또한 통지는 당사자인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되어야 한다. 외국어 번역이 필요한 경우는 물론, 어려운 법적 용어를 아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때로는 아동에 대한 공적문서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구두설명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나 부모나 법정후견인, 법적 대리인 등이 아동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피의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소년사법제도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 검사, 판사 등 공적기관의 책무로서 아동을 비롯한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 모두에게 피의사실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법적 또는 여타 적절한 지원

아동은 변론 준비 및 재판 과정에서 법적 또는 여타 적절한 지원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때의 지원은 법률적 측면을 포함하여, 아동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심리적·정서적·사회적·경제적 등 모든 적절한 지원을 말한다. 아동을 조력하는 사람은 소년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법을 위반한 아동과 소통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위원회는 아동을 지원함에 있어 변호사 및 법률적 조력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를 제공하도록 권고하였다. 즉, 반드시 변호사만이 소년사법에서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아동 및 아동의 조력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3조 3(b)항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변론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보장받아야 한다. 협약 제40조 2(b)(vii)항에 따라 아동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는 아동과 조력자 간의 서면이나 구두 의사소통의 경우도 포함한다.

⑤ 보호자 참여 및 지체 없는 결정

법을 위반한 아동의 경우, 범죄를 행한 시점과 마지막 대응 시점 간의 시간차이는 가능한 짧아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 의견이다. 최종 결정 시간이 길어질수록 긍정적·교육적 기대효과가 상실될 가능성이 커지고, 아동의 낙인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체 없는 결정은 아동의 인권과 법적 보호조치를 완전히 존중한 사법절차의 결과여야 한다. 즉, 법적 또는 여타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판의 전 단계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 역시 사법절차에 참여해야 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며, 위원회는 보호자의 참여를 법률로 규정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보호자의 존재는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아동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는 아동의 사회복귀에 적극적인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부모는 아동의 체포 소식 등을 가능한 빨리 통지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의 참여가 아동 최상의 이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사 또는 관계당국에 의해 보호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4) 제재 또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위한 유럽 규칙에 관한 각료 위원회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the European Rules for juvenile offenders subject to sanctions or measures)[18)]

유럽연합 각료 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 of Council of Europe)는 제재 또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년의 권리와 안전의 보호 및 신체구속, 그리고 소년사법 대상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적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2008. 11. 5. EU 각 회원국 정부에 대하여 ① 소년사법제도가 본 권고의 부록에 포함된 규칙(Rules)에 따라 입법, 정책 입안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및 ② 본 권고와 그에 따른 해설이 자국어로 번역되어 사법당국, 수사기관, 소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집행 기관, 소년 수용기관, 복지시설, 정신건강기관 및 언론과 일반대중에 광범위하게 보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다. 본 권고의 부록에 따른 '제재 또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위한 유럽 규칙(European Rules for juvenile offenders subject to sanctions or measure)'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8) CM/Rec(2008) 11.

구분	내용	
Ⅰ. 총칙, 범위 및 정의	총칙	- 소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그 집행은 반드시 법률로써 명시되어야 하며, 제재 및 처벌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부과될 수 있음. - 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제재 또는 처벌로 인해 청소년으로서의 권리를 해할 수 없음.
	범위 및 정의	- 본 규칙은 소년 수용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관에 수용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음.
Ⅱ. 지역사회 제재 및 처분 (Community Sanctions and measures)	법체계	- 소년의 성장단계에 맞춘 다양한 지역사회 중심의 제재 및 처분이 제공되어야 하며, 교육적 효과가 있는 제재 및 처분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함. - 각 회원국은 각 지역사회 제재 및 처분에 관하여 법률로써, ① 해당 제재 및 처분의 정의 및 요건 ② 해당 제재 및 처분에 따른 의무 ③ 제재 및 처분 부과시 소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 ④ 제재 및 처분의 부과, 변경, 집행 기관 및 각 기관의 의무, 책임 ⑤ 부과된 제재 및 처분 변경 사유 및 절차 ⑥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외부조사 절차를 명시해야 함. - 각 회원국은 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년 제재 및 처분 기관에게 해당 청소년 및 나아가 그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의 내용 및 목적을 설명할 의무 및 소년 및 그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 최대한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법률로써 명시해야 함. - 지역사회 제재 또는 처분의 부과는 소년의 교육, 직업훈련, 신체 및 정신 건강치료, 안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 - 제재 또는 처분의 부과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소년 또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하여 사전에 통지되어야 하며,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함. - 소년이 이미 결정된 지역사회 제재 또는 처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신체 구속 될 수 없음.
	집행의 요건	- 지역사회 제재 및 처분은 최대한 소년에게 의미가 있고, 교육 개발 및 사회적 기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함. - 소년에게 제재 및 처분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하며, 기존의 건설적인 사회 네트워크 및 가족관계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함. - 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해당 소년에게 부과될 지역사회 제재 및 처분에 관하여 설명해야 함. - 소년이 행하게 될 지역사회 활동 및 관련 의무는 해당 국가의 일반적인 건강,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함.

구분	내용	
Ⅲ. 신체구속	총칙	- 소년의 신체를 구속한 때에는 조기 석방의 가능성을 제공해야 하며, 구속 기간 동안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나아가 개별적인 재사회화 계획에 따른 적절한 개입이 있어야 함. 이러한 활동 및 개입은 소년의 신체, 정신적 건강, 자신감 및 책임감을 키우면서 동시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 신체 구속된 소년은 기관에서 제공받는 프로그램 및 일반적인 생활 여건에 대하여 관련 당국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함.
	수용시설	- 각 수용시설은 수용된 소년의 개인적 필요 충족 및 제재 또는 처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제공해야 함. - 수용시설은 소년이 자기 자신, 직원, 타인 및 나아가 지역사회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안 및 통제만을 실시 - 개인별 치료가 가능할 정도의 최소한의 인원을 수용
	배정	- 가정 및 재사회화가 이루어질 지역에서 가장 접근이 용이한 시설에 배정되어야 함. - 법으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년은 성인 수용시설에 수용될 수 없음. - 각 소년의 교육 수준, 발달, 안전 요구에 따른 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평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등록	- 수용시설 등록 시 소년 및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신상정보, 수용사유 및 담당기관, 등록일시 등을 기록해야 함. - 등록 시 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및 방식으로 수용시설의 규칙 및 의무에 대하여 고지해야 함.
	숙소, 위생, 의복, 침구, 영양, 건강	- 소년에게 제공되는 숙소, 특히 수면 장소는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고 건강 및 위생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내 온도, 면적, 조도, 난방, 환기 등은 시설에서 관리하되 이에 관한 최소 요건은 국내법으로 정해야 함. - 소년 시설은 잘 관리되어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함. 가능한 범위에서 매일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있어야 함. - 적절한 수준의 사복 착용이 허용되어야 하며, 적절한 의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시설에서 제공해야 함. - 소년의 나이, 건강상태, 신체조건, 종교, 문화 및 시설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고려한 식단이 제공되어야 함.
	계획 활동 (Regime activities)	- 모든 활동은 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소년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고안되어야 함. - 모든 프로그램은 각 소년의 나이, 성별, 사회 문화적 배경, 발달 단계, 가해범죄 유형에 따른 소년의 개인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특히 해당 분야의 연구결과 및 모범 사례를 통해 입증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이러한 활동에는, 정규교육제공, 직업훈련, 직업치료, 시민교육, 사회화 기술 훈련, 공격성 제어훈련, 중독치료, 개인/단체 훈련, 다양한 취미활동, 사회적응훈련이 포함됨.

구분	내용	
Ⅲ. 신체구속	사회공동체와의 소통	- 소년은 가족을 비롯한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최대한 자주 전화통화 할 수 있고, 정기적인 면회가 허용됨. - 소년이 일반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방문이 허용되며, 재사회화를 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 사회공동체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의사소통 방법을 제공해야 함. - 면회 및 의사소통은 수사, 질서유지,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제한되거나,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 될 수 있으나, 제한을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명령/결정이 있어야 하며 그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음. - 소년의 정기적인 외출이 허용되어야 하며, 외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가족방문 횟수를 추가하거나 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사람이 방문하도록 주선해야 함.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소년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함. - 시설의 규칙은 소년의 종교 및 믿음에 따른 종교 활동에의 참여, 종교 지도자의 면회, 관련된 서적의 보유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야 하며, 소년에게 특정 종교 활동에 참석하거나 종교 지도자와 면담할 것을 강요할 수 없음.
	수용시설 내 질서유지	- 수색: 수용소년, 직원, 방문객에 관한 수색 절차가 규정되어야 하며, 소년에 대한 수색은 소년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함. 방문객에 대한 수색은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짐. - 무기, 신체 제압, 기타 물리력의 사용: 무기, 신체제압, 물리력은 직원의 신체 보호, 탈출, 재산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후의 방법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함. 수갑 등 보호도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절차에 따라 사용되어야 함. - 안전 목적의 분리: 매우 예외적으로 다른 수용소년들과 분리하여 수용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수용시설은 법률의 근거하여 해당 소년을 분리 수감할 수 있음. - 징계, 징벌: 징계 또는 징벌은 모든 교육적 방법을 사용한 이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징계의 대상이 된 소년에게 즉시 해당 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및 방식으로 고지해야 함. 징계는 교육적 효과가 가장 큰 방법으로 선택해야 하며, 사유에 비례하는 정당한 방법이어야 함.
	수용시설 간 이송	- 최초 수용시설 배치 기준이 변경되었거나, 재사회화를 위하여 다른 시설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심각한 보안 및 안전 위험이 있는 경우 이송할 수 있으며, 단순한 질서유지 목적의 이송은 불가함.
	사회 복귀	- 석방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에 각 소년에 대한 개별적인 사회복귀 계획이 제공되어야 함. -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추가적인 외출, 조건부 조기 석방을 고려할 수 있음. - 수용시설과 사회복귀 지원 시설은 신체구속 초기부터 소년의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를 위하여 긴밀하여 협업해야 하며, 사회복귀 지원 시설은 소년의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석방 전 수용시설에서 해당 소년을 면회할 수 있음.

구분	내용	
Ⅳ. 법률적 조언		- 소년 및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제재 또는 처분의 부과 및 집행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국가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Ⅴ. 이의제기, 조사, 모니터링	이의제기 절차	- 소년,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는 수용시설 또는 제재를 집행하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절차는 간단하고 효과적이어야 함. - 기관이 이의제기/요청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제공되어야 하며, 소년,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는 상위기관 또는 독립된 기관에 거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년의 경우 구두로 이의제기할 수 있어야 함.
	조사 및 모니터링	- 수용시설 및 제재를 집행하는 지역사회는 정부기관의 정기적인 조사의 대상이 되며, 조사 결과는 공개되어야 함. - 제재 및 처분 중 소년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린 때에는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즉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함.
Ⅵ. 인사		- 직원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직원의 채용, 선발, 훈련, 지위, 운영에 관한 공식 문서가 구비되어야 함. - 특히 소년과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는 직원의 경우 이를 고려한 특별 선발절차를 통해야 하며, 소년과 관련한 교육의 이수여부 및 전문자격을 고려해야 함. - 관계자의 전문성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개발되어야 함. 관계자 전문성 훈련은, ① 직업윤리 및 기본 가치 ② 아동보호에 관한 국제적 규율 및 용납될 수 없는 처우로부터 청소년의 권리 보호 ③ 소년사법, 가족법, 발달심리학, 청소년 교육학 ④ 청소년에 대한 동기부여 방법과 관련된 지도법 ⑤ 청소년 및 가족과의 전문적인 관계 형성 및 유지 ⑥ 청소년에 대한 입증된 개입방법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야 함.
Ⅶ. 평가, 리서치, 미디어 및 일반 대중과의 소통	평가 및 리서치	- 소년을 위해 고안된 제재 및 처분은 지속적으로 평가, 업데이트해야 함. - 담당 기관은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책임이 있음.
	미디어 및 일반 대중과의 소통	- 미디어 및 일반 대중에 대하여 수용시설 및 제재를 집행하는 지역사회에 관한 정보, 각 제재의 목적 및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5) 형사절차에서 범죄혐의를 받거나 기소된 아동의 절차적 보호를 위한 EU 지침(2016)[19]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는 2016. 5. 11. '형사절차에서 범죄혐의를 받거나 기소된 아동의 절차적 보호를 위한 EU 지침'을 채택하였다. 비준을 하지 않았거나 유보의사를 밝힌 국가[20]를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은 2019. 6. 11.까지 위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 위 지침은 아동에게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을 성년자와 동일한 정도로 보장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동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다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고자 한다. 위 지침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아동에게 알 권리와 변호사 조력권을 강력하게 보장하였다는 것이다.

① 아동의 알 권리

위 지침은 범죄혐의를 받거나 기소된 아동에게 그들이 위 지침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권리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위 지침은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아동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절차의 단계에 따라 알려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달리 정하였다. 단계별로 아동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정보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

19) Directive 2016/80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위 지침에 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문헌으로 Steven Cras, "The Directive on Procedural Safeguards for Children who Are Suspects or Accused Persons in Criminal Proceedings: Genesis and Descriptive Comments Relating to Selected Articles", eucrim 2/2016, p.109 참조.

20) 루마니아는 지침 제2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에 관하여, 폴란드는 제6조 제8항 (b)에 관하여 적용을 유보하였으며, 아일랜드, 영국 및 덴마크는 본 지침을 비준하지 않았다.

단계	정보
범죄혐의를 받거나 기소된 즉시	1) 부모 기타 보호자에 대한 통지 권리 (제5조)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6조) 3)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제14조) 4) 재판절차 외의 절차에서 부모 기타 보호자와 동석할 권리 (제15조 제4항) 5) 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 (제18조)
초기 단계	1) 개별적으로 조사받을 권리 (제7조) 2) 의료서비스 접근권 (제8조) 3) 신체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받을 권리 및 그 대안적 처분을 받을 권리 (제10조, 제11조) 4) 재판 절차에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와 동석할 권리 (제15조 제1항) 5) 변론기일 출석권 (제16조) 6) 아동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구제받을 권리 (제19조)
신체 자유 제한 시	신체 자유 제한 시 아동으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 (제12조)

② 의무적 녹음·녹화

위 지침은 ①에서 열거된 정보가 실제로 아동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실히 하고, 부적절한 심문 등으로 인해 아동의 절차적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기타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심문 시 시청각 자료를 통한 녹화 및 녹음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모든 회원국은 아동이 경찰 또는 기타 사법기관으로부터 심문을 받는 경우 모든 절차에서 시청각 자료를 통한 녹화 및 녹음을 하여야 하며, 시청각 자료의 녹화 및 녹음이 불가능한 때에는 성립의 진정성이 입증된 서면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되어야 한다(지침 제9조). 물론 녹화나 녹음이 아동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이익형량하여 녹화·녹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이를 판단할 때에는 변호사의 동석 여부나 아동의 구속 여부 등 형식적인 요소가 아니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주된 고려요소로 삼아야 한다.

③ 부모 기타 보호자의 알 권리

위 지침은 알 권리를 아동 자신뿐만 아니라 친권자 기타 아동을 위해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에게도 보장하고 있다. 즉, 각 회원국은 부모 기타 법적 보호자에 대하여 아동에게 제4조에 따른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 기타 법적 보호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동의 이익에 반하거나,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할 수 없었거나, 형사재판 절차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모 기타

법적 보호자 외에 아동이 지정한 자로서 관련 기관이 승인한 자에 대하여 정보를 고지할 수 있다. 아동이 달리 지정한 성인이 없거나, 또는 아동이 지정한 자가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관련 기관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관련 기관의 담당자 또는 사회복지시설장 등 그 외의 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

④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위 지침은 아동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필수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아동이나 그의 보호자가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변호사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아동 등에게 변호사를 선임할만한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국가의 재정으로 그를 위해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주어야 한다는 것까지 의미한다. 따라서 지침에 따르면 형사사법 절차의 당사자가 된 시점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아동으로서 범죄용의자로 특정되거나 형사기소된 시점부터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경찰·검찰·법원 등 관련된 모든 형사사법절차에서 아동은 필수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변호인이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구금 등 자유박탈처분을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지침의 태도는 신체적·정서적으로 취약한 아동에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던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2004. 6. 15.자 판결[21]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효성 있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경찰심문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던 유럽인권법원의 2008. 11. 27.자 판결[22]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⑤ 기타

그밖에도 지침은 보호·교육·훈련 및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해당 아동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한 개별처우를 해야 한다는 점(지침 제7조), 자유박탈조치가 있는 경우에 아동에게 전문가에 의한 건강검진(신체검사 및 정신감정 포함)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점(지침 제8조), 자유박탈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그리고 최단기간

21) S.C. v. the United Kingdom(No. 60958/00). 유럽인권법원의 2011. 2. 3.자 DUSHKA v. UKRAINE 판결(No. 29175/04)의 취지도 이와 같다.

22) Salduz v. Turkey(No. 36391/02).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대안적 처분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지침 제10조 및 제11조),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지침 제12조),[23] 신속한 재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지침 제13조), 재판의 공개나 언론 보도 등에 의해 아동의 사생활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지침 제14조), 재판 절차에서 본인이 스스로 출석할 권리 및 부모 기타 보호자와 동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지침 제15조 및 제16조)[24] 등을 강조하고 있다.

다. 자유박탈처분을 받은 소년사법 대상 아동에 관한 규범

(1) 유엔아동권리협약

소년사법제도에 따른 재판의 결과 대상 아동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이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는 공권력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하게 될 위험이 매우 높고, 외부에서 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기가 어려우므로 유엔은 1955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회 범죄 방지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에서 이미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을 공포하였다. 위 규칙은 당연히 소년사법제도에 따라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들에 대해서도 적용되었으며, 1985년에 제정된 베이징규칙 역시 위 규칙 및 관련 권고들이 시설에 수용된 소년범죄자 미결 구금 아동들의 처우에

---

23) 지침 제12조에 따르면, 아동은 달리 아동에게 이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과 구별된 공간에 구금되어야 하며, 구금 된 아동이 18세가 된 이후에도 해당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성인과 구분된 공간에 구금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아동에게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년(젊은 성인)과 같은 공간에 구금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위 조문은 구금된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유지 및 관리를 비롯하여 교육 및 훈련 받을 권리의 보장,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권리,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가질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4) 지침 제15조에 따르면 아동은 모든 재판 절차 및 재판 외의 절차에서 부모 기타 법적 보호자와 동석할 권리를 가지며, 부모 기타 법적 보호자와 동석하는 것이 아이의 이익에 반하거나,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할 수 없었거나, 형사재판 절차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모 기타 법적 보호자 외에 아동이 지정한 자로 관련 기관이 승인한 자와 동석할 수 있다. 위 조문은 특히 재판절차의 경우에 아동에게 달리 지정한 성인이 없거나, 아동이 지정한 자가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결과 동석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담당자 또는 사회복지시설장 등 그 외의 자라도 반드시 동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아동은 재판 절차에서 본인이 스스로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가지며,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아동은 새로운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16조).

관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베이징규칙은 특히 소년의 연령·성별·인격에서 비롯한 특별하고도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에서 정한 원칙이 최대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 및 베이징규칙을 해석을 할 때에도 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명시하였다(베이징규칙 제9조 및 제27조).

하지만 1990년 발효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성년을 위해 제정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 일반을 위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관점 하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협약 제37조가 그것이다. 협약 제40조는 소년사법제도에 한정해 적용되는 규정인 반면, 협약 제37조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아동에 대한 사형·절대적 종신형·고문 기타 잔혹한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때 아동에 대한 자유의 박탈이 잔혹한 처우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자유의 박탈을 금지하는 한편,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자유박탈처분이 행해지는 경우에 각 당사국이 준수해야 하는 규범에 대해서도 함께 선언한 것이다.

성년과 달리 아동의 경우에는 요보호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적으로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등이 적지 않으므로, 협약 제37조는 범죄의 의심을 받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인된 아동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등에 대해서까지 널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자유를 박탈당하는 대부분의 아동은 소년사법 대상의 아동이므로, 협약 제37조는 제40조와 함께 소년사법에 관한 조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협약 제37조는 무엇보다도 체포·구금 등 아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은 적법절차에 따라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그리고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함을 선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소년사법은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37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의 인권, 특히 성인과의 분리수용·가족과의 교류권 및 자유박탈조치에 관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b.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c.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d.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안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인권보호에 관한 유엔규칙(1990, 이하 '하바나규칙'이라고 한다.)[25]

하바나규칙은 1990. 12. 14. 유엔총회 제68차 정기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위 규칙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을 보호하고 나아가 모든 종류의 구금으로 인한 유해한 결과를 방지할 목적으로, 신체의 자유 제한과 관련하여 유엔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과는 별도로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만을 위한 특별한 규칙을 제정한 것이다. 여기에서 '자유의 박탈'이란 사법·행정기관 또는 기타 공적 권한을 가진 기관의 명령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억류, 구금, 구치소·교도소 수용 혹은 자신의 의사로 떠날 수 없는 공적 또는 사적인 신병 구속의 환경에 놓이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규칙은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이 수용되는 모든 종류 및 형태의 시설에 적용된다.

하바나규칙은 협약 제37조의 정신에 따라 소년사법제도는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해야 하며,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하바나규칙 및 베이징규칙에 명시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야 하고, 신체의 자유 제한은 최후의 수단으로,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기간 동안 사용되어야 하며, 처분의 기간은 사법 당국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25) A/RES/45/113.

하바나규칙은 인종, 성별, 나이, 언어, 종교, 국적, 사회적 출신,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적용되며, 각국은 필요한 경우 위 규칙을 개별 국가의 법률에 포함시키거나,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상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위 규칙의 적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총칙	
Ⅱ. 규칙의 범위와 적용	
Ⅲ. 체포 혹은 재판을 위해 신병이 구속된 소년	무죄추정의 원칙, 재판 전 구금 최소한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일자리,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Ⅳ. 소년시설의 관리·운영	
A. 기록	비공개, 소년의 기록 열람 절차 보장 등
B. 입소, 등록, 이송	구금 시설의 정보 기록 의무, 보호자 통지의무, 구금된 소년에 대한 내부 규정, 보호목적 및 방식, 징계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고지의무
C .분류 및 배정	성인과 분리 수용 원칙, 공개구금시설 마련의무(구금 최소화) 등
D. 숙식환경 및 시설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받을 권리, 사생활 보호, 취미활동 보장 등, 숙박시설의 소규모화
E. 교육, 직업훈련, 직업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의무, 노동하는 소년의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
F. 여가생활	매일 야외에서의 자유로운 신체활동 제공 의무 등
G. 종교	자신이 선택한 종교생활을 영위할 권리
H. 의료조치	의료서비스 제공 의무, 자격을 갖춘 전문가 구비
I. 질병·부상·사망의 통지	가족/보호자의 건강상태를 통지받을 권리 등
J. 지역사회와의 광범위한 소통(접근)	시설외의 장소에서 외부와 소통할 권리 등
K. 신체의 억제 및 실력행사의 제한	모든 강제력 사용 금지 원칙, 보호장비 및 물리력 사용의 최소한의 원칙, 무기 휴대 및 사용금지
L. 징계/징벌 절차	체벌, 암실 배치, 폐쇄, 독방 감금 등 잔인하고 비인도적, 굴욕적 징계수단 금지 기타 모든 징계조치에 대한 법률유보원칙
M. 조사 및 이의제기	수용시설에 대한 정기적 조사 실시의무, 수용 소년의 이의제기권 보장의무
N. 사회 복귀	사회 복귀 프로그램 제공 의무, 재사회화 지원 및 낙인 · 편견으로부터의 보호 지원 서비스 제공의무 등
O. 인력	수용시설 직원의 자격 기준, 전문가 배치 의무, 아동 전문성 교육훈련 의무, 종사자의 소년 인권보호의무 등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① 체포 혹은 재판을 위해 신병이 구속된 소년

체포되거나 재판받기 위해 신병이 구속된 (미결)소년은 무죄로 추정되며 그에 적합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 재판을 위한 신병 구속은 가급적 피해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에 국한되어야 하고, 대체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방구금을 하는 경우에도 법원과 수사기관은 신병 구속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최우선해야 한다.

② 분류와 수용

소년의 신병 구속은 연령, 인격, 성격 및 범죄 유형에 따른 소년의 특수한 수요, 상태 및 특별한 필요와 소년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소년을 유해한 영향 및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보장하는 조건에서만 허용된다.

보안시설이 없거나 최소한인 개방적인 구금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구금 시설의 수용 인원은 개개인의 사정에 따른 개별 처우가 가능할 정도로 소수여야 한다. 소년의 구금 시설은 소년과 가족이 용이하게 면회, 접촉할 수 있도록 지방에 분산되고 그에 적합한 소규모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환경에 뿌리를 내린 것이어야 한다.

③ 교육, 직업훈련 및 작업

의무교육의 취학연령에 있는 모든 소년은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적합하고 사회 복귀 준비를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교육은 가능한 한 소년 구금시설 밖의 지역사회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자격을 가진 교사에 의해 그 국가의 교육제도에 통합되는 프로그램으로 행해져야 한다. 읽기·쓰기가 불가능한 소년이나 인지·학습상의 곤란을 가진 소년은 특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소년은 적절한 직업 선택과 시설 운영상의 수요를 정당하게 고려하여 종사를 희망하는 직업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소년은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청소년 노동에 적용되는 모든 국내적·국제적 보호기준은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④ 여가활동(Recreation)

모든 소년은 기후가 허용하는 한 매일 밖에서 적절한 시간 동안 자유로운 운동을 할 권리가 있고, 관련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활동을 위해 충분한 장소, 설비 및 용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매일 여가활동을 위한 특별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⑤ 의료 조치

모든 소년 구금 시설은 적절한 의료시설에 즉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수용자의 수요에 적합한 의료설비를 갖추고 예방적 의료지원 및 응급조치 훈련을 받은 의료진을 비치해야 한다. 의약품은 오직 의학적 이유에 의한 치료에 의해 (가능한 경우) 당해 소년의 동의를 얻은 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⑥ 지역사회와의 광범위한 접촉

소년의 외부와의 의사소통은 사회복귀 준비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공정하고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모든 소년은 원칙적으로 주 1회, 정기적으로 빈번하게 가족·변호인의 방문을 받을 권리가 있고, 프라이버시 요구를 존중하는 환경에서 이들과 접촉하고 제약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류할 권리가 있다. 모든 소년은 서신을 받을 권리가 있고, (적법하게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주 2회, 자신이 선택한 자와 편지 또는 전화로 연락할 권리가 있다.

⑦ 신체의 억제 및 실력행사의 제한

계구의 사용 내지 실력행사는 예외적으로 다른 모든 통제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우, 그리고 법률과 규칙의 명확하고 개별적인 규정에 의해 권리가 부여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계구의 사용 및 실력 행사에 의존하는 것은 그 어떤 목적으로든 금지된다. 직원에 의한 무기 휴대 및 사용은 소년을 구금하는 어떠한 시설에서도 금지된다.

⑧ 징계절차

체벌, 암실(dark cell) 수용, 독방 구금 등 처벌을 포함한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품위를 해치는 취급에 해당하는 모든 징계조치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식사를 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이거나(reduction of diet), 가족과의 접촉 제한 내지 거부는 그 어떠한 목적으로든 금지된다. 노동은 징계를 위한 제재 목적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 동일한 규율 위반에 대해 1회를 초과해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되며, 집단적인 제재는 금지된다.

소년은 유효한 법률 및 규칙의 문언에 엄격하게 근거한 경우가 아닌 한 징계 제재를 받지 아니한다. 문제가 된 위반행위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며, 소년은 권한있는 공평한 기관에의 불복신청권을 포함해 방어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받은 경우가 아닌 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모든 징계절차에 대해 완전한 기록이 작성, 보존되어야 한다.

⑨ 조사와 불복신청(Inspection and complaints)

소년 구금 시설에 속하지 않는 자격 있는 조사관 또는 조사기관은 정기적으로 시설을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직무수행에서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조사 종료 후 조사관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소년의 권리 또는 시설 운영 관련 법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수사 및 소추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모든 소년에게는 시설의 장 또는 대리인에게 탄원하거나 불복신청을 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내용 검열을 받지 않고 불복신청을 행할 권리가 있고 지체 없이 결과를 통보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⑩ 사회 복귀

권한 있는 기관은 소년이 사회에서 다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편견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확보해야 한다. 사회 복귀의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상담과 면접을 전제로 석방(퇴원)할 때 적당한 주거, 의복, 생활유지에 충분한 수단을 소년에게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⑪ 인사(직원)

직원은 교과지도원, 직업훈련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정신과의사 및 심리사 등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통상 상근직으로 고용되어야 하며, 충분한 보수를 받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구금 시설의 적당한 운영은 직원들의 직무에 대한 인적 적합성 및 성실성, 인간성, 능력 및 소년을 취급하는 직업적 역량에 달려있다는

점을 주의하여 채용해야 한다. 직원은 아동심리, 아동복지, 하바나규칙을 포함한 인권 및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이 포함된 연수를 받아야 한다. 구금 시설의 직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소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라. 비행예방을 위한 규범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지침(이하 '리야드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26]은 1990. 12. 14. 유엔총회 제68차 정기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리야드 가이드라인은 소년비행의 방지야말로 전체 사회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동은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인도주의적 인생관을 습득하고, 준법정신을 갖출 수 있다는 점, 소년비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인격을 존중·향상시킴으로써 조화로운 사춘기의 성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리야드 가이드라인은 아동을 사회화나 관리의 대상이 아닌 절차의 주체로 보아야 하며, 국가는 혁신적인 비행방지 정책과 체계적인 연구, 효과적인 조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소년비행의 예방을 위해 정부가 입법·행정·사법·정책개발의 영역에서 분야별·영역별로 취해야 하는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용역보고서의 연구대상은 비행예방이 아닌, 비행 후 처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리야드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간략히만 살펴본다.

---

26) A/RES/45/112.

Ⅰ. 기본 원칙

Ⅱ. 지침의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선언 및 아동권리협약의 틀 안에서 해석되고 실시된다. 베이징규칙 그리고 아동의 권리, 이익 및 복지에 관한 기타 모든 조약 및 협정, 기준의 맥락에 따라 해석·실시되어야 한다.

Ⅲ. 일반적인 예방책

포괄적인 비행방지계획은 정부의 각 단계(차원)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그 계획에는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 및 자원, 담당 공적기관, 시설 및 직원의 책무, 정부와 지방정부기관 간 조정기구, 비행예측연구에 기초한 정책, 프로그램 등의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 비행방지정책 및 그 절차에서의 소년의 참여, 모든 단계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직원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Ⅳ. 사회화의 과정

모든 아동의 가정, 지역사회, 또래집단, 학교, 직업훈련, 직장동료 및 자원봉사조직을 통한 사회화 및 통합의 성공을 용이하게 하는 비행방지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동의 적절한 인격적 성장 발달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화 및 통합 과정에서 아동들을 전면적이고 대등한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한다.
A. 가족 B. 교육 C. 지역사회 D. 매스미디어

Ⅴ. 사회정책

정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과 프로그램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충분한 의료, 정신건강, 영양섭취, 주택공급 및 약물·알코올 남용 방지와 치료를 포함한 관련 서비스를 위한 시설과 인력,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 기타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자원은 실제로 아동에게 도달하고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동의 시설 수용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우 등이 아닌 한) 최후 수단이며 필요한 최단기간에 국한되어야 한다.
아동의 고통, 위해, 학대 및 착취를 나타내는 징후 또는 결과행동이나 상황의 종류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전문가 집단 및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야 한다.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참여는 임의로 행해져야 하며, 아동이 관련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작성, 책정 및 실시에 관여하여야 한다.

Ⅵ. 입법 및 소년사법 운영

정부는 모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촉진·보호하기 위해 개별 법규와 절차를 제정·시행하고, 아동의 고통, 학대, 학취를 방지하는 법률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아동이 불필요하게 낙인찍히고 피해를 입거나 범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인과 비교하여 범죄로 인식되거나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동에게도 범죄가 되거나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아동을 위한 옴부즈맨 조직이나 유사한 독립조직의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
법 집행기관 기타 관계기관의 직원은 아동의 특별한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Ⅶ. 조사, 정책개발 및 조정

다학문적 및 단일학문적 토대를 바탕으로 경제, 사회, 교육, 보건 관련 기관/서비스와 사법기관, 아동 관련 기관, 지역사회 및 개발기관, 그 밖의 기관 사이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적절한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아동범죄와 비행방지, 소년사법 관련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보, 경험 및 전문시식의 교환이 국내,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에서 촉진·강화되어야 하고 관련 실무가, 전문가와 정책결정자의 협력을 발전, 강화해야 한다.
소년범죄 및 비행방지의 효과적인 방안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조사연구의 성과가 널리 보급되고 평가·검토되어야 한다.

마.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규범

(1) 형사사법 체계에서 아동을 위한 비엔나 행동지침(1997)[27]

「형사사법체계에서 아동을 위한 비엔나 행동지침」은 1997. 7. 21. 유엔경제 및 사회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채택되었다. 위 지침은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 및 기타 국제규범의 이행방법을 제시하면서 각 당사국이 협약 및 관련 국제문서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소년사법은 상호의존적이고 불가분적인 아동의 권리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위 지침은 출생등록·형사책임능력·아동 중심적 관점 및 독립적 전문가의 검토 필요성·소년전문법원 및 별도의 소년보호절차·다이버전 등 대안적 조치·아동을 위한 법률지원 프로그램의 신설·시설 외 처우 중심의 원칙과 구금최소화의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위 지침은 소년사법제도가 국가 단위를 넘어 국제적·지역적으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영역이라는 전제 하에 협약 이행 모니터링시 가능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무엇보다 근본원인을 찾아내 지속적인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27)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1997/3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Ⅰ. 총칙	
Ⅱ. 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행계획	
A. 일반적 적용	아동이 가지는 모든 권리의 상호 관련성 및 불가분성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국가적 접근 강조
B. 세부적 목표	① 효과적인 출생신고 프로그램 구축 ② 국가의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 연령, 투표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함 ③ 아동친화적인 소년사법제도 구축, 소년사건에 대한 소년사법 전문가의 감수, 소년법원의 구축 ④ 소년사건의 기존 절차에 대한 재검토 및 가능한 범위에서 대안적인 절차 마련 ⑤ 아동에 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할 에이전시 및 프로그램 개발 ⑥ 특별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문제 완화를 위한 조치 ⑦ 폐쇄형 기관에 수용된 아동의 수 감축 ⑧ 구금된 아동에 대한 가족 등의 접견권 보장 ⑨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⑩ 형사 절차에 있는 아동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는 인권 및 UN 기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할 것 ⑪ 현존하는 국제표준에 비추어, 아동의 기본권 및 자유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조사를 보장할 것
C. 국제 사회 차원의 접근	① UN의 각 기구 및 국가 간에 긴밀하게 협업할 것 ② 법적조언, 국가별 시설의 확충, 경찰 및 사법기관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훈련 매뉴얼 마련, 아동에 대한 권리 고지를 위한 교육자료 준비 등과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의 효과적인 이행과 기술 협력 및 자문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 표준의 사용 및 적용이 보장될 것
D. 기술 자문 및 지원 프로젝트 메커니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이행에 관한 각국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국가에게 제안 또는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음.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청소년 사법영역에서 국가간 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보고서의 내용 및 요청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 기구, 유엔 아동기금 및 기타 유관기관에 자문,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E. 개별 국가 프로젝트 시 고려사항	아동의 행동과 관련하여 형사사법 조치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청소년사법당국, 청소년사법 집행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교육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임.
Ⅲ. 피해아동 및 아동 증인에 관련 계획	
① 피해 아동 및 아동 증인이 정당한 대우, 보상,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② 경찰, 법조인, 판사 및 기타 재판과 관련된 자는 피해 아동을 대하는 방법을 훈련받을 것 ③ 피해 아동이 신속하고 공정하며,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사법적, 행정적 매커니즘을 수립, 강화할 것 ④ 아동 증인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지원 제공, 아동의 모든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	

(2) 유엔사무총장 안내 지침: 아동을 위한 사법체계에 관한 유엔의 접근방식(2008)[28]

위 유엔사무총장 안내 지침은 아동을 위한 사법체계에서 고려되고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 아동은 소년사법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 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자·증인 등 사법절차와 관련된 모든 아동을 의미하는바, 위 안내 지침은 사법제도 전반에서 모든 아동들에게 국제규범과 기준이 완전히 적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위 안내 지침이 채택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사법체계의 운영 원칙은 아래와 같다.

안내 원칙
1.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보장 2.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자유롭고, 공평한 대우 3. 아동의 자유로운 의견표명권과 의견청취권 증진 4. 학대, 약취 및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5. 존엄성과 연민에 기반한 대우 6. 모든 절차에서 법적 보장과 보호조치 준수 7. 법 위반 예방을 위한 조치 8. 자유의 박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만 활용 9. 모든 법적 조치에서 아동 이슈 주류화
아동을 위한 사법제도 체계
1. 헌법 또는 그와 동등한 법률, 법적 체계와 그 시행 2. 사법기관, 거버넌스, 보안기관 및 인권기구 3.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절차 및 매커니즘 4. 일반대중 및 시민단체를 통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법률적 기반 강화 및 관련 공무원 및 기관의 책임 강화

(3) 유럽평의회 각료회의 아동친화적 사법체계에 대한 지침(2010)[29]

유럽평의회 각료회의는 2010년 11월 17일 '아동친화적 사법체계에 대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이는 (2)에서 살펴본 유엔사무총장 안내지침을 반영하여 민사·형사·행정 등 모든 사법절차 내에서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인권과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

28) 위 지침은 https://www.un.org/ruleoflaw/files/RoL_Guidance_Note_UN_Approach_Justice_for_Children_FINAL.pdf 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종방문: 2018. 11. 22.).
29) 위 지침은 https://rm.coe.int/16804b2cf3 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종방문: 2018. 11. 22.).

적으로 ① 참여, ② 아동의 최상의 이익, ③ 존엄성, ④ 비차별 및 ⑤ 법치주의라는 5가지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정보제공·사생활과 가족생활의 보호·안전·전문가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다학제적 접근·자유의 박탈과 관련된 각 영역에서 아동인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위 지침은 소년사법제도를 ① 재판 전 절차, ② 경찰 수사 절차, ③ 재판절차, ④ 재판 후 절차의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특히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의 목록과 보장의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국제인권규범과 차별성을 갖는다.

Ⅰ. 범위 및 목적	
범위	아동과 관련된 형사, 민사, 행정법의 실행 및 모든 관련 기관, 서비스에 적용
목적	모든 사법절차에서 아동의 성숙도 및 이해 수준을 고려한 정보권, 참여권, 보호권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함
Ⅱ. 기본원칙	
참여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권, 참여권 보장
아동 최상의 이익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
존엄성	모든 절차/사건에서 각 아동의 개별 상황, 신체·정신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세심하고 공정하게 대우할 것
비차별	성별, 인종, 국적, 나이,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등으로 차별받지 않으며,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아동의 특수성을 존중받아야 함
법치주의	성인과 동일하게 법의 기본원칙 적용
Ⅲ. 아동 친화적 사법체계 일반	
정보제공	형사사법기관은 절차 내내 아동 및 그 부모에게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해야 함[30]
사생활과 가족생활의 보호	
안전	형사사법 절차 중 아동이 협박, 보복 및 기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함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훈련	
다학제적 접근	아동의 사생활 및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및 법적,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판단을 위해 여러 관련 전문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
자유의 박탈	최후의 수단일 것, 필요 최소한으로 적용할 것, 특별한 보호가 제공될 것[31]

30) 아동 및 보호자는 아동이 사법절차에 관여되는 때부터 사법 절차기간 동안 a) 사법 절차와 관련한 아동의 권리 및 침해시 구제방법, b) 사법 절차 및 그 절차 내에서 아동의 지위 c) 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 d) 수사 및 재판에 따른 영향(결과) e) 이의제기 절차 f) 재판 및 수사 기일 및 장소 g) 진행 상황 h) 가능한 보호조치 I)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한 검토 메커니즘 j) 가해자 또는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k) 신체, 정신건강 및 통역, 번역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서비스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정보 및 조언은 아동의 나이 및 성숙도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법

Ⅳ. 재판 전 절차	
형사책임 최저연령 기준, 조정 및 다이버전 등 대안적 조치, 아동의 관점을 고려한 정보제공 및 상담	
Ⅴ. 경찰 수사	
경찰은 아동의 권리 및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수사를 진행해야 함. 수사 절차에서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함. 경찰 조사에 관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함. 경찰 단계에서 구금되는 경우에도 성인과 구별된 공간에 구금되어야 하며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제공되어야 함.	
Ⅵ. 재판 절차	
법원에 대한 접근권 보장	재판 절차와 관련하여 아동이 가지는 권리 및 구제받을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재판 절차 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호자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아동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 절차 참여. 아동에 대한 무상 법률지원 제공 아동의 권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통해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재판 절차상 발언권 보장	판사는 아동의 진술권을 존중해야 함. 나이로 인해 아동의 진술권이 제한되지 않으며, 진술권의 사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함. 아동에 대한 판결 및 결정은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및 방법으로 그 이유를 제공해야 함
Ⅵ. 재판 절차	
부당하게 재판이 지연되지 않을 권리	아동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	모든 절차에서 아동은 나이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보호를 제공받아야 함. 절차 시작 전 법원 및 기타 시설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아동이 사법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함. 아동의 나이 및 이해도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함. 아동은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와 동석해야 함.
아동 진술/증거	아동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훈련된 전문가를 통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증인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여보다는 진술을 녹음 또는 녹화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함. 수차례 진술해야 하는 경우 동일한 자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가해자와의 대면은 최대한 피해야 함.

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아동의 보호자 및 변호인에게도 동일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31) 아동은 성인과 구별된 공간에 구금되어야 하며, 아동의 이익을 고려하여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 구금될 수 있다. 구금된 아동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할 때, 가족관계 및 재사회화가 중요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a) 부모, 가족, 친구와의 정기적인 연락을 할 권리 및 징계로 이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b) 적절한 교육, 직업훈련,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및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취미활동을 할 권리 c)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2.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소년사법제도

가. 아동인권 관점에 입각한 분석의 필요성

위에서 살펴본 국제인권규범은 모두 소년사법제도가 아동의 발달하는 능력과 회복성·탄력성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아동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삼아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제도의 한 당사자로서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한편, 아동의 발달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연령과 개별상황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년사법제도는 범죄에 따른 각종의 처분을 받음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무죄추정의 원칙을 비롯한 형사절차에서의 각종의 기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위기가정·위기아동에 대한 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서비스, 보호자와의 관계, 교육환경 등 아동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처우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소년사법제도가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소년사법의 대상이 되는 아동이 접하게 되는 수사·재판 및 집행단계 뿐만 아니라, 가족·교육·지역사회 영역에서의 사회복지체계 전반에 대한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년사법이 문제되는 모든 국면에서 각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고 있는 기준의 도달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의 소년사법제도가 이와 같은 국제인권규범에 적합하게 구성·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각 국제인권규범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보장하고자 하는 소년사법제도에서의 아동의 인권을 추출해 내고, 그러한 인권의 유형에 따라 소년사법제도의 절차 단계별로 그것이 규범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장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나. 벨기에 국제아동옹호팀의 분석 툴(Tool)

'벨기에의 국제아동옹호팀(the team of Defence for Children International)'(이하 'DCI 벨기에')은 2018년 '나의 변호사·나의 권리 프로젝트(My Lawyer My Rights European Project)'의 일환으로 소년사법제도를 분석하면서 이미 위와 같은

아동인권적 관점에서 국제인권규범을 분류한 바 있다. 이는 본 연구용역의 아동인권 중심 접근 방법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위 프로젝트는 벨기에의 「국제아동옹호기구(Defence for Children International)」와 「아동 써클(Child Circle), 이탈리아의 「국제아동옹호기구(Defence for Children International)」, 폴란드의 「헬싱키 인권 재단(Helsinki Foundation for Human Rights)」, 아일랜드의 「아동 법률 클리닉(Child Law Clinic)」, 네덜란드의 「국제아동옹호기구(Defence for Children International)」, 불가리아의 「불가리아 헬싱키 위원회(Bulgarian Helsinki Committee)」, 유럽 로펌인 「DLA Piper」, 그리고 「유럽형사변호사협회(European Criminal Bar Association)」라는 총 9개의 조직이 협력하여 진행하였으며, 형사절차에서 범죄 혐의를 받거나 기소당한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절차 중에 그들의 권리와 필요가 보장되며, 그들의 기본권 보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젊은 변호사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32)]

위 프로젝트는 소년사법과 관련된 국제인권규범 가운데 경성법 중에서는 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② 유엔아동권리협약, ③ 청원 절차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를, 연성법 중에서는 ① 베이징규칙, ② 리야드 가이드라인, ③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유엔 기본 원칙(The UN Basic Principles on the role of the lawyers), ④ 하바나규칙, ⑤ 형사사법체계에서의 아동을 위한 행동지침, ⑥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0호 및 제12호, ⑦ 형사사법체계에서 법률조력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유엔 원칙 및 지침(The UN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access to legal aid in criminal justice systems)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위 프로젝트는 유럽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유럽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국지적 국제규범도 널리 분석하였는데, 그 분석 대상이 되는 유럽의 국제인권규범 목록은 아래와 같다.

---

32) http://www.mylawyermyrights.eu/partners/ 페이지 참조(최종방문: 2018. 11. 22.).

경성법
1.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2. 유럽 사회적 권리 장전(European Charter of Social Rights) 3. 유럽연합 기본권 장전(European Union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4. 형사절차에서 해석 및 통역에 관한 권리에 대한 EU 지침(Dir. 2010/64/EU on the Right to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5. 형사절차에서 정보에 관한 권리에 대한 EU 지침(Dir. 2012/13/EU on the Right to Inform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6. 형사절차에서 변호사 접근권에 대한 EU 지침(Dir. 2013/48/EU on the Right of Access to a Lawyer in Criminal Proceedings) 7. 형사절차에서 범죄혐의를 받거나 기소된 아동의 절차적 보호를 위한 EU 지침(Directive on Procedural Safeguards for Children Who Are Suspects or Accused Persons in Criminal Proceedings, 2016) 8. 형사절차에서 범죄혐의를 받거나 기소된 사람을 위한 법률 조력에 관한 EU 지침(Dir. 2016/1919 on Legal Aid for Suspects and Accused Persons in Criminal Proceedings)
연성법
1. 유럽평의회 각료회의 아동친화적 사법체계에 대한 지침, 2.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에 대한 고문, 비인간적·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 방지를 위한 유럽위원회 기준(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s Standards on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2015 개정) 중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 부분 3. 제재 또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위한 유럽 규칙(European Rules for Juvenile Offenders subject to Sanctions or Measures, 2008) 4. 형사절차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취약 계층의 절차적 보장에 관한 유럽위원회 권고(European Commission Recommendation on Procedural Safeguards for Vulnerable Persons Suspected or Accused in Criminal Proceedings, 2013) 5. 형사절차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자를 위한 법률 조력권에 관한 유럽위원회 권고(European Commission Recommendation on the Rights to Legal Aid for Suspects or Accused Persons in Criminal Proceedings, 2013)

위 프로젝트는 위와 같은 광범위한 국제인권규범 목록을 분석하여 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② 정보접근권, ③ 의견청취권, ④ 사생활의 보호, ⑤ 아동의 최선의 이익, ⑥ 다학제적 협력과 전문가의 훈련이라는 6가지 유형의 아동인권을 추출해 냈는데, 위 각 유형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변호사와 접촉하고, 조력을 받을 권리 - 비밀 보장을 받을 권리 - 무료 법률구조에 대한 접근권
정보접근권
- 정보 및 조언을 받을 권리 - 아동친화적 방법에 의한 정보 제공
의견청취권
- 의견청취권과 참여권 - 절차적 보장: 아동친화적 면접 및 환경의 보장 - 통역과 번역을 제공받을 권리
사생활의 보호
-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보호 - 절차의 비공개
아동의 최선의 이익
- 아동의 최선의 이익 고려 - 개별적 수요의 평가 - 신속한 재판의 원칙 - 자유박탈 조치의 보충성과 대안적 조치
다학제적 협력과 전문가의 훈련
- 다학제적 접근 채택의 필요성 - 전문가 훈련 및 역량 강화

소년사법에 관한 각 국제인권규범과 국지적 국제규범이 위 각 유형의 아동인권 중 어떠한 쟁점들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별첨1]에 첨부되어 있다.

다. 소년사법 절차상 보장되어야 하는 아동인권의 유형

위와 같은 DCI 벨기에의 아동인권 중심 접근 방식은 대한민국의 법제와 실태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아동인권 관점에서의 분류방식을 차용하여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아동인권의 유형을 추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내 소년사법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DCI 벨기에와 같은 6개 영역으로 아동인권을 분류하는 대신, 아래와 같은 10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의 소년사법제도와 EU의 소년사법제도는 전체적인 구조나 인적·물적 기반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용어나 권리 관념이 사용되는 맥락 등에서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으므로, 우리 현실에 맞는 새로운 분류기준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1. 정보접근 및 알 권리
2.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4.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
5.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6.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7.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8. 모니터링 및 진정에 관한 권리
9.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10. 사회복귀의 지원

위 권리의 목록은 주로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도에 기초하여 선별하였으나, 국내 소년사법제도의 이론과 실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온 빈도, 개선방안의 실현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은 검사선의주의와 소년보호사건/소년형사사건 이원화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수사 단계·소년보호사건에서의 조사 및 심리 단계·소년형사사건에서의 조사 및 심리 단계·재판 단계에서 고르게 인권 보장 수준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인권유형을 추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다만, 10가지 유형 중 "10. 사회복귀의 지원"은 소년사법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행실태 점검 작업시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용역의 대상이 비행예방이 아닌 비행 후 처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심사기준으로 삼은 아동인권의 유형은 1.~9.에 해당하는 9가지 목록으로 한정되며, 위 각 권리유형별로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될 국제인권규범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보 접근 및 알 권리
- 적절한 시기에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 - 아동 측의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에 대한 접근권 - 필요한 경우 통역 또는 번역을 제공받을 권리 - 수사·조사·재판시 아동친화적 면접 및 환경 보장
2.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 적절한 시기에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참여권과 의견청취권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자유롭게 변호사와 접촉하고, 조력을 받을 권리 - 변호사 접견시 비밀 보장을 받을 권리 -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
4.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
- 신속한 수사와 재판의 원칙 - 이송에 따른 재판 지연 방지
5.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 아동의 최선의 이익 고려 - 개별 면접 및 상담조사에 따른 개별적 수요의 평가 - 다이버전 등 다양한 대안적 조치의 제공 - 처분 또는 재판 후 정기적 심사
6.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수사·조사·심리 등 절차의 비공개 - 기록 보존 여부 - 언론보도에 따른 낙인 예방
7.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 자유박탈 조치의 보충성과 최소성 - 자유박탈 중인 아동의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 자유박탈 중인 아동을 위한 특별한 보호(교육과 사회복귀)
8. 모니터링 및 진정에 관한 권리
- 정기적 모니터링과 신뢰성 제고 - 진정 제도의 마련과 아동의 접근 가능성 제고
9.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다학제적 접근 채택의 필요성 -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에 의한 제도 운영 - 전문가 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구체적으로, ① 정보접근 및 알 권리는 범죄사실을 고지 받을 권리 및 진술거부권과 항소권, 변호인 조력권 및 통역·번역 지원 등 재판절차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를 알 권리 모두를 포함한다. ②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는 재판 전 단계, 재판 및 시설 외 처분과 시설 수용 등 절차 전반에서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전제로, 그에 따라 아동이 보호자의 적절한 지원과 조력을 받을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 ③ 법적 지원 및 무료법률지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소년사법제도에서 사용되는 모든 절차와 용어를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받는 것도 포함한다. ④ 아동은 최초의 행위시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신속한 절차를 보장받아야 하며, ⑤ 연령집단과 발달적 특성, 개별성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분을 받고, 처분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가 있다. 개별처우는 아동의 회복과 사회재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요청이다. ⑥ 아동의 사생활 보호는 기본적 인권이자, 낙인 예방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 아동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기록은 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성인이 된 후의 사건에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베이징규칙 제21조는 아동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소년사법의 목적을 명확히 나타낸다. ⑦ 재판 전 단계에서의 수사 및 조사, 재판단계에서의 조사, 시설 수용을 포함한 다양한 처분 조치에 있어 신체구속과 무력은 가능한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에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은 국제인권규범의 확고한 원칙이다. 소년사법은 아동의 존엄성과 가치에 부합하는 대우를 통해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⑧ 아동은 국가인권기구 등 독립된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해 자유롭게 청원 또는 이의를 제기하고, 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는 객관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확보되었을 때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정기적인 모니터링은 제도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며, 아동의 청원권·진정권 보장과 병행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⑨ 소년사법제도 전반에 관계하는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은 소년사법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즉, 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복지학·범죄학·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과 소통할 수 있으며, 그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지식과 훈련을 받은 사람 및 상호간 협력을 통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구조가 필요하다. 충분한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이 확보된 체계와 정기적인 교육·훈련은 종사자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며, 이는 곧 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인권을 촉진할 수 있다.

3. 국외 사례

이하에서는 비구금처우와 관련하여 소년사법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벨기에와 영국의 사례를 소개한다. II.1.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은 아동에 대한 구금은 최소한도에서만, 그리고 최단기간 내에서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II.4.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국제규범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아동에 대한 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금을 대체할만한 소년보호처분의 유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역시 이를 위해 2007년 「소년법」을 개정하여 대안교육명령·외출제한명령이나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제도 등을 추가로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구금처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규범에서도 아동을 위한 다이버전이나 비구금처우를 다양하게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대한민국의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 벨기에

(1) 연혁

벨기에는 「1912년 아동보호법(Children's Protection Act 1912)」[33]에 의해 1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전 폐지한 이래, 「1965년 청소년 보호법(Youth Protection Act 1965)」에서는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아동의 연령을 18세로 상향조정하는 등 전통적으로 소년사법제도에 대해 '처우(treatment)' 중심의 접근방법을 택하여 왔다.[34] 물론 1990년대에 전세계적으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복지적 접근의 실효성에 대한 의

33) 벨기에 「1912년 아동보호법」의 제정 경위와 그 의의에 대해 자세히는 Jenneke Christiaens, "A History of Belgium's Child Protection Act of 1912: The Redefinition of the Juvenile Offender and His Punishment", European Journal of Crime, Criminal Law & Criminal Justice, 1999, Vol.7 Issue 1(1999), pp.5-21.

34) Johan Put/Inge Vanfraechem/Lode Walgrave, "Restorative Dimensions in Belgian Youth Justice", Youth Justice, Vol.12 Issue.2(2012), p.83.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혹이 만연하면서, 벨기에의 소년사법제도 역시 많은 도전을 받았으나, 벨기에의 입법자는 「2006년 소년사법법(Youth Justice Act 2006, 이하 YJA라고 한다.)」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소년사법 대상 아동에 대한 처우 중심의 사회복귀적 이념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피해자와의 조정과 화해를 활성화하는 방법[35]을 통해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제도를 병행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36] YJA는 회복적 사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 외에 소년사법 대상 아동의 권리를 추가적으로 보장하고, 부모의 절차 참여 확대를 위한 조항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관이 선택할 수 있는 처우의 유형을 대폭 확대하였다.[37] 이는 벨기에 특유의 비형벌화·비구금화의 이념에 입각하여 기존 실무에서 이미 사용되어 오던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법제화한 것이다. 벨기에의 소년사법제도는 2014년에 다시 한 번 개정되었으나, 이는 주로 구조적·제도적인 변혁일 뿐, 아동의 인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본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는다.[38]

(2) 처분의 유형

YJA가 예정하고 있는 처분의 유형은 크게 감호처분·보호처분 및 교육처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소년법원은 ① 아동의 성격과 성숙도, ② 생활환경, ③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과 그것이 피해자에게 미친 손해 및 결과의 심각성, ④ 해당 아동에게 과거에 부과되었던 처분과 그 집행기간 동안의 그의 행태, ⑤ 아동의 안전, ⑥ 공공의

35) YJA는 피해자와의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라면 검사 또는 법관이 반드시 조정 또는 회복적 그룹 상담을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YJA 제37조 등). 위 법에 따르면 조정전치주의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의 회부를 하지 않고 바로 소년법원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한 검사 또는 바로 보호처분을 내리고자 하는 법관은 반드시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하므로, YJA 시행 후 조정절차 회부 비율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한다. Johan Put 외 2인(2012), p.83.

36) Johan Put 외 2인(2012), p.83. 다만, YJA 제57조에 따르면 소년법원의 법관은 ① 대상 아동이 16세 이상이고, ② 이미 소년법원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살인·살인미수·성폭력·강도와 같이 범죄가 중대한 경우 또는 ③ 교통범죄의 경우에 한하여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법원은 30년 이하의 징역·벌금·사회봉사명령 등 성인과 동일한 형태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완전히 폐지하였던 기존의 아동보호법과는 차이가 있다.

37) Johan Put 외 2인(2012), p.83.

38) 2014년 개정 내용에 대해 자세히는 Andrea Păroşanu/Ineke Pruin/Joanna Grzywa-Holten/Philip Horsfield, Alternatives To Custody For Young Offenders And The Influence Of Foster Care In European Juvenile Justice, 2014, pp.38-39.

안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처분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선택하여 병과할 수 있다(YJA 제37조). 선택 가능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39]

① 훈방 처분:
아동에게 견책을 하는 한편, 아동의 보호자에게 향후 아동을 보다 잘 감독·교육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조치.

② 보호관찰 처분
권한 있는 사회복지담당 기관에 아동을 감독하도록 이송하는 내용의 조치. 보호관찰은 청소년보호위원회(Youth Protection Committee) 또는 청소년보호협회에서 담당하며, 보호관찰 기간 동안 해당 아동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정기적으로 학교에 출석하고, 그의 연령과 능력에 맞는 교육활동 또는 봉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40]

③ 강화된 교육 지원 처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사업에 따라 교육전문가(educator) 1인이 개별 지도하는 내용의 조치. 플랑드르 지역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④ 사회봉사 처분:
아동의 연령과 능력에 따라 15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로서 교육적이고,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⑤ 외래 치료 처분:
심리치료 또는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성교육(sex education),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남용 분야의 관련 서비스를 받을 것을 명하는 내용의 조치.

⑥ 긍정적 성취 프로그램 참여 처분:
아동이 긍정적 성취를 누릴 수 있도록 훈련 또는 활동 참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아동을 위탁하는 내용의 조치. 농장 체험이나 자전거 여행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41]

---

39) 자세한 내용은 Study on Children's involvement in judicial proceedings: Contextual overview for the criminal justice phase - Belgium, European Commission, 2014 (이하 'Belgian Study'라고 한다.), pp.29-30 참조.

40) https://efus.eu/en/policies/national/belgium/public/902/ 참조(최종방문: 2018. 11. 22.).

41) Păroşanu 외 3인(2014), p.4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⑦ 보호 위탁 처분:

아동의 주거, 치료, 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위해 아동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신뢰할만한 사람 또는 적절한 시설에 위탁하는 내용의 조치. 가정위탁 또는 아동보호시설 위탁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청소년보호위원회(Youth Protection Committee) 또는 청소년보호협회가 감독을 담당한다.[42] 12세 미만의 자에 대한 보호 위탁 처분은 허용되지 않으며, 아동복지서비스로서 가정위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뿐이다.[43]

⑧ 서면 제안에 따른 처분:

법관은 아동에게 자신이 특정한 활동을 하겠다고 동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안할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이는 2006년 YJA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조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의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법관이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이 서면에 의해 스스로 제안한 활동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44] 서면제안의 내용은 피해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해당 아동이 자발적으로 정하는데, 사과, 치료, 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45]

⑨ 공공 청소년보호시설 위탁 처분:

아동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청소년보호시설(Community institution of public youth protection)에 위탁하는 내용의 조치. 위 시설 중에는 개방형 시설·반개방형 시설·폐쇄형 시설 유형과 국영시설·민간아동복지시설이 모두 존재하며, 법관이 상황에 따라 시설을 선택하나, 폐쇄형 시설은 사실상 구금시설로서의 성격을 겸유하므로, 민간에서 운영하지 못한다. 민간아동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개방형 시설에 위탁된 경우 소년사법대상 아동은 요보호아동과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해당 아동은 개별적으로 정해진 출석일자와 일과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게 된다.[46] 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폐쇄

---

42) https://efus.eu/en/policies/national/belgium/public/902/ 참조(최종방문: 2018. 11. 22.). 위 자료는 2006년 개정 전에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개정 후에도 실무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이하 동일).

43) Păroşanu 외 3인(2014), p.43.

44) Belgian Study, p.31.

45) 하지만 위 제도는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Păroşanu 외 3인(2014), p.42.

46) Johan Put 외 2인(2012), pp.83.

형 시설은 구금시설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 질서·특별 시설·내부 안전절차를 보호하고자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폐쇄형 시설에의 처분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반개방형 시설의 경우에는 주간 활동의 자유가 일정 부분 보장되나, 폐쇄형 시설과 같이 사실상 구금의 효과를 갖는다.[47]

⑩ 입원 처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내용의 조치.

⑪ 치료 감호 위탁 처분:

아동이 알코올·약물 그 밖의 중독 치료 전문 기관에 입소하여 거주하도록 위탁하는 내용의 조치. 이러한 내용의 조치는 최근 1달 이내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적 보고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⑫ 정신 치료 감호 위탁 처분:

아동을 정신치료기관의 개방형 또는 폐쇄형 병동에 입소하여 거주하도록 위탁하는 내용의 조치. 이러한 내용의 조치는 최근 1달 이내에 해당 아동이 정신 질환을 겪고 있어서 그의 판단능력 또는 행위통제 능력이 심각하게 저해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심리적 보고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⑬ 기타 처분:

그 밖에 법관은 일정한 조건 하에 현재의 생활환경 하에서 계속 지내도록 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도 있다. 가령 법관은 소년에게 일정한 유상 노동 행위를 하여 그 급여로써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조건으로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계속 생활할 것을 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48]

벨기에의 소년법원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소년사법제도가 적용되는 연령의 하한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처분이 가지는 엄중한 효과를 고려하여 12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오로지 ① 훈방처분, ② 보호관찰처분 및 ③ 강화된 교육지원처분만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49] 또한 위 각 처분은 개별적 처

47) Păroşanu 외 3인(2014), p.41.
48) Păroşanu 외 3인(2014), p.40.
49) Păroşanu 외 3인(2014), p.39.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우의 원칙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⑨ 공공 청소년보호시설 위탁 처분 중 폐쇄형 시설 위탁처분을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50] 다만, 소년법원은 그 종료시기까지 매년 처분을 재조정하여야 하며, 소년이 처한 상황이나 성향 등의 변화에 따라 그 처분을 철회·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3) 구금처우의 보충성의 원칙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벨기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비구금 처우가 마련되어 있으며, 벨기에의 소년법원은 구금 내지 구속을 최후의 수단으로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사용한다. 위 각 처분 중 사실상 구금처우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⑧ 공공 청소년보호시설 위탁 처분 중 폐쇄형 시설 위탁처분, ⑨ 입원 처분, ⑩ 치료 감호 위탁 처분, ⑪ 정신 치료 감호 위탁 처분인데, 이 중 2006년 법개정과 동시에 실제로 발효된 부분은 ⑧ 공공 청소년보호시설 위탁 처분 중 폐쇄형 시설 위탁처분 뿐이다.

벨기에는 폐쇄형 공립청소년보호시설 시설 위탁 처분이 사실상 자유박탈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 하에 그것이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첫째, 폐쇄형 시설 위탁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에는 '특별히 위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만 위 처분이 허용된다.[51] 둘째, 여타의 처분과 달리 폐쇄형 시설 위탁 처분을 하고자 하는 법관은 그 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6개월마다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52] 셋째, 폐쇄형 시설 위탁 처분의 장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 기간의 연장은 아동이 위험한 행동 또는 지속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이 20세에 달한 때[53]에는 해당 시설로부터 퇴소시켜야 한다.[54] 넷째, 처분의 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관 또는 권한 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시설에 위탁된 아동을 방문하여야 한다. 다섯째, 자유박탈조치가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폐쇄형 시설은 일정한 규칙들을 준수하여야 한다.[55]

---

50) Păroşanu 외 3인(2014), p.40.
51) Păroşanu 외 3인(2014), p.41.
52) Ibid.
53) 다만, 아동이 16세 이상 18세 이하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3세까지 가능하다.
54) Păroşanu 외 3인(2014), p.41.

실제로 2011년의 한 통계에 따르면 소년법원이 공립청소년보호시설 시설 위탁 처분을 선고하는 경우는 전체 재판 중 14%에 불과하며, 폐쇄형 시설에의 위탁을 선고한 경우는 이 중에서도 60% 정도뿐이라고 한다.[56]

(4) 임시조치로서의 구금 처분

아동에 대한 신체적 자유의 박탈이 종국재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소년법」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임시조치로서 허용되는 것과 같이, 벨기에에서도 법관이 임시처분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구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에도 구금의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므로, 법관은 ① 보호관찰명령, ② 30시간 이하의 사회봉사명령, ③ 특정한 사람과 만나거나 특정한 장소를 방문하거나, 특정한 활동을 하거나 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명령, ④ 특정한 조건이나 금지행위를 준수하는 내용의 명령과 같이 비구금 상태에서 가능한 임시처분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다.[57]

다만, 벨기에는 2006년 법개정을 통해 해당 아동을 형사재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아동을 아동 전용 구금시설(detention centre)에 구금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여 ①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한 범죄를 행한 소년사범으로서 ② 14세 이상의 남자이며, ③ 소년원에의 구금(구속)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공이익을 위한 필요가 인정되고, ④ 소년원을 제외한 지역사회기관에 해당 소년사범을 수용할 수 없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아동 전용 구금시설 입소 처분이 가능하다.[58]

이러한 아동 전용 구금시설에의 입소는 시설 형태 자체는 교도소와 유사하나, 형벌보다는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교도소와 확연히 구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전용 구금시설에의 입소는 그 효과의 엄중성으로 인해 공립청소년보호시설 시설 위탁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의 임시조치로서만 기능하고 있으며, 매달 그 구금의

---

55) 폐쇄형 시설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규칙들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은 최소한 성년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아동이 스스로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비롯한 각종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무효이다. ③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부가적 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시설 입소 후 3일 내에 시설 내 의료팀에 의해 건강검진을 받고, 향후 건강과 관련해 필요한 각종의 사후조치를 제공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Belgian Study, p.31 참조.

56) Păroşanu 외 3인(2014), p.41.

57) Păroşanu 외 3인(2014), p.41.

58) Ibid.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정당성에 대한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2013년 이후에는 18세 이상 24세미만 청년으로서 첫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인 자도 아동 전용 구금시설에 수감하고 있다.[59]

나. 영국

(1) 연혁

영국은 전통적으로 형사적 모델을 기반으로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복지적 접근을 택한 벨기에와 선명하게 대비된다. 영국에서는 1908년 이미 소년법원(Juvenile Court)을 설치하였으나, 이는 소년 범죄자가 성인 범죄자와 접촉하여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소년법원은 수정된 형태의 형사법원에 불과하였다. 그 후 소년법이 점차 발전하면서 소년원이나 갱생센터 등이 설치되고, 소년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내용의 구금 처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며, 훈방조치나 새로운 형태의 비구금 처분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복지적 개입이 일부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1990년대의 엄벌화 경향은 영국의 소년사법제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구금의 확대·범죄행위에 비례하는 양형을 통한 책임주의의 강화·아동책임능력 추정의 원칙 제정 등 엄벌주의의 흐름이 다시 부활하였다.[60] 다만, 이 과정에서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가 강조되면서 「1998년 범죄 및 질서위반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 이하 CDA라고 한다.)」[61]과 「2000년 형사법원권한법(Powers of Criminal Courts Act 2000, 이하 PCCA라고 한다.)」, 「2008년 형사사법과 이민법(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 이하 CJIA라고 한다.)」은 범죄의 조기예방을

59) Ibid.

60) 영국 소년사법제도의 연혁에 대해 자세히는 이승현, "영국 소년사법제도의 최근 동향", 소년보호연구 제18호(2012), 159-164면.

61) CDA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반사회적 행동 금지 명령(anti-social behavior order)과 성범죄 가해자 명령(Sex Offender Orders) 제도를 신설하였다는 것이다. 이 중 특히 반사회적 행동 금지 명령은 거리낙서·광고물 무단부착·노상 마약거래·무리짓기 등과 같이 타인에게 불안이나 피해·괴로움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청소년 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마련되었는데, 경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년법원이 2년 이상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일정한 유형의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벌금의 부과 또는 구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태의 제도이다. 하지만 이는 본 연구용역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3년 반사회적행위법(Anti-social Behavior Act 2003)」에 의해 대대적인 개정을 겪었으므로,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성범죄 가해자 명령 제도의 경우도 같다.

위한 적극적 개입 조치를 다수 마련하였는바, 이는 비구금처우의 유형과 관련하여 우리 법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다.[62]

(2) 처분의 유형

영국의 소년법원(Youth Court)이 선고 할 수 있는 처분의 유형은 주로 다음과 같다.

① 불처분결정 또는 조건부 불처분 결정(PCCA 제12조):
별다른 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내용의 재판. 범죄의 성격, 행위자의 성정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법원은 아동에 대해 즉시 불처분 결정을 선고하거나, 법원이 3년 이내로 정한 일정한 기간 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불처분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위탁처분(referral order, PCCA 제16조 내지 제32조; CJIA 제35조 내지 제37조):
소년을 위탁하는 내용의 처분. 특히 법원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소년이 한 번도 다른 범죄행위로 기소된 적이 없는 경우로서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탁처분을 하여야 한다. 위탁은 소년 거주 지역의 소년범죄대응팀(Youth Offending Teams)[63]에게 행해지며, 위탁을 받은 위 팀은 소년범죄자패널을 구성하여 소년과의 사이에 조건 및 이행 기간(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에 관해 합의하여야 하고, 소년은 패널과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며, 그 합의된

---

62) 영국법상 다양한 처분 유형에 대해서는 이미 이승현(2012), 166-182면에서 소개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용역에서 이를 다시 다루는 것은 첫째,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고, 둘째, 위 논문에서 아직 소개되지 않은 가정위탁 제도의 도입이 우리법상 절실하기 때문이며, 셋째, 위 연구에 있는 몇몇 오류를 바로 잡거나 현행법에 맞추어 정보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조문의 번역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위 논문과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경우라도 일일이 인용하지 않았다. 용어의 번역은 위 선행논문에 의지한 바가 크나,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일부 수정을 가하였다.

63) 소년범죄대응팀이란 1998년 법 제39조에 기초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조직으로서 경찰관·보호관찰관·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보건기관이 지명하는 자·교육장이 지명하는 자·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의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의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의 활동(범죄 원인 및 재범 요인의 조사, 개별처우 프로그램 수립, 사회내 처우의 집행 감독 등)을 담당한다. 위 조직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문헌으로 이승현(2012), 178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합의 내용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사회봉사활동, 특정 시간의 주거지 체류, 프로그램의 참여, 학교 기타 교육기관 출석, 교육·훈련 등 활동 참여, 특정 지역 또는 인물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를 전자적 방법으로 감시하거나, 신체적 제약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갱생센터 출석 명령(attendance certre order, PCCA 제60조 내지 제62조): 정해진 시간에 갱생센터에 출석해 일정한 훈련이나 프로그램 등에 참가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처분. 범죄를 행한 21세 이하의 자에게 금전지급능력이 없거나, 작위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부작위명령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21세 이상 25세 이하의 범죄자에게 금전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 명할 수 있다. 시간은 원칙적으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갱생센터 출석으로 인해 개인의 종교적 활동을 침해하거나 일상적인 직업활동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어서는 안 되므로, 출석은 주로 주말의 여가시간을 이용해 이루어지며, 해당자는 최소 1회 이상, 그리고 1회 방문시 3시간 이상 센터에 출석하여야 하고, 출석시간에 따라 그의 배상의무가 면책될 수 있다.

④ 피해회복명령(reparation order, PCCA 제73조 내지 제75조):
범죄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에 대해 비금전적인 방법으로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처분. 낙서 제거, 물건을 도난당한 상점에서의 근로 등이 이에 해당한다.[64] 작업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피해자 자신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구금처우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사회복귀명령이나 위탁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는 피해회복명령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사회복귀명령(youth rehabilitation order, CJIA 제1조 내지 제7조)[65]:
소년의 개별적 필요에 부합하고, 범죄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처분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처분으로 선고하는 내용의 처분. 과거에는 외출제한명령(curfew orders)[66], 배제명령(exclusion orders), 약물치료·검사명령(drug

64) 자세한 내용은 이승현(2012), 174면.
65) 사회복귀명령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문헌으로 이승현(2012), 180-181면.
66)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특정한 장소에서 머무르도록 하는 내용의 처분으로서 소년이 16세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까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까지만 선고가 가능하였으며, 해당 소년에게는 전자감시장치가 부착되었었다.

treatment and testing order), 사회내 처벌 명령(community punishment order), 투약금지명령(drug abstinence order), 감독명령(supervision order), 행동계획명령(action plan order)[67] 등 다양한 형태의 비구금 처우와 부과처분들을 마련해 놓고 이를 병과하는 방식으로 개별처우의 이념을 실현하였으나, 2008년 CJIA 개정에 의해 위와 같은 개별적 비구금 처우 유형을 모두 폐지하고, 하나의 처분만으로 해당 아동에게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소년법원은 특정한 활동, 감독, 무상근로(아동이 16세-17세인 경우), 프로그램 참여, 갱생센터 출석, 특정 행위의 금지, 외출금지, 배제, 거주지 지정, 거주지역 지정, 정신과 치료, 마약치료, 마약검사, 알콜중독치료, 교육, 전자감시장치 등 다양한 조건 중 한 개 또는 여러 개로 이루어진 사회복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68] 또한 법원은 소년이 범한 행위의 법정형이 징역형이었던 경우, 12세 이상의 소년이 행한 범죄가 심각하여 구금처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15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귀명령에 집중감독·감시프로그램 또는 가정위탁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⑥ 구금 및 훈련명령(detention and training order, PCCA 제100조 내지 제107조)[69]

법관은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소년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내용의 구금 처분을 선고할 수도 있다. 구금의 기간은 범죄의 성격에 따라 4월, 6월, 8월, 10월, 12월, 18월, 24월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형사 법정형을 초과하여 선고할 수는 없다.[70] 또한 구금형의 집행은 선고기간의 1/2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소년은 선고된 기간 중 1/2은 구금시설에 수용되지만, 나머지 1/2은 소년범죄대응팀의 감독 하에 비구금처우를 받게 된다. 아직 구금

---

67) 해당 지역의 소년범죄대응팀(Youth Offending Teams)이 소년의 개별적 필요에 부합하고 범죄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계획을 작성하여 소년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처분으로서, 행동계획에 따른 이행은 3개월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에 대한 회복·교육이나 훈련·갱생센터 출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승현(2012), 173-174면 참조.

68) 위 각 조건의 자세한 내용은 CJIA Schedu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69) 법원은 18세 이상 21세 이하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소년원 입소를 명할 수 있다(detention in a young offender institution, PCCA 제96조 내지 제98조).

70) 단, 치안법원은 6개월 이상 구금을 명하는 내용의 입소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기간의 1/2에 달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미리 가퇴소 후 비구금 처우를 받을 수도 있다. 구금 및 훈련명령을 받은 소년은 소년원(Young Offender Institution)에 입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구금시설이 존재한다.[71]

⑦ 벌금형 및 징역형

영국의 소년사건은 본질상 형사사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국의 소년법원은 해당 소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21세 이하의 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금지된다(PCCA 제89조).

⑧ 보호자교육명령(parenting order, CDA 제8조 및 제9조):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나 반사회적 행동 금지 명령 등을 받은 소년[72], 아동안전명령을 받은 소년의 부모 또는 후견인, 아동의 행위를 이유로 부모배상명령을 받거나 등교명령 위반죄로 기소된 부모나 후견인에게 명령에서 정한 특정한 조건을 준수하거나 상담 또는 지도를 받을 것을 명하는 내용의 처분. 과거 영국법이 택하고 있었던 '부모서약명령(binding over parent)'[73]을 발전시킨 형태로서 1998년 CDA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다.[74] 특정한 조건을 준수할 것을 명하는 형태의 처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담이나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처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명령은 부모나 아동의 종교적 자유에 간섭하거나 부모가 통상적인 직업활동 또는 학업활동을 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방식으로는 실시될 수 없고, 부모가 위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⑨ 부모배상명령(parental compensation order, CDA 제13조의a 내지 e):

법원이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그 아동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처분. 10세 이상의 아동이 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또는 아

---

71) 가령 12세 이상 14세 이하의 자는 안전아동가정(secure children's home)이라는 소규모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원칙이며, 15세 이상 17세 이하의 자라도 정신적 문제 또는 비정상행동의 문제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개별처우가 가능한 안전훈련센터(secure training centre)에 수용된다.

72) 자세한 내용은 각주 61) 참조.

73) 이는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 하여금 아동에 대해 적절한 보호나 통제를 할 것임을 정식으로 서약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74) 이승현(2012), 173면.

동이 타인에게 두려움, 고통 또는 피해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 제3자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고, 부모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그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배상액은 5천 파운드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 밖에 아직 10세에 달하지 않은 아동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 10세 미만 아동의 범죄행위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10세 미만의 아동이 타인에게 불안감, 불쾌감 또는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가정법원(Family Court)은 '아동안전명령(child safety order)'을 선고할 수 있다. 아동안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아동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한 기간(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동안 담당 공무원의 감독 하에서 정해진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원은 해당 아동이 적절한 보살핌과 보호 및 부양,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담보하거나 아동이 동일한 유형의 비행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의 조건을 부과하여야 한다. 우범소년이나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순수한 복지적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3) 구금처우의 보충성의 원칙

구금 및 훈련명령은 15세 이상 17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게 구금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상습성이 인정되어야 한다(PCCA 제100조). 또한 2008년 법개정에 의해 사회복귀명령 제도 및 집중감독·감시프로그램과 가정위탁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영국의 소년사법제도는 구금처우 보충성의 원칙을 보다 강력하게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이하 구금처우는 소년이 벌금이나 비구금처우를 선고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법원이 비구금처분을 하면서 제안한 것으로서 소년의 동의를 요하는 조건에 대해 소년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Criminal Justice Act 2003 제152조).

(4) 집중감독·감시프로그램과 가정위탁 프로그램

2008년 법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귀명령과 함께 집중감독·감시프로그램과 가정위탁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개별처우의 원칙을 극대화하고, 구금처우를 최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한 억지하여 소년 범죄의 재발을 막고자 하였다는데 있다. 이하에서는 위 두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본다.

① 집중감독·감시프로그램(intensive supervision and surveillance programme): 아동을 시설에 구금하지는 않지만, 엄격한 감독과 감시·야간외출제한·각종 프로그램 참가 등을 강제하여 사실상 포괄적·지속적으로 아동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범죄행동 원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처분을 말한다.

② 가정위탁 프로그램(fostering program):
영국에는 이미 단기위탁·장기위탁·친족위탁·입양위탁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위탁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소년법원이 범죄행위를 한 아동에게 사회복귀명령을 하면서 가정위탁 프로그램을 병과한 경우를 일컬어 '강화된 가정위탁(intensive fostering)'이라고 한다. 이는 본래 「2003년 반사회적행위법(Anti-social Behavior Act 2003)」에 따라 도입된 것이었으나, 2008년 CJIA 개정 이후 소년사법제도 일반에 확대적용되고 있다. 상습적이고 심각한 비행으로 인해 구금처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도, 가정환경이 소년 비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정위탁을 통해 소년비행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책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75] 따라서 2008년 CJIA는 가정위탁 제도가 없었더라면 구금처분이 적절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소년법원이 직접 가정위탁부 사회복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가정위탁은 최소 6개월 이상 실시되어야 하며, 다면적 치료 위탁 양육 프로그램(Multidimensional Treatment Foster Care)에 따라 구조적·집중적으로 행해져야 한다.[76]

4. 소결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은 본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내 이행의 실태를 분석·검토하는 기준이자 틀이다. 본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소년사법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인권규범을 그것이 다루고 있는 내용에 따라 ① 소년사법 대상 아동에

75) Păroşanu 외 3인(2014), p.66.
76) Păroşanu 외 3인(2014), p.67.

대해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소년사법의 일반원칙, ② 시설수용처분 등으로 인해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사법 대상 아동에 대해 준수되어야 하는 규범, ③ 소년사법 대상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행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규범 및 ④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규범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다.

① 소년사법 대상 아동에 대해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소년사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최초의 국제인권규범은 1985년 채택된 베이징규칙으로, 위 규칙이 제시한 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9개 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0조에 반영되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7년 '소년사법에서의 아동권리 보장에 관한 일반논평 제10호'를 채택하여 협약 제40조에 부합하게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핵심요소를 제시하였다.

② 시설수용처분 등으로 인해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사법 대상 아동에 대해 준수되어야 하는 규범은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에서 출발하여 베이징규칙을 거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로 진화해갔으며, 특히 1990년 채택된 하바나규칙은 특히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의 취약성과 발전가능성을 전제로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구금으로 인한 유해한 결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③ 리야드 가이드라인은 소년범죄의 예방이야말로 소년사법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소년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채택해야 하는 비행방지정책과 체계적인 연구 및 조치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각 국가의 혁신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④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규범들은, 재판절차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에는 소년사법제도의 대상이 되는 가해 아동 또는 가해의 의심을 받고 있는 아동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과 증인으로 참여하는 아동 등이 널리 포함된다는 인식 하에 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아동친화적·아동인권 중심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아동을 위한 비엔나 행동지침'이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중심으로 하되,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 일반에 대해 지침을 제시하였다면, 2008년 발간된 유엔사무총장 안내지침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법절차 전반에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들을 확인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형사절차에서 범죄혐의를 받거나 기소된 아동의 절차적 보호를 위한 EU 지침’과 ‘제재 또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위한 유럽 규칙에 관한 각료 위원회 권고’, ‘유럽평의회 각료회의 아동친화적 사법체계에 대한 지침’ 등은 EU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국지적 국제규범이기는 하지만, 보편적 인권규범이 확보하고자 하는 아동인권의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 아동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아동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처분에 관한 아동 자신의 참여권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여러 법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바, 우리 소년사법제도가 나아갈 바에 대한 시사점을 다수 제공해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은 아동의 발달적·개별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으로 삼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으며, 벨기에의 2006년 개정 소년사법제도가 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비구금 처우들이나 영국의 가정위탁 제도 활용을 통한 소년 비행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들은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국제적 인권 기준이 단순한 허구나 이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법·제도를 통해 구현가능한 구속력 있는 규범임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용역보고서는 각 국제인권규범이 제시하고 있는 소년사법의 이상적 모델로부터 우리 법제상 보장이 특히 취약한 상태인 아동의 10대 인권 유형을 추출하였다. ① 정보접근 및 알 권리, ②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④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 ⑤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⑦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⑧ 모니터링 및 진정에 관한 권리, ⑨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⑩ 사회복귀의 지원이 그것이다. 수사 단계·소년보호사건에서의 조사 및 심리 단계·소년형사사건에서의 조사 및 심리 단계·재판 단계에서 각 유형의 인권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고 있으며, 어느 영역이 특히 취약한지를 검토하여 우리의 소년사법제도를 국제적 인권 규범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함이다.

Ⅲ. 국내 소년사법제도 이행실태

1. 국내 소년사법체계

가. 국내 법령 체계 및 현황

국내 소년사법체계는 「소년법」, 「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소년법') 및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및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의 절차 진행에 관한 내용(주로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진행된다)과 소년형사사건의 특칙을 정하고 있으며, 「보호소년법」은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관해, 「형집행법」은 소년형사재판 집행을 위한 '소년교도소'에 관해 정하고 있다. 소년형사재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함께 적용된다. 이하에서는 위 각 법규정을 중심으로 국내 소년사법체계의 구조와 현황을 정리한다. 국내 소년사법제도의 이행실태를 본격적으로 서술하기 위한 배경정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1) 「소년법」의 현황

(가) 소년보호사건

「소년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부 단독판사로 하여금 소년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 절차를 주도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즉,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는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의 심리, 결정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조사까지 담당하는바, 법관이 직권으로 증거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사건에 관여하게 된다.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위 법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① 범죄소년, ② 촉법소년 및 ③ 우범소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① 범죄소년이란 죄를 범한 소년으로서 행위시 14세 이상인 소년을, ②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③ 우범소년이란 객관적으로 일정한 우범사유[77]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의미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이 중 ①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검사선의주의에 따라 일반 형사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도록 할 것인지 또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따라서 검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송치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면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된다. 다만, 검사가 기소하여 소년형사사건이 개시된 경우라도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도 있다(「소년법」 제50조).

반면 ② 촉법소년이나 ③ 우범소년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한다(「소년법」 제4조 제2항). 또한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나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되기도 한다(「소년법」 제4조 제3항).

소년보호사건에서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비행사실은 인정되나 보호력이 강하고 비행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우발적인 비행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으며 재비행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다른 보호처분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을 받는 등으로 별도의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처분결정을 하게 된다(「소년법」제29조).

보호처분결정을 하는 경우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① 감호위탁, ② 수강명령(12세 이상의 소년에 한정), ③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의 소년에 한정), ④ 단기 보호관찰, ⑤ 장기 보호관찰, ⑥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위탁, ⑦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⑧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⑨ 단기 소년원 송치, ⑩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의 소년에 한정) 등이 있다(「소년법」 제32조). 보호관찰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처분으로 ⑪ 대안교육, 상담·교육명령, 외출제한명령 등이 가능하다(「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 제2항).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⑫ 보호자특별교육을 명할 수도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

보호처분, 부가처분 등의 결정에 대해서는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소년법」 제43조).

---

77)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나) 소년형사사건

검사는 범죄소년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대신 기소를 하여 소년형사사건이 개시되도록 할 수도 있다. 다만, 검사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더라도 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다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재판절차가 개시되도록 할 수도 있다(「소년법」 제7조 제1항).

어느 경우이건 소년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법」에 따라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여러 특칙들이 적용된다. 소년형사사건과 다른 형사사건을 분리하여 심리한다거나, 아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리를 진행하도록 한다거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거나, 징역·금고는 소년교도소에서 집행한다는 등의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소년법」 제56조 내지 제67조).

(다) 다이버전

검사는 소년에게 선도를 받게 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법」 제49조의3). 또한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에 따라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소년법」 제25조의3).

(2) 「보호소년법」의 현황

소년보호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8호 내지 10호 처분을 받은 아동은 소년원에 수용되어 교정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처우에 대해서는 「보호소년법」이 적용된다. 「보호소년법」은 보호소년 등을 처우할 때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보호소년법」 제14조의2)
② 성인과 분리조치
③ 징계절차(「보호소년법」 제15조)
④ 물리적 환경과 시설(「보호소년법」 제14조의3)
⑤ 외부와의 교류(「보호소년법」 제18조, 제19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⑥ 의료권(「보호소년법」 제20조)
⑦ 교육권과 직업훈련(「보호소년법」 제31조, 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⑧ 사회복귀(「보호소년법」 제45조의2)

「보호소년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내 소년사법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함에 있어 필요한 한도에서만 상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3) 「형집행법」의 현황

형사법원에 의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형집행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그 처우에 대해서는 「형집행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연령에 구분 없이 구치소에 수용된다(「형집행법」 제11조 제1항 제3호).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인권 최대 존중 외에도 제5조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수용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①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형집행법」 제97조, 98조, 제100조, 제101조)
② 성인과 분리조치:
형 집행 중인 아동이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2조 제3항).
④ 물리적 환경과 시설(「형집행법」 제94조)
③ 외부와의 교류(「형집행법」 제54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59조의4)
④ 의료권(「형집행법」 제34조, 동 시행령 51조, 「형집행법」 제54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59조의6, 제47조)
⑤ 교육권과 직업훈련(「형집행법」 제54조 제4항, 제5항, 동 시행규칙 제59조의2, 5, 6, 제48조).

법무부예규인 소년교도소 운영지침에서는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아동의 수용, 외부와의 교류, 교육권과 직업훈련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 형사절차단계에 따른 국내 소년사법체계 검토

이하에서는 국내 소년사법제도가 규범적으로 형사절차 단계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소년 보호 이념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본래 소년사법제도는 비행의 예방부터 처분 후 사회복귀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넓은 개념이지만, 본 연구의 대상은 비행 후 처분 단계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예방 및 사회복귀 단계에 관한 검토는 생략한다. 비행 후 처분 단계는 다시 ① 수사, ② 소년보호사건에서의 재판, ③ 소년형사사건에서의 재판, ④ 형 또는 처분의 집행이라는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II. 2. 다.에서 제시한 9가지 아동인권 유형별로 분석을 진행한다. 다만, 9가지 유형의 아동인권이 모두 문제되는 단계도 있는 반면, 절차의 성격상 아동인권 유형 중 일부만 문제되는 단계도 있으므로, 해당 절차에서 특히 문제될 수 있는 아동인권 유형만을 위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수사 단계

① 정보접근 및 알 권리

경찰 또는 검사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소년을 체포·구속 또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인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구인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01조의2 제10항 및 제209조에 의한 제200조의5의 준용).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인도된 경우도 같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한 제200조의5 준용). 또한 피의자인 소년을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소년에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2항).

체포·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때 진술거부권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이 때 알려주어야 하는 내용에는 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②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③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④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된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도 판사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함께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하지만 위와 같은 정보제공이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아동 친화적 환경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소년을 조사할 때 폭언·강압적인 어투·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경찰청 예규에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소년업무규칙」 제18조).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소년이 한국어를 하지 못하거나 한국에 능숙하지 않은 경우에 수사과정에서 통역이나 번역을 제공받을 권리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재량규정만 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

②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없어서 부모 기타 보호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의 지위에서 소년의 소송행위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6조 및 제28조), 또는 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부모 기타 보호자가 보조인으로 선임된 경우(「형사소송법」 제29조)[78]에는 그들에게 소년 본인 또는 변호인에 준하는 참여권이 보장된다.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의 자격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 기타 보호자는 소년의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조사 절차 또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0항에 의한 제276조의2의 준용). 영장실질심사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나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부모 등 보호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9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6항). 그 밖에 소년의 법정대리인은 조건부 기소유예에 동의할 권리도 갖는다(「소년법」 제49조의3).

위와 같이 부모 기타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보조인으로서, 신뢰관계 있는 자

78)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과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9조).

로서, 때로는 단순한 친족의 지위에서 소년과 관련된 수사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수사와 관련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소년업무규칙(경찰청예규)」 제16조는 경찰이 비행소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79] 그 밖에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소년이 체포·구속 또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인된 경우로서 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중 소년이 지정한 자에게 사건명·체포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201조의2 제10항, 제209조 및 제213조의2에 의한 제87조의 준용), 피의자인 소년을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소년의 변호사·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 중 소년이 지정한 자에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2항). 검사가 소년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결정 전 조사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나 분류심사관 등이 소년의 부모 기타 보호자에게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도 있다(「소년법」 제49조의2 제3항).

체포구속적부심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 기타 보호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형사소송규칙」 제101조), 긴급체포 후 석방된 경우라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후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보호자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5항).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모든 피의자는 자유롭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는 아동도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다(「형사소송법」 제30조). 문제는 변호인을 선임할만한 자력이 없는 아동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및 제214조의2 제10항은 영장실질심사시 또는 체포구속적부심사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

79)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년업무규칙」제16조 단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아직 수사단계에서 모든 아동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 현행 「형사소송법」은 일단 아동을 위해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라면 충실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가령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소년이 체포·구속 또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인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사건명과 체포 또는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에 대해 알려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201조의2 제10항, 제209조 및 제213조의2에 의한 제87조의 준용), 소년이 지정한 경우에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도 알려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2항),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기일과 장소도 변호인에게 통지해 주어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04조). 변호인은 신체구속을 당한 소년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34조).

영장실질심사 또는 체포구속적부심사 당시 피의자 심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및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및 제104조의2에 의한 제96조의21의 준용),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에는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0항에 의한 제56조의2의 준용). 긴급체포 후 석방된 경우라면 변호인은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5항). 범죄소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증거보전 청구에 대한 법원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185조).

더 나아가 변호인은 체포 또는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피의자인 소년을 접견하고, 소년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80] 변호인은 소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나 체포구속적부심사 기일에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판사는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제214조의2 제9항). 변호사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나

80) 다만, 아직 피의자신문이 진행 중인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의견의 진술이 가능하다.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에도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이를 포기하였거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에게 그 일시와 장소에 대해 통지해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한 제121조 및 제122조의 준용,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 또한 변호사는 공소제기 전까지 증거보전을 청구하고, 판사의 허가를 얻어 위 청구에 대한 법원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185조).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 개정 전까지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 제47조).

④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

소년에게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의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할 뿐이다. 수사개시일부터 수사기관에 의한 최종 처분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도 존재하지 않는다.[81] 다만, 우리 소년사법체계는 검사선의주의를 택하고 있는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형사법원에서 이를 다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역으로 검사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으나 소년부에서 이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절차 중복과 처리 지연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⑤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소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와 함께 소년의 인격과 환경에 관해 상세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소년에게 적합한 개별처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82] 이를 위해 「소년업무규칙」(경찰청예규) 제17조에서는 경찰관에게 소년사건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그 소년의 성격·태도·경력·교육정도·가정상황·교우관계와 그 밖의 환경 등을 조사하여 소년환경조사서를 작성하도록

81) 윤웅장, "소년사법절차에서 신속성의 문제와 개선방안", 보호관찰 제17권 제2호(2017), 42-43면의 연구에 따르면 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입건된 날부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기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48일, 검찰송치일부터 소년부 송치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34일이라고 한다.

82) 정재준/원혜욱,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소년보호기관의 역할확대 및 강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71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하고 있으며, 「소년법」 제49조의2는 소년부 송치나 공소 제기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 등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사는 그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소년을 교화·개선하는데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소년의 개별 사정에 따라서는 형벌 또는 보호처분보다 다이버전에 의한 해결이 보다 적합한 경우도 있다. 이에 「소년법」 제49조의3은 다이버전 조치의 일환으로 검사로 하여금 소년 본인과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①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또는 ②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 선도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83] 경찰단계에서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도조건부 훈방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소년법」 등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경찰청 예규인 「소년업무규칙」에서 다루고 있을 뿐이다.[84]

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경찰과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소년법」 제49조의2 제3항,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나 검사뿐만 아니라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검사로부터 결정전 조사를 위촉받은 보호관찰관이나 분류심사관, 소년의 범죄예방·선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도 직무상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다(「소년법」 제49조의2 제3항, 「소년업무규칙」 제4조). 더 나아가 수사기관은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소년의 주거·성명·나이·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83) 2016년 현재 전체 소년사건의 약 15% 내외가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고 있다고 한다. 이승현, "소년사법에서 국제기준의 국내이행방안", 교정담론 제11권 제3호(2017)(이하 '이승현(2017a)로 인용한다.), 128면 참조. 조건부 기소유예에 관한 보다 상세한 통계로 윤웅장(2017), 49-52면 참조.

84) 소년업무규칙 제27조에 따르면 선도심사위원회는 ① 비행의 내용 · 동기 · 원인 · 방법 및 비행 후 정황, ② 상습성 · 재비행의 위험성, ③ 소년의 인성, 보호자 및 주거환경, ④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소년에 대한 선도프로그램 연계 등 맞춤형 선도방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 「소년업무규칙」 제22조).

⑦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모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 특히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2조는 소년에 대해서는 되도록 구속을 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년업무규칙」 제19조 역시 소년에 대해서는 가급적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 구속, 체포 또는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물론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소년에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피의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인 소년을 체포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85],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현행범인 경우에는 누구나 소년을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소년을 구속하는 것도 가능하다(「형사소송법」 제201조).[86]

다만,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한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제2항, 제213조의2에 의한 제200조의2 제5항의 준용), 경찰 또는 검사에 의한 구속기간은 10일 이내로 한정된다(「형사소송법」 제202조 및 제203조).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으나, 연장은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1차에 한해서만 가능하다(「형사소송법」 제

85)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단서).

86)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단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205조). 일단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08조 및 제214조의3).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06조). 법원은 구속적부심 결과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에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도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보증금 납입의 자력이 없는 소년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원칙적으로 직접 피의자심문을 하여야 함은 물론이며(「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특히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함이 대원칙이다(「소년법」 제55조 제1항).

어쩔 수 없이 소년을 체포 또는 구속·동행하는 경우라도 그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수반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2조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212조),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성년의 피의자와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5조 제2항). 범죄 오염과 학대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체포·구속 또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인된 소년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특히 변호인과의 접견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며(「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201조의2 제10항, 제209조 및 제213조의2에 의한 제89조 및 제91조의 준용),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을 검열하거나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하는 것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201조의2 제10항 및 제209조에 의한 제91조의 준용).

⑨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수사단계에서 아동에 대한 수사절차를 다른 절차와 분리하거나, 아동의 특수성에

입각한 배려를 제공하고 있는 조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수사 절차가 진행되며, 피의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전담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도 않다. 물론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소년법」 제49조의2),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재비행 위험성 판단과 그에 맞는 선도 교육을 위해 소년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조사 과정에 전문가를 참가시킬 수 있으나(「소년업무규칙」 제23조), 그 밖에 경찰이나 검찰 담당자 집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2) 소년보호사건에서의 재판 단계

① 정보접근 및 알 권리

소년부에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된 경우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비행사실과 보조인 선임 등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소년심판규칙」 제9조). 소년부나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은 물론이다(「소년법」 제10조). 또한 소년보호사건 접수 후 사건이송결정·검찰청송치결정·심리불개시결정·심리개시결정·불처분결정·임시조치 관련 결정 등이 있을 때에도 당연히 사건본인에게 알려야 한다(「소년법」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9조, 「소년심판규칙」 제20조). 이 중 특히 심리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사건본인에게 심리 개시 사유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알려 주어야 하며(「소년법」 제20조 제2항), 보조인 선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년 및 보호자가 보조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체 없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한 후 그 뜻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소년심판규칙」 제19조의2 제2항).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할 때에도 비행사실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소년심판규칙」 제25조 제1항), 소년이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소년심판규칙」 제24조 제1항). 무엇보다도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소년법」 제24조 제1항). 필요한 경우 소년부 판사는 통역이나 번역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소년법」 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 결정 고지 단계에서도 소년에게 보호처분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히 설명해야 하고(「소년심판규칙」 제31조 제1항), 항고기간과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소년심판규칙 제31조 제6항).

②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도 충실히 보장되어 있는 편이다. 우선 소년보호사건이 소년부에 접수된 때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에게 사건접수 사실과 함께 ① 소년의 비행사실, ② 보호자 또는 변호사, 그 밖의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 ③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 소년 또는 보호자가 스스로 보조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 ④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때에는 「소년법」 제17조의2 제2항 각호에 따라 법원에 국선보조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소년법」 제20조 제2항 및 「소년심판규칙」 제9조).[87]

소년을 위해 국선보조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그 뜻도 보호자에게 고지하며(「소년심판규칙」 제19조의2 제2항), 사건이송결정·검찰청송치결정·심리불개시결정·심리개시결정·불처분결정·임시조치 관련 결정 등이 있을 때에도 소년부 판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호자에게 알린다(「소년법」 제8조, 제19조, 제20조, 제29조, 「소년심판규칙」 제20조). 보호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심리기일에 결정서에 의해 고지하여야 하며, 특히 출석한 보호자에게는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의 취지를 친절히 설명하여야 하고, 항고기간·항고법원도 알려주어야 한다(「소년심판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31조). 소년부 판사는 사건 본인에 대해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도 지체 없이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소년법」 제16조 제3항). 그 밖에 존재할지 모르는 통지 규정의 흠결에 대비하여 「소년심판규칙」 제3조 제2항은 소년보호사건 중에 있는 모든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반드시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까지 규정하고 있다.

보호자는 심리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소년보호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소년법」 제25조, 「소년심판규칙」 제9조 제5호), 법원이 소환

87) 단, 소년형사재판 진행 중에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에는 소년의 비행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소년심판규칙」 제9조 단서).

한 경우에는 화해권고기일에도 출석할 수 있다(「소년법」 제25조의3 및 「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6). 그 밖에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으며(「소년법」 제30조의2), 보조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고(「소년법」 제17조),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이라면 항고권과 재항고권, 소년의 항고취하에 대한 동의권도 갖는다(「소년법」 제43조 및 제47조에 의한 제43조의 준용, 「소년심판규칙」 제45조).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된 경우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조력을 위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소년법」 제17조 제1항). 이 때 보조인이 될 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변호사 또는 보호자[88]아닌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소년법」 제17조 제2항). 이 때 보조인은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소년법」 제17조 제6항), 보조인 제도는 소년보호사건에서 아동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가 된다.

특히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반드시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는 한, 필수적 국선보조인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②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적으로 보조인을 선정해 줄 뿐이다(「소년법」 제17조의2 제2항).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체포·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고 있는 소년형사사건과 대비된다.

보조인이 선정되어 있는 경우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이 지정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소년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보조인은 심리기일에 출석할 권한과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이 있다(「소년법」 제23조 제2항 및 제25조 제1항). 국선보조인이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심리를 할 수도

88) 이 때 보호자란 소년에 대해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소년법」 제2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없다(「소년심판규칙」 제24조 제2항). 보조인은 증인신문이나 압수·수색 기일의 시간과 장소에 관해 통지받을 권리(「소년법」 제26조 제2항 및 제27조 제2항에 따른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 준용)나 임시조치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을 권리(「소년심판규칙」 제20조), 화해권고기일에 출석할 권한도 있다(「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6 제2항). 보조인은 심리결정 개시 전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심리개시 결정 후에는 판사의 허가 없이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고(「소년법」 제30조의2),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도 있다(「소년법」 제43조 및 제47조에 의한 제43조의 준용).

④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

소년보호사건도 재판의 일종이므로, 소년은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별도의 조문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종의 송치나 이송 제도에 따라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은 수사단계에서 본 바와 같다. 최근 5년간의 조사 결과 소년보호사건이 소년부에 송치된 날부터 보호처분 결정일까지 평균 91.8일(2017년 기준) 내지 104.2일(2014년 기준)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는데,[89] 형사재판(제1심, 2017년도 기준)의 경우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구속사건의 경우 94.3일, 불구속 사건의 경우 131.0일인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90][91]

⑤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소년부는 소년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소년법」 제9조).

---

89) 금태섭 의원실에서 법원행정처에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부 송치일로부터 보호처분이 결정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최근 5년 자료)"을 요청하여 송부 받은 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90) 『2018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18, 973면.

91) 윤웅장(2017), 44면은 범죄행위로 인한 입건 후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일까지 걸리는 기간보다 소년부 송치 후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더 길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소년부의 과중한 업무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위 연구는 보호관찰처분을 집행 중인 소년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분류등급에 속하는 집중 대상자 등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화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년부는 비행사실 그 자체뿐만 아니라 ① 그 동기와 비행 후의 정황 및 비행 전력, ② 소년과 보호자의 교육 정도, 직업,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소년의 교우관계 및 소년의 가정환경, ③ 소년비행화의 경위 및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과 향후의 보호능력, ④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비행의 위험성과 정도, ⑤ 소년의 심신상태, ⑥ 그 밖에 심리와 처분을 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널리 조사한다(「소년심판규칙」 제11조).

이와 같은 전문적 조사를 실현하기 위해 「소년법」은 조사관 제도를 두어 조사관이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관은 이를 위해 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참고인 그 밖에 필요한 사람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고, 방문하여 면접·관찰 또는 심리검사 등도 할 수 있으며, 소년부 판사에게 심리에 관하여 또는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소년법」 제11조, 제25조 제1항 및 「소년심판규칙」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2항). 그 밖에 소년부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도 활용할 수 있다(「소년법」 제12조).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심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1개월의 기간 이내에 위탁할 수도 있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소년분류심사원은 위탁된 소년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진단, 표준화검사, 행동관찰 등을 통해 일반분류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수분류심사를 시행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소년법」 제12조, 「소년심판규칙」 제23조).

「소년법」이 감호위탁, 수강명령(12세 이상의 소년에 한정),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의 소년에 한정), 단기 보호관찰,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의 소년에 한정) 등과 같은 여러 유형의 보호처분을 두고, 보호관찰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처분으로 대안교육, 상담·교육명령, 외출제한명령 등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개별처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있다(「소년법」 제32조 및 제32조의2). 다만, 그 기간에는 제한이 있어서 감호위탁,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위탁 및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은 6개월(1회 연장 가능), 단기보호관찰기간은 1년, 장기보호관찰기간은 2년(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으로 정해져 있으며,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단기 소년원 송치기간은 6개월, 장기 소년원 송치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소년법」 제33조). 다만,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특히 감호위탁·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위탁·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의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소년법」 제37조).

한편,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소년법」 제25조의3). 이는 소년과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등이 사건 해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추구하기 위한 다이버전 조치의 일종이므로, 화해권고기일 전까지 소년·보호자 및 피해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

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소년법」 제24조 제2항). 또한 소년보호사건을 다루는 관계인들은 조사, 심리, 소환 또는 집행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년의 출생, 성장과정, 가족관계 등 사생활의 비밀이 소년 및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소년심판규칙」 제10조). 화해권고기일에 참여한 사람 역시 화해권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6 제3항). 뿐만 아니라 조사, 심리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년의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소년법」 제68조).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소년법」 제70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년보호사건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⑦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소년보호사건에서도 소년에 대한 신체구속이 일부 가능하다. 즉,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본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사건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소년법」 제13조). 더 나아가 소년부 판사는 사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도의 소환 없이 즉시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소년법」 제14조). 소년부 판사는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 동행된 소년에 대해서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①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 ②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 또는 ③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소년법」 제18조 제2항).

또한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나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된 소년에 대해서도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및 제1항). 다만, ①과 ②의 임시조치에 따른 위탁기간은 3개월을, ③의 임시조치에 대한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소년법」 제18조 제3항). 특히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소년심판규칙」 제13조).

소년부송치결정에 따라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장이 「소년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소년부에 인도한 소년[92]에 대해서도 소년부 판사는 도착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소년법」 제18조 제2항). 이 때 인도와 결정은 모두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의 효력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소년법」 제52조).

⑨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소년법」은 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 절차와 다른 내용으로 소년보호사건에 적용되는 '절차'를 정하면서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주관하는 소년사법 전문가로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를 예정하고 있다(「소년법」 제3조). 이 중 가정법원의 경우에는 전문법관 제도를 두고 있으며, 소년보호사건 전반에 걸쳐 의학·심리학·교육

92) 이 때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군) 또는 48시간 이내(그 밖의 시·군)에 소년부에 소년을 인도해야 한다(「소년법」 제52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조사관 제도나 전문가 진단 제도 등이 두루 활용되고 있다(「소년법」 제11조 및 제12조).

(3) 소년형사사건에서의 재판 단계

소년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형사소송법」을 따르지만, 「소년법」에 몇몇 특칙이 마련되어 있다(「소년법」 제48조).

① 정보접근 및 알 권리

검사가 소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하여 소년형사사건이 개시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피고인인 소년에게 피고인의 성명과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및 제266조). 또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변호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33조),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인 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다는 취지 및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하며, 그 고지를 받은 소년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뜻을 소년에게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1항).

또한 법원은 피고인인 소년이 출석할 수 있도록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해 주어야 하며,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형사사송법」 제266조의8 제3항 및 제267조 제2항).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76조).[93] 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도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93) 다만, ①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②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③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④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77조).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같다(「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제6항 및 제283조의2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27조). 법원은 피고인에게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93조), 법원이 증인신문을 할 때에는 그 시일과 장소를 미리 피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제163조).

②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재판 중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후견인이 이를 대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조).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소송대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권자인 부모나 후견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각종의 통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받아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조). 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과 형제자매가 보조인의 지위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과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9조). 이와 같이 소년을 위해 소송행위를 하는 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보조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35조).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 기타 보호자라도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는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지위에서 공판기일에 피고인인 소년과 동석할 수 있다(「형사사송법」 제276조의2 및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또한 피고인인 소년의 배우자나 직계친족·형제자매는 피고인을 위해 열람·등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소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35조 및 제341조). 특히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스스로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0조).

그 밖에 법원이 피고인인 소년을 구속한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년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구속과 관련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 1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51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소년은 자유롭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30조), 소년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면 그의 구속 여부·장애나 빈곤 등의 사유와 무관하게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필요성을 인정받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제한된 경우에만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점과 대비된다.

피고인인 소년을 구속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를 알려야 하며(「형사소송법」 제87조), 변호인은 신체구속을 당한 소년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고,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34조). 그 밖에도 「형사소송법」에는 소년의 변호인 조력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가령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을 수 있으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및 제266조의2). 공판 준비를 위해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거나 증거신청 또는 증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6, 제294조 및 제296조).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공판기일·증인신문기일에 참여할 권한이 있으며, 그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은 미리 그 기일을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63조, 제266조의8, 제267조, 제282조). 특히 피고인이 소년인 경우에는 필수적 국선변호 제도가 적용되므로,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이 아닌 한 변호인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82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나 ·검증·감정시에도 변호사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22조, 제145조, 제176조).

더 나아가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에게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 등'이라고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 중 ①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②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 ③ ①과 ②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등,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

며, 이와 같은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은 국가안보·증인보호의 필요성·증거인멸의 염려·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닌 한 제한할 수 없고, 특히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절대로 열람이나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5조 및 제266조의3).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제한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이루어진 증거보전처분에 관한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형사소송법」 제185조).

④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

「대한민국헌법」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제27조 제3항). 따라서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소년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한 재판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최대한 빨리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소년심판규칙」 제55조).

⑤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형사재판은 본래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소년형사재판에 대해서는 개별처우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소년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소년법」 제58조 제2항), 이를 위해 법원은 조사관에게 소년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특히 ①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②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 및 향후 보호능력, ③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 ④ 그 밖에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위촉할 수 있다(「소년법」 제56조 및 (「소년심판규칙」 제56조). 조사 결과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형을 감경할 수도 있다(「소년법」 제60조 제2항).

또한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도 있다(「소년법」 제60조 제4항). 일정한 기간이 도과한 후 가석방이 가능함은 물론이다(「소년법」 제65조).

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소년보호사건과 달리 소년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공개재판의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분리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소년법」 제57조). 또한 「소년법」에 따라 조사, 심리 중에 있는 형사사건의 경우 소년의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소년법」 제68조).

한편 이유를 적시할 필요가 없는 소년보호재판과 달리 소년형사재판의 판결문에는 이유도 함께 쓰도록 되어 있으므로, 판결문의 공개를 통해 소년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도 크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당해 형사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하는 경우 그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해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여서는 안 되며, 재판장은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소년의 사생활이 다소간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확정재판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검사는 그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설령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가 허용된 경우라도 그 열람 또는 등사를 한 사람은 열람이나 등사에 의해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5항).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나 그 등본,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에 관해서는 누구든지 이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해당 정보에 관한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소년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한, 이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성년 범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자료[94] 및 수사경력자료[95]가 관리되며,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회가 가능하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한하여 그 형이 실효되어 범죄경력자료로부터 삭제될 뿐이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96] 하지만 소년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또는 ②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즉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수사경력자료의 경우에도 기소유예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3년까지, 무혐의·공소권 없음·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은 그 처분시까지,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은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시까지만 보존되며, 그 기간이 도과하면 즉시 삭제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낙인의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⑦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③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70조),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소년법」 제55조 제1항), 소년을

---

94) ①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②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③ 선고유예의 실효, ④ 집행유예의 취소, ⑤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추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을 말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95)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을 말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96) 다만,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즉시 그 형이 실효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5조 제2항).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이 가능하고, 상소심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이 가능하다(「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및 제2항)). 단, 이 때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형사소송법」에는 구속의 보충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보석제도도 충실히 마련되어 있으나, 보석금을 지불할 만한 자력이 없는 대부분의 소년에 대해서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89조),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면 법원은 변호사 아닌 자와의 접견을 금지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91조).

또한 「소년법」은 소년형사재판에서도 회복과 사회복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형벌에 관해 몇 가지 특칙을 두고 있다. 가령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이나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며(「소년법」 제59조),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면서도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소년법」 제60조).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도 하지 못한다(「소년법」 제62조). 더 나아가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치된 소년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함으로서 성년과의 분리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소년법」 제63조).

⑨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소년형사사건은 소년보호사건과 달리 아동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처리하지 않고, 일반 형사재판부에서 진행된다. 다만, 2008. 6. 22.부터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 따라 이 경우에도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게 되

었다(「소년법」 제56조).

(4) 형집행단계

(가) 소년보호사건

① 정보접근 및 알 권리

「형집행법」 제17조에는 수용시 소년에게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호소년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다만,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을 심신안정실에 수용하거나 그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본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보호소년법」 제19조 제4항).

②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원장은 보호자 등에게 보호소년을 수용한 사실과 함께 수용 경위, 처우의 개요, 면회·통신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보호소년법」 제8조). 또한 보호소년에게 징계를 할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징계의 경우 원장은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다(「보호소년법」 제15조).

⑤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보호소년등의 정신적·신체적 상황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실을 구분하는 등 적합한 처우를 해야 하고, 남성과 여성, 그리고 보호소년, 위탁소년, 유치소년은 분리수용해야 한다(「보호소년법」 제8조). 보호소년의 처우나 일신상의 사정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수시로 보호소년과 면접을 해야 한다(「보호소년법」 제10조).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건강상 문제로 교정교육의 실효성이 인정되기 어렵거나, 심신의 장애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기간 연장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부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보호소년법」 제9조),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이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소년법」 제37조).

한편 소년은 소년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소년원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교로 인정되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보호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년법」 제31조). 소년원에서 퇴소하는 등의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있다(「보호소년법」 제32조). 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의 경우에는 원활한 학업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학교로 통학도 가능하다(「보호소년법」 제33조). 정규교육 외에 직업능력개발훈련도 제공하여야 한다(「보호소년법」 제35조).

「보호소년법」은 소년의 건강을 위한 규정도 두고 있다. 보호소년이 질병에 걸린 경우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보호소년법」 제20조).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치료가 곤란하면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고, 보호소년이나 보호자가 자비로 치료를 받기 원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보호소년법」은 실외운동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법무부훈령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서 휴일에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보호소년법」은 보호소년에게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을 때, 신체적·정신적 질병 또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보호소년을 15일의 기간 내에 심신안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 할 때, 소란행위를 계속해서 다른 보호소년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할 때에도 24시간의 기간 내에 심신안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보호소년법」 시행령 제19조). 위 수용기간은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다(15일의 경우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24시간의 경우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수용 중인 보호소년은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없고, 「보호소년법」에 따라 대여 또는 공급되는 유치소년복, 교복 등을 착용해야 한다(「보호소년법」 제17조 제1항, 제3항, 「보호소년법」 시행규칙 제32조). 사식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보호소년법」 제17조 제2항). 「보호소년법」 시행령 34조는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보호소년이 금전을 소지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수용 중인 보호소년도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면회를 할 수 있다.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해야 하나, 변호인 등과 면회를 할 때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할 수는 없고 보이는 거리에서 지켜볼 수만 있다(「보호소년법」 제18조). 편지 왕래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변호인 등과 주고 받는 편지의 경우 제한하거나 검사할 수 없다. 가족 등과의 전화통화는 교정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하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외출도 허용된다(「보호소년법」 제19조).

⑦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보호소년이 형사법률에 위반하거나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원장은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에는 훈계, 원내 봉사활동, 서면사과, 2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실내 근신 등이 있다(「보호소년법」 제15조). 이 중 실내 근신 처분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등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 이러한 징계는 교육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징계를 할 때에도 행위자의 연령·지능·성격 및 건강상태, 행위의 동기·수단 및 결과, 교정성적 및 생활태도, 규율위반 행위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 후의 자수·반성·합의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증거에 의해 징계 정도를 공정하게 정하고 교육적 효과 역시 고려해야 한다(「보호소년법」 시행령 제24조). 또한 징계 중에도 지도계획 아래 매주 1회 이상 면접해서 개별지도가 행해져야 한다(「보호소년법」 시행령 제27조).

소년원에서는 신체구속과 무력 제한을 위해 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만을 사용할 수 있다(「보호소년법」 제14조의2). 「보호소년법」은 보호소년의 이탈·난동·자해·자살 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장비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보호소년법」 제14조의3).

⑧ 모니터링 및 진정에 관한 권리

보호소년등은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보호소년법」 제11조). 또한 소년원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보호소년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청원함을 설치하고, 매일 청원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보호소년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다만, 이 때 청원의 대상이 되는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란 “처우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처우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만을 의미하므로, 소년원장은 청원 내용이 단순한 환경개선 건의 등으로서 본인의 처우에 불복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소년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청원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8조).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소년교도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6호 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분을 받은 아동이 위탁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은 구금·보호시설에 포함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이러한 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구금·보호시설 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하며, 진정함을 설치한 때에는 그 설치된 장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진정함은 보호소년 등 시설수용자가 진정서를 직접 봉투에 넣고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하며,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정서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 진정함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보호소년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을 금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보호소년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음을 표명한 진정서 도는 서면을 열람·압수 또는 폐기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보호소년의 권리는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한될 수 없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

⑨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는 심리학 · 교육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 범죄학 · 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 등의 신체적 · 심리적 · 환경적 측면을 조사 · 판정하는 것이므로, 그에 적합한 학문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만이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관으로 될 수 있다(「보호소년법」 제24조 및 제25조). 소년원학교의 교원이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다(「보호소년법」 제30조). 하지만 그 밖에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의 종사자 자격기준이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소년에 대한 적절한 처우에 관한 자문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처우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보호소년법」 시행령 제3조).

(나) 소년형사사건

① 정보접근 및 알 권리

소년이 교도소에 수용되거나 이송되면,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과 접견·서신 등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청원, 진정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징벌·규율 등 수용자 의무에 관한 사항,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제17조).

②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교도소 소장은 소년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수용사실을 소년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형집행법」 제21조).

⑤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형사법원에 의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형집행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형집행법」에 의하면 독거수용이 원칙이다(「형집행법」 제14조). 또한 「형집행법」은 보호실과 진정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보호실에는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를 수용하고(「형집행법」 제95조), 진정실에는 교정시설 설비 등을 손괴하거나 소란행위를 계속해서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수용자를 수용한다(「형집행법」 제96조). 진정실 수용은 24시간 이내로 제한되는데, 위 기간은 12시간 내로 연장 가능하다(계속해서 3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소년의 교육과 직업훈련을 위해 소년수용자의 나이·적성 등을 고려한 적정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형집행법」 제54조 제4항). 이와 관련하여 소년교도소 등은 소년의 나이·적성 등 특성에 알맞은 교육·교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해야 하고,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별도의 공동학습공간을 마련해서 학용품 및 소년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도서, 잡지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형집행법」 제54조 제5항, 동 시행규칙 제59조의2). 또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하게 하는 등 교육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소년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9조의6, 제48조). 한편 소년수형자등의 나이·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 사회봉사, 종교행사 참석, 문화공연 관람, 발표회 및 공연 등 참가활동에 참여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9조의5). 법무부예규인 소년교도소 운영지침에서는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아동의 수용, 외부와의 교류, 교육권과 직업훈련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하고 있다.

한편 「소년법」에 의하면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한 가석방도 가능하다. 무기형의 경우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 3년, 부정기형의 경우 단기의 1/3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소년법」 제65조).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기존 집행기간과 동일한 기간 또는 선고형의 장기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이 종료한 것으로 한다(「소년법」 제66조).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시간으로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소년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9조의 6, 제46조). 교도소장은 소년수형자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고, 외부의료시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소년수용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9조의6, 제47조).

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소년은 「형집행법」에 따라 의류와 생활용품을 지급받는다(「형집행법」 제22조, 동 시행규칙 제4조). 사식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28조). 다만 소년수용자의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자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주·부식,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9조의6, 제45조).

외부 사람과의 접견도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접견제한처분이 가능하다(「형집행법」 제41조, 제42조). 서신 수수도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가능하고(「형집행법」 제43조),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도 가능하다(「형집행법」 제44조). 소년수형자등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되면 접견 및 전화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9조의4).

⑦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신체구속과 무력 제한을 위해 소년원은 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만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보호소년법」 제14조의2), 소년교도소에서는 이외에

가스총, 전기충격기 그 밖의 강제력 행사가 널리 허용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권총·소총·기관총 등 무기 사용도 허용된다(「형집행법」 제100조, 제101조, 동 시행규칙 제186조, 제189조). 다만 가스총, 전자충격기의 경우, 「형집행법」은 수갑, 포승 등의 보호장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강제력 행사의 한 방법으로 가스총, 전자충격기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형집행법」 제100조).

⑧ 모니터링 및 진정에 관한 권리

수용된 소년은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이나 교도관과 면담을 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16조). 또한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17조).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형집행법」 제118조).

교도소·소년교도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구금·보호시설'로서, 수용된 소년이 이용가능한 진정함을 설치하고, 진정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다. 소결

이상과 같이 소년사법의 각 단계별로 나누어 국제규범이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인권 유형에 관한 현행법 규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가) 수사단계

① 정보접근 및 알 권리

소년사법의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변호사 선임권 · 진술거부권 등에 관해 고지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문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아동이 체포나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아직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부모 기타 보호자와 동석하거나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정보를 아동에게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조문도 존재하지 않는다. 수사절차 전반의 과정이나 각각의 과정이 갖는 의미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대해 아동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제공할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②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수사단계에서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경찰수사단계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규정의 법적 성격이 '예규'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다. 통지의 대상이나 방법, 적용범위와 예외 등도 명백하지 않다. 검찰수사단계에서는 그나마 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소년사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아동에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하지만 필수적 국선변론 제도는 아동이 체포 또는 구속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무료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

소년사법의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도 헌법에 따라 신속한 수사를 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나, 신속한 수사를 실효성 있게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령 수사기간의 법정화, 소년사건 우선처리의 원칙, 수사기간 통계조사 의무화 등)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⑤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수사단계에서 개별처우의 원칙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시에는 소년환경조사서 작성 관련 조문이, 검찰 조사시에는 결정전 조사제도 및 다이버전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소년환경조사서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개별적 처우에 필요한 요인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만한 요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결정전 조사 제도의 활용은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다. 개별적 처우를 위해 경찰단계에서 선도조건부 훈방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법적 근거나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

도 발견되었다.[97]

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수사단계에서 소년사법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인적 사항 기타 수사와 관련된 비밀유지 및 비공개 의무와 관련된 조문들이 여럿 마련되어 있다. 적어도 법제도 상으로는 소년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셈이다.

⑦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모든 성년사건에서와 동일하게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소년인 경우에도 인신구속의 남용을 피하기 위한 각종의 제도가 적용된다.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나 영장실질심사 제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소년을 구속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일단 체포 또는 구속이 된 경우에 성년과의 분리구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결과 범죄 오염이나 학대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⑧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수사단계에서는 아동 전문 인력에게 소년사법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규정이나, 기존의 인력에게 아동의 인권이나 특수성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재판단계

① 정보접근 및 알 권리

재판을 받고 있는 아동에게 변호사 선임권·진술거부권 등에 관해 고지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문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는 접수시부터 보호처분시까지 각종의 결정과 처분의 취지 등에 대해 아동친화적인 방법으로 정

97) 경찰 단계에서의 훈방시 선도심사위원회에 의한 선도조건 심의를 훈방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윤웅장(2017), 57-61면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촘촘하게 정비되어 있는 상황이다.[98] 하지만 소년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사선임권·증거조사 등과 관련하여 성년인 피고인과 동일한 정도의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뿐이며, 아동을 위한 특별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에 관한 열람·복사권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

②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소년사법의 대상이 되는 소년에 대한 각종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 부모 기타 보호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조문이 마련되어 있으며, 부모 기타 보호자는 보조인의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도 있다. 소년형사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인 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부모 기타 보호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조문이 다각도에서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인 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부모 기타 보호자는 보조인 또는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의 지위에서 임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게 참여의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수사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일반은 보장되고 있다. 문제는 무료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이다. 소년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모든 미성년자에게 필수적 국선변호제도가 적용되는 반면, 소년보호사건의 경우필수적 국선변호 제도는 아동의 신체적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④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

「대한민국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정작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부에 의한 검찰청으로의 송치 제도나 형사법원에 의한 소년보호사건 송

98) 다만,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에 관한 고지가 실무상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는 문헌으로 이승현(2017a), 135면 참조.

치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어 절차의 신속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⑤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조사관을 통한 조사와 전문가 진단,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통한 분류심사 등 개별처우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보호처분의 유형이 획일화·경직화되어 있고, 다이버전 조치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도입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역시 조사관에 의한 조사 제도가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작 형벌의 부과는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처우의 원칙이 충분히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재판단계에서 소년사법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비공개의 원칙·관련 기록의 폐기 등과 관련된 조문들이 다수 마련되어 있다. 법제도상으로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비교적 잘 보장되고 있는 셈이다.

⑦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소년법은 소년사법의 대상이 되는 소년에 대한 인신구금의 보충성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나, 전문가 진단을 위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우회할 수 있는 장치도 법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관찰되었다. 특히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처분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체포·구금과 달리 그 당부를 다시 한 번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의제기 절차나 항고 절차에 관한 규정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연령 구분 없이 구치소 수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결과 소년형사재판 과정에서 성년과의 분리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은 수사단계에서와 같다.

⑧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는 전담법관 제도 및 조사관 제도 등 관계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담당법관 등의 역량, 특히 아동 관련 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교육 등과 관련된 조문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았다. 소년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관 제도 활용을 위한 규정이 있을 뿐, 법관 자신의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어떠한 조문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 형의 집행단계

① 정보접근 및 알 권리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경우에는 수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에 관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성년에 준하여 보장되고 있으나, 소년원의 경우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내용의 정보접근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②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현행법상 소년교도소에 수용되거나 소년원에 입소한 경우에 관련 사실에 대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조문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수용 또는 입소의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통지일 뿐이며, 수용기간 내지 입소기간 중에 소년에게 발생한 각종의 사항, 특히 의료적 조치나 징계 등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통지와 관련된 조문이 미비한 상황이다.

③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소년사법의 이념은 회복과 사회복귀에 있으므로, 형 또는 보호처분의 집행단계에서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현재의 처분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종결시키거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집행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변경이나 형집행의 종료·가석방 제도 등을 두고 있을 뿐, 처분의 적절성에 대한 정기적 심사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④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형 집행단계에 관여하는 관계인들은 소년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엄수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과 달리 형사재판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형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므로, 사생활의 보호에 다소 간 맹점이 있는 상황이다.

⑤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 입소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 있는 소년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가령 아동의 사생활보호 · 실외운동 · 의료적 조치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규정들은 하위법령의 단계에서 지극히 임의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방식으로 조문화되어 있으며, 징계절차와 관련된 규정도 최근 일부 정비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성년 수용자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다.

⑥ 모니터링과 진정에 관한 권리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양쪽 모두 소년의 청원과 관련된 조문들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소년원의 경우에는 그 규정이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원장에게 청원서 폐기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사실상 소년의 청원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⑦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형집행단계의 담당자들은 소년의 회복과 사회복귀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종사자 · 보호관찰 종사자의 아동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2. 소년사법제도 아동 당사자 조사

가. 참여자와 조사 목적

면접조사 참여자는 아동기에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현재 24세를 도과하지 않은 연령을 대상자로 하였다. 소년사법을 경험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소년사법제도의 개별 단계가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제도의 한계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파악함으로써, 실효적인 법·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조사에 응한 총 20명에게 면접조사 시작 전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및 개인정보 비밀보장을 안내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진행자 1명과 보조진행자 1명이 동행하였으며, 참여자가 유사한 경험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2-3명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면접조사는 2018년 6월부터 8월 중 17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응답 내용의 대표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월 중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추천을 받은 3명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조사는 1회당 1시간-1시간 30분 동안 참여자의 거주지 인근 카페나 생활공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에서 진행하였다. 조사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면접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면접조사는 조사에 참여한 소규모 응답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해당 참여자들을 통해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아 조사하는 "눈덩이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최초의 면접조사는 본 연구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국제아동인권센터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실시하였으며, 이후 면접조사 참여자들의 추천을 받아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년사법제도 전반에 요청되는 일반적인 아동권리 내용 및 수용시설에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아동권리 항목들을 분류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녹음파일에 대한 전사작업을 통해 내용을 재확인한 뒤, 권리목록에 따라 최종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 조사 내용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소년사법제도는 아동의 연령 및 발달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발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에 대한 신뢰와 그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즉, 소년사법은 비행이나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가 목적이 아닌, 아동의 재사회화와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특별한 절차이다. 이에 본 면접조사는 소년사법제도 관련 국제인권규범이 제시하는 공통 항목을 추출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당사국의 소년사법제도는 개별 국가의 인적·재정적·사회적·자연적 요건 하에 서로 다르게 운용될 수 있지만, 제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기본내용은 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인권규범의 원칙과 방향성을 기준으로, 국내 소년사법제도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국제인권규범은 특정 단계나 처분을 넘어 소년사법제도 전반을 포섭하는 규범으로 선정하였다. 아동인권의 보편적 규범으로 제시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및 제40조를 중심으로 일반논평 제10호, 베이징규칙, 하바나규칙 및 유럽평의회 각료회의 아동친화적 사법체계에 대한 지침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소년사법 전반에 고려되어야 할 아동권리의 일반요소 및 절차 단계별 권리목록을 검토하였다.

[표 Ⅲ-1] 소년사법 관련 국제인권규범의 비교

		일반논평 제10호	베이징규칙	하바나규칙	유럽평의회 아동 친화적 사법체계에 대한 지침
일반요소		○	○	○	○
재판 전 절차			○		○
재판		○	○		○
사후 조치	시설 외		○		
	시설 내		○	○	

이에 위 4개의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일반요소 및 소년사법 단계별 권리목록을 정리하였으며, 분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2] 소년사건의 일반적 요소 및 소년사법 단계별 권리목록

소년사건의 일반적 요소	
① 소년사법의 목적 ② 연령과 적용범위 ③ 협약 일반원칙 - 비차별 - 아동최상의 이익 - 생명·생존 및 발달(존엄성) - 아동참여 및 의견청취권 ④ 일반적인 권리보장 -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 비례의 원칙, 범죄사실을 고지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 부모 및 보호자 참여권, 증인신문권, 항소권	⑤ 정보접근권 ⑥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⑦ 자유박탈의 제한 ⑧ 성인과 분리수용 ⑨ 전문가 교육훈련 ⑩ 다학제적 접근 ⑪ 연구, 계획 및 정책 수립

재판 전 조사·수사	재판	시설 수용
① 아동의 인권 존중 ② 즉시 보호자에게 통지 ③ 조사내용과 절차에 대해 안내받을 권리 ④ 대안적 조치: 조정, 중재, 다이버전, 대안적 분쟁해결 등 ⑤ 경찰과 검찰 수사 - 미결구금 원칙 - 아동친화적 방법으로 이유 설명 - 부모 및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 연락할 기회 보장 - 부모에게 통지하고 보호의무를 촉구할 의무 - 경찰·검찰의 전문성	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소급적용 금지 - 신속하고 직접적인 재판절차 통지: 피의사실, 선고내용 -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 - 부모·보호자에 통지 및 참여 촉진 - 통역사 무상지원 - 사생활의 완전한 존중 - 참여 및 의견청취권 ② 신속한 재판 ③ 다양한 대안적 처분 ④ 관계자의 전문성과 교육 ⑤ 최후수단으로서 자유 박탈 제한 ⑥ 아동친화적 환경 - 아동이 이해 가능한 적합한 언어 - 아동이 선택한 성인과 동반 -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 - 휴식시간 보장 - 면담실과 대기실 환경 - 소년전문법원, 경찰·검찰 특별부서	① 공적 기록 ② 부모 및 보호자의 알 권리 ③ 분류 및 배정 - 개별면접 및 상담조사 - 여자 소년에 대한 특별한 배려 ④ 물리적 환경과 시설: 피구금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⑤ 외부와의 교류 - 편지, 전화 및 면회, 통신의 자유 ⑥ 여가활동 ⑦ 종교 ⑧ 적절한 의료조치 ⑨ 지역사회와 광범위한 협력 - 중간처우 시설 확대 ⑩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 ⑪ 징계절차 ⑫ 모니터링 및 진정절차 ⑬ 사회복귀 지원 - 교육, 직업훈련 - 부모 및 보호자의 접근권 - 관련기관 및 부처간 협력 ⑭ 직원의 자격과 역량, 복지

면접조사 질문 내용은 위 각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소년사법 전반에 고려되어야 할 권리항목들로 구성하였고, 가능한 최단기간,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할 구금처분을 받은 아동의 인권보장 관련 질문들은 별도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별첨 2] '아동 면접조사 조사지'를 참고하면 된다.

라. 조사 결과

(1)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참여자는 총 20명으로서, 연령은 면접조사 일시를 기준으로 만 12세에서부터 20세까지이고, 이 중 18세 미만의 아동은 6명이었다. 참여자가 소년사법을 경험한 때의 최저연령은 만 10세였다. 여성은 8명이었는데, 여성 참여자 3명은 동일한 경험을 한 당사자로서, 하나의 사례로 정리하였다. 구치소 미결구금 중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은 참여자가 3명 있었고, 5명의 참여자가 전국 10개 소년원 중 4개 소년원에서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경험하였다. 소년교도소를 경험한 참여자

는 없었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에서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력(아동양육에 대한 의지, 경제상황, 아동과의 관계 등)은 아동의 처분 결정에 가장 주요한 판단요소로서, 참여자의 주요특성으로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참여자가 원치 않는 경우,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확인하지 않았다. 보다 구체적인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의 표에 정리하였다.

[표 Ⅲ-3] 아동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참여자 번호	성	연령 (만)[99]	소년사법 경험 내용	보호자[100]
1	남	19	아동복지시설장의 통고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됨. 5·6호 보호처분을 받음.	×
2	남	20	경찰 조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및 5·6호 보호처분 경험 있음.	×
3	남	18	아동복지시설장의 통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됨.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1·5호 보호처분을 받아 법무부쉼터에 감호위탁됨.	×
4	남	17	아동양육시설장의 통고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됨. 5·6호 보호처분을 받음.	×
5	남	19	경찰조사 및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조치 경험있음. 5·6호 보호처분 이후, 5·10호 보호처분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받음.	×
6	여	16	경찰조사 이후, 1·4호 보호처분으로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음. 보호관찰 중, 다른 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고, 1·2·5호 보호처분을 받아 청소년회복지원센터에 감호위탁됨.	○ (친조모)
7	남	20	경찰조사를 받는 동안 유치장에 있었고, 형사재판 중 약 6개월간 구치소에 미결구금됨. 소년부 송치되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이후, 1호 보호처분을 받음.	×
8	여	18	경찰조사 이후 재판불출석 중 경찰에 붙잡혀 곧바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이송됨. 4·6호 보호처분을 받음.	○
9	여	17	경찰조사 이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보호재판이 개시됨. 1·2·3호 보호처분을 받음.	○
10	여	17	아동·청소년 성매매 함정수사로 경찰 임의수사 대상이 됨.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경찰 통보로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청소년성장캠프에 참여함.	○
11	여	18		
12	여	18		
13	남	12	12세에 경찰조사를 받은 경험 있음. 다문화가족으로 모(母)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 가족이었음. 1·4호 보호처분을 받아, 청소년쉼터에 감호위탁됨.	○ (모)

99) 만 나이는 면접조사 일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100) 이때의 '보호자'는 인터뷰 참여자가 소년사법을 경험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모 또는 친·인척이 보호자로서 동거하는 가족관계 중에 있었는지를 표기하였다.

참여자 번호	성	연령 (만)	소년사법 경험 내용	보호자
14	남	18	가출 중 소년재판통지를 받지 못해 재판 불출석이 누적됨. 청소년쉼터에 정착하여 취업훈련 등 자립을 준비 중에, 경찰방문조사 및 소년분류심사원, 5·6호 보호처분을 받음.	×
15	남	18	14세에 경찰조사 및 유치장 경험 있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5·6호 보호처분을 받음.	×
16	남	20	10세에 최초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 경찰 동행영장 집행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고, 5·6호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 경찰서 유치장, 형사재판에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되어 구치소에 약 2개월 미결구금됨. 이후, 소년부 송치되어 5·10호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 있음.	○
17	남	19	12세에 최초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고, 1·4호 처분을 받음. 소년분류심사원 및 1·2·5호 보호처분을 받거나, 5·6호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 있음.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 중 임시퇴원하였고, 보호관찰 중 여타 사건으로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받음.	○
18	여	19	만 11세에 가출 후, 절도 등에 대한 경찰 훈방 조치가 수 차례 있었음. 만 13세에 처음 소년재판을 받았고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받음. 가퇴원 이후 보호관찰 위반을 이유로 남은 기간 동안 다시 소년원에 송치됨.	×
19	여	19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경찰조사 이후 50여 차례 훈방조치 되다가, 만 14세를 넘은 직후 구속됨. 경찰서 유치장, 영장실질심사 후 구치소에 약 6개월 미결구금되었다가 소년부 송치되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받았고, 이후에도 소년보호사건 경험이 여러 번 있음.	×
20	남	15	초등학교 6학년 때, 절도로 처음 경찰조사를 받음. 이후, 아동복지시설장의 통고로 만 13세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5·6호 보호처분을 받음. 2018년 4월 퇴원 후, 법무부 자립생활관에서 생활 중.	×

(2) 심층면접 내용 분석

심층면접 참여자들의 경험을 앞서 제시한 일반요소 및 시설수용에서 특히 고려되어야 할 권리 항목으로 분석한 내용은 같다.

(가) 소년사법에서의 아동권리 일반요소

① 범죄사실을 고지 받을 권리

절도나 폭행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지 범죄사실을 고지받았다는 응답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 중 시설장의 통고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경찰·법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서 통고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전달받지 못한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참여자 1] (소년분류심사원 들어갈 때 왜 가는지 설명) 안 했죠. 당연히. 들어가고 나서는 당연히 '아, 나는 통고처리 됐구나' 짐작한 거예요. … 조사관도 왜 들어왔는지 몰라요. 다른 애들은 막 폭력, 상해 이렇게 뜨는데, 저는 죄명이 그냥 '기타 사유' 뭐 이렇게 떠요. 분류심사관한테 보면은 앞에 서류를 두거든요? 죄명을 봤죠. 나 죄명이 뭔지 궁금해 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가지고.

소년사법 절차가 진행될 당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경우로서, 경찰 조사와 재판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

> [참여자 13] (12살 때 보호관찰 1년 선고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4호인가? (판사님이) 말하시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 그 다음에 보호관찰 신청하러 갔을 때, 그때 보호관찰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 [참여자 15] (15살 때) '네, 죄송합니다' 하다가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 제가 처음 재판받아서 아무 얘기도 몰랐거든요? 판사님이 뭐 어디가라 했는데, 몰랐어요.
> [참여자 18] 어릴 때(13살, 만 11세) 경우에는 (경찰이 왜 조사를 받는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충분한 설명은 못 받았어요. 받을 때도 있긴 있었죠. 네가 이래서 온 건 아냐고 물어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다고 대답하면 '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 있고'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조사하면 자고, 일어나면 끝나있고. 알아서 대부분 보내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때는 충분히 고지를 해주시거나 조사받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 [참여자 20] 판사님이 그냥 "○○는 심사원 들어가."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심사원이 뭔지는 몰랐어요. 그냥 갔어요.

② 진술거부권

언제,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경우도 있었고, 기억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었으나, 경찰·검찰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 '묵비권' 등에 대한 설명은 들었다는 응답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는지 여부는 참여자마다 기억이 상이하였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진술거부권이 안내되는 현실을 유추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의 조력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변호사 등 국선보조

인이 선정된다(「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참여자 대부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면회를 온 보조인과 면담을 하였고, 해당 보조인이 재판에도 출석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소년사건에서는 보조인이 선임되어도 별 소용이 없다."는 등 실제로 보조인이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경찰 조사 당시 변호사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응답 또한 제시되었는데, 국선보조인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참여자 16] 제가 만났던 변호사는 판사가 변호사에게 말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고만 앉아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 [참여자 17] 국선이 있었는데 재판에서 한마디도 안 하던데요? (국선의 기능이요?) 그냥 변호사 자리 채우는 사람? 심사원에는 한 번 왔었어요.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느낌 받은 변호사는 한 번도 없었어요.
> [참여자 8] (법원에서 변호사는 나를 위해서 어떤 말을) 해주긴 했는데 별로 안 했어요. (…) (결정이 바뀌지 않더라도) 판사님이 4호랑 6호 판결 내릴 때 '한 번만 더 선처해 달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 [참여자 9]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무섭잖아요. 창피하고. (만약에 변호사가 있었다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 더 잘 들을 것 같아서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전 횡설수설할 테니까요. 같이 좀 잡아주고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대부분의 국선보조인이 변호사였으나, 그 외 가정법원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국선보조인이 선정된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참여자의 경우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회복지원센터 센터장님이 국선보조인으로 재판에 참석하였다고 하였고,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참여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국선보조인을 만난 적은 없지만 재판 당일 신부님이 출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시 필수적으로 선임되는 국선보조인의 역할이 각 지역마다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 [참여자 6] 원래 변호사가 면회를 왔어야 된다는데 저는 뭐지, 변호사, 국선변호인 분이 바쁘셨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안 왔거든요. 그래서 딱 재판 날 갔는데, 어떤 신부님… 신부님이 앉아 계셨는데 원래 여기 센터(청소년회복지원센터) 선생님이 데리러 오셨어야 했는데 이게 연락이 똑바로 안 전해져가지고 연락을 뒤늦게 받아서 재판을 보고 다시 위탁(**소년분류심사원)에 가서 밥 먹고 과자 먹고 있다 보니까 오더라고요.

[참여자 7] (판사님이) 제가 반성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처분을 내릴 때 "쉼터 센터장님께서 데리고 가실 수 있겠어요?"라고 하셨고 센터장님이 알겠다고 그러셨고, 판사님이 "그럼 센터장님 믿고 처분 내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처분 1·2·3·4호를 내리시고. 저한테 잘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고.

④ 부모 및 보호자 참여

'부모 및 보호자가 알고 참여할 권리'는 친부모나 조부모 등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 구성원이 보호자인 경우와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시설의 종사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에 다소 상이하게 적용되었다. 보호자가 친부모 또는 조모인 경우, 경찰은 조사 당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사례에 따라 아동이 보호자에게 연락하기를 원치 않던 경우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보호자에게 경찰 조사 사실이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였던 참여자의 경우, 경찰이 해당 시설에 통지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경찰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머물며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까지 시설 선생님이 찾아오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다. '성매매'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진 경우 아동은 부모에게 성매매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했다. "부모에게 알린다."는 경찰의 말을 협박이라고 느끼면서 위축된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2] (경찰 조사 받기 전에, 보호자한테) 안 알려줬어요. (제가 보호자) 없다고 안 알려줬거든요. 바로 유치장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했어요. 아동양육시설 ○○○○에 산다고. 그랬더니 석방됐어요.

[참여자 9] 조사 시작할 때, 경찰이 '보호자한테 연락을 하고 부모님이 오게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해서 엄마가 왔긴 왔어요. 제가 가출 상태였으니까 신고가 들어간 상태였거든요. (…) 연락은 먼저 했는데, 한 건 아는데 엄마가 몇 시쯤에 경찰서에 왔는지는 몰라요. 엄마는 밖에 있었고 저는 안에서 조사받았는데.

[참여자 7] 어머니는 먼저 (외국에) 나가계셨고, 아버지는 한국에 계셨어요. 그래서 고지가 됐죠. 아버지는 서울에 계셨고, 저 혼자 부산에 있다가 경남 △△에 간 거라 지역 차이가 있어서 한참 있다가 연락이 됐을 거예요.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부모님께) 연락하지 말라고 형사님한테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0, 11, 12] 저희가 (부모님께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빌었어요(참여자 10). 저희 쪽에서는 협박이라고 느끼긴 했죠(참여자 11). 나중에 저도 (협박이라고) 그렇게 느꼈어요(참여자 12).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집안 사정이 있다고 말하면서 거짓말 했어요. '아빠가 칼을 든다' 이런 식으로 경찰에게 이야기하고. 그때 부모님께 연락은 안 갔어요. (…) (그 때 원하지 않는 정보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못 듣고, 무조건 사실대로 쓰라고 말했어

요. 경찰이 무조건 CCTV에 다 넣을 거라고 했어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독방에 있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부모님과 면회는 가능하지만, 징계사실 자체는 부모님에게 통지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참여자 17] **소년원으로 이송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여기 이송 오기 전까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계속 징계실에 있었다."고 말했는데, 엄마는 "징계실에 왜 갔는데?" 이렇게 하고 모르셨어요.

부모님이 부재한데 당시 생활하던 아동양육시설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던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해 준 사례도 있었다. 후견인의 경우, 아동의 범죄사실이나 판결결과에 대해서 연락이 갔던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참여자 5] 중3 때, 심사원에서 (후견인을) 소개받았어요. 제가 시설 같은데 가기 싫다고 했거든요. (…) 열일곱 살에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보호자랑) 같이 오라고 했는데 저 혼자 갔어요. (혼자 가니까 경찰에서 따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려 하거나 취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당시 후견인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먼저. (경찰한테 연락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알고 있었어요.

⑤ 절차의 신속성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머무는 기간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기일 때 고지 받은 기간대로 행해졌다. 다만, 담당 판사의 사정(가족 장례, 인사이동 등)이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연장 결정 등을 이유로 선고받은 기일보다 재판이 연장되면서 하루에서 길게는 5일 가량 소년분류심사원에 더 머물게 되는 경우들은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처음 선고받았던 재판기일 당일에 전달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참여자 2] 저 다음 날이 재판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재판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저 연장됐대요. 일주일. 그래서 5주 된 거예요. 4주 탔다가.
[참여자 15] 출발하기 전에 계단 앞에 모여 가지고 앉아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지방법원 다 빠지래요. 그래서 빠졌는데, 너희들 판사님 어머니 돌아가셔서 재판 안 받는데요. 5일 동안 더 있으라고.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이 이원화되어 있는 결과, 해당 아동에 대한 처분이 상당히 지연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형사사건 수사 중 구치소에서의 미결구금 기간이 6개월에 이른 뒤 소년부 송치된 참여자의 경우, 길어진 구금기간이 소년분류심사원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참여자 7] 유치장에 8일 정도 있다가 불구속 심사받고, 구속 확정되고, 구치소로 들어간 거죠. 구치소에서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반년 있었나? (…) 구치소에서 많이 싸웠어요. (스무 살 정도 되는 어린) 사람들이 저 무릎치고 가고, 쳐다보고 가고 하니, 트러블이 많았죠. 소년부 송치되기 전까지 (구치소) 조사방에 있었어요. 열입곱 살 때에요.
[참여자 19] 처음에는 제가 조금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구치소에서) 맨날 싸우고, 아줌마들 때리고 그래가지고, 그 기간이 계속 연장됐거든요. 더 있으라고. 그 6개월 동안 있다가 거기서 저 나이 어리고, 초범, 그걸로 감안해 가지고. 재판 처음이었거든요. 소년부 송치해줘서 심사원으로 바로 갔어요. (…) 심사원 들어갔을 때 좀 안 좋았죠. 왜냐면 저는 재판 처음이었고, 나이도 어렸는데, 구치소 6개월이면 이미 그 6호(처분)이랑 똑같잖아요. 6개월이나 있었는데, 또 심사원을 보내고. 막 그러니까 기분 좀 상했었는데.

⑥ 항소권

항소권에 대해 전달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도 있었지만, 대부분 항소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안 했다.”, “변호사 선임하는데 비용도 들고, 애들 말로는 소년재판에서는 항소해봤자 별 소용없다고 들어서 생각도 안 했다.” 등의 이유로 항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받아들였다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특히 가출 등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참여자의 경우, “항소는 부모님이 도와줘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참여자 4] 들은 거로는 애들이 돈도 필요하고, 소년법에서는 이제 항소해봤자 … 뭐라고 해야 하지? 바뀌는 게 없다고 그러던데.
[참여자 17] 항소는,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안 것인데 소년원에 가게 되면 그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이더라구요. 근데 가서 그런 말 안 해줬어요. (만약에 항소권에 대해 알았다면) 10호는 항소했을 거예요. 소년원에 딱 가면 먼저 소년원 복으로 갈아입거든요. 그리고 신입반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부모님이랑 전화하거든요. 그때 알려주면, 항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부모님께 말해서 항소하라고, 그때가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재판장에서 바로 알려준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항소하죠. 진짜 억울한 애들 있으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참여자 18] 항소할 수 있다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그것도 소년원에 가서 알게 된 거예요. 애들한테 듣고 경우를 보니까 항소를 할 수 있는 거 알게 됐어요. 그러나 할 만큼 아빠가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항소할 생각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항소는) 부모님이 도와줘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참여자 20] 처음에는 (6호 시설 ***에) 가는 게 싫었는데 어차피 제가 싫다고 해도 가야 되니까 그냥 갔어요. 항소할 수 있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있었어요.

⑦ 정보접근 및 알 권리

경찰 조사의 경우 체포되어 이동하는 중에 체포 및 조사의 사유를 전달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굳이 사유를 듣지 않아도 이미 자신이 무엇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지 알고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였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재판일이 되면 모여서 단체로 이동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사전에 상세히 안내받은 경우는 없었다. 또한 법원 재판 없이 통고로 법원에 가거나 곧바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특별한 안내 없이 "잠깐 어디 가자"라고만 하여 법원에 가게 되었다거나, 심사원에서 재판일자를 직접 물어보기 전까지 재판이 언제인지 알 수 없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6호 처분만 통지받았지, 처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랐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참여자 2]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재판 간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뭐였지? 잠깐 어디로 가자. (…) 아니 뭐 상담하러 가자. (아동양육시설에서 재판받으러 갈 때) 어디 가는지 모르죠. 저희는.
[참여자 1] (통고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바로 갔을 때, 몇 주 있어야 되는지) 안 알려줘요, 거기. 그 사람들은 원래. 재판일자도 제가 물어봐서 알았어요.
[참여자 20] (법원에 아동양육시설) 원장님이랑 갔어요. 그냥 처음에 갈 때 있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가면서 (어디 가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 처음에 저는 심사원 갔다가 나갈 줄 알았는데, (재판에서) 6호 시설 ***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그때는 울었어요. 6개월 가는지도 몰랐고, 가서 알았어요. 판사님은 "○○는 6호 *** 처분합니다."라고만 했거든요.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하던 한 아동의 경우에는, 처음에 체험 형태로 6호 시설에 2주가량 있다가 올 것을 양육시설 지도 선생님들께 전달받았는데, 어떠한 정보도 전달받지 못한 채 2주를 더 머물렀고 재판 당일 날 기존의 양육시설 선생님들이 가정법원으로 데려가 재판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참여자 4]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애들이 살짝 겁먹고 정신 차리라고 (6호 시설에) 2주 이렇게도 보내거든요? 체험으로. 반성하는 기분으로 갔다 오라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원래 2주만 있고, 나오는 날이 12월 14일이었나? 아직도 기억나. 12월 14일이 원래 나오는 날이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 그냥 거기서 2주 더 있다가 심사원으로 갔죠. 4주 있다가 갑자기 스타렉스(법무부 호송차량) 한 대가 오더라구요. (…) 제가 울고불고 따졌죠. (내가 통고로) 왜 가냐고. (…) 막 (아동양육시설 선생님들이)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더 잘 알지 않냐면서 그러던데요?

특히 소년사법 전반에 있어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처분을 알 권리는 상당히 제한되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간 당일에 구인영장에 따라 곧바로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되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참여자 대부분 소년보호재판에서 '잘못을 했으니까 처분을 한다'는 결정내용만 전달받았을 뿐, 설명을 듣고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었다거나, 당시에 부당하다고 생각했더라도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거나 표현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없었다. 소년원 처분을 경험한 참여자의 경우, 시설에서 징계처분 결정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다고 하였다.

[참여자 18] 처음에 제가 사고를 친 것 때문에 경찰 조사를 가야 했는데, 제가 구인영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잡아야 하니까, 너 일단 조사받을 게 있어 라고만 해서 조사만 받으러 갔거든요? 가서 조사를 다 받고는 경찰이 "너 구인이야." 그렇게 말해서 떨어져서 심사원으로 갔었거든요. 그게 기억이 나요.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가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소년분류심사원)로 들어갔어요. (…) 법원에서는 "너 이래서 이랬고, 나가서도 똑같은 거 같고. 너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으니 10호 처분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갔어요. (첫 재판을 받은 만 13세) 그땐 그건(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안 물어봤었어요. 제가 나중에 커서는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준비하라고 해서 했는데, 준비해가면 막상 물어보지 않을 때도 있었고.
[참여자 19] (소년원에서 징계회의) 끝나면 말해주죠. (결정이) 이해 안 돼도 뭘 어떻게 해요. 바꿔줄 수, 바꿔주질 않는데.

⑧ 사생활의 보호

본 면접조사를 통해 3개 지역 소년분류심사원과 4개 지역 소년원의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은 복도와 생활하는 각각의 방(호실)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과 샤워실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였다. **소년분류심사원(남성)의 경우, 샤워는 문을 다 열어 놓은 상태에서 감독하는 선생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소

년분류심사원(여성)에 위탁되었던 참여자는 화장실과 샤워실 문 초입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샤워실 내부가 보이게 되어 있어, 샤워할 때 신체 일부가 보일 것 같았다고 하였다. 다만, **소년원은 최근 샤워실과 화장실에 설치된 CCTV를 철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6호 보호처분 위탁 시설에서도 CCTV가 사용되고 있었으나, 생활하는 방과 화장실에는 CCTV가 없었다는 시설도 있었다.

[참여자 1] 거기 있어요. 분류심사원 화장실, 샤워하는 데 CCTV 있어요. 샤워하거나 화장실 갈 때 동행하고, 바로 앞에 문 열고 앉아있어요. / **소년분류심사원(남성)
[참여자 16] (CCTV는) 전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사각지대가 없어요. 그냥 싹 다 있어요. / **소년분류심사원(남성)
[참여자 6] 샤워실에서 씻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제가 친구랑도 안 씻어봤는데. (샤워실이) 'ㄷ'자인데 이쪽(바깥쪽)에서 씻으면, CCTV에서 엉덩이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다 안 쪽에서 씻으려고 하는데. (…) 화장실을 거쳐서 들어와야지 샤워실이거든요.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 하나, 둘, 셋, 이렇게 그 변기가 있고, 여기(문에서 오른쪽)에 세면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세면대 안쪽)에 세탁기 있고, 그리고 여기 안(문에서 정면, 가장 안 쪽)에 약간 요렇게 공간이 있는데 여기 문 위에 바로 CCTV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씻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씻으면 CCTV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 **소년분류심사원(여성)
[참여자 8] 화장실에 CCTV가 있어서 좀 불편했어요. 샤워실에도 CCTV가 있어요. 샤워실에서 애들 다 옷 벗고 샤워하는데 창문에서 선생님이 지켜봐요. (…) 화장실이랑 샤워실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 **소년분류심사원(여성)

CCTV가 폭력과 같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있다는 간단한 이야기 정도는 들은 적 있다고 답한 참여자는 한 명 있었다. 그러나 CCTV의 설치 목적과 운영 규칙 및 설치 장소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상세하게 안내받은 아동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및 6호 시설 등 모든 소년보호시설에 CCTV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그만큼 별다른 불편함이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여자 1] (6호 시설 ***은) 괜찮아요. 거긴 잘못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애들 죄 지어가지고.
[참여자 4] CCTV가 있는 이유는 말해주셨어요. 다 그 괴롭힘하고 그런 거잖아요. 공동체 생활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솔직히 말해서 범죄하고 들어오니까.
[참여자 8] (CCTV가) 방에 있는 건 상관없어요. 애들이 싸울 수도 있고, 좀 안 좋은 애들도 있으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6] 솔직히 필요는 하겠죠. 저희가 도망갈 수도 있고 애들 때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참여자 17] 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여기서 CCTV 없으면 또 큰일 날 수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구타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남자들끼리 있다 보면. 심사원에서는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건데 그렇게 큰 것은 없었고, 소년원에서는 몇 번 봤어요.
[참여자 20] 근데 (CCTV가 왜 있는지는) 안 물어봐도 알아요. 싸움방지도 그렇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도 그렇고.

다만,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에서는 각 방에 설치된 방송장치를 통해 CCTV로 확인되는 아동들의 행동에 즉각 개입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소년원 송치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자신들의 행동이 시시각각 통제되고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CCTV가 불편하게 느껴졌다고 응답하였다.

[참여자 5] 근데 저도 CCTV 있으면 불편해요. 호실에요. 애들이랑 같이 장난치면 '하지마라', 누워있으면 '눕지마라', '일어나라' 이러고, 다 같이 서 있으면 '앉아라'라고 바로 메시지 띄우고. (CCTV가 있더라도) 방송을 안 한다면 저희도 편하죠.
[참여자 6] 방에서 막 스트레칭하다가 걸리면 그 방송이 있어요. 뭘 이렇게, 천장에 방송장치가 달려있는데 얘기를 하죠. 막 "몇 반 ○○○, 운동하지 않습니다."하면서.
[참여자 14] 근데 방에 있는 CCTV는 이제 선생님들이 보면 만약에 누가 누워있다. 그러면 바로 방송해 가지고 '눕지 말고 일어나라' 그러고. 말 안 들으면 바로 벌점주거나 하니까 좀 너무 빡빡하다고 해야 하나.

소지품은 법원 재판 끝난 직후에 보호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할 때 전부 개인 봉투에 담겨져 보관되며, 이에 대한 설명은 안내 종이 한 장과 함께 전달이 된다고 하였다. 수거된 개인 용품들은 아동 개개인의 재판 결과와 그에 따른 이동 상황에 따라 함께 전달되고 있었다. 다만, 법원 재판 직후 소지품 수거 시 강압적으로 빼앗겼다는 경험이 있었다.

[참여자 14] 소지품 같은 건, 비둘기방(법원 재판 대기실)에 처음 들어갔다가 만약에 '심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다시 비둘기방 문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법무부님들이 이제 막 힘으로 엄청 하셔가지고 주머니에 뭐 핸드폰, 담배, 지갑 이런 거 소지품 다 빼서 부모님한테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심사원 갈 때까지는 제 옷 입고 있다가 신입방으로 가기 전에 한 줄로 쭉, 그 막 커튼 쳐져 있는 방 같은데 들어가서 다 옷 벗고 몸 확인하고, 옷이랑 뭐 팬티, 양말, 신발 이런 거 검은 봉지에 묶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고 심사원 옷 입고 그러고 신입방으로 들어가요. (…) 제일 기분 나빴던 건, 비둘기방 딱 들어가면 그냥 함부로 주머니 다 뒤지는데. 어떤 애들은 패딩입고 있었는데 그냥 막 벗긴 다음에 주

머니 다 확인하고. (…) 오늘 심리인 사람들은 아침에 개인 바구니랑 이불이랑 옷이랑 다 반납하고, '앞으로 모여라' 해서 앞으로 가면 (원래 본인) 옷 받아서 갈아입죠.

⑨ 자유박탈의 제한

경찰서 유치장에 있거나 구치소에서 미결구금된 경우도 있었다. 유치장의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까지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열흘까지 구금된 경우도 있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보호를 명목으로 유치장에 구금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 7] 유치장에는 8일인가 있었어요.
[참여자 15]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고, 이제 경찰서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제가 저지른 잘못이 막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원래 풀어주는 게 맞다고 그랬는데, 수녀님들(참여자가 거주하던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이 그럼 법원에서 이제 데려갈 때까지 48시간 동안 맡아 달래요. 그래서 유치장에 갔어요.
[참여자 18] 유치장에 4일째 되는 날. 4, 5일? 그때쯤 되는 날에 실질심사 보고, 그때 구속영장 발부되어서 7일째 되는 날에 구치소, **구치소로 옮겨졌어요. 구치소에는 6개월 있었어요.

수갑을 통한 신체의 자유 박탈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여성 아동에 비해 남성 아동에 대한 자유 제한 조치가 보다 강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체포 즉시 경찰서에 있는 동안 또는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때 수갑을 찬 경험이 있었고, 재판 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이동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재판을 받으러 법원으로 이동하는 때에는 수갑 및 포승줄로 몸을 포박한다는 응답을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소년부로 송치되기 전 구치소에서 형사재판을 받으러 가거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남자와 달리 수갑만 채웠고 포승줄은 하지 않았다는 여성 참여자의 응답도 있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때에는 대부분 수갑을 차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수갑을 차고 재판을 받았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또한 본인의 재판을 기다리거나 함께 이동한 다른 소년들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법원 내 공간을 '비둘기방'이라고 하는데, 수갑을 찬 채로 최장 7시간을 대기한 경험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 1, 2]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재판장으로 이동할 때, 수갑도 채우고, 이렇게 아예 묶어버려요. 묶고 일자로 서 가지고 출발해요. 사람을 일자로 만들 수 있게 묶어요. (일자로 묶인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이렇게 앉는데, 이 옆으로, 양 옆으로, 두 명, 여기 두 명, (지그재그로) 앉아요. (…) 비둘기방이라는 대기실에서 짜장면도 이러고(수갑 찬 채

로) 먹어요.
[참여자 4] 오전 10시 재판이었는데, (소년분류심사원 넘어갈 때까지) 오후 5시까지 비둘기방에서 기다렸어요. 비둘기방에서 계속 수갑 찬 채로 있다가 짜장면 먹고, 화장실은 안 다녀왔어요.
[참여자 6] 위탁(**소년분류심사원)에서 법무부 차 타고 나오거든요. 그 날 재판 보는 남자애들, 여자애들 다 거기에 타서 나오는데, 거기 내려가기 한 10분 전 쯤 위탁 선생님들이 불러요, 복도로. '오늘 재판 보러가는 애들 나오라'고. 그래서 나와서 다 같이 수갑이랑 밧줄 차고, 다 같이 내려가죠. 차 안에서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참여자 15] 그 법원 들어가서 이제 비둘기방, 심판받기 전에 기다리는 곳이에요, 거기 가거나 법원 들어갔다 나오면 무조건 수갑을 차요. 판사님이랑 재판 끝나잖아요? 끝나자마자 (수갑) 차요. (…) 심사원 넘어갈 때 버스를 타거든요? 근데 그 전에 포승줄 다 매고 가요. 버스를 타는데, 애들끼리 막 포승줄 좀 더 자기 편하게 하려고 막 이런단(몸을 비트는 등) 말이에요. 주위에 다 고등학생인데 혼자 중학생(이라서) 막 '아아아' 이랬단 말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분류심사원 갔어요.
[참여자 18] 경찰서로 넘어가기 전에 3시간 정도는 수갑을 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수갑을 여경이랑 연결해서 차고 있었어요. 저랑 싸운 언니는 "말싸움 정도였고, 서로 밀치는 싸움 정도였다."라고만 말했는데, 저한테는 "경찰 폭행해서 여기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경찰이 제 몸수색을 해서 그랬던 거고(제가 머리를 자르고 외관이 남자 모습이긴 한데, 남자 경찰이 왔는데, 한 명은 제 몸을 잡고 한 명은 제 몸을 수색하는 거예요. 혹여나 위험한 물건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욕을 하면서 "여자인데 이렇게 해도 되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어? 얘 여자라는데?" 이렇게 말하고도 끝까지 수색하고 수갑 차고 파출소로 간 거거든요.), 이미 수갑을 차고 있었는데 어떻게 경찰을 폭행해요. (…) 2016년도였고, 1~2월 초였어요. 새벽이었어요. 밤 10시에서 새벽 3시 사이였던 것 같아요. 파출소에 있다가 경찰서에 옮겨 가서 조사를 받고, 거의 아침 즈음에 풀려났어요.
[참여자 19] **구치소에 있다가 재판받은 곳은 **이었거든요? 그 **으로 가거나 아니면 검사 만나러 갈 때 (수갑 찼어요). 근데 여자애들은 포승줄은 안 해요. 남자애들만 이렇게 막 포승줄하지, 여자애들은 그냥 수갑만 채우고 가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분류심사원과 소년원에서 독방은 처벌의 일환으로 흔하게 사용되고 있었는데, 독방 처분사유는 폭력을 행하였거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때 등으로 제시되었다.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모두 독방은 발 뻗고 누우면 딱 맞는 정도의 작은 크기라는 응답들이 공통적이었다. **소년분류심사원(남성)은 독방 안에 화장실이 있다고 하였는데, **소년분류심사원(여성) 독방은 화장실이 없었고, 이에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소년들이 화장실과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만 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경험도 있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여성 아동 참여자의 경우, 방에서 계속 떠들면 경고를 받은 후에 1번에 2시간 정도 '입원실'에 머물다가 온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수

용해야 하는 인원이 많을 때 입원실로 배치 받아 혼자 자는 경우도 있었으며, 난폭하거나 좋지 않은 행동에 대한 전염성이 우려되는 아동 또한 징벌의 형태로 입원실에 가기도 한다고 하였다. 한편, 같은 시설 내에서도 TV와 창문의 존부 등 독방의 구성 형태는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참여자 6] 여자애들은 기 싸움도 심하고 그러니까. 안에서 싸우면 입원실이라고 딱 매트리스 깔면 혼자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저도 방에서 애들이랑 장난 심하게 치고 해서 한 번 갔었는데, 거기서 잠은 안자고 한 두시간 정도 있었어요. (…) 운이 안 좋으면, 사람 많을 때 오면, 잘 데 없으면 거기(입원실)에서 혼자 자고. 아니면 난폭한 애들을 격리시켜 놓거나, 성병이나 전염성 있는 친구들은 분리하죠.
> [참여자 17] 9호 ** 이송 가기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처벌 받아서 각 방에 있었어요. 동생이었는데 좀 많이 까불어서 때렸는데, 그때 이송가기 한 3주 전이었는데 3주 동안 계속 징계방에 있었어요. (…) 바로 간 건 아니고, 이틀 정도 신입방에 있다가 들어갔거든요. (징계실에서는) 그냥 계속 앉아 있었어요. 편지지랑 편지 봉투는 있는데 써 봤자 안 보내줘요. 살다 보니까 알게 되던데요? 징계실에서 편지 쓰는 것은 안 보내줘요. 나와서 그것을 또 선생님한테 줘야 보내지는 거지.
> [참여자 18] (**소년분류)심사원 독방은 하나거든요(여성). 독방 안에 누가 있는 경우 학과장이라고 공부하는 곳이 있는데, 밤에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으니 거기로 갔어요. 학과장에 애들이 다 빠졌을 경우에는 자기 호실에 있었어요. 기존 독방에 가면 안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냥 조그마한 방 같았어요. (인터뷰 중인 4인용) 테이블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정도?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해요. 위에 CCTV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화장실 갈 때는 문이 잠겨 있으니 참았다가 애들이 없는 시간에 가야 하고, 씻는 것도 애들이 다 씻고 난 후에 저녁이 되어서야 씻을 수 있고. 아니면 안 씻거나 그랬어요. 심사원에서는 일주일 정도 있어 봤고요.

소년원 독방 징계의 경우, 징계기간을 정확하게 고지받지 못한 채 징계가 이루어졌다거나, 징계처분을 전후하여 거의 2달에 이르는 기간을 독방에 있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독방 역시 CCTV를 통해 행동이 통제되며, 독서와 반성문 쓰기 외 운동을 포함한 일체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하였다. 면회도 할 수 없으며, 독방 징계를 받는 동안에는 편지도 받아볼 수 없었다. **소년원에서는 자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반성문을 쓰기 위한 도구도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독방에 있는 동안, 블라인드로 창문을 가려 외부와 소통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보고도 있었다.

> [참여자 5] (독방은) 그냥 딱 네모 칸에다가 화장실 하나 있어요. (…) 딱 누우면 끝이에요. (제일 길게 있었던 건) 20일. (독방에 있는 징계) 3번 다 20일 있었어요. 징계실에는 운동

을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참여자 16] 독방에서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좁아서도 그렇고요, 운동을 아예 못하게 해요. 하루 종일 그냥 앉아있어야 해요. 누워있는 것도 안 돼요. 씻는 것도 정해진 시간에 씻어야 해요.

[참여자 18] 소년원에서는 두 달 좀 안 되게 있어 봤어요. 징계조치이기도 했고요. 징계를 받기 전에 분리를 해서 가둬놓는데, 징계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거기에 더 있고. 그래서 한, 두 달 쯤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 독방 안에서는 다 안돼요. 그 안에 연필도 자해할 수 있다고 해서 안 줘요. 아주 큰 잘못을 하지 않는 경우는 (반성문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 독방에 있으면 벌을 줘요. 하루 종일 천배 절하는 것 처럼이요. 하루에 2,000번 절할 때도 있어요. 징계 방 있는 동안 며칠 하고, 나중에는 반성한 애들에게는 반성문 30~40장 정도 쓰도록 해요.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면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애들은 책 정도 줘요. 그냥 딱 봐도 또라이고, 호실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에도 얘랑 못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가거든요. 근데 나와서 보면 괜찮은데, 거기(소년원) 안에서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애들은 호실에서 사는 것처럼 개별실로 보내놓는 경우가 있었어요. (…) 개별실에 있는 동안에는 (운동) 못하고, 주말에는 운동장 나가서 걷는 거 30분 정도요.

[참여자 19] 독방에서는 창문 그거 다 블라인드 내려가지고, 밖이랑, 아예 애들이랑 말도 못 섞게 하고. 24시간 중 자는 시간 빼면 호실 가운데 앉아가지고, 정좌로 이렇게. 깜지 쓰고, 삼천배하고. (…) 개별실에 징계받고 있으면 면회 자체도 안 되고, 편지 같은 거 온 것도 안 주고. 일단 외부랑 아예 우리반 애들이랑 다 차단시켜 놔요. 말도 못 섞게. 그러니까 만약 엄마가 면회를 오시면 '얘 지금 징계받고 있으니까 돌아가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그냥 돌려보내요. 아, (부모님께 면회 못 한다고) 사전에 연락은 하죠. 그런데 면회가 꼭 부모님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들도 오실 수 있고, 멘토 오실 수도 있고. 그럼 그 멘토들은 그냥 헛걸음하고 다시 가는 거죠.

구치소 소년방에 머물면서 옆방 청년들과 싸움이 잦아 처벌의 일환으로 조사방과 징계실에 있었던 경우가 잦았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조사방은 발을 뻗고 눕기에도 좁아 잘 때에도 앉아서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징계실은 조사방보다 크기가 더 작았다고 하였다.

[참여자 7] 구치소에서 조사방 갔다가 진골방(징계실) 갔다가. 제가 소년부 송치되기 전까지 조사방에 있었어요. 조사방에서는 다리를 펴고 못 누워요. 거기서 며칠 밤을 있는 거죠. 진골방은 더 심하죠. 조사방은 말 그대로 그 안에서 조사를 받는 거고, 조사를 받아서 내가 진짜 잘못을 했다면 진골방으로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처분을 받아요.

⑩ 성인과 분리수용

유치장이나 구치소에도 소위 '소년수 방'이라 불리는 별도의 방이 있는 것으로 일

반적으로 보이나, 서울지역에 소재한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성인과 함께 열흘간 구금되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아이들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성인 수용자와 함께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참여자 2] (서울 소재 경찰서에서) 유치장은 어른이랑 같이 있어요. 심사받을 때까지 10일 동안 있었어요.
[참여자 7] (경남 소재 유치장에서) 소년방은 따로 있어요. 유치장에 있다가 불구속 심사받고, 구속 확정되고, 구치소로 들어간 거죠. 구치소에서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반 년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구치소에도 소년수 방이 따로 있어요. (구치소에는) 운동방이 따로 있어서, 성인들은 운동할 때만 마주쳐요. 식사는 방 안에서 먹어요. 열일곱 살에서 열여덟 살 때 일이에요.
[참여자 16] 구치소는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봉사자라고 있어요. 그 청소년반인데 어른 2명이 딱 들어가서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거죠. 구치소에 2달 있었는데, 애들 4-5명이랑 성인(수용자) 2명이랑 같이 있었어요.
[참여자 19] 유치장에서는 어른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거기 칸이 두 칸이 있거든요. 남자 칸, 여자 칸 있고. 여자는 어른들 다 같이. 여자 칸에 그냥 여자 성인이랑 같이 다 있었어요. (…) **구치소에는 청소년들 따로 있긴 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저 거기서 맨날 싸워가지고, 막 방을 옮겨줬는데, 전방을 해줬어요. 딴 방 옮겨주고 아줌마들 같이 있게 하고. 근데 거기에서도 맨날 아줌마들하고 싸워가지고 방 다 돌아댕겼죠. (…) (청소년방도) 아이들끼리만 있는 건 아니고, 미성년자들 다 그 방에 넣고, 아줌마들 한 3, 4명? 같이 넣고. 우리 교육시키고, 거기 방장 이모가 인원 점검할 때 그럴 때 다 하게 하고요. 아줌마들 좀 갑질 심했어요. (엄마가 면회를 안 왔는데) 저보고 막 엄마 없다면서 뭐라 하고. 구치소에서는 영치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사는데, 돈 없다고도 뭐라 하고.

⑪ 대안적 처분 / 다이버전

참여자 모두 전반적으로 소년사법의 '회복적 기능'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보였다. 자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안에 갇혀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나가서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사회와 격리된 곳에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 그쳤다.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 대부분의 6호 보호처분 위탁 시설에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느끼거나 경험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재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후회는 일시적일 뿐,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를 준비하는 계기는 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참여자 4]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이요? 그거 그냥 재판 기다리는 곳 아니에요? 재판 결

정되는 거 기다리는 곳.
[참여자 6] 첫 번째 재판 때는, 그냥 재판장에서는 잠깐 변하는 것 같아요. 좀 진짜 간절해지고, 가기 싫으니까. 재판장 안에서 잠깐 그때 뿐, 나가면 다시 예전 애들이랑 어울릴 수밖에 없고, 다시 사고 칠 수밖에 없고. (…) 여기(소년분류심사원)에 가서 반성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짜증나서 빨리 탈출하고 싶다는 마음? 약간 그런 마음이 더 커요.
[참여자 13] (소년분류심사원이나 6호 시설 같은 곳은) 소년들 벌주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20] 그냥 밤마다 죄책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했던 일 때문에 제가 피해를 봤고, 그거 때문에 제가 안 좋은 쪽으로 갔으니까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그냥 열심히. 그런 것(예전에 했던 실수) 하지 않고. 나오고 나서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보호관찰을 받는 중에는 더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뿐, 소년사법의 '회복적 기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보호관찰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복귀 과정을 지원받았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없었다. 사회봉사는 청소나 노인복지시설 봉사 등을 수행한 참여자가 있었고, 성매매(알선영업행위등) 사건의 피해자였음에도 성폭행 관련 수강을 하는 등 처분에 적절한 수강명령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보고되었다.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자기반성이나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없었다.

[참여자 6] 보호관찰, 살짝의 긴장감은 있죠. 언제든 저를 구인시킬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사고치고 다니면 언제든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참여자 9] 성폭력 및 성매매로 (수강명령을 받으러) 거기 가니까, 저 빼고 다 가해자 애들인 거예요. 저 혼자만 이렇게 피해자인데. 어쩔 수 없죠.
[참여자 18] 보호관찰소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없었어요. 뭐만 하면 경고장을 주겠다 하고. 보호관찰관이 (나의 새로운 삶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못 느꼈어요.

현재 경찰단계에서의 훈방은 다이버전의 한 종류로 고려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검사 조사가 다시 개시될 수 있으며, 누적된 경찰조사 기록이 보호처분 가중 사유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참여자 18] 집을 제가 13살에 나왔어요. 그때 나와서 흔히 말하면 불량아이들과 어울렸을 당시, 절도를 많이 했을 때가 만 11세밖에 안 되니까 집 주소를 말하지 않는 한 일시적으로 쉼터로 갔어요. 파출소에 가서 말하지 않으니 쉼터로 갔던 게 최초의 기억인 것 같아요. 풀어주기에는 어리니까. 그런 경우가 15살 때까지는 다반사였어요. 너무 어려서 따로 소년보호재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조사받으면 풀려나고, 집 주소를 계속 안 이야기하니까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15살 무렵, 2013년 6월 17일이 제가 첫 (소년)재판

에 들어간 경우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소년원으로 갔었어요. 10호로 갔었어요.
[참여자 19] 중학교 1학년 때 가출해서 애들이랑 같이 있다가 애들이 저한테 막 폰팔이 이런 거 하는 거 알려줘서, 그거 하다가, 처음에 그때는 저 어리잖아요. 촉법소년 그거 때문에 풀려났거든요. 풀려나가지고, 맨날 조사만 받고 훈방조치 되고 하니까 계속해도 되는 줄 알고 나오면 또 하고, 나오면 또 하고, 계속 그러다가 15살 때 저 생일 지나자마자 구속, 그 영장 발부되어 가지고. (그때까지 사건이) 오십 몇 건? (쌓여있었어요) 그게 그 전에 다 훈방조치 되었던 게, 생일 지나고 한 번에 다 사건으로 올라갔어요. 마지막에 걸렸을 때, 그 날에 뭐냐, 유치장, 경찰이 유치장 보내가지고 유치장에서 실질심사? 그거 보고. 저보고 막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집에 없었으니까.

특히 다이버전은 회복적 사법의 한 내용이다. 소년사법은 가해아동이 공동체 구성원인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스로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그것이 곧 피해자의 내면적 회복을 지원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 아동의 가족적 환경, 보호자의 역할은 배제될 수 없다. 그러나 경찰·검찰 조사, 재판 및 보호처분 전 단계에서 부모를 포함한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이루어진 경우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재판에서 아동과 부모에게 공동으로 부과하는 권고 처분을 임시결정으로 받았다는 참여자 1명의 응답이 유일했다.

[참여자 9] 판사님이 저한테 그거 줬어요. 일기 쓰는 거? 반성문이라기보다, 이제 엄마랑 저랑 같이 막 돌려쓰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학교 다녀야 된다고 방학 때 재판 봐달라고 했거든요. 3월이나 4월에 재판 연기하고, 일기장 들고 7월인가 8월쯤 재판 받았어요.
[참여자 19] 엄마가 저 포기하지 않고 면회 와주고 그랬으면… 좀 그랬을 것(변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다 엄마 오고, 저보다 심하게 막 살인미수한 애들도 엄마가 다 와주시는데. 전 그런 것도 아니었고. 가출해서 돈 벌려고 그냥 애들꺼 휴대폰 뺏어가지고 판 것뿐인데. 엄마 안 오시고. 한 번도 안 오셨거든요. 저 맨날 그때 진짜 반성을 좀 했었어요. 생각을 오래,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엄마랑 화해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편지도 막 진심으로 썼어요. 편지도 계속 보냈어요, 지속적으로. 근데 답장 한 번도 없고 면회도 안 오시는 거예요. (만약 법원에서 소년원에 있는 동안 엄마는 2주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아이의 면회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엄마가 정말로 면회를 와야만 했다면) 그럼 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엄마밖에 없잖아요. 편 들어줄 수 있는 게. 엄마도 안 오니까 더 막 살았던 것 같아요.

⑫ 낙인 예방

죄를 지어서 조사를 받는 것이니 범죄자처럼 조사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도 있었으나,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동안 경찰의 편견이 불편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러나 학교 등에는 (스스로 알리지 않은 이상) 소년재판과 관련한 일련의 사실이 알려져 불이익을 받았다는 경험은 없었다. 한편, 성매매 사건으로 인한 경찰조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아동·청소년'[101]으로 분류된 참여자의 경우, 경찰서의 개방된 공간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피해자로서 보호나 배려를 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 [참여자 17] 계속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면 편견이라는 것이 있긴 하죠. 경찰서 가면 '이 새끼 또 왔네' 이러면서 '사람 되기 글렀다' 이런 식으로 좀 기분 나쁜 말 하니. 그때마다 경찰이 성질 내면 또 저는 막 대들고 그렇게 하니까 좀. (좋게 말해줬다면) 아무래도 대드는 것도 없고 그냥 조용히 조사만 받고 가지 않았을까요?
> [참여자 18] 최근에 제가 5월에 남자애들이랑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됐는데. 말리면서 밀치는 싸움 정도였는데 경찰 조사에 갔더니, '얘네가 신고했으니 오로지 피해자고 저는 가해자'라고 하는 거예요. 조사하는데 제가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니 동등하게 잘못을 해도 제가 더 잘못을 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엄청 억울했어요.
> [참여자 20] (학교) 담임선생님이 여기(자립생활관) 사는 건 아는데, 제가 한 일은 잘 몰라요. (선생님이) 저를 불편하게 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 [참여자 9] 제가 그냥 성매매 알아서 했다, 자발적으로 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대충 답하고 이러면서. 자기들도 알아요. 가해자랑 말 맞췄다고. 제 앞에서 대놓고 말을 해요, 남자 경찰관이. 근데 그렇게 하는 거를 알면서도, 제가 대충 거짓 진술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써요. 그냥 쓰고 넘어가는 거예요. (…) (경찰 조사받던) 그 때 겨울이었잖아요. 제가 근데 성매매할 때도 맨날 성 구매자가 짧은 치마 이런 것만 입혔단 말이에요. 추운데도, 치마가 진짜 짧았어요. 짧은데도, 담요 하나도… 그냥 뭔가 좀 덮어줄 수 있잖아요. 슬리퍼 신고 있고, 막 덜덜 떠는데, 그런데도 그냥… 아무도 그런 게 없었어요. 밥은 무슨.

⑬ 관계자의 전문성 / 역량강화

경찰, 검사, 법관, 소년보호시설 종사자 및 보호관찰관 등 소년사법 관계자는 아동의 자기반성과 회복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관련하여, 참여자 대부분은 자신들의 행위나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대화를 나눠주었던 종사자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보고하였다.

---

101)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아동·청소년'규정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여 이들이 성매매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6. 15.자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참여자 2] 그냥 저희 같은 애들 이해해주는, 그러니까 '어려서 그렇다', '이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이해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가 사소한 거라도 잘못하면 어떻게든 다시 보내려 하고, 그런 사람들 말고. 따로 저희를 불러서 말 잘해주고 이해하는 선생님들 있어요. (그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잘해야겠다 생각하죠. 그렇게 저희가 이 선생님한테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은 것들도 다 체크하는) 선생님들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폭발하는 거죠.

[참여자 4] (소년분류심사원 선생님들은) 딱히 저희한테 뭐 행동하는 게 없어요. (저희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참여자 6]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선생님들 되게 무시하는 말들 많이 해요. 분류심사원 선생님이면 우리가 몇 호(보호처분)를 가야 하는지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근데 이제 또 애들은 자기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 말에 계속 벌벌 떠는 거예요.

[참여자 8] (좋았던 선생님은) 없었어요. 의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선생님이든, 판사님이든 다 못 믿었어요.

[참여자 18] 거기(소년원)에서는 간식을 많이 주는 선생님이 정말 좋았던 거 같아요. 좋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여기에서 열심히 배우는 애들을 제외하고는 대하는 게 비슷했어요. 거기에서도 잘하는 애들만 나뉘는 느낌이었어요. 잘하다가 못 할 수도 있는데요.

[참여자 19] (소년원) 중등반 때 담임선생님이 여자 두 명이었거든요. 근데 한 명은 좀 마녀 같았어요. 그 선생님은 진짜 별로였고요, 다른 담임선생님은 좀 엄마 같았어요. 완전 착했어요. 화도 안 내고. 맨날 막 타일러주고. 다른 선생님들은 다 막 저 싫다고, 저랑 말 안 섞었어요. '나한테 말 걸지마' 이러면서. 그런데 그 선생님은 맨날 그럴 때마다 와 가지고 상담해주고, 그 선생님이 우리 집까지 찾아가 줬거든요. 찾아가서 엄마 설득해주고.

특히 재판에 있어, 판사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다며, 판사의 마음에 드느냐에 따라 판결이 나는 것 같다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사재판 중 소년부로 송치된 참여자의 경우, 형사재판보다 판사의 재량이 큰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자 3] 판사님이요? 그냥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보호자 없는 애들은 지낼 데도 없고, 내보내면 또 사고치고 하니까 그냥 6호 뺑뺑이를 돌리든 뭐 그런 거.

[참여자 4] 내가 그 전에 폭행으로 1호 처분 받고 (같은 해) 3월 달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판사님이 왜 또 왔냐 하면서 그러는 거야. '내가 한 번 봐줬는데 안 되겠구나' 하면서.

[참여자 7] (형사재판이랑)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형사재판은 답이 정해져 있는데, 소년부 재판은 답은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판결을 할 때 죄명을 본다거나 친구의 행동을 분리 심사하면서 6~70% 정도는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이상은 판사님이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눈을 보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을 못하게 하려고 쳐다보라고 하는 거 같았어요. 이 친구가 정말로 반성을 하는지, 진짜 진실한 것인지, 떨고 있는지를 판사님들이 보는 것 같아요.

소년사법의 목적은 갈등상황에 있는 개별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아동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에 있으며, 이를 위한 관계자의 전문성은 특히 중요하다. 즉, 연령과 신체적 성별에 따른 발달적 특성과 함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장애, 인종 및 국적 등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소수자 아동에 대한 배려는 인권감수성에 기반한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경찰조사부터 소년보호재판, 보호관찰을 포함한 보호처분 전반에 종사자의 낮은 인권의식 및 젠더 감수성이 아쉬운 현실이었다.

> [참여자 18] CCTV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긴 하죠. 물론 애들이 사각지대를 찾아서 잘못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소년원 안에서는 레즈비언을 정신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독교 분들은 특히요. 여자아이들이 손만 잡고, 팔짱만 껴도 그래요. 머리 짧은 여자 애가 그러면 더 심하게 생각해요. 제가 머리가 짧은 상태였고, 저는 동성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쪽지만 주고받아도 벌점을 주고 그랬어요. 그냥 머리 짧은 애들은 독방에서 벌점을 받는 정도로 끝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진짜 동성연애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 아예 징계를 줘버리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그냥 쪽지를 주고받은 것이어도, 동성연애다 싶으면 그렇게 했어요. (…) 저보고 "네가 성적 지향을 고쳐야 한다."고 했어요. 뭐만 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했어요.

(나) 시설수용 아동의 권리

시설수용 중에 있는 아동의 건강, 학습내용 및 처분변경 등 일련의 생활변경 사항에 대해 부모 및 보호자가 알 권리는 일반원칙의 '부모 및 보호자의 참여'에서, 시설에서의 징계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자유박탈의 제한'에서 제시된 응답과 중복되었다. 이에 본 분석항목에서는 제외하였다.

① 부모 및 보호자의 알 권리

'(가) 소년사법에서의 아동권리 일반요소 ④ 부모 및 보호자 참여' 내용 참조

② 개별면접 및 상담조사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분류심사관과의 면담 외 심리상담이 진행되었다는 응답은 없었다. 6호 시설 ****에 감호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참여자의 경우, 담당 상담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 상담을 진행되었고, 400여개 문항을 체크하는 심리검사 경

험도 있었으나, 이때에도 상담으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 심리검사 결과 또한 통지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소년원의 경우, 각 담임선생님들이 상담이 필요하다고 지목한 대상 아동 외에는 상담을 신청한 아동에 한하여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참여자 4] (6호 시설에서 심리평가 같은 거) 했어요. 400문항 있었나? 했었어요. (결과는 설명) 할 거라고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까먹은 것 같아요.
[참여자 5] (소년원에) 상담 선생님 있는데, 전 상담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자기네들 상담하는 애들 정해져 있어요. (상담은) 자기가 신청해야 돼요. 근데 저는 굳이 신청할 필요도 없고.
[참여자 16] 소년원에서 신입 때 상담 선생님 한 번 만나요. 그 뒤로 한 달에 한 번씩 상담 선생님들 오시던데요. (상담 받는 건) 무조건은 아니에요. 제가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돼요.
[참여자 17] 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서 상담해 본 적 있어요. 그냥 진로상담 같은 거. (심리상담 같은 건) 없어요. 집단상담을 받은 적은 있는데, 심리상담은 아니었어요. 그냥 직업, 저희는 아무래도 (소년원에서) 직업훈련반이니까 진로계획 그런 상담. (질문 400개 있는 설문지 같은 거는) 심사원에서도 하고, 소년원에서도 하고, 다 해요. 똑같아요. 결과는 그냥 종이로 줘요. 읽어본 적은 없어요. 봐도 이해 못할 거 아니까 그냥 버렸어요. 그거 성격검사 거든요.

시설에 수용된 여성아동의 경우, 신체적 특성 및 상대적 취약성으로 인한 특별한 배려가 요청된다. 그러나 전국 10개 소년원 중 여자 소년원은 2개밖에 없는 등 소년사법 전반에서 여성아동에 대한 고려는 현저히 부족하다.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임신한 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는 참여자의 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아동 최상의 이익에 입각한 적극적인 대안을 찾기보다는 시설 외 처분으로 처분변경에 그치는 현실이었다.

[참여자 19] (임신한 친구) 같은 방에 있었어요. 그게 권한을 좀 더 많이 주긴 했는데, 우리 입장에선 재수 없었죠. 짜증나고. 왜냐하면 걔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임신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들어왔는데, 막 급식실에서 걔 혼자 젤리 주고, 과일 주고 하니까. 그리고 청소 같은 것도 안 시키고, 선생님이. 저 그때 15살이었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됐죠. 근데 또 임신한 애들이 약간 좀 재수가 없어요. 일부러 임신한 거 믿고 더 까불거든요. 저랑 말싸움하고 있는데 때릴 수가 없잖아요. 욕만 하려 했는데, 걔가 '니 나 때릴 수 있음 때려 보든가.' 막 이러고, '니 살인범 된다.'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그때는 선생님들이 말려줬어요, 쟤 홑몸 아니라고 참으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한테도 개겨요. 수갑 못 채우

니까. 묶지도 못하고. 임신한 애들은 잘못했다가 유산이잖아요.
[참여자 18] 정말 (병원에) 가야하는 경우는 임신을 해서 들어오는 애들이에요. 아기 건강 상태를 보러 (병원에) 가죠. 그런데 임신 기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가요. 그리고 아기를 낳아야 하니까 처분이 쉼터로 바뀌어요. 소년원에서 아기를 낳을 순 없잖아요. 쉼터로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잘 하면 나갈 수 있음 처분으로 바뀌죠. (…) 낳기를 원하지 않아도 그냥 낳아야 했어요. 거기 들어온 이상 그냥 아기를 낳아서 보내던데요. 낙태는 불법 아니에요?

③ 물리적 환경과 시설

방 크기 및 입·퇴소 아동들의 인원 숫자에 따라 정원은 다르게 나타났으나, 특별히 방 크기 대비 인원이 많아 불편하거나 비좁아서 힘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한 참여자는 없었다. **소년분류심사원(남성) 신입방은 보통 10명인데, 참여자가 심사원에 있었던 1월 1일은 법관 인사이동 시즌과 겹쳐 재판이 늦어진 사정 등으로 인해 당시 약 30명이 함께 있었다고 하였다. **소년분류심사원(여성)에 있었던 참여자는 많으면 6명, 적으면 3-4명 정도 한 방에 있었으며, 6명이 있을 때에는 매트리스를 다닥다닥 붙여서 잔다고 표현하였다. 6호 시설에서는 적게는 4-5명, 많게는 6-7명이 한 방을 함께 사용하였다. 생활실 소규모화가 진행된 **소년원 각 방의 기본 정원은 4명 전후였는데, 그렇지 않은 소년원의 경우, 정원 7-10명인 방에서 최대 17명이 함께 생활한 적도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도 있었다.

보호처분 중에는 정해진 단체복이나 제공되는 의복을 입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보통 속옷과 의복이 각 2벌씩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옷은 직접 빨고, 상하의 빨래 담당은 선생님이 지정하거나 아이들이 내부적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샴푸나 비누, 치약 및 생리대 등 생필품은 적당히 조절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참여자 18] 샴푸나 비누, 치약 등은 자기가 조절해서 써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줄 때도 있고, 2개월에 한 번씩 줄 때도 있는데, 잘 조절해서 써야 해요. 기간보다 더 빨리 써버리면 선생님께 이야기를 해서 벌점을 받고 다시 받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빌려쓰라고 해서 빌려쓰거나 해야 해요. 근데 다시 받으려면 벌점을 받긴 해야 해요. 낭비했다면서 벌점 주죠. (…) 생리대 같은 건 지원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몸에 안 맞았는데도 써야 했어요. 잘못 쓰면 피부가 일어나는데도. 안 맞는다고 말해도 따로 뭘 해주지 않잖아요. 한정적인 부분에서 부모님이 사 와서 물품을 가져오면 쓸 수는 있는데, 아니면 그냥 써야 해요. 근데 부모님 안 오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써야죠. 개수가 부족할 때도 있었구요. 그게 다반사이긴 한데, 생리대는 부족할 경우에는 지원해주던가 아니면 벌점을 부과해서 주기도 했어요.

모든 소년보호시설에서 샤워에 대한 자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해진 일과 시간 내에, 정해진 횟수와 1회 샤워 시간에 따라 샤워를 할 수 있었다. 여름에 온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참여자의 경험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 6] 빨래도 그렇고 겨울에는 저장수가 있어가지고 뜨거운 물로 씻을 수 있는데, 그게 앞에 애들이 다 씻으면 뒤에 애들은 뜨거운 물로 못 씻는다는데, 여름은 아예 차가운 물이거든요.
[참여자 18] 10월? 11월 즈음 되어야지 따뜻한 물 나와요. 따뜻한 물은 앞에 있는 애들이 다 쓰면 끝에 있는 애들은 못 써요. 그럼 미온수로 그냥 씻어야 해요. 여름에는 따뜻한 물 전혀 안 나와요. 그냥 냉물로 씻어야 했어요.

각 시설마다 냉·난방시설 구비정도와 이용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선풍기만 있는 소년원도 있었고, 난방의 적절성 여부도 참여자의 경험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참여자 5] (에어컨이나 냉난방 시설은) 원장마다 달라요. 작년에 있던 원장님은 난방, 뜨거운 물 이런 것을 중요하게 잘 해 줬는데, 이번 원장님은 먹을 것을 위주로 해서 엄청 추워요. 난방도 안 틀어주고. 이번에는 난방도 12월 때부터 틀어주고, 차가운 물로 샤워해야 했어요. 춥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에어컨은 복도에 있고, 방에는 선풍기 있어요. 더워서 다 옷 벗고 있어요.
[참여자 14] 겨울이었는데, 엄청 추웠어요. 샤워할 때 따뜻한 물 나오는 거 이외에는 난방이 거의 안 됐어요.

식사는 상대적인 경험으로 보고되었다. 대부분의 참여자가 **소년분류심사원의 식사는 맛이 없고 충분하지 않다고 밝힌 반면, 현재 1호 처분으로 쉼터에 있는 참여자의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의 식사가 훨씬 좋았다고 응답하였다. **소년원은 맛이 없지만, **소년원은 맛있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6호 시설의 경우 식사를 하고 싶지 않다면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단체생활이기 때문에 식당으로 이동은 함께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다.

[참여자 2] 저희가 일부러 잘 안 먹어요. 살 빼려고. (밥 안 먹어도) 선생님들이 뭐라고 안 해요. 그래도 식당에는 같이 내려가야 해요. 방에 있으면 안 돼요. 이탈 때문에. / 6호 시설
[참여자 8] (밥을 안 먹고 싶어도) 안 먹으면 안 돼요. 다 안 먹더라도 조금이라도 먹어야 해요. 안 먹으면 혼나요. / 6호 시설

[참여자 16] 심사원에선 많이 배고팠죠. 그래서 밥 먹을 때 밥을 엄청 먹었죠. 심사원은 간식도 주말에 한 번밖에 없고.

④ 외부와의 교류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외부와 교류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6호 시설에서는 지위 체계가 있어 일정 지위 이상이 되어야 면회 및 외출이 가능하였다. 편지는 원칙적으로 가족에게만 허용되었다. 소년원의 경우, 편지교류는 6호 시설보다는 자유로웠다. 1호 보호처분으로 위탁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경우에도 외출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었다.

[참여자 5] (**소년원에서) 친구들한테 편지 쓰면 검사하고 발송해줘요. (밖에서 편지가 들어올 때) 몇 명이 모르고 그냥 다 쓰면, 그 내용을 커터칼로 잘라요. 보면 잘려져 있어요. 전화는 안 돼요.

[참여자 6] [**소년분류심사원(여성)에서] 면회는 12시부터 12시 반까지인가, 하여튼 20-30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음식을 늦게 시키면 밥을 못 먹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 여기(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는 시간이 지나서 조금 안정되고, 확실히 재비행하지 않을 것도 있고, 위험요소가 별로 없는 애들이면, 집에도 자주자주 갔다 오라고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이랑 관계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굳이 여기서만 잡아놓는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선생님과의 신뢰도 문제인 것 같아요. 집에 갔는데 가출이나 외박을 한다든지 그러면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믿어줄 수가 없으니까 잘 안 보내주려고 하는? 막 땅땅 정해져 있는 건 아니구요.

[참여자 8] (6호 시설에서는) 엄마가 전화를 하면 받을 수는 있고, 지옥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 지위가 있는데, 층장부터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이끔이'와 '세움이'는 전화도 할 수 있고, 외출해서 놀다 올 수도 있어요.

[참여자 14] 심사원에 있을 땐 편지 하나도 못 받았어요. 왜냐면 들어갈 줄 몰랐고, 애들한테도 '재판을 본다'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냥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참여자 18] (**소년원에서) 편지는 쓰는데, 소년원 출신인 아이한테는 쓸 수 없어요. 이름을 다 조회해 봐요. 대단하죠? 소년원에 갔다 나온 애도 쓸 수 없어요. 지금은 된다고도 들었던 거 같은데, 제가 있을 때에는 안됐어요.

[참여자 19] (**소년원에서) 벌점과다여도 면회는 할 수 있어요. 그냥 징계 받지만 않으면 할 수 있어요. 전화는 그게 혜택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마다 벌점 그게 정산이 되거든요. 정산 나오면 그때부터 차례대로 해줘요, 선생님들이.

대부분의 자유 시간에는 TV를 시청한다고 하였으나, 프로그램 선택은 제한되며, 그 결과 외부와의 교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컴퓨터나 핸드폰

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설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6호 시설의 경우, 특정 지위 이상을 획득하면 지위 체계에 따라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 또는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 17] 소년원에서 뉴스라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원래 TV 잘 안 보는데, 그냥 페이스북 같은 거 하면 막 보이잖아요. SNS같은 거 하면. 한창 미투운동 있을 때, 저 안에서 미투운동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나와서 알았어요. (들어가 있다가 딱 나오니까) '이게 뭐야' 싶죠, 진짜.
[참여자 18] 저 2년 만에 나와서 사회에 적응하는 데 5개월 걸렸어요. (주말에 TV를 틀긴 틀었는데), 같은 프로그램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뉴스는 본 적 없죠. (틀어달라고 말해도) 안 된다고 해요. 선생님들은 신문으로 보고. 그런 걸 보통 못 보게 하죠. 사회랑 단절되어야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⑤ 여가활동

TV 시청은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서,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 외에는 주로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V 프로그램 선택은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4] (소년분류심사원에서) TV는 틀어주는 거 봐야 돼요. 방에 있는 시간은 다 TV 봐요.
[참여자 15]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거의 하루에 프로그램하는 시간이랑 밥 먹는 시간 빼고 다 봐요. 한 24시간 중 10시간은 TV 보지 않나?

정해진 일과 내에서 운동 시간은 정해져 있었다. 그 외 방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되었다.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징계실에 있을 때에는 운동도 금지되었다.

[참여자 14]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벌점은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안 되는지 모르고, 거기서 친해진 애랑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운동을, 팔굽혀펴기 몇 개를 했는데, 방송으로 '팔굽혀펴기 하지마라.' 이러고 벌점 먹었어요. 이게 재판 볼 때 좀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참여자 6] (소년분류심사원에서) 5주 동안 운동은 전혀 못 하게 해요.
[참여자 16] (독방에서는) 운동을 할 수 없어요. (운동을 하면) 방송으로 계속 하지 말라고 해요.

⑥ 종교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종교활동은 필수적이었다. 매주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등 각기 다른 단체가 방문하며, 종교활동 후에 제공되는 간식을 기다리며 참는다고 하였다.

[참여자 4] (분류심사원에서 종교활동은) 다 무조건 참여해야 해요. 간식만 기다리면서 듣는 거예요.
[참여자 6] 심사원에서는 그냥, 먹을 것 주니까 그때 막 열심히 하는 척 했죠. 주말에는 거의 TV보는 시간인데 괜히 주말에 와서 하나님 믿자고 하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TV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시설에 따라 종교에 기반을 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종교활동은 의무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 1] (6호 시설) 무조건 종교활동 해야 해요. 당연한 거예요. 절대 혼자 못 있어요.
[참여자 2] (6호 시설) A는 천주교, B는 기독교, C는 천주교. 천주교 미사 드리고, 기독교 예배드리고 다 했어요.
[참여자 6] 여기(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죠. 여자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시고, 남자 선생님은 성당을 다니시는데, 애들한테 처음 왔을 때 물어보거든요. 종교가 있냐고. 그 다음에 (종교) 없다고 하면 성당이나 교회 중에 어디로 갈지 정하게 해 주죠. 둘 다 안가면 집에 혼자 남아야 하니까 어디든 가야 해요.
[참여자 15] (6호 시설) 미사는 참여해야 해요. 수요일 저녁 미사하고, 일요일 아침 미사.

⑦ 적절한 의료조치

소년분류심사원과 6호 시설 경험 참여자들은 생활하는 동안 크게 아픈 일이 없었고, 대부분 아팠을 때에도 적절하다 여겨지는 조치는 취해진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소년원에서는 매일 각 방마다 종이를 돌려 아픈 곳이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소년원 경험 참여자의 경우, 적절하지 못한 의료 조치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외관상 큰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파스와 진통제 처방이 전부일 뿐, 제대로 된 치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원을 가는 경우에는, 도망위험이 있

어 손·발에 수갑을 차고 포박당한 채로 이동한다는 경험도 있었다. **소년원에서는 보호자 지원 없이 병원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여자 5] (**소년원에서) 뼈가 아픈데 약 좀 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네가 뼈 아픈지 어떻게 알아? 뼈는 못 느끼는 거야.'고 하면서 파스만 줬어요.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소년원) 들어갈 때부터 뼈가 아프다고 말했는데, 18개월 동안 병원에 못 가고 있다가 퇴원하기 2주 전에 병원 갔어요. 제가 화내면서 말했어요, '종이(인권위 진정서) 한 장 들고 가기 전에 (병원 보내달라고)'. (병원에서는) 일자목이어서 통증 좀 있고, 허리가 구부러져 있어서 통증이 더 있다고 했어요. (…) 도망 갈까봐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참여자 17] (**소년원에서) 이빨이 깨져서 흔들렸는데, 진통제 하나 주고 참으라고 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빠한테 전화해서 바로 따졌죠. 그때서야 치과에 보내줬어요. 무조건 우리 부모님이 돈을 줘야 해 주는 거예요.

[참여자 18] (**소년원에서) 의무과 안에 있는 의사가 전부예요. 의사라고 하기에도 좀 그래요. 보건실에 있는 선생님 정도. 진짜 돌팔이예요. 제가 자해를 해서 여기가 썩은 것처럼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칫솔을 가지고 와서 상처를 긁어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같이 돌팔이 새끼라고 했어요. (…) 정말 (병원에) 가야하는 경우는 임신을 해서 들어오는 애들이에요. 거기 안에서 처방이 불가능한 애들. 치료하는 애들만 수갑 채워서 나가서 선생님이랑 갔다 와요. 그 외에는 병원에 나갈 수 없죠.

⑧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

분류심사원이나 6호 시설을 경험한 참여자 대부분, 선생님들이 무력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제압하는 경우는 따로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묶였다'는 경험을 보고한 참여자는 1명 있었다. 소년원에서는 선생님에 의한 징계의 일환으로 신체구속 및 무력 사용 조치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 5] (**소년원에서) 선생님 말 잘 안 들으면 소리 지르고, 너 묶는다고 협박하고 그래요. 실제로 묶은 애들 많아요. 선생님들이 묶으면서 때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소리 지르는데도 계속 자기 할 것 하면, 선생님들이 여러 명 와서 밟아요. (팔을) 뒤로 이렇게 묶는 다음에 다리랑 팔을 묶어서, 닭을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못 움직여요. 그때, 손으로 때려요, 발로 때릴 때도 있고요. 몰래몰래 막 때려요. 애들이 발버둥치면 제압하려고. CCTV도 확인해요. 선생님들 여러 명 뭉쳐 있으니까 CCTV에 안 보이죠.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나요. 문제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거 갑질이에요. 그냥 말릴 수 있는데도, 자기네들 몸 다칠까봐 혼자서는 절대로 안 해요.

[참여자 16] 소년원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살기가 좀 선생님 위주라고 해야 하나, 거기는. 선생님한테 잘못하면요, 딱 한 명한테 잘못하잖아요, 그럼 지도실로 불러요.

가운데 무릎 꿇게 해요. 한 명, 한 분한테 잘못했는데 여러 명 선생님이 계속 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냐'면서. 거기서 제가 딱 말실수하잖아요? '왜 나한테 막 이러냐' 이렇게 반항하잖아요? 바로 묶어요 그냥. 이렇게 (양손을) 뒤로 하고. 뒤에서 (손등을) 이렇게 붙여요. 진짜 이거를 아예 줄로 해갖고 꽉 묶어요. 다리도 이렇게 해서… 묶어놓고 징계실, 독방에 넣어요. 거기 넣어놓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하면 몇 분 있다 풀어줘요. 선생님 풀고 싶을 때 풀어주는데, 그거 묶이다가 눈에 핏줄 터진 애도 있고요.

[참여자 18] (**소년원에서) 특훈은 징계받는 애들이 받는 벌인데. 선생님이 구르라고 하면 구르는 거고, PT하라고 하면 하고. 그런데 특훈을 다 이행하지 못한 아이들은 다시 묶어서 징계방으로 가요. 아이들이 안 한다고 하고 버티면 포승줄로 묶어서 보내버리죠. 뒤로 해서 묶는 것도 있고. 그렇게도 난리피우는 애들은 세로로 묶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애들은 헤드기어로까지 묶어버려요. 자물쇠로 연결해서 족쇄를 채우는 경우도 있어요. (…)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묶여봤던 것 같아요. 세운 사태로는 6시간~7시간이요. 총 시간으로 보면 12시간이에요. 처음 묶였다가 다음날 다시 세웠다가, 족쇄 채워서 강당 피아노에 묶여 있었다가. 그런 경우를 다 같이 해서 12시간 정도 묶여 있었던 거 같아요. 넓은 강당에 피아노에 묶어두고 CCTV로 확인하는 거예요.

[참여자 19]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밖에서 만나던 애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걔가 막 안에서 이상한 소문 퍼뜨려가지고, 걔 때리고 막 그러다가 심사원에서 자꾸 계속 묶이고. 거기서 제압시키느라. 심사원에서 저 그때 애를 세 번을 때렸거든요. 선생님도 한 번 때리고. 그래서 저 개별실에 혼자 다 꽁꽁 묶여서 혼자 버려졌어요, 거기에. 나갈 때까지 개별실에 혼자, 징계방에서 혼자 있었어요.

⑨ 징계절차

'(가) 소년사법에서의 아동권리 일반요소 ⑨ 자유박탈의 제한' 내용 참조

⑩ 모니터링 및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의 존재는 심층면접 참여자 대부분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진정함의 실효성이나 유용성에 관해서는 '소용이 없다', '이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권 행사와 관련된 응답은 없었다.

[참여자 4] (진정함이요?) 부당한 일 당했을 때 (쓰는 거). 솔직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눈치 보여서 그거 다 안 적어요. (…) 60명이 사는데 지나가다 한 명쯤은 보겠죠. 거기다가 선생님들까지 있으니까.

[참여자 5] 인권위 진정함 복도에 엄청 많아요. 근데 통만 있지, 종이는 선생님들한테 가서 받아야 해요. '선생님 저 이거 진정서 쓰게 주세요' 하고. 그럼 선생님들이 '왜 그래, 얘기 좀 해봐' 하면서 커피 한 잔 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꼴통용이에요. 선생님들이랑 싸울 때

진정서 달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굽히고. 그러면 애들도 기분이 풀려서 안 써요.
[참여자 15] 애들이 굳이 (진정함에) 그런 거 써서 넣을 바에야 차라리 직접 가서 얘기를 해요.
[참여자 16] (인권위에 진정서) 쓴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래도 큰 변화 없어요. 전 찍힐까봐 안 썼어요.
[참여자 18] 인권 조사를 해서 써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선생님들이 이번 인권 조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조심한다는 그런 식이죠. 일주일 정도는 조심하는데, 뭐 또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은 있는데 그것을 쓸 종이가 없어요. 저희끼리 종이를 찍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트를 찢어도 벌점이에요. 물론 편지지에도 쓸 수 있지만, 선생님들이 진정함을 먼저 보시잖아요. (…) 보면 안 되는 건 몰랐어요. 선생님들이 진정함에 누가 쓴 걸 보고, 무엇 때문에 이랬냐고 묻는 건 봤어요. 그럼 쓴 애는 '괜찮아요. 죄송해요.' 하고 나오고.

⑪ 사회복귀 지원

분류심사는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경험은 TV 시청 외 특별한 일과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회복과 긍정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은 없었다.

[참여자 15][102] 먼저는 (일어나서) 밥 먹기 전까지 성찰을 하고, (…) 그냥 이렇게 아빠다리 하고, 벽 보고 앉아서 성찰을 해요. 선생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그래서 선생님이 돌아다니다가 좀 잘하고 있는 방이 있으면 너부터 밥 먹으러 가, 하면 그 방 밥 먹으러 가고, 밥 먹고 오면 이제 프로그램 갈 준비를 해요. 프로그램가면 이제 선생님 따라 2층으로 올라가서 교실에서 뭔가를 하는데 기억나는 게 이런 거 밖에 없어요.
[참여자 4][103] 저 때는 방송으로 그냥 선생들 랜덤으로 아침에 밥 먹으러 가라 해요. 밥 먹고 오면 이제 프로그램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게 (심사원 규칙) 61조 적는 거랑,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일기장 검사하고. 무슨 이상한 영상 보여주는데, 김천소년교도소 영상 그런 거 보여주고, 그리고… 몰라요. 선생님들이 틀어주는 영상 보다가 그 프로그램 끝나면 내려가서 밥 먹고. 점심 먹고 나면 다시 올라와서 또 똑같은 거 보다가. 선생님들 재량이에요. 그냥.

---

102) 5년 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험
103) 2018년 초,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험

중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경우, 학업 연계는 되었다. 6호 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전적 학교에 계속 재학 중인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사실상 교과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으며 시험 기회 또한 별도로 제공되지 않은 채 기본점수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6호 처분 종료 후, 학교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소년원은 '소년원 학교'로 중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되는데,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았다. 한편, 만 16세 이상의 고등학생 연령인데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등반 학업 대신 직업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소년원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 18] (**소년원에서) 학업은 연계가 되더라고요. 중학교 땐 너무 어리니까 연계가 되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온 애들은 검정고시를 봐야 해요. 저는 중학교와 연계되어서 중학교는 졸업했어요. (연계가 되었다는 건) 중학교에서 시험지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년원 내에서 해요.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를 봤고요. 올해 봤어요. (…) 보통 중등반은 고등학교와 연계하려고 많이 하는데, 이미 그 안에서 고등학교 나이인데 자격이 안 돼서 중등반으로 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만 16세가 지나면 중등반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반으로 가야 하는데 그럼 중학교 졸업이 안 된 상태라 중등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헤어반 같은 걸로, 수업 듣고 자격증 따서 ◇◇◇ 헤어스튜디오 들어가서 일하라고 지원도 해줘요. 피부미용샵에서 일할 수 있으니 알아봐 주기도 하고요. 그냥 중등반에는 이런 건 딱히 없는 거죠. 중등반에서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하겠다는 애들만 지원해요.

[참여자 19] (**소년원에서) 그냥 우리는 말 그대로 중학교 애들이거든요. 중학교 학적 연계해주고. 일수 그걸로 해서 포함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도 그냥 일반 중학교랑 똑같이 국어, 수학 이렇게 선생님들이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공부 가르쳐 주고. 우리가 따는 자격증은 한자나 컴퓨터? 그냥 선생님들 좀 불쌍했어요. 와 가지고 계속 혼자 떠들고 있고, 우린 아무도 공부 안 하고. (…) 더 배울 수 있는 거, 밖에서 필요할 만한 거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려서 거기서 교육을 못 받은 거란 말이에요. 다른 애들은 헤어반도 있고, 피부반도 있고, 텔레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중등반이잖아요. 그래서 더 배운 게 없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거기선 공부, 그냥 밖이랑 똑같이 공부 가르쳐 주잖아요. 듣는 애들도 없고 그냥 시간 낭비. 맨날 거기서 자고, 맨날 애들 낙서하고 놀고. 일단 거기서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공부를 하는 애들도 아니고. 오히려 다른 반 같은 경우, 직업훈련반은 공부해서 자격증 따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중학생이라도) 나가서 할 것들을 알려줬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참여자 20] (6호 시설에 있는 동안 학교에서 하는 국어, 영어 수업 같은 거) 안 했어요. (2018년 4월부터 학교를 다녔는데) 그거 때문에도 시험 두 번이나 망쳤어요. 기말고사는 ****에 있어서 못 봤고, 이번에 중간고사 봐야 될 것도 못 보고, 학교에 수업일수만 채워지고 성적은 그냥 기본점수 들어갈걸요? 제가 알기로는 반 평균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

요. (…) 중등부만 따로 하는 거 있는데, 구몬인가? 초등 1-2학년들이 할 건만 했어요. 국어 문법 수업 같은 거. 쉬운 것도 있었고, 안 배운 것도 있었고. (…) 수업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외부에서 왔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경우, 소년원 및 6호 시설에서는 학업 또는 직업훈련 과정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학업을 선택한 경우 검정고시 수업이 진행되었고, 직업훈련 과정을 선택한 경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를 한다고 하였다. 각 시설마다 구비된 프로그램은 달랐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충분히 마련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기존에 관심이 있던 영역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참여자도 있었지만, 그 외의 경우 일시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퇴소·퇴원 후 계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자격증 취득 외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 5] 저는 지적이랑 측량 자격증 2개 땄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계획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나가서 뭐 할지. 다짜고짜 자격증만 따라고 해요. 계획은 저희가 짜야 되고. 나오면 저희가 뭘 알아요, 뭘 할 수 있는지,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를 준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 요즘 제일 막막한 거요? 저는 일자리요. 일자리 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소년원에서) 나오기 전에 선생님들한테 말은 했어요. 나와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대학교 가래요. 저는 그냥 바로 안 간다고 했어요. 둘 중에 하나래요. 할 것 없으면 군대 가. 할 것 있으면 학교 가. 저희는 모르겠는데, 저희보고 그냥 계획을 짜라고만 해요. 다른 애들은 부모님 통해서 하구요.

[참여자 17] 10호 가기 전에 요리가 아주 재미있는 것 같아서 공부는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공부하다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소년원 갔는데 거기에 또 한식반이 있더라구요. 심사원에서 나가면 반성문 같은 것을 쓰는데, 나가면 일식조리 배워서 한다고 하니까 **소년원가서 조리 배우라고 하더라구요. 가서 이것저것 따고 나왔어요. **소년원에는 지금 제과제빵, 사진영상, 헤어, 한식반이 있는데, 걔네(소년원에 함께 있었던 다른 아동)는 그쪽으로 갈 애들이 아니니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들어오기 전부터 이쪽으로 가려고 생각했었고, 거기서 자격증도 따고 하니까 저한테는 도움이 됐죠.

특히 소년사법제도에서 친부모의 존부는 아동의 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친부모인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 행위 대비 과중한 보호처분을 받거나, 소년원 퇴소 기간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늦어졌다는 응답도 있었다. 관련하여, 부모와의 갈등 또는 보호자 부재,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로 복귀한 경우에

도 달라지지 않은 주변 환경은 아동의 자발적인 회복과 자립을 사실상 어렵게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참여자 5] (부모의) 보호력이 좋으면 (소년원에서) 빨리 내보내줘요. 보호력 없는 애들은 안 내보내 줘요. 보호력이요? 이게 내보낼지 따로 심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요. 그래서 (사회복귀) 계획 들어보고, 만약에 계획이 딱 준비가 잘 됐다 그러면 빨리 내보내주고. 면회 얼마나 오는지 이런 거 보구요.
[참여자 16] 부모님이 없으면요, (소년원에) 안 들어갈 것도 들어가요. 범죄도 중요한데 부모님, 가정을 봐요. 얘가 나가면 이런 가정에서 잘 살 수 있을까를 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계셔서) 도움이 됐어요. 소년원에서도 부모님이 말을 잘 하면 돼요.
[참여자 18] (소년원을 나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곳에 다시는 살 수 없으니까요. '나가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집에 살아야겠다.'고 했지만, 그런 마음은 제가 바뀐 것이지, 밖의 모습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금방 사라져요. 고등부의 경우는 직업과 관련된 것들을 배우니까 해보자는 것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등부 경우는, (나와서) 검정고시를 보든, 아니면 고등학교를 다니든 뭔가를 해야 하는데. 나오니까 막상 학교를 다녀보자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검정고시를 주변에서 알아보고 갔어도 차비를 지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럼 어떡해요? 그냥 알바만 하는 거죠. 10대에게 경제력을 지원해주지 않고. 이런 사회가 그대로인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소년원에 애들은 그냥 잘해보겠다고 마음만 먹고 나왔지. 그냥 말 그대로 마음만 먹은 거예요. 행동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죠. 안에서 아무리 잘 지내도요. 중등반에서 할 게 없어서 컴퓨터 자격증만 6개를 따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나오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참여자 19] 저 (전화) 할 사람이 없었어요. 해도 엄마가 어차피 받지도 않고, 번호도 바꿨거든요. 집도 이사가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맨날 저 엄마 면회 한 번만 와달라고 집까지 찾아갔단 말이에요. 우리 집까지. 근데도 면회 안 오시고. 저 나갈 때 왔어요. 나갈 땐 일단 보호자가 와야 되니까. 오셨는데 집에 안 데려갔어요. 쉼터로 보냈어요, 저. 그러고 저 엄청 나게 돌아다녔어요. 쉼터 있다가 저 맨날 한 일주일도 못 있고 맨날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나고, 쫓겨나고, 쫓겨나고 하다가, 마지막에 갔던 게 거기 **자립관이란 말이에요, 법무부 자립관, 그 심사원 앞에 있는 곳. 거기서 그나마 좀 잘 살았죠. 거기서 보호관찰 6개월 다 받고 나왔죠. 나왔을 때가 … 모르겠어요. 2017년 7월인가 8월에 (소년원에서) 나왔거든요. 그러고 6개월 받았으니까 2018년도, 이번년도 초인가. 그럴걸요. 그 이후로 친구들이랑 같이 살거나, 그 때도 돈도 없고 그러니까 막 범죄 저지를까 생각하다가 안 했죠, 결국. 그건 무서워서.

소년원에서는 소년의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1인 1멘토 시스템도 운영 중이었다. 그러나 멘토의 실질적인 의미나 효용성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참여자 5] **소년원에서 멘토를 만들어줬어요. 가면 다 만들어줘요. 그냥 봉사단체 같은 곳에서 오고, 2주에 한번씩 40분 동안 만나게 해 줘요. 초반에는 별로 얘기 많이 안 했는데, 나갈 때 돼서는 조금 친해져서. 나와서 연락하면 멘토 분이 도와준다고 했어요. (멘토가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애들은 그냥 가서 먹을 것 때문에 좋아하는데.
[참여자 17] **소년원에 있는 동안, 멘토 있었어요. 그냥 멘토가 1달에 1번씩 면회 오면 사온 거 먹고. 멘토는 무조건 다 해야 돼요. 멘토가 없으면 멘토링이 따로 있어요. 점심시간에 애들 몇 명 모아서 종교사람들이 와서 저희 먹을 것들 챙겨주고, 하나님 믿어라 하고. (멘토가 있어도 내가 소년원을 나갈 때) 도움은 안 돼요. 멘토 오면 계속 주님 믿으라는 말밖에 안 해요. 안 만나고 싶었죠.

⑫ 존엄성 보장 및 증진

인권교육이나 아동인권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기억하고 있는 참여자는 없었다. 프로그램이 많기는 한데 기억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서 인권교육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참여자도 있었고, 한 번 정도 받았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 한 참여자도 있었다. 성교육의 경우, 받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좋았다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수강명령의 일환으로, 성 관련 주제로 교육을 받은 여성아동들은 있었다. 성소수자인 참여자는 성교육 과정은 초등학교에서 배울만한 수준이며, 동성에 대한 부적절한 교육내용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 1] 교육은 진짜 맨날 받아요. 틈만 나면 받아요. 그런데 진짜로 기억이 안 나요. 말도 안 되게.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성교육도 어떤 시설이든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필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참여자 14]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인권교육도 있고, 성교육도 있고. 특히 강간이나 준강간, 성추행, 이런 걸로 들어온 애들은 따로 불러가지고 성교육 하고. 저희들은 그냥 간단하게만 받았어요.
[참여자 17] 절도·강도 예방교육이랑 성폭력 예방교육이랑 엄청 많아요, 이것저것. 정확히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도움은) 안 돼요. 딱히 와 닿는 게 없던데.
[참여자 18] 성교육 과정에서 에이즈 수업을 하는데, 동성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했어요. 왜지? 동성끼리 해서 에이즈가 생기는 게 아닌데. 그냥 '손을 잡아도 에이즈에 걸리지 않아요' 이 정도만 가르쳤어요. 성교육도 피임방법 정도요. 초등학교에서 배울만한 무난한 것들이요. 인권교육은 타인을 존중하자 정도? 학교에서 강사라고 해서 온다는데, 2년 내내 같은 걸 배웠어요.

무엇보다 소년보호시설 내 종사자에 의한 폭력,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대우, 차별 등에 관한 다수의 응답들이 제시되었다. 소년사법제도 전반에서 아동이 온전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 5] (**소년원에서) 더워서 옷 벗고 있으면, 바로 “옷 입어라” (방송해요). 그래도 다 안 입고 있으면, 한 놈만 잡아요. 힘 약한 애들, 따로 있는 애들 먼저. 선생님들도 집단으로 뭉쳐있으면 못 건드려요. (…) 한 번은 누구 감사 온다고 청소 다 시켜놓고, 청소를 한 3시간 했는데, 찝찝해서 샤워 한 번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말래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호실 화장실에서 샤워했더니, 징계 받았어요.

[참여자 6] [**소년분류심사원(여성)에서] 면회는 주말 빼고 매일 할 수 있긴 해요. 처음 일주일은 면회 오는 날만 기다려요. 근데 이게 면회를 갔다 오면 혹시 뭐 숨겨올 수도 있으니까, 옷을 다 벗고 가운 같은 걸 입고 선생님 앞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해야돼요. 옷 벗는 것도 귀찮고, 또 누가 내 몸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도 기분 나쁘고.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랑 애들이랑 많이 싸웠단 말이에요. 이거 인권침해라면서, 우리 이거 안 하고 싶다고, 이건 너무한 건 같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다고 꼭 거쳐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면회 오는 거 싫어하죠.

[참여자 19] 저 맨 처음 (소년원) 들어가자마자 묶였거든요. 근데 그게, 사탕을 안 줬어요, 저한테. 그거 애들 다 주는데 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아니 씨발 왜 저는 안 줘요.” 이랬거든요. 근데 “뭐 씨발?” 이러면서 갑자기 절 묶는 거예요. “제압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털고,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묶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묶이고 그 이후부터 계속 묶였어요, 뭐만 하면. (…) 제가 저 욕을 한 애랑 말 섞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걔가 저 때문에 자해를 한 거예요. 그거 때문에 저보고 막 고참 행위 한다면서 저 물건을 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니는 여기 호실에서 생활할 필요가 없다고. 저기 바닥에서 생활하라고.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막 저가 그때, 저보고 일어나래요. 일어나서 선생님 눈을 쳐다봤어요. 근데 막 눈 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개겼어요, 또. “왜 사람이 말하는데 눈을 쳐다보고 말하지 어떻게 말하냐.” 이랬죠.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또 “제압하겠습니다.” 이러고 저 머리끄댕이 또 잡고 또 넘어뜨려 가지고 묶고.

[참여자 20] 존중한다는 건 저에 대해 생각해준다, 저의 마음이나 생각을 생각해준다, 그거인 것 같아요. (경찰이나 법원, 심사원 가고 할 때) 그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나를 존중하는지)까지 느끼지는 못했어요. 정신없이 진술하고 생각하고 그런 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 소결

(1) 소년사법제도 절차에 따른 아동인권 보장 현황

이하에서는 아동기에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당사자 대상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사법제도의 절차 단계에 따른 아동인권 보장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행위로 인한 수사 단계,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재판 단계, 보호처분 집행단계로 나누어, 앞서 제시한 소년사법 절차상 보장되어야 할 10가지 아동인권 유형별로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10가지 유형 중 각 절차에서 특별히 고려되지 않은 권리유형은 생략하여 기

술하였으며, 면접조사에서 직접 소년형사재판을 경험한 참여자는 없었으므로 소년형사재판 단계는 언급하지 않았다.

(가) 수사 단계

① 정보접근 및 알 권리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및 진술거부권 등은 일반적으로 잘 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령이 어린 아동이 해당 절차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하는 노력은 부족한 현실이었다.

②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서를 받는 등의 경찰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대한민국헌법」제12조가 규정하는 방어권 침해에 해당한다.[104]「소년법」규정에 따라 보호자는 소년부 이송, 검찰청 송치, 심리 개시·불개시 결정, 심리기일 및 처분 변경 등을 고지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때의 보호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범죄수사규칙」제211조는 "경찰관은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형사소송법」제244조의5 제2호에 따라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하에 수사를 받는 것은 아동의 권리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보호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를 행하여 조사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우선된다 할 것이며, 아동의 행위에 대한 사회공동의 책임 또는 가정환경 회복을 지원받을 아동의 권리를 포함하는 소년사법의 요청은 실천되지 않았다.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된 피의자 또는 미성년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

104) 국가인권위원회 다수의 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성년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방어권 침해' 결정(17-진정-0330600), '미성년 피의자 부당조사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문(10-진정-00161100), '경찰의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조사' 결정문(11-진정-0696500), '불법체포 등 인권침해' 결정문(13-진정-0035600) 등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제214조의2 제10항). 그러나 경찰조사 직후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미결구금 중 소년부로 송치된 경험이 있는 참여자 중 국선변호인의 조력과 관련한 내용을 기억하거나 언급한 경우는 참여자 7의 응답이 유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른 참여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이 있었을 것이지만, 실제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식한 참여자는 없었던 것을 나타낸다. 단순히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의 특성을 민감하게 고려하여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할이 수행되지 못하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받을 권리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소년사법제도에서 범죄소년의 경우, 기소나 소년부 송치 여부는 검사가 결정한다.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유치장에 8일 가량 머무른 참여자가 있었고, 구속되어 구치소에 6개월 가량 미결구금된 참여자도 있었다. 구치소에서의 불성실한 생활태도가 미결구금 일자가 연장된 사유인 것 같다는 응답은 있었으나, 구금기간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는 참여자는 없었다. 이후 법원에서 소년부 송치가 결정된 결과, 다시 소년분류심사원에 2-3주 임시위탁되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등 최초의 행위로 수사가 개시된 때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처분을 집행되는 현실이었다.

⑤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사회복귀와 회복이라는 소년사법의 목적에 따라, 소년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는 소년이라는 한 아동의 성격·태도·경력·학업수준 및 가정환경을 포함하는 개별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소년법」 및 「소년업무규칙」(경찰청예규)에서 위와 같은 수사 관계자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 전반이 해당 소년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범죄의 동기 및 과거의 문제행위, 부정적인 교우관계에 따른 '문제아'라는 낙인으로 귀결되는 현실이었으며, 많은 경우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성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들을 심리적·사회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폭넓은 고려는 실천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수사단계에서 아동의 개인정보가 언론을 포함한 외부에 노출되어 특별히 문제된 사례는 없었다.

⑦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소년에 대한 신체구속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 행해져야 한다. 더욱이 경찰조사 단계에서 소년은 임의출석 대상임에도, 조사를 위한 이송 및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경험한 참여자가 다수였다. 신체구속 사유 및 기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까지 유치장에 구금되었으며, 이때 성인과 함께 수용된 참여자도 있었다. 특히 구치소에서 소위 모범 수용자인 성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규정은 '성인과 분리수용되어야 한다'는 국제인권규범에 명백히 반한다.

⑧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 경찰이나 검사의 수사 단계는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소년업무규칙」(경찰청예규) 제23조에 따라 경찰 조사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지만, 실제로 전문가 동석을 경험한 참여자는 없었다. 검사는 「소년법」 제49조의2에 근거하여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소년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 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특별히 아동인권에 기반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긍정적인 사례도 확인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경찰 및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행하는 반말, 법 위반행위를 확신하고 재비행 가능성을 단정하는 편견, 구속과 구금을 수단으로 하는 처우 등은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아동을 동등한 인격적 주체로 고려하지 않는 현실을 나타낸다.

⑨ 기타

수사기록이 있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문제된 아동의 특정행위가 과대평가되거나 지위비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낙인예방의 관점에서 법을 위반한 아동의 기록이 장래에 있을 수 있는 판결에서 형량을 높이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거나 동일한 아동이 연루된 향후

에 발생한 성인 사건의 사법절차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년사법의 주요 내용에 반하는 한편,[105] 아동의 개인정보에 민감하지 못한 측면도 나타낸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등 과거의 기록을 아동의 개인정보로서 민감하게 고려하여, 새로운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아동의 회복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가중사유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소년보호사건에서의 재판 단계

① 정보접근 및 알 권리

참여자 대부분 소년재판 당시 범죄사실 및 진술거부권, 보호처분 내용은 고지받았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기 전부터 자신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며, 보조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관련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참여자는 없었다. 처분을 할 경우에도 단순히 '처분을 결정한다, 6호 시설 또는 소년원에 다녀와라'는 식으로 보호처분 결정내용이 통지되었으며, 그 이유 및 시기, 내용은 해당 소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항소를 해도 의미가 없다거나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항소를 할 수 없는 줄 알았다는 참여자의 응답은 항소할 권리에 대한 안내가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는 현실을 나타낸다. 더욱이 아동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보조인이 선정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소년재판에서 국선보조인 신청권에 대한 정보의 부재를 뒷받침한다.

②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수사 단계와 마찬가지로 보호자에 대한 통지는 법원이 파악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된 시점에 소년이 가출 중이거나 보호자와 갈등상황에 있는 경우에 보호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원의 역할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 대한 시설장의 통고로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된 경우, 아동의 사실상·법률상 보호자인 시설 종사자가 소년보호재판 절차에 잘 참여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참여한 경우에도 소년의 사회복귀를 뒷받침할

105) 일반논평 제10호, para.66.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수 있는 긍정적인 사유로 고려되지 않았다. 오히려 부모로 대표되는 가정환경이 부재한 경우로 취급되어, 비행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이 평가되고, 그에 따라 보호처분이 가중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소년법」 제17조의2 필수적 국선보조인 규정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모두 국선보조인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나, 국선보조인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로 국선보조인이 소년분류심사원에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한 경우에도 그 시간은 대부분 30분을 넘지 않았으며, 참여자와 면담 없이 재판 당일에만 출석한 국선보조인도 있었다. 심리 당일에도 '선처를 바란다'는 형식적인 진술에 그치거나,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등 국선보조인에 대한 실망과 반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소할 수 있는지 몰랐다거나 6호처분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참여자의 경험은, 절차 전반을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안내하고 설명할 국선보조인의 역할이 적절히 제공되지 않는 현실을 뒷받침한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장이 국선보조인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었는데, 해당 참여자들은 국선보조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1호 감호위탁 처분 결정을 받았다. 형사특별절차로서 운영되는 소년사법제도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있지 않았다.

④ 절차를 신속하게 적용받을 권리

면접조사 참여자 중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소년부로 송치되며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외, 소년부에서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된 경우는 없었다. 다만, 형사사건 수사 중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다시 법원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임시조치 등 조사 과정이 반복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소년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부당하게 기간이 장기화되는 사례는 없었다.

⑤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소년법」 규정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당시 심리검사, 성격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는 실시되는 것으로 보이나, 참여자 대부분 검사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검사 이후에도 결과를 받아본 적 없다거나, 결과지를 받기는 했는데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뒷받침할 수 없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아동의 구체적인 성향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낸다.

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낙인 예방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소년법」 제24조 제2항). 소년재판이 언론에 노출되거나 보도되어 사생활이 침해된 사례는 없었으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시설수용 처분과 동일하게 생활 전반에서 사생활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었다.

⑦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

현재의 소년분류심사원은 사실상 자유를 제한 및 박탈하는 구금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부모 방문면접 및 보조인 면접권 외 외부와 교류할 권리는 전면차단되고, 규칙 위반시 독방 징계처분, 수갑과 포승줄을 활용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보호소년의 항소권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임시결정에 적용되지 않으며,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년분류심사원(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은 전국 6개 소년원에 위탁되어 사실상 소년원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참여자의 경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⑧ 모니터링 및 진정에 관한 권리

해당 권리에 대한 질문내용은 소년보호사건 및 시설수용에서 인권위 진정 및 침해구제 제도를 알고 있고, 실제로 행사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여타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참여자의 답변은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재판절차와 결정내용이 적절하게 안내되지 못한 채 처분 당사자가 결정의 적절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 하는 현실을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자기반성과 회복을 위한 소년사법제도의 목적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련하여, 소년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이 고려된 경험을 한 참여자도 없었다.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고려해봐야 할 이유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⑨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앞서 열거한 아동의 권리보장은 소년보호재판에 관계하는 판사, 조사관, 소년분류심사원 종사자 모두의 전문성과 역량이 확보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전국 7개 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용 현황은 소년의 개별적 처우를 고려하여 적절한 심사결과를 제시해야 할 의무 이행을 저해한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참여자들이 기억하는 교육내용도 사실상 소년의 긍정적 사회복귀에 기여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상당한 재량과 권한을 행사하는 소년부 판사의 아동인권과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 수준도 확인할 수 없었다.

(다) 소년보호사건 처분 단계

① 정보접근 및 알 권리

6호 아동복지시설 감호위탁 및 9·10호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경우는 물론,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1호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집단생활로 인한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규율로 통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설수용에 있어 기간 및 면회·편지·외출 규칙, 징계규정, 일과 등의 권리와 의무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과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참여자 중에는 소년원에 있는 동안 독방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보호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부모에게는 징계로 인한 면회가 불가한 사실이 전달된다고 하나, 그 밖에 면회 가능한 보호자 등에게 사전에 통지되지는 않았다. 징계를 '통지'하는 것 외에 사전에 보호자와 상담하여 결정한 사례도 없었다. 시설에서의 생활 전반에 보호자의 참여는 상당히 제한되었다.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현행 소년사법의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 선정 제도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보호처분이 결정된 이후, 항고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접근권은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다.

④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받을 권리

현행 소년사법제도는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소년형사사건 수사 후 소년부 송치가 될 수 있고, 소년부 재판 중 소년형사사건으로 송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년형사사건으로 수사 중 구속된 경우, 추후 소년부로 송치되더라도 구치소에 미결구금된 기간이 6호 시설 감호위탁 및 소년원 송치 처분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소년분류심사원 또한 그 실질이 소년원과 유사하게 운영되며 사실상 신체를 제한하는 자유박탈 처분임에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구금'이 아님을 이유로 해당 위탁기간이 소년원 위탁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 결과 절차 전반이 지연될 수 있다. 실제로 구치소에 구금되었다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고, 이후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자유박탈이 장기화되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한 참여자가 있었다. 이는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소년의 긍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해야 할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반한다.

⑤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개별처우는 특히 중요하다. 남성과 여성은 물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소년원생과 분리수용되며, 최초 시설 수용 당시 다양한 조사 및 상담전문가와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변화를 판단하고 적절한 처우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초 상담 외에는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담을 받았으며, 이때에도 어떤 검사나 상담을 받았는지 의미 있었다고 기억하는 참여자는 없었다.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임신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개별 소년의 욕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시설 부적응은 독방(개별실) 처분 사유였다. 소년의 특성에 따른 교육 및 직업훈련, 심리서비스 등은 사실상 제공되지 않았고, 「보호소년법」 제3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 밖 학교 통학이 가능한 경우는 없었다. 집단생활시설에서 규율과 통제만으로 소년의 반성과 회복을 강요하며, 소수 담임교사의 헌신과 노력에 의존하는 현실이었다.

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6호 시설 및 소년원에서 사생활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었다. 일체의 개인 소지품 소지는 불가하며, 편지 왕래도 대상자, 내용 등에 대한 검사를 거친 뒤에만 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능하다. 최근 화장실과 샤워실 CCTV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는 참여자의 보고도 있었지만, CCTV를 통한 통제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었다. 참여자 또한 다소 불편할 뿐 스스로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았다. 보호를 명목으로 최소한이 아닌 과도하게 보호소년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현실이다.

⑦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보호소년법」 제15조는 징계의 종류 및 목적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 교육적 목적을 넘어서 신체적·물리적 구속 조치가 과도하게 취해지고 있었다. 「보호소년법」 제14조의2에 따라 폭언·난동 또는 이송, 소년원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수갑이나 포승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적정한 기준이나 절차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교사 개인에게 위협이 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누적된 사례에 바탕한 신체구속 징계조치의 기준, 징계조치에 대한 해당 소년의 의견진술 및 의견청취권 보장, 최소한의 기간 설정 및 일시간의 흥분이 가라앉은 뒤 대안적 조치로의 전환 등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⑧ 모니터링 및 진정에 관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함의 존재와 목적은 모든 참여자가 알고 있었으나, 진정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신뢰는 없었다. 진정함의 위치가 어떻든 집단생활시설에서 교사를 포함한 모든 동거하는 소년들도 모르게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며, 더욱이 **소년원에서는 진정서를 교사에게 받아야 하는 결과 '진정서 작성행위'가 비밀이 될 수 없었다. 교사가 진정내용을 확인한 뒤 개별면담을 진행하는 사실은 진정의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외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권을 알고 있는 참여자는 없었다. 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내·외부 인권감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시적인 처우 개선, 자연스러운 답변을 통제하는 분위기 조성 등 진정한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⑨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소년사법제도는 법 위반행위를 한 아동이 인격적 주체로서 자신의 존엄성을 인식

하고, 자아존중감 증진을 통한 사회적 관계를 학습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다. 이는 곧 소년이 제도 전반에서 마주하는 관계 종사자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자의 응답에서 나타난 6호 시설과 소년원 종사자, 보호관찰관 등의 전문성과 역량은 상당히 낮았다. 성소수자인 참여자의 경험은 아동인권 및 젠더감수성에 기반한 종사자의 낮은 민감성을 나타내고, 존중과 배려, 실수를 만회할 기회의 인정보다는 직·간접적인 비난과 통제, 경멸과 모욕이 일상화되어 있는 일부 교사의 태도는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을 반증한다. 이러한 현실은 아동 당사자를 포함한 대중이 소년사법제도의 실효성과 효용성을 신뢰할 수 없게 하는 원인이라 할 것이다.

⑩ 사회복귀를 지원받을 권리

사회통합 및 재사회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귀를 지원받을 권리는 소년사법제도의 핵심 중 하나이다. 그러나 시설수용 중 사회복귀 지원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6호 시설은 학적만 연계될 뿐, 일반 교과과정 학업은 완전히 중단된다. 소년원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이 제공되나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못하고 소년의 학업에 대한 의지를 독려하지 못하는 현실이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검정고시 준비로 대체되며, 직업훈련과정도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소년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기술습득을 지원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많은 경우 소년원 퇴원 직후 자립이 필요한 시기인데, 훈련된 자립전담요원은 부족하다. 무엇보다 6개월에서 2년간 세상과 단절된 직후 시설에서 퇴원한 아동의 사회복귀는 충분히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6호 시설 및 소년원 교사, 보호관찰관 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정보를 전달받았다거나, 심리적 지지를 받았다거나,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인정받았다는 등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한 참여자는 없었다. 소년원에서 지정되는 멘토가 아동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나, 사회적 지지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때에도 공적기관이 아닌 외부자원의 선의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

(2) 제한점

본 연구는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아동의 특성상 조사 대상자의 공개적 모집과 표본선정이 어려운 현실적인 점을 고려하여, 유관기관의 협조에 따른 '눈덩이 표집' 방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법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심층면접 참여자들이 수도권 소재 거주자였으며, 10세-12세 전후 연령의 아동 및 여자 아동에 대한 응답 내용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전국 10개 소년원 중 4개 소년원에 대한 경험만 청취할 수 있었다. 또한 공통문항을 활용하였지만, 면접조사의 특성상 참여자의 개별적 상황과 성향에 따라 세부적인 답변 내용이 달라지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절차와 처분이 적용된 경우에도 경험한 연령 및 시기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진 측면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소년사법제도 전반에서 개별 아동이 느끼고 경험한 내용을 청취함으로써 제도가 적용되는 실태를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이를 위해 본 심층면접은 가능한 아동 임상심리전문가가 조사를 진행하며, 아동과 신뢰관계 있는 성인의 협조를 받는 등 참여자들이 사용한 표현방법 및 사용단어의 표면적인 내용 이면에 자리한 아동의 진정한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는 고민과 노력을 병행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한계를 고려하여, 추후 소년사법제도와 관련한 아동 대상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 등 관련부처와 사전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처분 전반에 대한 경험을 고루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2-3회 면담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때 상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답변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할 것을 제안한다.

(3) 시사점

본 연구는 소년사법제도 전반에서 개별 아동이 느끼고 경험한 내용을 청취함으로써 제도가 적용되는 실태를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아동인권이 보장되는 소년사법제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관계자 대상 아동인권교육훈련에 제공되어야 할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 참여자들이 사용한 표현방법 및 사용단어의 표면적인 내용 이면에 자리한 아동의 진정한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는 고민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를 먼저 밝힌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실시한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아동의 처우에 영향을 미친 주요요인에는 인권교육 경험, 보호자의 존부, 연령과 가정환경 등이 있었다.

인권교육 경험이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부분의 참여자는 6호 시설과 소년원 등은 죄를 짓고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권리제한 조치는 어쩔 수 없다거나, 지위체계와 힘의 위계질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단체를 통해 상담 및 교육, 법률지원을 경험한 참여자는 절차와 처우의 부당함을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권리에 대한 인식이 권리보장과 권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보호자는 보호처분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이러한 보호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찰 조사 당시 아동이 '보호자가 없다'고 밝혔더라도, 결국에 보호자가 조사사실 및 추후 절차 진행상황을 알고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양육시설에 보호된 아동 등 보호자가 부재한 때에는 보호처분 내용과 처분 종료시기가 달라질 수 있었다. 아동과 직접 동거하며 보호·양육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한 연령대의 같은 폭행행위였으나 해당 참여자만 6호 처분이 아닌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으며, 소년원 퇴원시기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늦어진 사례가 보고되었다. 아동양육시설장의 통고로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개시된 경우, 실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곧바로 6호 보호처분이 결정되기도 하였다. 특히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임시조치는 소년부 판사의 재량사항이나(「소년법」 제18조 제1항), 본 면접조사 참여자의 경험에 따르면 통고로 소년보호사건 심리를 받게 된 경우, 예외 없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 보호자, 특히 부모의 부재로 인한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과 가정환경은 보호처분 결과에 주요한 판단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양육시설장의 통고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도과한 만 14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보호처분 기간 중 만 18세를 도과하게 되어 자립준비가 필요하거나, 가정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청소년회복지원시설·법무보호복지공단·청소년쉼터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그 밖에 본 심층면접에서는 전국의 6호 시설을 전원하는 등 아동의 기존 거주지역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점, 반복되는 범죄행위와 보호처분 속에 아동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했던 점, 특히 소년보호시설 내 폭력과 위계에 따른 부적절한 대우, 억압과 통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소년사법제도가 아동인권적 관점에 입각하여 이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다양한 실태가 제시되었다. 절차와 처분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심층면접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소년사법제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의 한계라 할 것이다.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결정된다기보다는 경찰, 검찰,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보호시설 종사자, 판사, 보호관찰관 등 각 기관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관련 종사자에 대한 아동인권교육 제도화, 제도 전반에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 및 지침 마련, 법원과 법무부 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소년사법의 직접 당사자인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조치가 요청되는 현실이라 할 것이다. 범죄의 응보와 억제가 아닌, 아동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소년사법의 목적에 대한 재고와 충실한 제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소년사법제도 관계 종사자 조사

가. 종사자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본 설문조사는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실무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소년사법제도의 개별 단계가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아동인권을 중심으로 소년사법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소년사법과 관련된 종사자 중에서 전국에 있는 ① 판사[2018. 10. 기준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보호사건 담당 법관(항고심 제외) 25명],[106] ② 국선보조인(각 법원별 국선보조인 2016년 기준 약 690명),[107] ③ 보호관찰소 소년 담당 종사자(2017. 12. 기준 57개 기관, 총 223명),[108] ④ 소년원 종사자 중 보호소년을 생활지도, 교육, 상담, 보호하는 종사자[전국 10개 소년원 관리자(원장, 과장) 59명 및

106) 금태섭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107) 황지태・김지영・원혜욱・김지연,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6), 1면; 61-62면 참조.

108) 금태섭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17년 12월 기준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소년 현황〉

연도	기관 수	소년사건수	소년담당직원	1인당 관리인원
2017년	57개	26,402건	223명	118명

※ 사건 수는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포함한 수치이며, 보호관찰은 해당연도 12월말 현재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기소유예 교육, 부가처분 등 제외)은 해당연도 접수 사건 현황임.

감호・교육(보호직, 전문경력관) 종사자 360명을 합한 총 419명,[109] 시설・행정직(기술직)은 제외]로 설정하였다.

2018. 10. 8.부터 2018. 10. 29.까지 3주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 응답은 소년원 종사자 380부, 보호관찰소 종사자 41부, 국선보조인 49부, 판사 15부로 총 485부였으나, 1부는 일반사항(성별, 연령대, 근무지역, 경력)을 기재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총 484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소년원 종사자의 경우 설문조사의 대상인 보호소년을 직접 만나는 감호・교육 관련 종사자만 응답했다고 가정하면 약 90.7%(380명/419명)의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만 시설・행정직(기술직)이 응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판사 역시 56%(14명/25명)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전국 소년보호사건 담당 법관의 수가 총 25명으로 설문조사 대상 숫자 자체가 매우 적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소년 담당 보호관찰소 종사자의 응답률은 18.4%(41명/223명)였고, 국선보조인의 경우 7.1%(49명/690명)로 설문조사 종사자 대상 가운데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표 Ⅲ-4] 종사자 설문조사 응답 비율

구분	총 종사자 수	설문지 응답자 수	응답비율
소년원 종사자 (관리자, 감호・교육 담당, 시설・행정직 제외)	419	380	90.7%
보호관찰관 (소년 담당)	223	41	18.4%
국선보조인	690(추정치)	49	7.1%
소년부 판사	25	14	56.0%
총계		484	

수집된 자료는 IBM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자료 분포형태, 문항의 방향성, 결측값(무응답) 및 극단치 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 다중응답 분석

109) 금태섭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을 실시하였다. 지역과 경력별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조사기간: 2018. 10. 8. (월) ~ 2018. 10. 29. (월)
○ 조사대상: 소년보호사건 담당 판사,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소년 담당 보호관찰소 종사자, 소년원 종사자
○ 분석대상: 총 484명(판사 14명, 국선보조인 49명, 보호관찰소 종사자 41명, 소년원 종사자 380명)

(2) 조사 내용[110]

설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및 활동 경력에 대한 내용이다. 성별, 나이, 직업, 현재 근무지역에 대하여 선택형으로 설문을 구성하였고, 해당 직역에서의 재직기간을 단답형으로 답하도록 제시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소년사법 절차의 단계별 이행수준에 관한 것이다. 소년사법제도 운영에 있어 국제인권규범이 제시하는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여 아동인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개선이 필요한 지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주로 일반논평 제10호 및 베이징규칙을 기준으로 아동권리의 일반요소 및 절차 단계별 권리목록을 추출하여 항목별로 반영하였다. 종사자별 응답 차이를 통계로 도출하기 위하여 모든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에게 공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되, 직역 특성상 달리 검토되어야 할 내용은 특정 문항을 일부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소년사법제도의 회복적 이념 실현 정도 및 그 실현을 위한 자원 투입의 적절성, 관련 인권교육의 시행 정도, 형사미성년자 연령과 우범소년 및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 소년사법이 적용되는 아동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요

110) 김은경 외 6명,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 (Ⅰ) - 제Ⅲ부 대안의 모색”, 제6장 소년사법개혁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소년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설문조사지 참조; 황지태 외 3명, “소년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부록1] 국선보조인 대상 설문지 참조.

인과 차별의 정도, 무죄추정의 원칙·혐의사실을 고지 받을 권리·진술거부권·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보호자의 절차참여권·반대심문의 보장·사생활의 보장·구금조치의 보충성 원칙·잔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등 적법절차 원칙의 보장 수준 등이 있다.

이러한 설문구성방식은 아동 면접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와의 연계·분석을 통해 소년사법 대상자(아동)와 운영자(법원 등)간에 어떠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지 보다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사법 절차의 개별 단계별로 각 운영주체의 아동권리 이행 수준 및 인식 정도를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설문에 응답하는 집단이 주로 판사, 국선보조인, 보호관찰관 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 면접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와 달리 응답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하바나규칙 및 리야드 가이드라인 등에 관한 질문을 제외하는 대신, 소년사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통합 등과 관련된 주관식 문항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별첨3] '종사자 설문조사 조사지'를 참고하면 된다.

[표 Ⅲ-5] 종사자 설문조사 문항 분석

구분		조사내용				문항
		1. 소년원종사자	2. 소년부 판사	3. 보호관찰관	4. 국선보조인	
Ⅰ.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현재근무지역, 경력(2파트)				5개
Ⅱ. 소년 사법 절차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재범소년의 비율 증가 원인(우선순위)				1개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도움정도, 충분한 물적자원(시설 등) 보유 여부(국선보조인 제외) 충분한 인적자원 보유 여부 충분한 예산 보유 여부 낙인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여부 소년범죄의 특수성에 관한 충분한 교육 제공 여부 아동권리에 관한 충분한 교육 제공 여부				7개 (4. 6개)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형법 제9조의 적절성 여부 및 그 이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적절성 여부 및 그 이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적절성 여부 및 그 이유				3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구분		조사내용				문항
		1. 소년원종사자	2. 소년부 판사	3. 보호관찰관	4. 국선보조인	
	3. 아동권리의 일반원칙	성별에 따른 권리보장 여부 보호력에 따른 권리보장 여부 아동친화적인 환경보장 여부	-	-	-	3개
		-	범죄와 기타 행위에 따른 적절한 처분 여부	-	-	1개
		-	개인적 특성과 환경에 따른 적절한 처분 여부	-	-	1개
Ⅱ. 소년 사법 절차	4.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1. 부모(기타 보호자)에게 아동의 생활내용 및 시설에서의 처우 등 정보제공 2. 소년원 처분의 의미와 절차 등 진행 전반 충분한 설명 제공 3. 개별면접 또는 상담의 적절성 4. 물리적 환경과 시설 보유 여부 5. 외부와 교류할 권리 제공 여부 6. 여가의 신체 활동 보장 여부 7. 종교의 자유 보장 여부 8. 의료조치 보장 여부 9. 신체적 유형력 행사 여부 10. 정서적 (언어) 폭력 행사 여부	1. 무죄추정 원칙 준수 여부 2. 범죄사실 고지절차 준수 여부 3. 진술거부권 설명 여부 4. 변호사나 보조인 조력을 받을 권리 설명 여부 5. 부모(기타 보호자)에게 재판절차 및 선고내용 사실 제공 여부 6. 부모(기타 보호자)의 심리절차 동석 조치 여부 7. 소년사법 절차 신속진행 여부 8. 항소권 안내 여부	1. 부모(기타 보호자)에게 보호관찰 사실 제공 여부 2. 아동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와 절차 등 진행 전반 충분한 설명제공 3. 개별면접 또는 상담의 적절성 4. 사생활 보장 여부	1. 부모(기타 보호자)가 조사나 심리절차에 원칙적으로 동석 보장 여부 2. 항소권 안내 여부 3. 아동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와 절차 등 진행 전반 충분한 설명제공 4. 사생활 보장 여부	1. 14개 2. 11개 3. 4개 4. 4개

구분		조사내용				문항
		1. 소년원종사자	2. 소년부 판사	3. 보호관찰관	4. 국선보조인	
		11. 독방처분 등의 징계절차 12. 외부의 모니터링 여부 13. 청원이나 국가인권 위원회 진정 절차 충분한 안내 여부 14. 사생활 보장 여부	9. 아동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와 절차 등 진행 전반 충분한 설명제공 10. 사생활 보장 여부 11. 구금 기타 자유박탈 조치를 최소한으로 이용 여부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분리해 절차 진행의 적절성 여부 소년형사사건 절차 진행과정에서 문제점·개선이 필요한 점 소년보호사건 절차 진행과정에서 문제점·개선이 필요한 점				3개
		8호 처분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의 적절성	다이버전 (대안적 처분) 제공 여부	보호관찰처분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의 적절성	소년보호처분 유형의 적절성	1. 4개 2. 15개 3. 4개 4. 14개
		9호 처분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의 적절성	소년보호처분 유형의 적절성	보호관찰처분 중 개선이 필요한 점	소년보호처분 결정의 영향 정도 (13개 문항)	
		10호 처분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의 적절성	소년보호처분 결정의 영향 정도 (13개 문항)	소년형사사건 보호관찰 담당 여부		
		소년원 송치처분의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		보호관찰 업무 대응방식		
전체문항		**40개 문항**	**50개 문항**	**27개 문항**	**36개 문항**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3) 조사 결과

1) 일반적 사항

가) 성별 및 연령대

종사자 설문조사에 응답한 484명의 일반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소년원 종사자와 보호관찰관은 각각 남성이 72.5%와 77.1%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국선보조인과 판사의 경우 남성이 57.1%와 42.9%로 남녀가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소년원 종사자는 30대와 40대, 50대가 비슷한 수치이고, 보호관찰관과 국선보조인의 경우 40대와 30대, 50대 순이고, 판사의 경우 40대가 가장 많았다. 소년원 종사자, 보호관찰관, 국선보조인, 판사 모두 40대의 응답 비율이 가장 많았다.

[그림 Ⅲ-1]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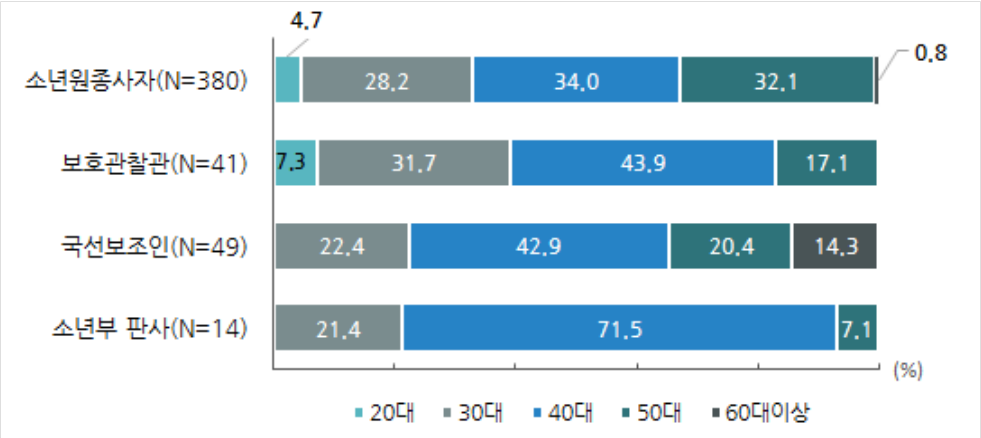

[표 Ⅲ-6] 성별 및 연령대

구분		소년원종사자(N=380)		보호관찰관(N=41)		국선보조인(N=49)		판사(N=14)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90	77.1	29	72.5	28	57.1	6	42.9
	여성	86	22.9	11	27.5	21	42.9	8	57.1
	총계	376	100.0	40	100.0	49	100	14	100.0
연령대	20대	18	4.7	3	7.3	-	-	-	-
	30대	107	28.2	13	31.7	11	22.4	3	21.4
	40대	129	34.0	18	43.9	21	42.9	10	71.5
	50대	122	32.1	7	17.1	10	20.4	1	7.1
	60대 이상	3	0.8	-	-	7	14.3	-	-
	총계	379	100.0	41	100.0	49	100	14	100.0

나) 근무지역

응답자의 근무지역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조사되었다. 소년원 종사자는 경기, 보호관찰관은 대구, 국선보조인은 경남, 판사는 서울 지역에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년원 종사자는 경기 21.4%, 부산 15.0%, 광주 11.9% 등의 순으로 응답비율이 많았고, 보호관찰관은 대구 22.0%, 서울과 경남 14.6%, 광주 12.2% 등의 순으로 응답비율이 많았다. 국선보조인은 경남 28.6%, 서울 16.3%, 경기 14.3%, 인천 12.2% 등의 순으로 응답비율 많았고, 판사는 서울 28.6%, 인천 21.4%, 부산과 경기 각각 14.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 소년 담당 근무경력

응답자의 소년 담당 근무경력의 경우, 소년원 종사자는 10년 이상이 가장 많았고, 보호관찰관과 국선보조인은 경력별로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판사의 경우 1년 미만과 1년 이상-3년 미만이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Ⅲ-2]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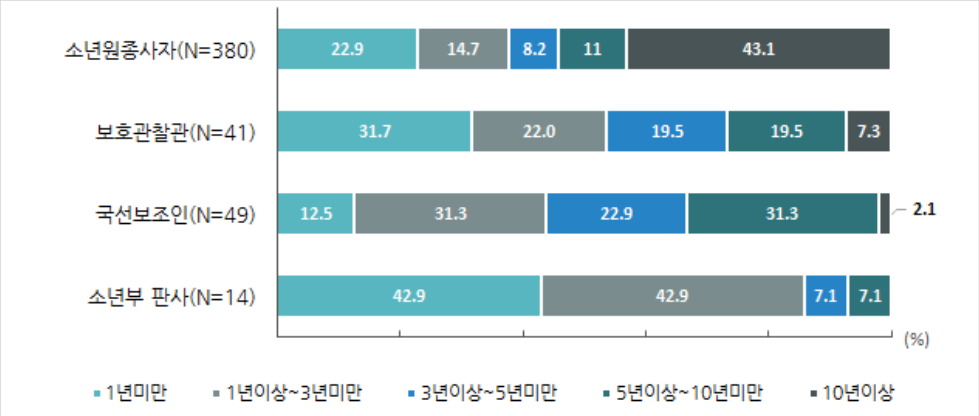

[표 Ⅲ-7] 경력

구분	소년원종사자 (N=380)		보호관찰관 (N=41)		국선보조인 (N=49)		판사 (N=14)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1년 미만	81	22.9	13	31.7	6	12.5	6	42.9
1년 이상~ 3년 미만	52	14.7	9	22.0	15	31.3	6	42.9
3년 이상~ 5년 미만	29	8.2	8	19.5	11	22.9	1	7.1
5년 이상~ 10년 미만	39	11.0	8	19.5	15	31.3	1	7.1
10년 이상	152	43.1	3	7.3	1	2.1	-	-
총계	353	100.0	40	100.0	48	100.0	14	100.0

2) 소년사법 절차

가)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① 재범소년의 증가 원인

재범소년의 증가 원인을 종사자별로 비교해보면, 소년보호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종사자(판사와 국선보조인)와 보호처분 집행단계에서 아동을 계속 만나는 종사자(소

년원 종사자와 보호관찰관)가 느끼는 문제의 원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소년원 종사자와 보호관찰관은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및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 부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국선보조인과 판사의 경우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 미비'와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미비'를 주요 원인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처벌 중심의 처분'이 모든 종사자에게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종사자 모두 '처벌 중심의 처분' 때문에 재범소년의 비율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응답한 것이다. '재범 방지'라는 소년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벌 중심의 처분'이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모든 종사자가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원 종사자와 보호관찰관이 재범소년의 증가 원인에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꼽은 이유는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현실(소년원 종사자는 2순위, 보호관찰관은 1순위로 보호처분 내실화를 위한 자원 부족이라고 답했다)에서 아동을 직접 만나야 하는 종사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집행단계에서 아동과 일상적으로 부딪치지 않아도 되는 판사와 국선보조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행예방을 위한 시스템 내지 사후보호체계 측면을 좀 더 고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Ⅲ-8] 재범소년 증가 원인 우선순위 : 전체의견

구분	소년원 종사자	보호관찰관	국선보조인과 소년부 판사
가중 1순위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 부족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의 미비
가중 2순위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 부족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미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그림 Ⅲ-3] 재범소년 증가 원인 우선순위 : 전체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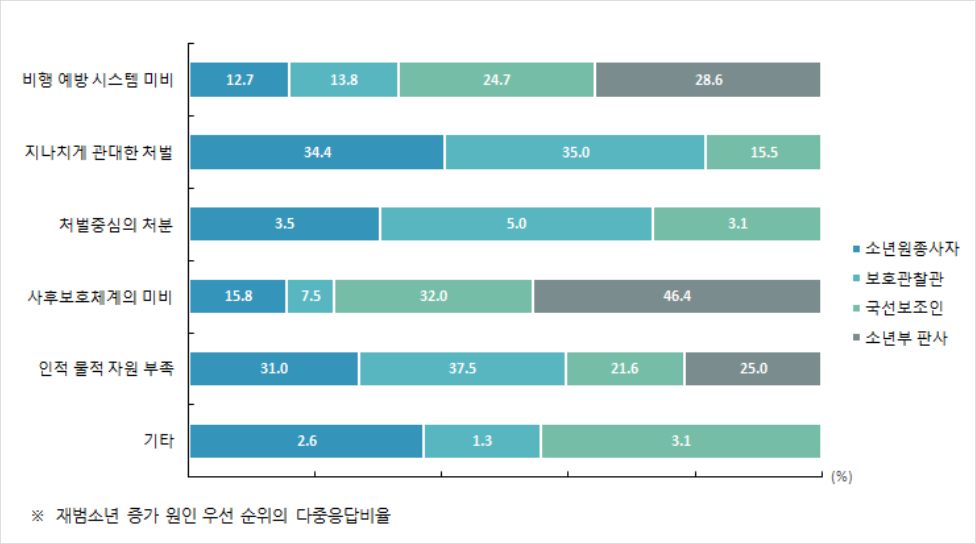

[표 Ⅲ-9] 재범소년 증가 원인 우선순위 : 전체의견

구분	소년원종사자		보호관찰관		국선보조인		판사	
	가중점수	가중순위	가중점수	가중순위	가중점수	가중순위	가중점수	가중순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미비	136	4	16	3	37	2	11	2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426	1	43	2	20	4	-	-
처벌중심의 처분	36	5	5	5	3	6	-	-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의 미비	158	3	8	4	49	1	22	1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 부족	320	2	46	1	32	3	9	3
기타	30	6	2	6	5	5	-	-

재범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을 종사자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소년원 종사자

소년원 종사자는 재범소년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34.4%)'에 가

장 많이 응답하였고,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 부족(31.0%)',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의 미비(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 응답 역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 46.6%로 가장 많았으며, 2순위 응답은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 부족'이 37.4%로 나타났다.

[표 Ⅲ-10] 재범소년 증가 원인 우선순위 : 소년원 종사자

구분	다중응답		1순위		2순위		가중 점수	가중 순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미비	93	12.7	43	11.6	50	13.7	136	4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253	34.4	173	46.6	80	22.0	426	1
처벌중심의 처분	26	3.5	10	2.7	16	4.4	36	5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의 미비	116	15.8	42	11.3	74	20.3	158	3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 · 물적 자원 부족	228	31.0	92	24.8	136	37.4	320	2
기타	19	2.6	11	3.0	8	2.2	30	6
총계	735	100.0	371	100.0	364	100.0		

(ii) 보호관찰관

보호관찰관이 생각하는 재범소년 증가 원인은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부족(37.5%)'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35.0%)',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미비(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 응답으로는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39.0%)'과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 부족(39.0%)'이 각각 동일한 비율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2순위는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 부족(30.85%)'이라고 응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Ⅲ-11] 재범소년 증가 원인 우선순위 : 보호관찰관 의견

구분	다중응답		1순위		2순위		가중 점수	가중 순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미비	11	13.8	5	12.2	6	15.4	16	3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28	35.0	16	39.0	11	30.8	43	2
처벌중심의 처분	4	5.0	1	2.4	3	7.7	5	5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의 미비	6	7.5	2	4.9	4	10.3	8	4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 부족	30	37.5	16	39.0	14	35.9	46	1
기타	1	1.3	1	2.4	-	-	2	6
총계	80	100.0	41	100.0	39	100.0		

(iii) 국선보조인

국선보조인은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의 미비(32.0%)',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미비(24.7%)',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 부족(21.6%)' 등의 순으로 재범소년이 증가한 원인에 응답하였다.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의 미비'를 1순위(36.7%)와 2순위(27.1%)로 응답하였다.

[표 Ⅲ-12] 재범소년 증가 원인 우선순위 : 국선보조인 의견

구분	다중응답		1순위		2순위		가중 점수	가중 순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미비	24	24.7	13	26.5	11	22.9	37	2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15	15.5	5	10.2	10	20.8	20	4
처벌중심의 처분	3	3.1	-	-	3	6.3	3	6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의 미비	31	32.0	18	36.7	13	27.1	49	1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 부족	21	21.6	11	22.4	10	20.8	32	3
기타	3	3.1	2	4.1	1	2.1	5	5
총계	97	100	49	99.9	48	100		

(iv) 판사

판사는 재범소년 증가 원인으로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의 미비(46.4%)'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미비(28.6%)',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 부족(25.0%)'의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 응답은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의 미비(64.35%)'였으며, 2순위 응답은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미비(35.7%)'이었다.

[표 Ⅲ-13] 재범소년 증가 원인 우선순위 : 판사 의견

구분	다중응답		1순위		2순위		가중 점수	가중 순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미비	8	28.6	3	21.4	5	35.7	11	2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	-	-	-	-	-	-	-
처벌중심의 처분	-	-	-	-	-	-		-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 보호체계의 미비	13	46.4	9	64.3	4	28.6	22	1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 부족	7	25.0	2	14.3	5	35.7	9	3
기타	-	-	-	-	-	-	-	-
총계	28	100.0	14	100.0	14	100.0		

(v) 재범소년 증가 원인에 대한 기타 의견

재범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하여 주관식으로 응답한 기타 의견은 크게 가정환경과 소년원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환경의 문제로는, 불안한 가정·주변환경으로 인해 범죄예방에 취약한 점, 가정기능의 약화 및 부모의 보호력 미흡, 폭력 가정이 증가하는 점이 제시되었다. 재범소년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소년원환경과 관련한 응답으로는, 소년원의 인력 부족, 소년원 직원의 역량 부족 등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표 Ⅲ-14] 재범소년 증가 원인 기타 의견

구분	내용	
가정환경	· 가정교육의 부재 · 가정기능의 약화 및 결손가정과 폭력가정 증가 · 가정 내 보호력(부모의 보호력) 미흡	
소년원환경	분위기와 태도	· 느슨한 소년원 분위기 · 소년원 내 생활태도 불량
	소년원 인력	· 소년원 규모축소와 인력부족 · 소년원 모든 직원의 인성교육
	처벌	· 보호처분 1회 후 형 집행 · 문제학생에 대한 다음 처분 부존재
기타	· SNS 등으로 불량교우와의 교제단절의 어려움 · 가정환경과 주변환경의 불안으로 범죄예방에 취약	

②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도움 정도

개별 종사자에게 자신이 속한 직역이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질문했다. 판사(평균 4.57점), 보호관찰관(평균 4.27점), 국선보조인(평균 3.94점), 소년원 종사자(평균 3.83점)의 순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은 관련 기관 상호 간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종사자 본인이 속한 기관이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지를 스스로 평가한 것이다.

[표 Ⅲ-15]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도움 정도

구분	소년원종사자(N=380)		보호관찰관(N=41)		국선보조인(N=49)		판사(N=14)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 도움이 안된다	7	1.9	-	-	1	2.0	-	-
도움이 안된다	19	5.1	-	-	4	8.2	-	-
보통이다	101	26.9	5	12.5	8	16.3	-	-
도움이 된다	152	40.5	20	50.0	20	40.8	6	42.9
매우 도움이 된다	96	25.6	16	37.5	16	32.7	8	57.1
전체	375	100.0	40	100.0	49	100.0	14	100.0
평균(표준편차)	3.83(.93)		4.27(.67)		3.94(1.01)		4.57(.51)	

③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물적 자원(시설 등) 보유 여부

조사에 응답한 소년원 종사자(2.85점), 보호관찰관(2.68점), 판사(2.71점) 모두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물적 자원(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질문의 특성상 물적 시설을 기반으로 활동하지 않는 국선보조인에게는 해당 질문을 제시하지 않았다.

[표 Ⅲ-16] 충분한 물적 자원(시설 등) 보유 여부

구분	소년원종사자(N=380)		보호관찰관(N=41)		판사(N=14)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7	7.2	1	2.4	2	14.3
그렇지 않다	119	31.6	16	39.0	3	21.4
보통이다	11	34.8	19	46.3	6	42.9
그렇다	83	22.1	4	9.8	3	21.4
매우 그렇다	16	4.3	1	2.4	-	-
전체	376	100.0	41	100.0	14	100.0
평균(표준편차)	2.85(.99)		2.68(.76)		2.71(.99)	

④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인적 자원 보유 여부

자신이 속한 직역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인적자원을 보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국선보조인(평균 3.14점)이 가장 높은 점수로 응답했고, 판사(평균 2.93점), 소년원 종사자(평균 2.51점), 보호관찰관(평균 2.38점)의 순이었다. 국선보조인의 경우 인적 자원 보유에 대해 보통(3점)보다 조금 높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나, 그 외 기관들은 인적 자원 보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아동을 집행단계에서 직접 만나는 소년원 종사자와 보호관찰관은 다른 종사자에 비해 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표 Ⅲ-17] 충분한 인적 자원 보유 여부

구분	소년원종사자(N=380)		보호관찰관(N=41)		국선보조인(N=49)		판사(N=14)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56	14.9	8	19.5	2	4.1	2	14.3
그렇지 않다	146	38.8	15	36.6	13	26.5	2	14.3
보통이다	113	30.1	13	31.7	16	32.7	5	35.7
그렇다	49	13.0	4	9.8	12	24.5	5	35.7
매우 그렇다	12	3.2	1	2.4	6	12.2	-	-
전체	376	100.0	41	100.0	49	100.0	14	100.0
평균(표준편차)	2.51(1.00)		2.38(1.00)		3.14(1.08)		2.93(1.07)	

⑤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예산 보유 여부

자신이 속한 기관 또는 직역이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판사(평균 2.43점), 소년원 종사자(평균 2.40점), 보호관찰관(평균 2.32점), 국선보조인(평균 2.3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모두 평균점수가 보통점수(3점)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종사자가 속한 기관이 충분한 예산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18] 충분한 예산 보유 여부

구분	소년원종사자(N=380)		보호관찰관(N=41)		국선보조인(N=49)		판사(N=14)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45	12.0	6	14.6	7	14.3	2	14.3
그렇지 않다	177	47.2	17	41.5	25	51.0	7	50.0
보통이다	117	31.2	17	41.5	14	28.6	2	14.3
그렇다	31	8.3	-	-	1	2.0	3	21.4
매우 그렇다	5	1.3	1	2.4	2	4.1	-	-
전체	375	100.0	41	100.0	49	100.0	14	100.0
평균(표준편차)	2.40(.85)		2.32(.83)		2.31(.89)		2.43(1.02)	

⑥ 낙인[111]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여부

자신이 속한 기관 또는 직역이 낙인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판사(평균 3.79점)의 답변이 가장 긍정적이었고, 소년원 종사자(평균 3.52점), 보호관찰관(평균 3.50점), 국선보조인(평균 3.16점)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모두 낙인 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19] 낙인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여부

구분	소년원종사자(N=380)		보호관찰관(N=41)		국선보조인(N=49)		판사(N=14)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	.8	-	-	1	2.0	-	-
그렇지 않다	42	11.1	4	9.8	13	26.5	1	7.1
보통이다	126	33.2	15	36.6	15	30.6	4	28.6
그렇다	171	45.1	19	46.3	17	34.7	6	42.9
매우 그렇다	37	9.8	3	7.3	3	6.1	3	21.4
전체	379	100.0	41	100.0	49	100.0	14	100.0
평균(표준편차)	3.52(.85)		3.50(.78)		3.16(.96)		3.79(.89)	

⑦ '소년범죄의 특수성'에 관한 충분한 교육 제공 여부

자신이 속한 기관 또는 직역이 '소년범죄의 특수성'에 관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종사자별로 비교한 결과, 판사의 평균점수(평균 3.64점)가 가장 높았고, 보호관찰관(평균 3.53점), 소년원 종사자(평균 3.44점), 국선보조인(평균 2.9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년원 종사자, 보호관찰관, 판사에 비해 국선보조인은 충분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11) 여기서 '낙인'이란 범죄자로 취급되거나 재비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고려되어 격리나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등 소년사법 경험을 이유로 부정적 평가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표 Ⅲ-20] 소년범죄의 특수성에 관한 충분한 교육 제공 여부

구분	소년원종사자(N=380)		보호관찰관(N=41)		국선보조인(N=49)		판사(N=14)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6	1.6	-	-	5	10.2	-	-
그렇지 않다	45	11.9	7	17.1	16	32.7	-	-
보통이다	133	35.1	9	22.0	8	16.3	6	42.9
그렇다	168	44.3	21	51.2	15	30.6	7	50.0
매우 그렇다	27	7.1	4	9.8	5	10.2	1	7.1
전체	379	100.0	41	100.0	49	100.0	14	100.0
평균(표준편차)	3.44(.85)		3.53(.91)		2.98(1.22)		3.64(.63)	

⑧ '아동의 권리'에 관한 충분한 교육제공 여부

자신이 속한 기관 또는 직역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소년원 종사자(평균 3.83점)가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보호관찰관(평균 3.55점), 판사(평균 3.21점), 국선보조인(평균 2.9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선보조인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Ⅲ-21] 아동의 권리에 관한 충분한 교육 제공 여부

구분	소년원종사자(N=380)		보호관찰관(N=41)		국선보조인(N=49)		판사(N=14)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3	-	-	5	10.2	-	-
그렇지 않다	17	4.5	4	9.8	14	28.6	-	-
보통이다	99	26.1	14	34.1	14	28.6	11	78.6
그렇다	189	49.9	19	46.3	12	24.5	3	21.4
매우 그렇다	73	19.3	4	9.8	4	8.2	-	-
전체	379	100.0	41	100.0	49	100.0	14	100.0
평균(표준편차)	3.83(.79)		3.55(.81)		2.92(1.13)		3.21(.43)	

나)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

① 형사미성년자 연령(형법 제9조)[112]의 적절성 여부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적절성 여부에 관해 종사자별로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소년원 종사자, 보호관찰관 및 국선보조인의 인식과 판사의 인식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판사는 92.3%(13명)가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소년원 종사자는 73.2%(270명), 보호관찰관은 70.7%(29명), 국선보조인은 62.5%(30명)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판사는 소년사법의 문제는 연령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며,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과 회복가능성을 이해하고, 국제인권규범을 고려해야 하며, 처벌보다 적절한 보호처분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임을 밝혔다. 반면, 보호처분 집행단계에서 아동과 직접 만나고 생활하는 소년원 종사자 및 보호관찰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는데, 그 이유로는 소년범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과거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성숙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나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리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표 Ⅲ-22] 형법 제9조의 적절성 여부

구분	소년원종사자(N=380)		보호관찰관(N=41)		국선보조인(N=49)		판사(N=14)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적절하다	99	26.8	12	29.3	18	37.5	13	92.9
부적절하다	270	73.2	29	70.7	30	62.5	1	7.1
전체	369	100.0	41	100.0	48	100.0	14	100.0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적절하다/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종사자별로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2)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표 Ⅲ-23]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적절'한 이유 종사자별 비교

구분	소년원종사자	보호관찰관	국선보조인	소년부 판사
공통점	개선 가능	개선 가능	개선 가능	-
	미성년자여서	미성년자여서	미성년자여서	미성년자여서
	-	보호처분으로 충분	-	보호처분으로 충분
	사회책임	-	사회책임(환경)	-
	-	처벌의 부작용	처벌의 부작용	-
차이점	· 성인처벌 가혹함 · 시스템부재	-	-	· 국제기준부합 · 처벌보다 교화가 효과적

[표 Ⅲ-24]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부적절'한 이유 종사자별 비교

구분	소년원종사자	보호관찰관	국선보조인	소년부 판사
공통점	미성년자범죄 증가	미성년자범죄 증가	미성년자범죄 증가	-
	소년법 악용	소년법 악용	-	-
	나이보다 범죄정도	나이보다 범죄정도	나이보다 범죄정도	-
차이점	· 재범가능성 높음	· 형사미성년기준 1953년 제정	· 예전기준 적용한계	· 보호처분 한계 (강력범의 경우)

○ 형사미성년자 연령 적절한 이유

구분	내용
소년원 종사자	- 10~14세는 보호처분으로 교육, 성행개선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14세 미만 아이의 판단력은 미숙하기 때문에 기회를 줘야 하고 바뀔 가능성이 있음 -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인을 기조로 하는 형벌의 책임을 직접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 가정과 학교, 국가의 책임도 크기 때문 - 교육의 다양성을 키워 편중될 형사시스템 개선 - 너무 낮추면 청소년 범죄자 양산 가능성 있음 - 너무 미성숙한 나이에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 - 무조건은 아니지만 청소년의 법적 처벌의 수준은 성년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함 - 미성년자를 보호할 시스템이 부재함 -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을 감안하여 처분해야 함 -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보다 강화된 보호처분과 예방프로그램, 교육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함 - 보호처분이라는 대안이 있음 - 비행성향이 고착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른 형사처벌에 따른 낙인화 우려가 큼 - 사회적 범죄예방정책과 가정보호력 강화가 우선 - 국제적인 추세임 - 처벌이 능사가 아님

구분	내용
보호관찰관	- 개선과 변화의 가능성이 충분함 - 경미한 범죄까지 형법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보호처분으로도 가능함 -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책임감 부족 -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겁을 주는 의미로 보호처분이 필요함 - 범죄인 양산 우려 - 연령을 낮추는 것은 조금 가혹한 면이 있음
국선보조인	- 미성년자를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소년의 문제이기 이전에 환경적인 문제가 원인임 - 장래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재비행 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됨 -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성인의 잣대로 처벌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 됨 - 처벌보다 교육이 필요한 대상이며, 아동의 경우 책임은 아동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 형사 미성년 나이를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필요하다면 죄질 및 범죄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함 - 형사처벌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음
판사	-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처벌보다는 교화개선이 더 효과적임 - 국제적 최소기준에 부합함 - 14세 미만의 아동은 처벌보다 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비행의 원인이 아동성향보다 환경이나 양육의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서 보호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 -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강화로 해결이 가능함 - 성인에 비해 위법성 인식이 부족함 - 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며 UN아동권리 규약 존중해야 함 - 아직 성장하고 있는 소년의 특수성과 개선가능성 고려해야 함 - 아직 인격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로 인한 효과에 의문이 있음 - 처벌보다는 개인의 성향, 환경, 특수성 등을 고려한 개별적 접근이 훨씬 필요하고 중요한 나이라고 생각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형사미성년자 연령 부적절한 이유

구분	내용
소년원 종사자	- 13세(만12세)로 하향 조정 필요 -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 증가 - 14세 미만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음 - 14세 미만이더라도 중한 죄(흉포성)를 범한 경우는 형사처벌해야 함 - 관대한 처분에 따른 부작용이 있음 - 나이가 어려도 흉악범죄 저지르는 사례가 많음 - 나이가 어리다고 형사처벌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나이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단순 저연령이라고 해서 범죄내용이 심각한데 처벌하지 않는 것은 위험함 - 문화변화에 따른 정신연령 등 연령하향 현상 - 범죄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비행이 습관화되기 전에 교정교육이 필요함 - 범죄의 내용이 심각하고 나이가 저연령에 발생, 처벌수위가 낮아 그냥 소년원에 갔다오면 된다는 풍조가 팽배함 - 성인 범죄와 유사하고 성인범죄 모방한 죄질이 나쁜 사건발생 증가 -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했으며 만 14세 미만도 형사책임이 필요하다 - 재범가능성이 높음, 위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음 - 현재 형법규정은 50년 전 규정으로 현 시대상황과 소년들의 성숙성 등과 맞지 않음
보호관찰관	- 강력범죄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범죄의 다양성과 성인 못지않은 범죄의 내용(범죄의 흉포화) - 소년법을 악용하여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봄 - 연령보다는 죄질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정신적 육체적 성숙함 - 처벌규정을 도입해 경미한 건에 대해 소년부 송치하는 예외규정 마련 -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1953년 제정
국선보조인	-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게 필요함 - 나이에 따른 일률적인 처리보다는 개별 사안(사건의 경중)마다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함 - 단순 나이만을 처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정신적, 신체적 성숙함 - 미성년의 범행이나 비행이 성인범죄와 다를 바 없음 - 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미성년의 중범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함 - 범행 연령이 낮아지므로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음 - 범행소년의 인식발달이 매우 빨라서 예전 나이 기준으로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음 - 범행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사회현상을 반영하지 못함 - 연령의 고려, 별도의 배상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예외조항 없이 일률적 면책은 바람직하지 않음 - 형사처벌 대상연령이 지나치게 높게 규정되어 있다고 봄
판사	- 대부분의 형사미성년자는 처벌보다 보호처분을 통한 성행개선이 효과적이지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만한 범죄도 간혹 있음 - 법에 대한 감정, 사회 일환의 인식 등에 맞추어 연령을 1년 정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② 촉법소년 규정(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113]의 적절성 여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촉법소년') 연령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종사자별로 비교한 결과, 소년원 종사자는 66.2%(241명), 보호관찰관은 68.3%(28명), 국선보조인은 85.4%(41명), 판사는 100%(14명) 모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때에도 판사와 국선보조인에 비해 소년원 종사자와 보호관찰관의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소년범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범죄의 형태도 중해지고 있으며, 처벌에 따른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적 효과가 필요하다는 등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부적절하다고 본 것과 유사하였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응답한 것으로 보아, 처벌이 아닌 교육과 보호에 목적이 있는 소년사법의 의미를 종사자에 따라 달리 이해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25]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적절성 여부

구분	소년원종사자(N=380)		보호관찰관(N=41)		국선보조인(N=49)		판사(N=14)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적절하다	241	66.2	28	68.3	41	85.4	14	100.0
부적절하다	123	33.8	13	31.7	7	14.6	-	-
전체	364	100.0	41	100.0	48	100.0	14	100.0

현행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절하다/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종사자별로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3)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표 Ⅲ-26]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절'한 이유 종사자별 비교

구분	소년원종사자	보호관찰관	국선보조인	소년부 판사
공통점	개선 가능	개선 가능	-	개선 가능
	-	경각심	경각심	-
	형사처벌 부적절	형사처벌 부적절	-	-
	재범 방지	-	재범 방지	-
	-	미성년자여서	미성년자여서	-
차이점	· 최소한의 조치 · 기회제공	-	· 예방 우선	· 법원의 조기개입

[표 Ⅲ-27]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부적절'한 이유 종사자별 비교

구분	소년원종사자	보호관찰관	국선보조인	소년부 판사
공통점	범죄 저연령화	-	범죄 저연령화	-
	연령이 아닌 죄질	연령이 아닌 죄질	연령이 아닌 죄질	-
	경각심 고취	경각심 고취	-	-
차이점	-	-	· 보호자 등 법에 의존하는 경향	-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촉법소년) 적절한 이유

구분	내용
소년원 종사자	- 14세 미만은 아동이라고 간주하고 대해야 함 -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이므로 형사처벌보다는 적절함 - 개선의 여지가 있고 죄질이 낮으면 기회를 줘야 함 - 경미한 범죄에 한해 범죄예방 교육을 통해 바른길로 인도해야 함 - 구치소, 교도소보다는 낫다 - 나이가 어리더라도 잘못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데 소년보호사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 10세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사리분별력이 없고 우발적 범죄가 많으므로 적절함 - 범죄가 저연령화 되는 추세이므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바람직 - 보호자의 보호력이 미약함 - 보호처분은 보호차원의 처분성격이 강하며 청소년의 장래 불이익이 없음 - 보호처분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 부여 - 비판은 있을 수 있으나 처벌만으로 재범 방지는 불가능. 건강한 가정, 안전한 건강한 사회 보장 등이 우선 - 소년보호 절차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고 교화의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함

구분	내용
소년원 종사자	- 송치하지 않으면 방치됨 - 저연령 비행청소년의 조기 처벌을 통해 재비행 방지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 - 처벌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개입으로 향후 성인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봄 - 초6-중1학년 등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은 낙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 크고, 이들에게는 사전예방시스템으로 비행방지에 노력을 기울임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촉법소년에 대한 적절한 규정 -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 - 환경과의 분리와 교육이 필요함
보호관찰관	- 10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처벌 필요 - 모든 소년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 - 미성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해 필요 - 범죄에 따른 사건 유동성 필요 - 비행사실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넘어갈 수준이 아님 - 비행에 대한 대응력이 필요 - 사리분별능력이 미숙하고 적절한 지도가 우선되어야 함 - 소년보호사건 집행 처리 절차로 개선교육 가능한 연령 - 아이들이 범죄를 자신이 저질렀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연령을 낮추는 것은 조금 가혹한 면이 있음 - 현재로선 최선의 방책임 - 형법으로 집행하기에는 죄질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할 것 같음 - 형사처벌 전에 경각심 고취 필요
국선보조인	- 교육을 통하여 재범 방지 - 교정과 교화가 동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됨 - 만 14세 미만 청소년도 처벌을 받는다는 점은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 미성년자들에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당연함 - 미성숙한 아이들이기에 소년보호사건 송치 제도는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됨 - 비행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임 - 범죄인식이 부족한 자들에게 기회나 개선의 여지를 주는 것이 적절함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사법시스템을 통해서라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함 - 보호처분 대상으로 처리하면서 가정법원을 통해 개별 사안마다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사건에 따라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도 적절 - 아직은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일반 형사범과는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음 - 연령만 가지고 이들을 심리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봄 - 임의규정이므로 큰 문제없어 보임 - 죄질이 높아지고 있고 연령대가 낮아지기 때문 - 처벌보다는 교화와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는 소년법의 취지가 맞다고 생각함 - 초범부터 준법인식 제고 - 형사법정에 세우는 것보다 그 나이 대에는 적절 - 형사적 낙인을 찍기 이전에 분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구분	내용
판사	- 교화개선을 위해서는 보호처분이 필요함 - 10세 이상이면 자신의 비행이 가정이나 학교를 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보호절차를 통해 이를 체득할 수 있음. - 보호절차를 통한 법원의 조기개입이 더 이상의 비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 10세 정도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 반사회적 행동을 구분할 수 있음 - 소년보호사건의 조사절차 등을 활용하여 재비행 예방교육 등을 할 수 있고, 후견적 개입이 가능하므로 - 소년의 연령별 특수성을 잘 고려 반영함 - 아직 비행성 심화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효과적 성행개선 필요 -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를 통하여 조기에 비행예방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음 - 형사미성년자라도 만10세 이상은 성행의 교정과 환경조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음 - 환경조정,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이 필요함 - 획일화된 형사처벌이 아니라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해서 성행의 개선과 환경의 조정이 가능함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촉법소년) 부적절한 이유

구분	내용
소년원 종사자	- 10세 미만의 소년범죄의 증가 - 10세는 어린 나이 - 14세 미만의 소년도 강력범이 증가하고 있음 - 14세 미만자는 보호자의 보호력이나 지도감독이 더 중요할 것 - 12년 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인식이 많음 -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 - 나이가 아니라 비행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해야 함 - 나이제한을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도록 조정필요 - 범죄유형의 흉폭화 - 범죄의 내용이 심각하고 나이가 저연령에 발생, 처벌수위가 낮아 그냥 소년원에 갔다오면 된다는 풍조가 팽배함 - 죄에 대한 정확한 처분이 필요(연령에 따른 구분 지양) - 형사처벌하여 경각심을 높여야 함
보호관찰관	- 10세의 나이를 더 낮춰야 함 - 14세 이상의 경우 형사처분 - 만 10세 미만의 초등학생에게 범죄행동으로 인해 처벌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범죄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하도록 강행 필요 - 충분히 악용될 여지가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함
국선보조인	- 만 10세부터 13세 미만으로 개정이 필요 - 범죄연령이 하향되고 있기 때문 - 보호자나 관리자들을 만나다 보면 너무 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보임 - 중학교 이상의 중범죄 등은 소년형사사건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③ 우범소년 규정(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114]의 적절성 여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만 10세 이상의 아동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적절한지와 관련하여, 응답한 종사자들은 대체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년원 종사자는 74.0%(271명), 보호관찰관은 85.4%(35명), 국선보조인은 62.5%(30명), 판사는 92.9%(13명)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우범소년' 규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점차 약화되는 가족 기능을 대신하는 국가의 보호조치가 필요하고, 비행단계에 개입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교육적 목적에서 사후처리가 아닌 사전조치가 더 중요하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반면, '우범소년' 규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범죄의 우려만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며, 예비범죄자라는 낙인을 초래하고, 성인과 다르게 처벌하는 것은 차별이며, 범죄를 행한 아동과 동일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오히려 반사회적 성향을 학습하는 기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표 Ⅲ-28]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적절성 여부

구분	소년원종사자(N=380)		보호관찰관(N=41)		국선보조인(N=49)		판사(N=14)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적절하다	271	74.0	35	85.4	30	62.5	13	92.9
부적절하다	95	26.0	6	14.6	18	37.5	1	7.1
전체	366	100.0	41	100.0	48	100.0	14	100.0

현행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적절하다/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종사자별로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절'한 이유로는 법적인 보호 필요 및 범죄

114)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예방이 공통된 의견이었고, '부적절'한 이유로는 '우범소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고, 낙인이 우려된다는 점이 공통된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표 Ⅲ-29]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적절'한 이유 종사자별 비교

구분	소년원종사자	보호관찰관	국선보조인	소년부 판사
공통점	법적 보호필요	법적 보호필요	법적 보호필요	법적 보호필요
	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차이점	개선가능성	-	-	-

[표 Ⅲ-30]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부적절'한 이유 종사자별 비교

구분	소년원종사자	보호관찰관	국선보조인	소년부 판사
공통점	죄형법정주의 위반	죄형법정주의 위반	죄형법정주의 위반	-
	-	낙인 우려	낙인 우려	-
차이점	· 기준이 모호함 · 다이버전 활용 · 연령을 고려해 성인과 다르게 처벌하는 것은 차별	구체적 시행 부실	· 연령 높일 필요 · 향후 재범 가능성 높아짐	-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우범소년) 적절한 이유

구분	내용
소년원 종사자	- 가정기능 부실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소년법 통고제도 활성화 필요) -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다면 소녀부로 송치해야 재범을 막을 수 있음 - 가출 등 우범 소년들과 어울리며 비행가능성을 높이기 때문 - 교육으로 인한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 - 범죄 예방차원에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을 범죄로부터 예방 - 법적보호 및 안정적인 보호 필요 - 소년보호기관외에 적절한 다른 기관이 없음 - 학생들 개개인에 맞춰 일정한 시설이나 교육을 제공해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년보호에서 힘써야 할 것임

구분	내용
보호관찰관	- 국가가 부모라는 국친사상은 중요함 - 더 큰 비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범죄예방의 보호처분의 목적과 부합 - 범죄행위에 대한 사전방지,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 학교 등 청소년 단체의 권위 유지 -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비행을 저지르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도 국가에서 보호해야 함 - 우범소년들의 비행접근성을 차단하여 범죄예방효과가 있음 - 주변에 미치는 악영향을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 첫 비행에 관대하면 연속비행이 가능함 - 청소년의 지위 비행에 대한 통제 필요 - 환경 등으로 인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 높음
국선보조인	- 가정 내의 보호가 힘들어진 만큼, 사회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소년보호 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임 - 가출 등의 행위가 범죄의 인과관계가 높아서 - 경각심을 심어줌으로 비행예방 효과가 있을 것을 생각됨 -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필요하다고 봄 -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을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하기보다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절차를 밟고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됨 - 범죄행위가 없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소년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비행의 흉포화, 모방화 - 빠르게 조치하여 상담과 처우개선을 통해 예방함 - 사후처리가 아닌 사전예방 차원에서 범죄환경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 우범소년에 대해서도 관리 필요 - 죄질이 높아지고 있고 연령대가 낮아지기 때문
판사	- 보호처분 필요성이 있고 비행예방과 사전교육 필요성 - 비행에 조기 개입하여 신속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소년사건의 경우, 형사사건 되지 않은 숨은 범죄(성매매 등)가 많고, 가출 등으로 인하여 비행성이 심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범으로 조기 개입할 필요가 있음. -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조만간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소년을 소년법상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됨 - 우범소년에 대해 엄격히 판단을 하고 있고,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기 전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개입할 필요가 있음 - 우범소년이 비행을 저지를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기에 개입하여 비행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보호처분은 형사절차와는 다른 것이고 교육, 상담, 치료 등 적절한 처분을 이행함으로써 비행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우범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만 높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의 피해자가 될 위험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 - 현실적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 활용되는 제도로 남용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됨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우범소년) 부적절한 이유

구분	내용
소년원 종사자	- 기준이 모호한 것 같음 - 무죄추정의 원칙 - 범죄 노출 전 차단한다는 목적은 좋으나, 안 좋은 사례를 배워 오히려 범죄소년이 되는 경우가 발생 - 범죄소년 저연령화로 인한 형사처벌 체계 정비 - 범죄의 우려만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됨. 신중하고 객관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함 - 보호처분만 부과할게 아니라, 범죄유형에 맞게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소년법보다는 다이버전을 활용 - 소년원에서의 생활보다 다른 나은 기관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함 - 시설 내에서의 처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미성숙한 소년에게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음 - 실제 현장에서 보면 억울해하는 소년, 보호자를 다수 볼 수 있음 -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대상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송치범위가 너무 광범위함 -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 어리다는 사유로 성인과 달리 처벌하는 것은 차별임, 실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 거의 없음 - 얼마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임 - 우범이란 이유로 예측해서 보호처분 하는 것은 옳지 않음 - 인권침해가능성 -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자유권을 침해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 - 형사미성년자의 연령하향 조정 필요
보호관찰관	- 과도한 형사사법체계 관여 - 구체적 시행 부실 - 미리 예비범죄자로 낙인 - 저지르지 행동에 벌을 주는 것은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게 할 수 있음 - 죄형법정주의에 위반소지가 있음
국선보조인	- 낙인감 우려 - 다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만으로 송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면 다른 유형의 시설이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 분리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선도가 적절함 - 소년보호 사건으로 취급되면 향후 범죄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됨 - 연령의 상한이 높아져야 함 - 우려만으로 실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과 동일한 제도로 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 - 우범성 판단이 자의적이며, 낙인의 우려가 있고, 현해 보호처분으로 인해 교육이 이뤄질 지도 의문이기 때문 - 우범소년의 범위가 부정확하여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음 - 죄형법정주의에 반함
판사	- 보호가 필요하나, 법원의 처분에 의한 강제적 보호가 바람직한지 의문임

다) 아동권리의 일반원칙

①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소년사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아동은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다만, 이때의 차별금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여성이라는 상대적 특성에 따른 개별적 처우를 고려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된 아동을 성별에 따라 달리 처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소년원 종사자는 '그렇다(36.8%)'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판사는 '그렇지 않다(42.9%)'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성별이 처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나, 아동과 직접적인 생활을 함께하는 소년원 종사자의 경우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그렇다'에 응답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판사와 소년원 종사자 모두 자신이 종사하는 직역이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31] 성별에 따른 차별적 처우 여부

구분	소년원종사자(N=380)		판사(N=14)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2	5.8	3	21.4
그렇지 않다	31	8.2	6	42.9
보통이다	75	19.8	2	14.3
그렇다	139	36.8	3	21.4
매우 그렇다	111	29.4	-	-
전체	378	100.0	14	100.0
평균(표준편차)	3.78(1.14)		2.36(1.08)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② 보호력[115]에 따른 차별 금지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을 보호력에 따라 달리 처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판사는 92.3%(12명)가 보호자의 보호력에 따라 달리 처우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년원 종사자는 35.9%가 '그렇다'에, 29.3%가 '보통이다', 16.9%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보호자의 보호력은 판사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나, 보호처분에 대한 집행기관인 소년원의 경우 보호력의 정도가 아동의 생활에 차별적 처우를 야기하지는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32] 보호자의 보호력에 따른 차별적 처우 여부

구분	소년원종사자(N=380)		판사(N=14)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40	10.6	-	-
그렇지 않다	64	16.9	-	-
보통이다	111	29.3	1	7.7
그렇다	136	35.9	12	92.3
매우 그렇다	28	7.4	-	-
전체	379	100.0	13	100.0
평균(표준편차)	3.13(1.11)		3.92(.28)	

③ 아동참여와 의견청취권 보장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는 소년사법의 모든 단계에서 완전히 존중되어야 한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자신이 종사하는 기관에서 아동의 참여와 의견청취권이 실현되는 아동친화적인 환경이 보장되는지에 대하여, 소년원 종사자는 53.0%가 '그렇다'에, 30.6%가 '보통이다'에 응답하여 평균 3.75점 정도로 나타났고, 판사는 42.9%가 '그렇다'에, 57.1%가 '보통이다'에 응답하여 평균 3.43점 점도로 나타나, 종사자들은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아동친화적인 환경은 대체로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5) 여기에서 '보호력'이란 부모의 유무, 보호자의 재산 정도,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애정과 관심 정도를 의미한다.

[표 Ⅲ-33] 아동친화적인 환경 보장 여부

구분	소년원종사자(N=380)		판사(N=14)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	.8	-	-
그렇지 않다	9	2.4	-	-
보통이다	116	30.6	8	57.1
그렇다	201	53.0	6	42.9
매우 그렇다	50	13.2	-	-
전체	379	100.0	14	100.0
평균(표준편차)	3.75(.74)		3.43(.51)	

④ 아동 최상의 이익에 입각한 처분[116]의 적절성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의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그가 행한 범죄 기타 행위에 비추어 적절한 처분을 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판사는 64.3%가 '그렇다'에, 21.4%가 '매우 그렇다'에 답하여 약 86%가 적절하게 처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종사하는 기관을 스스로 평가함에 따라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Ⅲ-34] 아동 최상의 이익에 입각한 처분 여부

구분	판사(N=14)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	-
그렇지 않다	-	-
보통이다	2	14.3
그렇다	9	64.3
매우 그렇다	3	21.4
전체	14	100.0
평균(표준편차)	4.07(.62)	

116) 여기에서 '처분'이란 형사처분, 보호처분(1호 내지 10호), 조건부 기소유예 등 해당 기관에서 하는 모든 종류의 최종결정을 의미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⑤ 아동의 연령과 발달적 특성에 따른 처분의 적절성 처분[117)]

특히 아동기는 연령에 따른 변화가 다변하게 발현되는 과정이며, 경험과 학습을 누적하는 발달과정에 있는 특성상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이다. 이러한 아동의 연령과 개인적 특성 및 기타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분이 결정되는지에 관하여, 응답한 판사의 64.3%가 '그렇다'에 답하였고, 21.4%가 '매우 그렇다'에 답하여 약 86%가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① 소년원 종사자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할 원칙과 관련하여, 소년원 종사자는 90.3%가 '그렇다' 이상에 응답한 '적절한 의료조치'가 가장 잘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교의 자유(86.9%)', '사생활 보장(86.0%)'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차례로 높았다. 반면, '청원 및 진정에 대한 안내'는 긍정적인 답변이 44.2%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적절한 물리적 환경과 시설'적 측면은 23.1%가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에 답하여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5] 소년원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준수 여부

(단위 : 명, 비율)

문항(평균척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부모 기타 보호자의 알 권리(4.08)	2	0.5	3	0.8	60	15.8	211	55.7	103	27.2	379	100.0
2. 아동의 정보접근권 및 알 권리(4.08)	1	0.3	4	1.1	59	15.6	213	56.2	102	26.9	379	100.0
3. 개별면접 또는 상담을 받을 권리(4.02)	1	0.3	11	2.9	62	16.4	211	55.7	94	24.8	379	100.0
4. 적절한 물리적환경과 시설(3.32)	18	4.7	70	18.4	106	27.9	143	37.6	43	11.3	380	100.0
5. 외부와 교류할 권리(4.05)	2	0.5	3	0.8	67	17.6	210	55.3	98	25.8	380	100.0

117) 여기에서 '처분'이란 형사처분, 보호처분(1호 내지 10호), 조건부 기소유예 등 해당 기관에서 하는 모든 종류의 최종결정을 의미한다.

문항(평균척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6. 여가의 신체활동(3.98)	4	1.1	5	1.3	84	22.1	189	49.7	98	25.8	380	100.0
7. 종교의 자유(4.26)	2	0.5	1	0.3	47	12.4	175	46.1	155	40.8	380	100.0
8. 적절한 의료조치(4.34)	2	0.5	1	0.3	34	8.9	171	45.0	172	45.3	380	100.0
9. 신체적 유형력 행사(4.27)	208	54.7	96	25.3	48	12.6	25	6.6	3	0.8	380	100.0
10. 정서적(언어) 폭력 행사 (4.24)	178	46.8	135	35.5	49	12.9	16	4.2	2	0.5	380	100.0
11. 독방처분 등의 징계절차 (3.29)	46	12.2	27	7.2	107	28.5	165	43.9	31	8.2	376	100.0
12. 정기적인 모니터링(3.85)	5	1.3	12	3.2	91	24.1	198	52.4	72	19.0	378	100.0
13. 청원 및 진정에 대한 안내 (4.33)	1	0.3	40	10.6	170	45.0	-	-	167	44.2	378	100.0
14. 사생활 보장(4.26)	1	0.3	2	0.5	50	13.2	169	44.7	156	41.3	378	100.0

* 평균 :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3점 보통---5점 매우 그렇다)

각 원칙의 응답 평균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적절한 의료조치'가 평균 4.3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청원 및 진정에 대한 안내'(평균 4.33점), '신체적 유형력 행사[118]'(평균 4.27점), '사생활 보장'(평균 4.26점), '종교의 자유'(평균 4.2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독방처분 등의 징계절차'는 평균 3.29점으로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② 보호관찰관

보호관찰관은 '아동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97.6%)', '부모 기타 보호자의 알 권리(97.5%)', '사생활 보장(75.6%)'의 순서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별면접 또는 상담을 받을 권리(68.3%)'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보호관찰 중인 아동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복귀

118) 다른 항목과 비교하기 위해 5점 척도를 역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원칙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지원을 위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보호관찰관의 업무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표 Ⅲ-36] 보호관찰관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원칙 준수 여부

(단위 : 명, 비율)

문항(평균척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부모 기타 보호자의 알 권리 (4.49)	–	–	–	–	1	2.4	19	46.3	21	51.2	41	100.0
2. 아동의 정보접근권 및 알 권리 (4.41)	–	–	–	–	1	2.4	22	53.7	18	43.9	41	100.0
3. 개별면접 또는 상담을 받을 권리(3.83)	–	–	1	2.4	12	29.3	21	51.2	7	17.1	41	100.0
4. 사생활 보장(4.00)	–	–	2	4.9	8	19.5	19	46.3	12	29.3	41	100.0

* 평균 :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3점 보통---5점 매우 그렇다)

평균점수로 살펴보면, '부모 기타 보호자의 알 권리'가 평균 4.49점으로 가장 잘 보장되는 권리라고 생각하였으며, '아동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평균 4.41점)', '사생활 보장(평균 4.00점)', '개별면접 또는 상담을 받을 권리(평균 3.83점)' 보장이 차례로 나타났다.

③ 국선보조인

국선보조인은 85.4%가 '사생활 보장' 문항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답하여 가장 많은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다음으로, '부모 기타 보호자의 절차 참여권'이 72.9%로서 보호자의 절차 참여권이 잘 보장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항소권 안내'는 68.7%, '아동의 정보접근권 및 알 권리'는 64.6%로서,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권리로 인식하였다.

[표 Ⅲ-37] 국선보조인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준수 여부

(단위 : 명, 비율)

문항(평균척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부모 기타 보호자의 절차 참여권(3.74)	1	2.1	7	14.6	7	14.6	22	45.8	11	22.9	48	100.0
2. 항소권 안내(3.72)	-	-	4	8.3	13	27.1	24	50.0	7	14.6	48	100.0
3. 아동의 정보접근권 및 알 권리(4.04)	-	-	3	6.3	4	8.3	30	62.5	11	22.9	48	100.0
4. 사생활 보장(4.04)	-	-	3	6.3	10	20.8	17	35.4	18	37.5	48	100.0

* 평균 :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3점 보통---5점 매우 그렇다)

평균점수로 살펴보면, '아동의 정보접근권 및 알 권리'와 '사생활 보장'이 각각 평균 4.04점으로 가장 잘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 기타 보호자의 절차 참여권(평균 3.74점)', '항소권 안내(평균 3.72점)' 순이었다.

④ 판사

판사가 종사하는 기관에 대한 원칙은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사법절차 전반에서 특히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과정으로서 무죄추정 원칙, 범죄사실의 고지, 진술거부권 안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부모 기타 보호자의 알 권리, 부모 기타 보호자의 절차 참여권, 신속한 절차 보장, 항소권 안내, 아동의 정보접근권 및 알 권리, 사생활 보호, 자유박탈의 제한에 대한 질문이 제시되었다. 응답 결과, '부모 기타 보호자의 알 권리', '부모 기타 보호자의 절차 참여권', '사생활 보호' 항목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답변한 비율이 100.0%로서, 참여자 모두 매우 잘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항소권 안내'에 관한 부분은 각각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7.1%로서, 해당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응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표 Ⅲ-38] 법원에서 준수해야 하는 원칙 준수 여부

(단위 : 명, 비율)

문항(평균척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무죄추정 원칙(3.86)	-	-	-	-	4	28.6	8	57.1	2	14.3	14	100.0
2. 범죄사실의 고지(4.14)	-	-	-	-	2	14.3	8	57.1	4	28.6	14	100.0
3. 진술거부권 안내(4.21)	-	-	-	-	1	7.1	9	64.3	4	28.6	14	100.0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4.00)	-	-	1	7.1	2	14.3	7	50.0	4	28.6	14	100.0
5. 부모 기타 보호자의 알 권리(4.29)	-	-	-	-	-	-	10	71.4	4	28.6	14	100.0
6. 부모 기타 보호자의 절차 참여권(4.57)	-	-	-	-	-	-	6	42.9	8	57.1	14	100.0
7. 신속한 절차 보장(4.07)	-	-	-	-	2	14.3	9	64.3	3	21.4	14	100.0
8. 항소권 안내(4.07)	-	-	1	7.1	1	7.1	8	57.1	4	28.7	14	100.0
9. 아동의 정보접근권 및 알 권리(3.93)	-	-	-	-	4	28.6	7	50.0	3	21.4	14	100.0
10. 사생활 보호(4.50)	-	-	-	-	-	-	7	50.0	7	50.0	14	100.0
11. 자유박탈의 제한(3.93)	-	-	-	-	4	28.6	7	50.0	3	21.4	14	100.0

* 평균 :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3점 보통---5점 매우 그렇다)

구체적으로, '부모 기타 보호자의 절차 참여권'이 평균 4.57점으로 가장 잘 보장되는 권리로 인식하였고, '사생활 보호(평균 4.50점)'와 '부모 기타 보호자의 알 권리(평균 4.29점)' 준수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평균 3.86점, '아동의 정보접근권 및 알 권리'와 '자유박탈의 제한'은 평균 3.93점으로, 판사는 소년사법제도에서 아동의 참여권 및 최소·최단기간의 자유박탈 제한에 관한 원칙이 가장 지켜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①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분리 진행의 적절성 여부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분리 진행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답변을 종사자별로 비교한 결과, '적절하다'와 '매우 적절하다'에 응답한 비율이 국선보조인은 85.5%, 보호관찰관은 65.0%, 소년원 종사자는 63.5%, 판사는 35.7%였다. 소년형사사건과 소

년보호사건을 분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직역은 판사였고(평균 2.64점), 국선보조인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4.10점). 특히 소년부 판사를 제외한 종사자 모두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점에 주목할 수 있다.

[표 Ⅲ-39]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분리 진행의 적절성 여부

구분	소년원종사자		보호관찰관		국선보조인		판사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 부적절하다	16	4.4	-	-	-	-	4	28.6
부적절하다	36	9.9	5	12.5	3	6.3	4	28.6
그저 그렇다	80	22.1	9	22.5	4	8.3	1	7.1
적절하다	172	47.5	20	50.0	26	54.2	3	21.4
매우적절하다	58	16.0	6	15.0	15	31.3	2	14.3
전체	362	100.0	40	100.0	48	100.0	14	100.0
평균(표준편차)	3.61(1.01)		3.68(.89)		4.10(.81)		2.64(1.50)	

평균 :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3점 보통---5점 매우 그렇다)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단일화가 필요하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점이 종사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주관식 문항은 분리 진행의 부적절성, 즉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통합해야 하는 이유를 질문한 것인데, 분리 진행이 적절한 근거로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답변한 응답도 여럿 발견되었다.

[표 Ⅲ-40]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분리 부적절한 이유

구분	소년원종사자	보호관찰관	국선보조인	소년부 판사
공통점	단일화 필요	-	단일화 필요	단일화 필요
	형평성 위배	형평성 위배	형평성 위배	형평성 위배
차이점	· 형사재판이 적절 · 판결기간이 오래 걸림	· 아동 개선에 큰 차이 없음 · 범죄유형에 따라 구분 필요	-	· 성인범과 소년범 절차 분리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분리가 '부적절'한 이유〉

구분	내용
소년원 종사자	- 가정법원이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는 인식이 강함 - 강력범죄자에 대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관대해지는 경향 - 같은 대상에 대해 다른 기관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인력낭비라고 보임 - 같은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양형 해야 함 - 검사의 구형이 없고 판사의 재량이 너무 많음 - 나이보다는 비행에 따라 나눠져야 한다고 생각함 - 단일한 소년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전제하에 단일절차에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이 결정되는 것이 소년의 보호, 소송경제, 재판전문성 등에 우월함 - 범죄소년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강화해야 함 - 범죄의 정도에 따라 소년원 및 형사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 - 보호처분은 형사처분의 전 단계로 인식시켜 보호처분 후 개선이 없을 시 형사처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본인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사실상 형사사선과 보호사건의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판사의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 - 소년원에서 규율을 위반하면 바로 형사처분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 -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없고 먼저 구속된 청소년의 낙인효과 및 범죄학습 등으로 부작용 발생 심각 - 재판판결이 다양하지 못하며 가정법원으로 갈 경우 처분이 한정적 - 통합하여 소년사건을 다루어야 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돌봄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보호관찰관	- 가정법원의 독단적인 처분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 범죄행위의 가중을 분리할 뿐 아동의 개선에는 큰 차이가 없음 - 비슷한 내용의 범죄를 구분하여 처분해야 함 - 소년범에 대해서는 개선 가능성, 환경 등의 요인을 더 고려해야 할 듯
국선보조인	- 동일한 소년보호사건에 대해 관할 법원이 이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재판부마다 기간이 다름
판사	- 성인범과 소년범의 절차를 분리해야 함, 가정법원에 의한 통일적인 절차로 진행할 필요 있음 - 소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 성인범죄자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 구속이라도 될 경우 아무런 성행고정이나 효과 없이 장기간 성인범죄자와 섞여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더 오염될 우려가 있음 - 소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소년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소년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함께 진행하여야 통일적인 사건처리가 가능 - 일반 형사법원에서 소년사건을 담당할 경우, 성인범과 비슷한 기준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져, 아동에 대한 교육, 보호보다 처벌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음

② 소년'형사'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

종사자들의 공통의견으로는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일관된 기준의 필요, 죄질에 따른 분리 및 소년교도소의 활용 필요, 범죄 오염가능성 문제, 관련 종사자들의 소년사건의 특수성과 이해 부족이 제시되었다.

[표 Ⅲ-41] 소년형사사건 절차 진행 과정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

구분	소년원종사자	보호관찰관	국선보조인	소년부 판사
공통점	인적·물적자원부족	인적·물적자원부족	-	-
	일괄된 기준 필요	-	일괄된 기준 필요	-
	죄질에 따른 분리	죄질에 따른 분리	죄질에 따른 분리	-
	범죄오염가능성	범죄오염가능성	범죄오염가능성	범죄오염가능성
	소년교도소 활용	소년교도소 활용	-	-
	-	-	관련 종사자들의 소년사건 특수성 이해부족	관련 종사자들의 소년사건 특수성 이해부족
차이점	· 형사처분활성화 · 행정절차복잡 · 보호자에게 통보	· 법원 간 의사소통 부족 · 송치시간 너무 오래 걸림	· 소년은 구속하지 않아야 함 · 보호관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음 · 처벌 이외 대안 필요 · 피해자를 위한 대처 필요 · 심리상담 필요 · 신병확보 어려움	· 범죄소년의 성장과정 및 주변환경 조사 필요 · 처벌보다 교화, 교육이 우선 · 신속한 소년부송치 필요

종사자 별로 소년'형사'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응답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구분	내용
소년원 종사자	- 강력범도 합의하면 너무 쉽게 소년부 송치됨 - 강력범에 대해선 형사처분이 합당함 - 강력범죄 소년에 대한 관대한 처분으로 소년원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됨 - 강력비행이나 소년원 재범자는 소년부 재판을 가지 않으면 좋겠음 - 교도소 3개월 이상 수용 후 소년원 송치 - 교도소 구금 되어 성인과 함께 수용되며, 범죄가 학습됨 - 구치소에 수감되는 기간이 길고 형사처벌과 소년부 송치를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해야 함 - 만 14세 이상은 비행전력과 그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 - 보호처분 중 재범 등으로 인한 보호처분 변경이나 형사처분으로 변경 시 행정적 절차가 상당히 복잡함 - 살인미수도 소년부 송치되는 예가 있어 부적절함 - 소년교도소의 적극적 활용 - 소년사건 심리절차 진행 내용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 있음 - 소년사건 진행 중이라도 성행교정 가능성이 희박한 소년은 형사사건으로 빠른 전환이 필요함 - 소년원의 과밀화, 교육기자재 노후화 - 수용기간 중 폭행, 상해사건 발생 시 국가 공권력이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형사처분 활성화 - 형사 대부분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되는 등 형식적임 - 형사사건 대상자가 되는 기준을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할것 같음 - 형사사건 선고 후 소년보호사건 취소가 필요함 - 형사재판에서 소년보호사건을 가능하게 하며 중복 처벌을 금지
보호관찰관	- 경미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 송치해 성인이 되기 전 범죄경력이 남는 사례가 많음 - 나이가 어릴 경우 결국에는 소년부 송치가 되는 경우가 많음 - 보호관찰 인력을 증원하여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 높고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필요 - 비슷한 내용의 범죄를 구분하여 처분 - 성인 형사사건과 다른 차원에서 대응 필요 - 소년사건으로 가정법원 등에 송치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림 -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 수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소년의 수용기관에서 범죄 학습감염 -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법원 간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음 - 수사기관에서 성인과 소년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있음 - 연령보다 소년의 죄질, 반성 등 동적인 상황에 중점을 두고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분리 필요 - 장래의 개선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법절차의 반성이 필요 - 재판기간이 길고, 성인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범죄오염 및 인권침해소지 있음 - 죄질이 나쁘거나 엄정하게 처벌이 필요한 경우 소년부 송치보다 구공판 진행이 필요함 - 형사법원과 가정법원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

구분	내용
국선보조인	- 가급적 소년의 경우 구속을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음 - 가능하면 소년비행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었으면 좋겠음 - 구속의 경우, 구치소 사정상 성인과 함께 생활하거나 접촉할 수밖에 없어 분리감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구속재판의 경우, 유치시설이 성인범과 분리되지 않음 - 국선보조인을 통한 향후 절차나 대응이 필요함 - 범죄 죄질이 높은 공범이 있을 경우 단순가담이라도 함께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 - 보호관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재범률이 높아짐 - 곧 성인이 되는 범죄자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이 필요 - 성폭력관련 비행에 대해서는 그 수준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송치할 필요가 있음 - 소년보호 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 및 진행 절차에 대해 보호자나 소년이 모르고 있어 교육이 필요함 -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는 경우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피고인 소재 불명으로 사건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 소년이 처벌받는 것 외에 환경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관한 안내 - 소년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을 구분할 수 있는 대체적인 기준이 필요함 - 소년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일방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 반성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억울한 사건도 많음 - 소년형사사건을 진행한 재판부가 결정으로 소년부송치를 할 경우, 소년보호재판으로만 진행되는 점 등이 죄질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함 - 수사, 재판 과정에서 심리상담과 교육 등이 필요함 - 양형조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희망 - 중대범죄를 저질렀어도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언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피해자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 - 형사사법 관련자의 소년사건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
판사	- 구속재판인 경우, 성인범과 같이 구금되어 있고, 구치소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비행성이 심화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짐 - 사건 자체 외 소년의 성장과정과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미미한 실정임, 소년의 경우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가 성인과 다른 양식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사건초기에 소년부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소년범에게는 처벌보다는 교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함, 구속시 학교교육 연계가 안 되고, 성인범과 분리수용이 안돼서 감화의 우려가 있음 - 소년형사사건 담당 판사를 비롯한 절차종사자들이 소년보호사건의 이념이나 절차진행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듯함 -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비행시부터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그 사이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이 비행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고, 신속한 소년부송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보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③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

종사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는,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사건 내지 재판시간의 문제, 신속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오래 걸림)점들이 지적되었고,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는 소년보호사건의 (양형)기준 마련, 보호처분의 개선, 보호소년과 보호자의 교육 필요, 6호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Ⅲ-42] 소년보호사건 절차 진행 과정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

구분	소년원종사자	보호관찰관	국선보조인	소년부 판사
공통점	인적・물적자원 부족	인적・물적자원 부족		인적・물적자원 부족
	사건・재판시간	사건・재판시간	사건・재판시간	사건・재판시간
	오래 걸림	오래 걸림	오래 걸림	오래 걸림
	양형기준 마련	양형기준 마련	양형기준 마련	
	엄중처벌 필요	엄중처벌 필요		
		각호 처분 수정 필요	각호 처분 수정 필요	
	보호소년, 보호자 교육 필요		보호소년, 보호자 교육 필요	
			6호 시설확충 필요	6호 시설확충 필요
차이점	・정신과적 문제 있을 경우 분리 필요 ・보호력 차이가 판결에 영향 ・자유제한 필요	・보호관찰관 의견 존중	・보수 현실화 ・국선보조인 권한 강화 ・피해자 고려한 절차진행 필요 ・분류심사원제도 개선 필요 ・충실한 심리 위해 적정 건수만 심리	・경찰의 즉결심판 청구 금지 ・수사기관과 법원의 소통 및 연계절차 부족

종사자 별로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응답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소년원 종사자	- 6호처분의 경우 그 실효성에 대해 감독기능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논의가 이뤄지고 개선사항을 반영하길 희망함 - 7~8주의 장기위탁 문제 - 9호, 10호 중복 처분이 금지 / 9호, 10호 2회 이상 받은 소년들에 대해서는 절차를 달리해야 할 필요 있음- 강력범죄나 비행경력이 많은 경우 보호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형사처분 - 1년 기간 송치처분의 입법화 필요 - 개인에 맞는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 다양한 처분이 내려지면 좋겠음 - 결정전 조사, 상담조사, 분류심사 조사-소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나 현재 직원의 업무가 과중하여 미비한 점이 있음 - 사정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조사가 필요함 - 인력보충 및 업무조정이 필요함 - 경미한 사건과 중대한 사건의 처분이 동일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 사회 내 처우에 더 중점을 두고 중대한 처분을 엄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경찰수사에서 법원결정까지 기간을 줄이기 - 구금단계 조정 필요 - 기간을 가지고 처분결정을 하는 것보다 소년의 범죄 행위를 분석하여 다양한 처분프로그램을 개선하였으면 함 - 기소-결정기간이 길며, 짧게 해서 즉각적인 조치(처분)해야함 - 배심절차를 통해 판사의 독단적 처분 방지 필요 - 범죄경력 3회 이상인 자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초범자에게 범죄학습이 우려되므로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법원 불위탁 심리 직후 소년원 위탁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보호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부모들이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함 - 법원 재판에서 난동이 일어날 경우 대처 시스템 부족 - 법원과 소년보호기관과의 공조 필요, 양형제도 검토 - 보호사건 진행 중 범행 내용을 부인할 경우 그 구제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보호자 참여도 중요하지만 담임(소년원수용당시)의견도 중요 - 보호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급식비를 일반 중고등학교와 동일하게 인상 필요. - 낙후된 시설 개선 및 부족한 인적자원 증원 필요 -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인권보장 및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음 -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사전교육(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 소년보호사건은 항소제도가 필요치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 - 임시퇴원 취소 결정이 있기 전까지 기간이 산정되지 않는 것을 개선의 필요성 있음 - 자유를 더욱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재판의 공정성, 쉼터처분 및 감독 필요 - 재판이 적정하지 않음. 보호력 차이가 수용여부 결정할 사유가 되는가? - 전국적으로 수용률을 감안하여 심사원 위탁시 신중을 기해주시고 불필요한 위탁보다는 불위탁 보호처분으로 제대로 된 반성과 사회복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소년은 분류심사원 위탁보다는 병원위탁이 적절함 - 죄의 경중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보호처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함 - 판사의 처분에 대한 편차가 심하고 부가 명령이 너무 많음- 판사의 잦은 교체로 소년 파악 및 이해에 문제가 있음, 지나치게 온정적인 처분으로 비행양산 경향이 있음 - 피해자의 인권 무시, 소년보호사건 종사자의 인권무시 - 현재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만 소년재판이 가능하여 심리기간이 길어지고, 지원소재지 거주소년들의 재판 불출석률이 높고 심리가 지연되는 동안 재범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음

구분	내용
보호관찰관	- 10호 이상의 처분 필요 - 9호 처분 및 임시퇴원 문제 - 경찰 수사단계에서 보호자의 협조와 피해자와의 합의, 용서와 사회단계가 필요 - 보호관찰 부과된 재범자에 대한 보호관찰관 의견 존중 및 처분 시 고려 - 보호처분 변경사건 등 재판과정에서 판사 독단에 의한 처분 많음 - 사건과 재판시정이 너무 길지 않도록 신속한 재판이 필요함 - 소년법 의미에 맞게 책임성 있는 국가기관에서 소년법 제32조 각 처분을 맡아야 함 - 수사경력 다수자에 대한 소년원 위탁 등 엄중처벌필요 - 수용기관, 시설부족으로 시설 내 처우가 필요한 자에 대해 사회 내 처우로 전환 - 심리까지의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 인력보충 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체계적으로 개입 - 재판과정의 시간이 너무 길며 양형의 기준이 없음
국선보조인	- 10호 경우 가퇴원이 없이 만기 퇴소가 되었으면 좋겠음, 9호와 10호 사이 새로운 처분이 있어 단계적으로 처분이 되었으면 좋겠음 - 국선보조인 및 변호인 보수의 현실화, 부모 및 법정대리인들과의 면담 증대 필요 - 국선보조인에게 제공되는 자료가 일부 제한됨 - 국선보조인은 사실상 사후적 조치 - 국선보조인의 보수지급의 현실화가 필요함 - 국선보조인이 보호소년과 부모를 접견함에 있어 기일이 촉박할 경우가 있으며, 부정적으로 대하고 있어 협조를 구할 시간이 필요함 - 기록열람 보장, 결정이유에 대한 고지, 설명, 화해권고의 활성화 - 보호소년과의 효율적인 면담을 위해서 사전에 보호자의 연락처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 보호소년들이 보호자가 선임한 변호인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피해자의 참여가 미흡한 것도 있음 - 보호소년과 피해자 모두를 고려할 수 있는 절차진행이 필요한 것 같음 - 보호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함 - 분류심사원 보호의 부실, 상담 및 치료의 부족, 피해자 알권리에 대한 배려 부족 - 분류심사원 생활 기회를 더 확산시키고, 이곳에서 잘 생활하면 양형에 반영하면 효율적이라 생각함 - 분류심사원의 여건상 가족면회가 오전만 가능해 부모님이 생업 또는 거리상 면회가 어려우므로 오후 면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비행사실을 부인할만한 여러 정황들이나 알리바이가 존재하여도 다투기 어려움 -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보다 형량으로 거래를 하는 듯한 재판태도 - 각 시, 도에 통합적 보호처분 시설을 최소한 1개씩 설치해야 함 - 소년부 판사의 경우 재량의 범위가 넓어 사실상 형사사건의 양형기준처럼 기준표를 국선보조인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매우 다른 처분이 내려지고 있음 - 시범형 그룹홈과 보호시설 등의 확충 필요 - 일반 형사법원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보내지 말아야 함 - 일반형사재판에서 지켜지는 최소한의 절차라도 유지 - 자료의 열람복사 및 접견시간과 심리시간 간 기간이 짧아 변론이 충실히 이루어지기 어려움 - 재판장에 따라 처분의 결과가 극과 극을 달리고,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여부가 갈림 - 절차문제보다는 6호 기관이 증설되기를 희망함 - 초범인 청소년들에게 가정환경 및 학교 교우관계 등에 따른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판결시 도움을 받았으면 함 - 충실한 심리를 위해 1일에 적정 건수만을 심리 - 하루에 바로 선고가 나는 경우가 많고 실체 심리에 대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함

구분	내용
판사	- 6호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임 - 경찰의 소년법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국가는 임신 중인 보호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수사기관의 교육절차 운영은 전체적인 소년사법시스템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가정법원 미설치 지역에 전면적인 가정법원 설치를 실시하여야 함 - 다양한 수감, 상담기관, 6호 처분 시설이 필요한데, 위와 같은 시설 부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한 관심 지원이 필요 - 보호소년의 신변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이 필요하고, 신속한 심리보호처분 집행을 위해 각종 수사 및 조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함 - 소년보호재판을 소년에 대한 형사재판과 분리하여 다루는 경우 비행예방과 재범 방지 등의 실질적 제재와 보호의 측면을 중시할 필요가 크다고 봄. 소년보호재판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등 절차적 측면을 명확히 했느냐와 같은 것들을 소년보호재판이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의 기준으로 삼아 다른 보충요소 없이 평가한다면 이는 너무 형식적인 큰 오류가 발생 - 소년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이 너무나 부족함 - 수사기관과 법원의 소통, 연계절차가 부족함, 소년보호사건에 관계하는 전문가 발굴, 지역유관기관의 통일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심도 있는 분류심사제 도입 필요

바) 종사자 별(소년원 종사자, 국선보조인, 보호관찰관, 판사) 개별문항 분석

이하는 종사자 별로 달리 구성한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① 소년원 종사자

소년원 종사자의 경우,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9호),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10호)이 각각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적절한지, 보호소년을 위한 소년원 송치처분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관해 질문했다.

(i)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처분(8호)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의 적절성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처분(8호)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의 적절성에 대해 소년원 종사자의 응답을 알아본 결과,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4.1%(198명)로, 적절하다 45.9%(168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 종사자들은 8호 처분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의 적절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적절하다와 부적절하다의 차이는 8.2%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표 Ⅲ-43]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처분(8호)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의 적절성

구분	소년원종사자		
	빈도(명)	비율(%)	공통된 의견
적절하다	168	45.9	• 9호와 10호 처분하기에 애매한 소년들에게 필요함 • 단기 쇼크구금 효과(반성기회 제공, 수용생활 경험, 재범 방지 효과 등) • 가정, 학교, 사회와 격리를 최소화하면서 범죄예방(개선, 교화, 교육 등) 가능
부적절하다	198	54.1	• 1개월 기간이 짧음(교육효과 미비, 비효율적, 경각심은 주지만 효과 낮음, 재범 방지 효과 미미, 단기 쇼크 수용효과 낮음, 위탁과 차별성 없음) • 8호 소년원 별도 신설 필요 • 9호, 10호 처분 받은 학생들에게 의미 없음(실효성 낮음)
전체	366	100.0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이 적절/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유〉

구분	내용
적절한 이유	- 10호나 9호처분을 제외한 비행청소년의 처분으로 적합 - 1개월 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8호처분을 받게 해야 함 - 9호, 10호와 보호관찰처분 사이 경계선에 있는 소년의 재비행 우려가 높은 소년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존재해야함 - 9호나 10호 처분하기 애매한 경우 경각심을 줄 수 있음 -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최소화하면서 범죄예방 기능 수행 - 가족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 개방적 인성교육을 통해 비행성을 제거하고 재범 방지나 사회복귀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 - 단기 쇼크구금의 효과 필요 - 범죄의 진화 단계에서 초기에 법의 엄격함을 알게 하는 조치로서 적절함 - 비행 초기 대상자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임 - 비행력이 중하지 않은 소년의 경우 충격구금으로 정신 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됨 - 비행성이 약한 학생들에게는 적당함 반성의 기회 부여 - 쉽지 않은 수용생활을 경험시키는 점 - 인성교육 중심으로 재범 방지에 효과 - 프로그램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구분	내용
부적절한 이유	- 1개월 교육의 내실화가 미흡 - 1개월 소년원 송치의 효과성에 비해 행정적 절차가 너무 많아 비효율적 - 8호 소년원이 별도로 신설되어야 함 - 9호, 10호 처분 받은 학생들에게 의미가 없음 - 경각심은 어느 정도 주지만 효과가 크지 않고 재범 방지의 효과는 미미함 -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회복귀에 용이하나 재범을 방지하기엔 부족한 시간 - 분류심사원에서 이미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음 - 소년원 생활 학습 및 단기 쇼크 수용효과 기대 낮음 - 위탁과 차별성 없음, 온정적 처분으로 많이 이용됨 - 재범으로 다시 9호나 10호 처분 받는 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8호 처분의 실효성이 낮다고 생각함

(ii)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9호)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의 적절성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9호)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의 적절성에 대해 소년원 종사자의 응답을 알아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55.9%(203명)로 부적절하다 44.1%(160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 종사자들은 9호 처분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적절성에 긍정적인 견해가 더 많았으나, 적절하다와 부적절하다의 차이는 11.8%로 나타났다.

[표 Ⅲ-44]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9호)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의 적절성

구분	소년원 종사자		
	빈도(명)	비율(%)	공통된 의견
적절하다	203	55.9	• 10호 처분하기 애매한 경우 적절함 • 1회에 한해 효과 있음 • 교화 가능한 기간임(교육의 단기목표 달성 및 집중교육 효과, 단기 직업재활교육, 학업연계 가능, 장기수용의 폐해 최소화 등) • 재범 방지 기간으로 적절함(범죄환경 차단, 가족의 소중함 인식) • 쇼크구금의 효과
부적절하다	160	44.1	• 10호와 통합할 필요 • 1년 이상으로 기간 상향(6개월은 너무 짧음, 반성보다 악습을 배움) • 9호 처분 대상자들의 재범률이 높음 • 보호관찰 회피 방안으로 활용(일부러 징계를 받아 만기 퇴원하려고 함) • 인적·물적 자원부족(생활환경, 교육환경 미비)
전체	363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9호)이 적절/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유〉

구분	내용
적절한 이유	- 10호 처분하기 애매한 경우에 적절한 처분임 - 1회에 한하여 수용시설 생활이 효과가 있음 - 6개월~1년이면 충분히 교화가 될 거라 생각함 - 9호 처분자의 임시퇴원은 없어야 함 - 교육의 단기목표달성 및 집중교육효과 - 단기 직업재활교육, 학업연계 및 장기수용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음 - 단기처분 중 반성의 기회 및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 등 기회가 있으므로 적절함 - 범죄환경에 노출된 소년의 재범 방지에 기여 - 비행이 중한 소년은 장단기 소년원 처분이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현실상 가장 적합한 처분이고 대안이 없는 것 같음 - 사회와 단절로 가족의 소중함 등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음 - 쇼크구금의 효과가 있음 - 인성교육이나 학적연계가 필요한 소년에게 재범 방지와 사회와 연계되어 복귀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임 - 중기비행청소년의 심화교육으로 비행예방, 단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함
부적절한 이유	- 10호와 통합할 필요 있음 - 1년으로 상향 - 1년 이하가 적당(자격취득불가, 만기퇴원희망 등) - 6개월을 단기 충격을 주기엔 긴 기간이고 소년의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짧은 기간임 - 9개월이 적절함 - 9호 학생들이 재범률이 높으며 직업훈련시 해당 직업을 선택하지 않음 - 기간이 너무 짧아 반성보다 악습을 배우는 경향이 있음 - 너무 기간이 적고 대부분 보호관찰이 싫어 만기퇴원하려고 하여 수용질서를 어지럽힘 - 사회적 인적, 물적 자원부족 - 인권 친화적인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 -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 때문에 일부러 징계를 받아 만기퇴원하려는 소년이 있음

(iii)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10호)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의 적절성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10호)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의 적절성에 대해 소년원 종사자의 응답을 알아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79.5%(287명)로 부적절하다 20.5%(74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 종사자들은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10호)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5]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10호)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의 적절성

구분	소년원종사자		
	빈도(명)	비율(%)	공통된 의견
적절하다	287	79.5	•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교화 등 충분한 시간임(사회복귀에 도움) • 범죄 노출된 시간과 환경을 차단하기에 충분함(가족의 중요성 인식 등) •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기에 충분한 기간
부적절하다	74	20.5	• 10호 종료 후 재범 및 사회부적응 학생 많음(형사재판이 필요한 소년으로 인해 범죄오염 문제) • 2년은 시간이 길다고 생각 됨(9호 처분과 형평성이 맞지 않음, 1년이 적당, 비행오염 및 수용질서 문란) • 소년원 내 제재장치가 없음 • 과밀수용 문제 • 인권위주 교육으로 긴장감이나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 어려움
전체	361	100.0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10호)이 적절/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유〉

구분	내용
적절한 이유	- 10호는 특히 직업훈련도 병행하고 있어 적절함 - 1년 이상으로 교육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 보임 - 2년이란 기간은 소년에게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기 때문 - 가족관계 회복, 인성교육, 직업훈련이 가능함 - 교육기간에 검정고시 등을 통한 학력해소가능. 약 2년 정도 있으면 저절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면이 있어 재범가능성이 줄어듦 - 국가의 보호아래 생활을 하고 생활태도와 직업훈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귀에 긍정적임 - 극소수지만 변화 사례를 볼 수 있음 - 또 다시 10호 처분은 학생에게 도움이 안 됨 -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을 차단하고 생활패턴을 바꿔 반성과 사회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음 - 비행이 중한 소년의 경우 장단기 소년원 처분이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현실상 가장 적합한 처분이고 대안이 없음 -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등을 수행하고 생활태도 개선, 범죄우려가 있는 환경으로부터 차단 - 사회와 단절로 가족의 소중함 등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음 -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장 재범 방지 사회복귀 기대가 큰 규정이므로 임시퇴원에서 심층적이고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임 - 학생들이 12개월 이상의 사회격리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낌 -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효과가 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구분	내용
부적절한 이유	- 10호 종료 후 재범 및 사회부적응 학생 많음 - 24개월은 시간이 길다고 생각됨 - 2년 동안 수용시설에 처분이 학생에게 단초를 제공 - 9호 처분 개월 수와 형평이 크게 벗어나고, 효과성도 높지 않다고 봄 -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소년원의 교육은 효과가 반감될 것임, 획일적인 조치가 필요함 - 기간은 적정하나 시스템이 인권위주로 가다보니 학생들의 긴장감이나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가 어려움 - 소년보호기관이 도움이 되지 않음. 형사처벌이 필요하고 교도소로 가야함 - 소년원 내 제재장치가 없음 - 수용기간 문제(1년이 적당), 임시퇴원 취소자에 대한 처분문제 - 수용기간이 길어 비행오염 및 수용질서 문란 등 - 수용률, 교정성적에 연연하여 담임교사의 지도력을 저하시킴 - 수용악습과 과밀수용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많음 - 형사재판 필요성이 보이는 일부 소년들로 재범악화 가능성 높음

(iv) 소년원 송치처분의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

[표 Ⅲ-46] 소년원 송치처분의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

구분	소년원종사자
	공통된 의견
문제점	• 6달 이하 보호처분은 효과가 미미함 • 10호 처분 2회 이상은 효과 미흡(형사처벌 필요한 소년 보호처분 금지 필요, 소년원처분 집행에 애로가 많음, 생활지도 어려움) • 목적 불분명(구인 또는 처벌, 소년원의 학교화로 재범 방지 역할 못함) • 정신질환자 등으로 인해 교육에 방해(분리 필요) • 낙후된 시설(대규모 집단생활) 등 교육효과 미흡 • 지나친 인권 처우 문제(사기저하, 교권침해, 비현실적임)
개선이 필요한 점	• 소년원 송치처분 단일화(1년)하고, 임시퇴원 가능하도록 개선해, 원내 규정을 지킬 수 있는 동기 부여 필요 • 사회 내 처우가 강화되어야 함(소년원 송치기간 최소화) • 9호 처분 기간 1년으로 상향 • 9호, 10호 처분 재부여시 형사처벌해야 함 • 사회적응을 위한 기반확충(고용직업센터 설치, 학업, 직업훈련, 의료처우 등)

② 보호관찰관

(ⅰ) 보호관찰처분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의 적절성

보호관찰처분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적절한지에 대해 보호관찰관의 응답을 알아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82.9%(34명)로, '부적절하다' 17.1%(7명)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보호관찰관들은 보호관찰처분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7] 보호관찰처분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의 적절성

구분	보호관찰관		
	빈도(명)	비율(%)	공통된 의견
적절하다	34	82.9	• 대상자 성행 개선에 도움(경각심 고취, 재범 방지 등) • 대안이 없음(유일한 수단) • 목적엔 부합되지만 인적·물적 자원부족
부적절하다	7	17.1	• 세분화 필요(범죄유형, 기간 등) • 실효성이 없음(중범죄, 반복범죄 등 대상자에게 재차 보호관찰 부여) • 사회복귀에 도움이 안 됨(특별학교에서 교육 필요)
전체	41	100.0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처분이 적절/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유〉

구분	내용
적절한 이유	- 개선의 의지가 있는 소년들에게는 충분한 효력 있음 - 관계인을 통한 문제사항 파악 후 개입 지도 - 다각적 접근을 통한 재범 방지가 필요함 - 대상자의 성행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법률로 규정되거나 업무지침 등 제도적인 부분은 상당히 부합됨, 다만 제도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등이 확충되어야 함 - 성행개선이나 법적경각심을 부여하여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임 - 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은 다른 어떤 기관 및 인력이 대신할 수 없음 - 아주 적절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고 봄 - 유일한 수단이며, 최선의 방법임 - 인원 충원이 필요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구분	내용
부적절한 이유	- 기간, 범죄유형 등에 따른 세분화 필요 - 보호관찰 중 재범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재차 보호관찰이 부과되는 악순환이 자주 일어남 - 보호관찰이 불가능, 부적절한 재범 소년에게 지속적으로 보호관찰이 부과되어 실효성이 없음 -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특별학교에서 교육을 가르치는 게 도움 - 재범에 대한 처분이 약한 경우가 많음

(ii) 보호관찰처분 중 개선이 필요한 점

구분	내용
개선사항	- 1개월만 있다 보니 대상자들 사이에 1달만 고생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만연하여 기간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가정법원 결정시 보호관찰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 담당자 대비 대상자 인원을 줄여야 함 -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음 - 반복된 보호관찰 처분보다는 반복시 수용처우가 필요함 - 보호관찰 위반자에 대한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변경 인용율의 상향 필요 - 보호관찰관이 통합하여 관리 - 보호처분을 대신하는 청소년 회복센터에 대한 국가지원 필요 - 보호관찰처분과 소년원처분의 중간단계 처분 필요 - 불응시 적정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소년법에 대한 큰 무서움을 갖고 있지 않음 - 소년원 처분이 너무 가볍고 쉽게 느껴짐 - 소년재판 시 보호관찰관 의견이 반영되길 바람 - 수용시설의 다변화 - 임시퇴원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함, 소년원 생활에 따른 차별된 처분이 필요 -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변경신청의 경우 강한 처벌이 필요함 - 청소년 꿈키움 센터에 교육기관처럼 사회복귀를 위해 교육시킬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음 - 형행 10단계 외 세부적인 보호처분의 다양화가 필요

(iii) 소년형사사건에 관한 보호관찰 담당여부

보호관찰관에게 소년형사사건에 관한 보호관찰 담당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담당한다'라는 응답이 79.5%(31명)로, '담당하지 않는다' 20.5%(8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는 응답자 중 약 80%의 보호관찰관들은 소년형사사건에 관한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8] 소년형사사건에 관한 보호관찰 담당여부

구분	보호관찰관	
	빈도(명)	비율(%)
담당한다	31	79.5
담당하지 않는다	8	20.5
전체	39	100.0

(ⅳ) 보호관찰 업무대응방식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모두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업무대응방식(대상아동을 보는 시각 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이 76.7%(23명)로, '다르다'는 응답 23.3%(7명)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약 77%의 보호관찰관들은 소년'형사'와 소년'보호'의 보호관찰 업무 대응방식이 다르지 않다고 응답했다.

[표 Ⅲ-49] 소년형사와 소년보호 보호관찰 업무대응방식의 차이

구분	보호관찰관	
	빈도(명)	비율(%)
다르지 않다	23	76.7
다르다	7	23.3
전체	30	100.0

소년형사와 소년보호 보호관찰 업무대응방식이 다르다/다르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이유〉

구분	내용
다르지 않은 이유	- 개입방법이 다른 것이지 인식자체가 다르지는 않음 - 많은 사건수로 인해 구별 안 됨 - 보호사건 종료 이후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인과에서 관리함 - 비행에 대한 경중의 차이일 뿐, 지도의 방식을 다르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경우 - 소년형사사건 대상자를 연령에 따라 소년과 성인으로 분류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적용 - 처벌내용이 아닌 소년의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 처분만 다르지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은 동일
다른 이유	- 소년보호사건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아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 - 집행유예의 경우 재범 등 발생 시 일반 소년법 보호처분에 비해 불이익이 중대함을 강조 - 처벌적 차원의 대응, 교육적 차원의 대응 - 형사사건은 소년에 대한 보호보다 사회에 대한 보호가 우선임 -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성향이 고착화되어 관리차원으로 하고 있음 - 형사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경우 가정환경 및 범죄수법이 보호소년과 상이함

③ 국선보조인

(i) 소년보호처분 유형의 적절성

소년보호처분 유형의 적절성에 대해 국선보조인의 응답을 알아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53.3%(24명)로 '부적절하다' 46.7%(21명) 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하다와 부적절하다의 차이는 6.6%로 크지 않다.

[표 Ⅲ-50] 소년보호처분 유형의 적절성에 대한 국선보조인 응답

구분	국선보조인	
	빈도(명)	비율(%)
적절하다	24	53.3
부적절하다	21	46.7
전체	45	100.0

〈소년보호처분의 유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입되어야 할 소년보호처분의 유형〉

내용
- 8~10호 처분의 세밀화
- 9호 처분과 10호 처분의 중간단계의 처분이 필요함
- 국내 보호기관이나 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 보호시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소한 1개씩은 있어야 함
- 대다수의 보호소년들은 6호 처분 보다 기간이 짧은 소년원송치인 8호 처분을 받기를 원하여 더 경한 처분으로 생각함
- 보호소년의 상당수가 심리적으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함. 이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보호자교육 시 보호자의 생활여건이 부합되도록 교육시간에 융통성이 필요함
-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소년들에게 성년이 되기까지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
- 상담위탁 처분이 추가로 도입되어야 함
- 소년원 2년 처분보다 강한 처분이 필요
- 소년의 의사가 반영된 처분, 보호자 교육명령 외 보호자에 관한 처분, 국가기관의 지원이 병행이 담보된 처분
- 직업위탁 교육, 부모에 대한 강력한 교육, 부모의 의무 위반 시 제재 조항
- 치료처분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

(ii) 소년보호처분 결정의 영향 정도

소년보호처분 결정의 영향을 주는 요소로 총 13개 항목을 구성하였다. 국선보조인은 모든 항목이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두루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그 중 '8. 보호자 존부, 관심 및 보호능력' 이 '그렇다+매우 그렇다'가 97.9%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은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1. 범죄 관련사항(동기, 좌절)'과 '2. 범죄 경력'이 '그렇다+매우 그렇다'가 각각 93.7%, '11. 반성 여부와 피해회복노력'과 '13. 재범 가능성'이 '그렇다+매우 그렇다'가 각각 89.6% 등의 순으로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7. 교우관계'는 '그렇다+매우 그렇다'가 60.4%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낮은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평균척도를 고려해보았을 때,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8. 보호자 존부, 관심 및 보호능력(평균 4.76점)'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 '7. 교우관계(평균 3.63점)', '4. 성장과정(평균 3.67점)', '5.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평균 3.70점)'가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Ⅲ-51] 소년보호처분 결정의 영향 정도에 대한 국선보조인 응답

(단위 : 명, 비율)

문항(평균척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범죄 관련사항(동기, 죄질) (4.54)	-	-	-	-	3	6.3	16	33.3	29	60.4	48	100.0
2. 범죄 경력 (4.63)	-	-	-	-	3	6.3	11	22.9	34	70.8	48	100.0
3. 생활환경(주거 및 경제여건)(4.15)	-	-	2	4.2	5	10.4	25	52.1	16	33.3	48	100.0
4. 성장과정(3.67)	-	-	4	8.3	12	25.0	27	56.3	5	10.4	48	100.0
5.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3.70)	1	2.1	5	10.4	11	22.9	22	45.8	9	18.8	48	100.0
6. 학력 및 학교생활(4.02)	-	-	2	4.2	8	16.7	25	52.1	13	27.1	48	100.0
7. 교우관계 (3.63)	-	-	3	6.3	16	33.3	25	52.1	4	8.3	48	100.0
8. 보호자 존부, 관심 및 보호능력(4.76)	-	-	-	-	1	2.1	10	20.8	37	77.1	48	100.0
9. 소년분류심사원 생활태도 (4.33)	-	-	2	4.2	4	8.3	20	41.7	22	45.8	48	100.0
10. 법원 진술태도(3.85)	-	-	4	8.3	11	22.9	21	43.8	12	25.0	48	100.0
11. 반성 여부와 피해회복노력 (4.46)	-	-	1	2.1	4	8.3	14	29.2	29	60.4	48	100.0
12. 향후 생활계획(3.94)	-	-	2	4.2	9	18.8	27	56.3	10	20.8	48	100.0
13. 재범 가능성 (4.54)	-	-	1	2.1	4	8.3	10	20.8	33	68.8	48	100.0

평균 :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3점 보통---5점 매우 그렇다)

④ 판사

(ⅰ) 다이버전(대안적 처분)[119] 제공 여부

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아동을 위해 충분한 다이버전(대안적 처분)을 제공하는 지에 대해 판사의 응답을 살펴본 결과, '그렇다'가 64.3%(9명), '아니다'가 35.7%(5명)로

119) '다이버전'이란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 등 기존의 사법절차에서 전환하여 소년에 대한 낙인 예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적 처분을 말한다. 소년법상 화해권고, 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그 예로 제시될 수 있다.

다이버전을 제공한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다.

[표 Ⅲ-52] 법원의 다이버전 제공 여부

구분	판사	
	빈도(명)	비율(%)
그렇다	9	64.3
아니다	5	35.7
전체	14	100.0

〈추가 도입 희망 다이버전 유형〉

내용
- 개별적으로는 정신적,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년들에 대해 전문가진단이나 심리상담 명령을 상당히 활용하고 있음 - 예산과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충분한 다이버전이 제공되지 못함

(ii) 소년보호처분 유형의 적절성 여부

현행 소년보호처분 유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판사의 응답을 살펴본 결과, '적절하다' 7.1%(1명), '부적절하다' 92.9%(13명)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소년보호처분 유형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보조인의 경우 같은 질문에 대해 현행 소년보호처분 유형이 '부적절하다'가 46.7%(21명)로 응답했다. 소년부 판사와 국선보조인 대부분 현행 소년보호처분 유형이 적절하지 않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53] 소년보호처분 유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소년부 판사 응답

구분	판사	
	빈도(명)	비율(%)
그렇다	1	7.1
아니다	13	92.9
전체	14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개선이 필요한 사항 또는 추가 도입을 희망하는 보호처분 유형〉

내용
-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수용처분이 필요
- 6호 처분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시급하고, 9호 처분의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함
- 8호 처분에 4호 처분의 병과 가능, 9호와 10호 처분에 보호관찰의 병과가 필요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 기간 연장 필요
- 9호와 10호 사이의 중간처분이 필요
- 단기1년 소년원 송치 처분, 현행 6개월 소년원 송치처분과 위 1년 소년원 송치처분에 대한 보호관찰 병과가 필요
- 단기소년원송치와 장기소년원송치를 더 세분화할 필요
- 보호처분의 기간이 단기임: 9호 단기소년원(6개월), 10호 장기소년원(2년)처분으로는 교화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기간을 1년-3년으로 하되, 판사에게 (송치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함
- 치료가 필요한 소년들에 대한 처분이 좀 더 실질적 효과가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iii) 소년보호처분 결정의 영향 정도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국선보조인과 동일하게 총 13개 항목을 구성하였다. 판사의 경우에도 국선보조인과 같이 모든 항목이 골고루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응답했다. '1. 범죄 관련사항(동기, 좌절)'과 '2. 범죄경력', '6. 학력 및 학교생활', '13. 재범 가능성'이 '그렇다+매우 그렇다'가 각각 100.0%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은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5.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와 '8. 보호자 존부, 관심 및 보호능력'이 '그렇다+매우 그렇다'가 각각 9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 법원 진술태도'는 '그렇다+매우 그렇다'가 50.0%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영향이 낮다고 응답하였다.

평균척도를 고려해보면, '2. 범죄경력(평균 4.86점)'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 범죄관련사항(동기, 죄질)(평균 4.64점)', '6. 학력 및 학교생활(평균 4.4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 법원 진술태도(평균 3.50점)'는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4] 소년보호처분 결정의 영향 정도에 대한 소년부 판사의 응답

(단위 : 명, 비율)

문항(평균척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범죄 관련사항(동기, 죄질) (4.64)	-	-	-	-	-	-	5	35.7	9	64.3	14	100.0
2. 범죄 경력 (4.86)	-	-	-	-	-	-	2	14.3	12	85.7	14	100.0
3. 생활환경(주거 및 경제여건) (4.07)	-	-	-	-	4	28.6	5	35.7	5	35.7	14	100.0
4. 성장과정 (3.64)	-	-	1	7.1	4	28.6	8	57.1	1	7.1	14	100.0
5.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4.07)	-	-	-	-	1	7.1	11	78.6	2	14.3	14	100.0
6. 학력 및 학교생활 4.43)	-	-	-	-	-	-	8	57.1	6	42.9	14	100.0
7. 교우관계 (4.07)	-	-	-	-	2	14.3	9	64.3	3	21.4	14	100.0
8. 보호자 존부, 관심 및 보호능력 (4.43)	-	-	-	-	1	7.1	6	42.9	7	50.0	14	100.0
9. 소년분류심사원 생활태도 (3.86)	-	-	-	-	5	35.7	6	42.9	3	21.4	14	100.0
10. 법원 진술태도(3.50)	-	-	1	7.1	6	42.9	6	42.9	1	7.1	14	100.0
11. 반성 여부와 피해회복노력 (4.07)	-	-	-	-	3	21.4	7	50.0	4	28.6	14	100.0
12. 향후 생활계획(3.71)	-	-	1	7.1	4	28.6	7	50.0	2	14.3	14	100.0
13. 재범 가능성(4.36)	-	-	-	-	-	-	9	64.3	5	35.7	14	100.0

평균척도를 기준으로 판사와 국선보조인의 응답을 비교해 살펴보면, 판사와 국선보조인은 '2. 범죄경력', '1. 범죄관련사항(동기, 죄질)', '8. 보호자 존부, 관심 및 보호능력'이 보호처분 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적은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10. 법원 진술태도', '4. 성장과정'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판사는 '2. 범죄 경력'을, 국선보조인은 '8. 보호자 존부, 관심 및 보호능력'을 선정했다. 가장 적은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판사는 '10. 법원 진술태도'를, 국선보조인은 '7. 교우관계'를 제시했다는 차이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Ⅲ-55] 소년보호처분 결정의 영향 정도에 대한 응답 비교

문항	판사(평균척도)	국선보조인(평균척도)
1. 범죄 관련사항(동기, 죄질)	4.64	4.54
2. 범죄 경력	4.86	4.63
3. 생활환경(주거 및 경제여건)	4.07	4.15
4. 성장과정	3.64	3.67
5.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4.07	3.70
6. 학력 및 학교생활	4.43	4.02
7. 교우관계	4.07	3.63
8. 보호자 존부, 관심 및 보호능력	4.43	4.76
9. 소년분류심사원 생활태도	3.86	4.33
10. 법원 진술태도	3.50	3.85
11. 반성 여부와 피해회복노력	4.07	4.46
12. 향후 생활계획	3.71	3.94
13. 재범 가능성	4.36	4.54

(4) 소결

소년원 종사자와 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사하는 기관・직역이 아동권리의 일반원칙(성별 및 보호력에 따른 차별 금지, 아동참여와 의견청취권 보장, 아동 최상의 이익 및 아동의 연령과 발달적 특성에 입각한 처분의 적절성)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에서, 판사의 92.3%(12명)가 보호자의 보호력에 따라 다르게 처우한다고 답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아동권리의 일반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소년보호재판 과정에서 보호자의 보호력이 판사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종사자별로 잘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항목 위주로 살펴보면, 5점을 만점으로 할 때 ① 소년원 종사자의 경우에는 '독방처분 등의 징계절차(평균 3.29점)', '적절한 물리적 환경과 시설(평균 3.32점)'이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② 보호관찰소 소년 담당 종사자의 경우에는 '개별면접 또는 상담을 받을 권리(평균 3.83점)' 보장이 제일 부족하다고 답했다. 보호관찰 중인

아동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보호관찰관의 업무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된다. ③ 국선보조인의 경우에는 '항소권 안내(평균 3.72점)', '부모 기타 보호자의 절차 참여권(평균 3.74점)'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④ 판사는 '무죄추정의 원칙(평균 3.86점)', '아동의 정보접근권 및 알 권리(평균 3.93점)', '자유박탈의 제한(평균 3.93점)'이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소년부 판사를 제외하고는 종사자들은 대체로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평균 소년원 종사자는 3.61점, 보호관찰관은 3.68점, 국선보조인은 4.10점). 직접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의 응답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판사(평균 2.64점)는 종사자 가운데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분리 진행이 가장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가 부적절한 이유로는 아동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성인과 같은 절차 진행의 부적절성, 소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소년부에서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처리 여부 결정의 필요성(법원 선의주의),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일적인 사건 처리의 필요성, 일반형사법원의 전문성 부족과 처벌 위주의 판단 우려가 제시되었다. 소년'형사'사건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종사자들은 공통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일관된 기준의 필요성, 범죄 오염가능성의 문제, 관련 종사자들의 소년사건 특수성과 이해 부족을 지적했다. 종사자들은 소년'보호'사건과 관련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 침해문제를 지적했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소년보호사건 결정의 (양형)기준의 마련, 보호처분의 개선, 보호소년과 보호자 교육의 활성화, 6호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소년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8호, 9호, 10호 소년원 송치처분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에 적절한지를 질문했다. 소년원 종사자들은 8호(1개월), 9호(6개월), 10호(2년)의 순으로 소년원 송치기간이 늘어날수록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8호 처분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45.9%(168명), 9호 처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5.9%(203명), 10호 처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79.5%(287명)로 나타났다. 특히 8호 처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구체적인 이유로는 1개월 기간이 교육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짧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의 차별성이 없으며, 9호나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에게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보호관찰소 소년 담당 종사자의 79.5%(31명)는 소년형사사건에 관한 보호관찰도 담당하고 있었다.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아동을 대하는 시각, 업무대응방식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76.7%(23명)가 다르지 않다고 응답했다. 다만 '다르다'고 응답한 종사자들은 소년형사사건의 아동을 달리 대우하는 이유로, 소년형사사건은 소년보호사건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고, 형사사건은 교육적 차원보다 처벌적 차원으로 대응해야 한다거나 소년형사사건의 아동은 범죄성향이 고착화되어 관리가 필요하고,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아동'에 대한 보호보다 '사회'에 대한 보호가 우선이라는 점을 들었다. 대상 아동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은 차별받지 않아야 함에도 아동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재판 이후의 처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이버전(대안적 처분)에 대해서는 대안적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종사자인 판사에게 질문했다. 판사 중 35.7%(5명)가 다이버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는 예산과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을 제시했다.

보호처분의 유형과 보호처분 결정의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질문은 소년보호재판에 관여하는 판사와 국선보조인을 대상으로 제공되었다. 현재 소년보호처분 유형의 적절성에 대해 국선보조인은 53.3%(24명)가 적절하다고 답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과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판사는 응답자 1명을 제외한 92.9%(13명)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보호처분 유형 중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국선보조인의 경우, 소년원 처분의 개선(9호와 10호 중간단계, 8호 처분의 효과 미비 등), 6호 처분 시설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지원, 상담・치료처분 내지 직업위탁교육의 필요, 보호자교육처분의 실질화를 제시했다. 판사의 경우 소년원 처분의 개선(9호와 10호의 중간단계처분 필요, 1년 소년원 처분의 필요, 8호-10호 처분의 세밀화 등), 6호 처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소년원송치처분에 보호관찰처분 병과, 치료처분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는 13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평균척도점수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국선보조인과 판사 둘 다 모든 항목에 대해 3.50점 이상으로 응답했다는 점에서 골고루 모든 항목이 보호처분에 두루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판사와 국선보조인의 응답을 비교해 보면, '범죄 경력', '범죄 관련사항', '보호자 존부・관심 및 보호능력'이 보호처분 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고, '법원 진술태도', '성장과정'이 적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판

사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범죄 경력'을, 국선보조인은 '보호자 존부・관심 및 보호능력'을 꼽았고, 가장 적은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판사는 '법원 진술태도'를, 국선보조인은 '교우관계'를 제시했다는 차이는 있다.

(5) 제한점

첫째, 설문조사에 응답한 각 종사자 비율이 불균등한 양상을 보인다.

분석에 활용된 응답내용은 총 484부였으나, 이 중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응답수는 14부, 보호관찰관은 41부, 국선보조인은 49부였던 반면, 소년원 종사자 응답 수는 380부였다. 이는 각 직역별 종사 인원이 다른 점에 기인한다. 전국의 소년보호사건 담당 판사는 총 25명에 불과하며, 관리자를 포함한 소년원의 감호・교육 종사자 419명에 이른다. 각 종사자별 대상 숫자의 편차가 큰 결과, 종사자의 응답 평균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소년사법제도 관계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각 종사자에 대한 개별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되, 연령과 경력, 아동권리교육 경험과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 여부 등 종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변화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응답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고려할 필요를 제안한다.

둘째, 설문조사가 자기보고 방식으로 수행됨에 따라, 실제보다 긍정적인 답변이 제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년사법제도는 각각의 전문기관이 연속적으로 관여하는 특성상 다른 종사자와 교류가 제한적이며, 다른 직역의 업무를 잘 알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범죄행위 등 여론에 영향을 받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다른 직역을 평가할 경우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응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본 조사는 종사자에게 자신이 속한 기관・직역이 아동권리의 일반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 등의 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응답자가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응답하도록 설계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을 의식한 결과 실제와 다르게 답변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응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에 기반한 공적 자료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6) 시사점

본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유의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소년사법제도 종사자들의 제도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소년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에 관여하는 종사자(판사와 국선보조인)와 보호처분 집행단계에서 아동을 만나는 종사자(소년원 종사자와 보호관찰관) 사이에 나타난 아동권리에 대한 시각차는 이를 뒷받침한다. 구체적으로 소년사법절차가 '처벌 중심의 처분'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모든 종사자가 동의하였으나, 소년원 종사자와 보호관찰관은 재범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및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 부족' 항목에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판사와 국선보조인은 '비행예방을 위한 시스템' 내지 '보호처분이 종료된 이후의 아동보호체계가 미비한 현실'을 재범 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 답변하였다. 한편, 인적·물적 자원 부족은 소년원 종사자와 보호관찰관의 업무적 소진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집행단계에서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거나 함께 생활하는 소년원 종사자와 보호관찰관이 제시한 관대한 처벌에 대한 문제의식은 낮은 종사자 처우와 그것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연관 지어 고려할 수 있다. 판사와 국선보조인은 아동과 교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아동의 법 위반 행위 및 가정환경을 통한 사회복귀 가능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소년사법제도의 전체 절차과정에서 종사자가 위치한 단계에 따라 소년사법절차를 대하는 시각, 아동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로, 소년사법제도 전반에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점 및 아동권리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년사법제도에는 다양한 직역의 종사자들이 각기 다른 단계에서 개입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물적·인적 자원 및 예산 부족은 모든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이었다. 자원 및 예산 관련 질문을 제외한 나머지 질문(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도움 정도, 낙인 예방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예외적으로 '소년범죄의 특수성'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이 제공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사, 보호관찰관, 소년원 종사자가 평균 수준으로 적절하게 제공된다고 답변한 반면, 국선보조인만 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응답하였다. 여타 종사자와 달리 국선보조인은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셋째, 소년사법제도와 관련한 연령의 적절성에 대한 종사자간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4세가 되지 아니한 아동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관하여 판사는 92.3%(13명)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소년원 종사자, 보호관찰관 및 소년원 종사자, 국선보조인은 60~70% 가량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소년원 종사자나 보호관찰관과 같이 집행단계에서 아동과 어울려 직접 실무를 함에 있어 소년사법제도 전체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 규정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구체적인 이유로는, 소년사법의 문제는 연령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과 회복가능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 국제인권규범을 고려해야 하며 처벌보다 적절한 보호처분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점이 제시되었다.

한편, 형사미성년자와 연령과 맞물려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촉법소년' 규정에 대해서는, 모든 종사자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때에는 판사(100%)와 함께 국선보조인(85.4%)의 긍정적인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차례로 보호관찰관은 68.3%, 소년원 종사자는 66.2%였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당시 선정되는 국선보조인의 관점에서, 연령이 낮은 아동이 재판 절차를 이해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을 경험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아동에 대한 이해와 개선 가능성, 형사처벌이 부적절하다는 점 등이 제시되어,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관한 응답 내용과 유사하였다.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10세 이상의 아동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 '우범소년' 규정에 대해서는 응답한 종사자 모두 대체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국가의 보호조치 필요성, 범죄 예방, 사전조치의 중요성 등 다소 추상적인 이유가 거론된 것에 비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범죄의 우려만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며, 예비범죄자라는 낙인 초래, 성인과 다르게 처벌하는 것은 차별, 반사회적 성향을 학습하는 기회로 악용된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단순히 처벌과 예방적 관점을 넘어, 현장 종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가 아동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구체적으로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넷째,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기 위한 다이버전이 개발되어야 한다.

아동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판사의 35.7%(5명)은 다이버전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보호처분은 소년사법제도가 규정하는 다이버전의 한 형태에 해당하나, 응답자 1명을 제외한 판사의 92.9%(13명)는 현행 보호처분 유형이 부적절하다고 답하였다. 아동에 대한 대안적 조치로 보호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의 유형 및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한 것이다. 국선보조인 또한 53.3%(24명)만 현행 보호처분 유형이 적절하다고 보고하여, 다양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는 보호처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범죄를 행한 소년의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소년사법은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행위에 따른 응보적 관점을 넘어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 공동체 회복을 지향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소년보호사건 등 형사사건과 구별되는 별도의 처분, 절차를 정하는 소년사법제도를 마련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행 보호처분은 그 내용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정 전반이 피해자의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단순히 '소년에 대한 사법 외 처우'만을 결정할 뿐, 피해자의 개입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은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별 기관 및 관계자의 의지에 따라 임의적으로 실천되고 있을 뿐이다.

현행 보호처분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되, 각 처분이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며, 다양한 다이버전이 절차 전반에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이버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종사자 면접조사

(1) 조사대상자와 조사 목적

종사자 면접조사는 설문조사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며, 보다 실질적인 직종 유형별 의견과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소년사법제도에서 아동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2018. 9. 12.부터 11. 9. 까지 약 2개월간 진행하였다. 참여자는 총 16명으로서, 성별, 지역, 관련 경력 및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였으며, 남성과 여성이 각 8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

는 판사 3명,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선보조인 5명, 소년원 종사자 4명, 보호관찰소 소년 담당 종사자가 4명이었다.

(2) 조사 내용

소년사법제도와 관련한 각 종사자들의 인식과 답변 내용을 비교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제도 전반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국제인권규범을 근거로 도출한 아동인권 10가지 유형을 공통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추가적으로 설문조사 문항을 고려하여 ① 형사책임연령, 촉법·우범소년제도, ②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통합, ③ 아동친화적인 사법환경에 대해 선택적으로 조사하였다.

다만 보호관찰소 종사자의 경우 수사나 재판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소년원 종사자는 아동 면접조사 '시설 수용' 문항을 고려해 ① 물리적 환경과 시설, ② 외부와의 교류, ③ 여가활동, ④ 종교, ⑤ 적절한 의료조치에 대한 문항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1. 정보접근 및 알 권리	6.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2.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7.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8. 모니터링 및 진정에 관한 권리
4.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	9.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5.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10. 사회복귀의 지원

종사자 면접조사는 아동인권 10가지 유형을 공통문항으로 구성하되, 아래와 같이 아동 당사자 조사 질문 구성의 틀인 ① 소년사건의 일반적 요소, ② 재판 전 조사·수사, ③ 재판, ④ 시설 수용 관련 목록을 필요할 경우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별첨4] '종사자 면접조사 조사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소년사건의 일반적 요소	
① 소년사법의 목적 ② 연령과 적용범위 ③ 협약 일반원칙 - 비차별 - 아동최상의 이익 - 생명·생존 및 발달 (존엄성) - 아동참여 및 의견청취권 ④ 일반적인 권리보장 -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 비례의 원칙, 범죄사실을 고지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 부모 및 보호자 참여권, 증인신문권, 항소권	⑤ 정보접근권 ⑥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⑦ 자유박탈의 제한 ⑧ 성인과 분리수용 ⑨ 전문가 교육훈련 ⑩ 다학제적 접근 ⑪ 연구, 계획 및 정책 수립

재판 전 조사·수사	재판	시설 수용
① 아동의 인권 존중 ② 즉시 보호자에게 통지 ③ 조사내용과 절차에 대해 안내받을 권리 ④ 대안적 조치: 조정, 중재, 다이버전, 대안적 분쟁해결 등 ⑤ 경찰과 검찰 수사 - 미결구금 원칙 - 아동친화적 방법으로 이유 설명 - 부모 및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 연락할 기회 보장 - 부모에게 통지하고 보호의무를 촉구할 의무 - 경찰·검찰의 전문성	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소급적용 금지 - 신속하고 직접적인 재판절차 통지: 피의사실, 선고내용 -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 - 부모·보호자에 통지 및 참여 촉진 - 통역사 무상지원 - 사생활의 완전한 존중 - 참여 및 의견청취권 ② 신속한 재판 ③ 다양한 대안적 처분 ④ 관계자의 전문성과 교육 ⑤ 최후수단으로서 자유 박탈 제한 ⑥ 아동친화적 환경 - 아동이 이해 가능한 적합한 언어 - 아동이 선택한 성인과 동반 -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 - 휴식시간 보장 - 면담실과 대기실 환경 - 소년전문법원, 경찰·검찰 특별부서	① 공적 기록 ② 부모 및 보호자의 알 권리 ③ 분류 및 배정 - 개별면접 및 상담조사 - 여자 소년에 대한 특별한 배려 ④ 물리적 환경과 시설: 피구금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⑤ 외부와의 교류 - 편지, 전화 및 면회, 통신의 자유 ⑥ 여가활동 ⑦ 종교 ⑧ 적절한 의료조치 ⑨ 지역사회와 광범위한 협력 - 중간처우 시설 확대 ⑩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 ⑪ 징계절차 ⑫ 모니터링 및 진정절차 ⑬ 사회복귀 지원 - 교육, 직업훈련 - 부모 및 보호자의 접근권 - 관련기관 및 부처간 협력 ⑭ 직원의 자격과 역량, 복지

(3) 조사 결과

(가) 직종별 조사 결과

1) 판사

① 정보 접근 및 알 권리

판사의 경우 법정에서 소년의 비행사실 고지, 재판을 받는 이유, 진술거부권 고지는 실시한다고 답변했다. 재판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소년들이 '모르겠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다만, 아동들이 표현을 하지 않았을 뿐, 관련 정보를 제대로 숙지하고 이해했는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판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가 표현되고 그 의사가 반영되는 지에 대해서는, 딱딱한 법정 분위기에서 위축되고 재판 시간이 부족한 점 등이 작용해서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힘든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재판 시간이 부족해요. 저 같은 경우는 20분당 3건을 진행하거든요. 하루에 60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시간도 부족하고 그 나이 때 성향도 말을 안 하고. 법원에 오면 더 어렵고. 복합적인 것 같아요."
> "시간이 부족해서 아이가 100% 이해하도록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사건이 많아서. 추후 실무관이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고 있어요."

방어권, 불복절차를 고려했을 때 소년보호사건 결정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년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호자의 보호력, 환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 "판결문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판결문에는 아이의 환경이나 지위비행, 보호자의 보호력 등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 아이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결정의 이유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②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소년보호재판은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보호자의 보호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시설 내 처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보호자 특별교육 또한 교육기

관, 기초기반이 부족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불충분한 문제가 있다.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자는 대부분 생계형 노동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부모에게도 벌을 주는 방향을 지양하고 찾아가는 상담을 개발하고 보호자 교육을 받으면 일당을 주거나 주말, 야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자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 "보호자 교육을 명할 수 있으나 시간과 프로그램에 관해 달리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시설 내 처분을 받는 경우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것이 아니라 시설에 있을 때에도 보호자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9호 처분의 경우 최소 2개월에 1번, 총 6시간, 10호 처분은 총 10시간 정도를 교육 받도록 한다면 여러 차례 소년원에 가고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이 부모님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이 아동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자녀를 아예 포기하고 관심이 없어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보호자도 있지만, 소년이 이야기하지 않아 소년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지 못해 소년이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했다.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에 의해 국선보조인이 선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 "기일 진행되기 전에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있기는 한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의사표현을 잘 못한다거나 장애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변호사 국선보조인의 경우 법률적인 면에서 부족할 수 있는 점, 형사사건과 다른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이해 부족, 범죄사실을 다투는 경우 미흡한 대응, 아동에 대한 이해 부족의 아쉬움을 이야기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이 보호하는 아동의 국선보조인으로 선정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법률가와 비법률가 간 긴밀한 협업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국선보조인은) 법률적인 베이스가 있고 (법률적인 조력) 그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비변호사 국선보조인) 그분들의 단점은 너무 애들만 생각해요. 그냥 애들 의견 최대한 받아주고 법적으로 놓치는 것이 있고. 실제로 그게 애들한테 좋을지에 대한 생각이 부족할 수 있고…."

"애한테 라포를 형성시키려고 청소년회복지원센터장을 국선으로 선정하게 될 경우, 아이 입장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있을 때부터 처분이 결정된 상태(1호 처분)여서 애한테는 기회가 없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변호인의 조력권을 수사 초기부터 처분 결정 이후까지 폭넓게 보장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대부분 자백사건이고 양형을 다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판사가 생각하기에 국선보조인의 역할은 소년을 직접 만나면서 소년의 상황, 지금 소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재판부에 잘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수사 단계부터 한 사람(보조인)이 관계를 형성해서 그 아이에 대해 가장 많이 들여야 보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의 경우 소년원 퇴소 이후에도 변호사협회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도 (형) 집행 이후 단계까지 관여하는 변호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년보호사건에서 항고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에 대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역할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항고를 한다면 주로 시설 내 처우를 다툴 텐데, 대부분의 경우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보호력이 부족한 아동이 시설 처분을 받기 때문에 아동 홀로 항고하기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경우 함께 할 조력자(보호자,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작년에 항고가 받아들여진 것은 1건이었어요. 6호 처분에 대해서는 거의 항고가 없는데 대부분 6호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케어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주로 9호 처분 항고를 하는데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되거나 노력이 있는 부모님들이 항고를 하죠."

④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조기개입과 신속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가정조사를 충실히 하고 일부 경찰에서 범죄심리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는 '비행성 예측자료표' 작성 절차를 적극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여럿 있었다(「소년업무규칙」 제25조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경찰단계에서 사랑의 교실, 검찰 단계에서 선도 교육, 형사조정, 법원 단계에서 수강명령 등 중복된 서비스가 과하게 부과되면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아동이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았는지 법원에 공유가 잘 되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면서도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법원 선의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랑의 교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경찰에서 사랑의 교실로 사건 못 끝내주잖아요. 경찰에서 사랑의 교실하고 우리(법원)한테 또 보내거든요. 우리가 받으면 다시 또 조사하잖아요. 교육 필요하면 교육도 하고요. 소년 당사자들은 왜 다 끝났는데 또 하냐. 애들한테는 이중이죠. 수사기관에서 사건 종결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걸(사랑의 교실)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형사조정이 된 것은 부모가 할 일은 한 거고 애한테는 또 다른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부모들 생각은 내가 합의하고 돈도 다 줬는데 왜 우리 애가 또 재판을 받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경찰에서 소년들을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럿 있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참조).[120] 14세 이상일 경우 경찰은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을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법원)으로 바로 보낸다. 즉결심판은 아동에 대한 이해와 조치 없이 벌금을 내게 하고 빨리 사건을 종결시켜 버리고 전과도 남는다. 경찰에서 법원 소년부로 보내주면 비행성이 발현되는 초범 소년들을 위해 법원이 체계적으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결심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행성 예측자료표' 작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가정법원은 가사조사 인력담당을 소년재판에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지방법원은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점도 절차가 지연되는 이유로 꼽았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접근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법원의 지원에서도 소년보호재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여럿 있었다.

"법원 지원에서도 소년재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은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시군 법원 판사님들이 소년재판을 맡으면 아이들이 잘 접근할 수 있고요. 법을 개정해서 지원에서 재

120)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이하 "판사"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판을 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상담 등 관련 기관이 있어야겠죠.”
“**지역에서 재판 받으러 **법원에 오는 데 2시간 반이 걸려요. 분류심사원이나 비행예방센터가 너무 먼 경우에는 교육을 받을 수도 없어요.”
“제가 올해에는 지원에 직접 가서 재판을 했거든요? 거기는 소년 담당하는 직원이 없으니까 재판하러 갈 때 우리 직원이 다 가거든요? 기록을 다 싸 들고 가는 거예요. 겸임 발령만 내면 저(판사)만 가서 재판할 수 있잖아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 대부분의 사건은 두 달 안에 종결된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범행이 반복되는 아동의 경우에는 사건이 병합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사건을 신속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 같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소년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재범한 경우 무조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보호처분 변경 신청 단계에서는 재범사건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원래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아야 정상인데 그런 애들은 보호관찰 (준수) 상황이 안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 (재범) 본 사건이 오기 전에 처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범 한 가지를 가지고 보호처분변경으로 재판을 받고 그 후에 (재범) 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 생기죠. 그럼 6호, 9호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반복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 빨리 사건 끝내고 나면 추가 사건이 와요. 그러면 재판을 또 해야 하거든요? 계속 관리해야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⑤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형사양형기준처럼 소년보호사건의 양형기준을 만들자는 시도도 과거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동 및 소년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소년보호사건에 일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만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당시 논의의 결론이었음을 밝혔다. 개별처우를 받을 아동의 권리는 소년사법의 주요내용으로서, 일률적인 양형기준은 아동 최상의 이익에 반하여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책임에 대한 인정, 아동의 개별적 상황과 역량을 고려해서 처분을 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법원은 정서적인 문제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조사관을 통해 위탁생활을 살펴보고 상담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개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판단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범죄행위를 보면 9호, 10호 해야 되는데, 정말 애는 다신 안 그럴 것 같은 애가 있거든요. 정말 아이가 변하고 집에서도 받쳐줄 수 있고, 이런 애들은 정말 고민이 많은데 위탁기간을 조금 늘이고 9호, 10호 처분을 안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정서적인 문제로 분류심사원에서도 계속 신경을 써야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조사관을 통해서 별도로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봐 달라 아니면 거기 있는 동안 상담을 받게 하거나 조치를 취해 달라 이야기하고."

대전가정법원 '길 위 학교', 화해권고제도와 같은 대안적 조치(다이버전)가 시스템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판사 개인의 의지와 역량에 의존되고 있는 문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 단계에서도 화해권고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화해권고도 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매뉴얼, 예규 등이 다 있는데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하는 것으로 보고 경험해야 하는데… 법원 단계에서 피해자 동의를 받는 것은 너무 늦었어요. 경찰단계부터 화해권고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범소년, 성매수범죄에 이용당한 아동(「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은 기존 보호처분과는 다른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아니지만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별적으로 사회봉사를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호처분으로 사회봉사는 안 하고 재판 중에 비행성이 아주 높지는 않은데 합의는 됐어요. 부모가 돈으로 합의는 했지만 아이는 그것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 부모와 함께 사회봉사를 하고 소감문을 받아요. 소감문을 보면 아이들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 의견을 들을 수 있죠."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신한 아동이 있을 경우 어떤 선택지를 줄지 매뉴얼, 공식적인 대처방법이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막고자 소년원 처분을 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는데, 처분에 임신한 아동의 의사가 신중하게 고려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임신한 아이들에 맞는 처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임신했을 경우) 선택을 잘 하려면 어떤 지원·양육환경이 되는 지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런 정보들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임신한 애들이 있으면 아이들에 맞는 처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 (임신한 소년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건 반대거든요. 국가에서 해야지 민간은 못해요."

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도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주민의 반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인가를 내주지 않는 문제도 언급되었다. 여성 소년보호시설의 부족도 지적되었다.

"(6호의 경우) ***가 남녀 같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여성의 경우 정원 대비 200 프로가 넘어요. 교육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을 다양화하고 6호 시설의 수를 늘이는 등 소년보호사건 10가지 보호처분을 더 다양하게 집행할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다만 6개월 기간이 짧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9호 단기 소년원 처분을 1년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동양육시설장의 통고 문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시설에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통고한 뒤 아동 입소를 거부하는 것이다. 아동의 입장에서는 집을 잃어버리게 된다.

"통고 중에 제일 많은 게 보육시설 통고거든요. 보육시설에서 애를 다른 데로 보내려고 의도가 안 좋게 통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6호로 보내면 어떻게든 애를 다시 못 돌아오게 하려고. 6호로 보내더라도 다시 아이를 데려가는 게 당연시 되어야 하는데 지방은 그런 인식이 덜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가 6호에 가는 순간 짐을 다 빼버린 거야. 6개월만 있다가 갈 건데. 아이는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은 (6호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안 왔대요. 아이는 돌아가려고 '많이 변했으니까 돌아가겠다.'고 편지도 쓰는데 전화 한 번 안 왔다는 거예요."
"통고의 단점 중에 하나가 아이를 법적인 절차에 의해 시설에서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보육원장님 간담회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양육시설장에게 보호자 교육명령을 합니다."

6호 시설의 경우 시설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허용되는 자유의 범위가 균질하지 않은 문제도 지적했다. 6호 시설인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아닌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고, 6호 시설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6호 시설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허용되는 자유의 범위를 평균적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따라 혜택을 받고 받지 못하는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6호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아닌 국가 예산을 사용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인적 자원을 확보해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다른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본에서는 재판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다 법정에 나와요. 변호사(보조인), 학교 선생님, 보호관찰소 직원, 조사관. 하루에 2-3건 한다고 들었어요. 라운드테이블에 다 앉아서 아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소년부 송치는 검찰단계 기소유예와 달리 기록이 삭제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기소유예는 기록이 남지 않으나 소년부 송치는 기록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조회가 되고 아이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될 것입니다."

소년원 처분의 낙인을 고려해 비슷한 수용기간이라면 소년원 처분보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치를 먼저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8호 처분(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을 할 애들이면 그냥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했다가 관찰을 해요. 그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처벌을 하면 공개는 안 되지만 법원에 자료가 남잖아요. 아이들도 자기가 소년원 갔다 온 것과 분류심사원 경험한 것은 느끼는 것도 다르거든요. 8호가 의도하는 효과는 위탁으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성인이라면 구속되지 않을 사안임에도, 아동일 경우 부정적인 언론보도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성인이 했을 경우 범죄로 인식되거나 처벌받지 않는 행위라면 소년이 해도 범죄가 되지 않고 처벌되지 않아야 한다는 리야드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었다.

"(소년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애들은) 모두 똑같은 애들인데 (…) 그 무렵 여론이

어떤 범죄에 관심이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고 (… 중략) 어른들도 술 취해서 지나가는 행인이랑 싸우는 그런 사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술 취해서 사고 쳤다고 방송에 나고, (구속) 영장이 들어왔어요. 소년 애들이 대부분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거든요. 구속사유는 인정이 되는데 애들은 꼭 구속해야 하느냐, 고민이 항상 들어요. 구치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낸다면 오히려 아이를 더 보호할 수 있죠."

⑦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소년분류심사원, 6호 시설, 소년원 등 시설 위탁은 쇼킹구금의 기능을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조사 및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이동할 때 포승줄, 수갑을 차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보호소년법」 제14조의2 제2항). 이탈을 방지하는 다른 대안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소년원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된 의견이었다.

"교육프로그램은 소년원이 더 훌륭하지만 아이로서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에게는 6호 시설이 소년원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도 열악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과밀 수용되어 있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벌칙으로 선택권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자유박탈조치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사건이 너무 많아서 재판할 시간이 없을 경우 위탁기간이 늘어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통상 3주를 하죠. 3주 후에 하고 싶어도 사건이 너무 많아서 3주 후에 기일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 기일 때문에 한 주 정도 늦춰질 수도 있고…"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도 지적되었다. 과밀수용으로 인해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이 교육적 기능을 온전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임시조치기관인데 성인으로 치면 구속기간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8호 처분과 차별점도 없어요. 분류심사원의 기능이 충실하려면 실험관찰, 아이의 행동이나 성향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올바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곳인데, 유일한 기능이 갇힌 공간에서 반성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교육이 이루어지기에는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만 생각한다면 개방형으로 상담 및 조사, 교육을 진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것도 고려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6호 시설도 전체 6개월 중 3개월은 안에서 생활하고 3개월 이후에는 주말에는 집에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임시조치기관이기 때문에 폐쇄시설일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학교 가듯이 개방형으로 검사, 조사를 실시해도 될 것 같아요. 현실은 그 안에서도 고참문화가 생기고 오히려 반성하고자 하는 아이들조차도 시설 내에서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존재이유 중 신병 인수가 있는데, 실제로 8호 처분은 법원이 날짜를 정해주면 보호자가 데리고 가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이탈이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탈의 두려움을 더 크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아이들이 3개월 지나면 이탈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가족관계, 가족 간의 소통이 몹시 중요합니다. 주말 외출을 통해 보호자 관계 회복을 위한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해요. 부정물품 반입 등의 문제는 (보호자와 시설 종사자가 신경을 쓰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처분을 다툴 수 있는 이의제기권(예를 들어 항고권)을 두지 않은 문제도 지적되었다.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결정 전 취소, 변경을 할 수 있어서 항고권을 두지 않은 것 같은데, (아이에게) 한 번 더 기회는 주어야 할 것 같아요."

⑧ 모니터링 및 진정에 관한 권리

시설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다. 1호, 6호, 7호 시설은 법원이 직권으로 위탁기관 지정 권한이 있어(「소년심판규칙」 제34조) 집행감독을 실시할 수 있지만, 관리감독은 각 개별 법원마다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고, 시설을 조사 하더라도 조사 항목에 '아동의 인권 침해' 항목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에 대해서는 법원도 모니터링을 하기 어렵다. 징계, 퇴원, 처우 등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소년원 처우심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단위가 없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대안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아동이 직접 시설을 평가하는 모니터링 제도를 설계하자고 응답했다. 법원의 모니터링(집행감독, 조사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조사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⑨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소년보호재판은 전문성을 가진 별도의 인력풀로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소년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이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재판 주체는 나눠져야 할 것 같아요. 형사마인드와 소년마인드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형사와 소년재판을 같이 하면 소년재판도 형사재판처럼 할 거에요. 다만 법원에서 어떤 재판을 소년보호재판으로 할지, 형사재판으로 할지는 법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소년보호재판을 우선으로 하고요."

소년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 보완의 필요성도 확인되었다. 아동과 대화하는 방법, 아동의 심리, 아동인권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었다.

"아동권리교육은 없어요. 그냥 절차나 재판실무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가정법원의 경우 연초에 재판부가 바뀌면 전년도 소년재판 담당했던 판사님이 올해 맡은 판사님들께 교육을 해주셨어요."

소년보호재판을 수행하는 법원 인력 중 조사관의 전문성 확보 문제도 지적했다.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해 전문성의 편차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조사관 역할은 필요하고 중요해요. 조사관이 많은 가정법원에는 소년조사관을 따로 두고 있는데 지방법원에는 조사관이 한두 명밖에 없으니 소년만 담당하지 않아요. 조사관 간 편차가 너무 심하고, 소년 쪽이 힘들다 보니 이 쪽 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소년보호사건 항고심의 전문성 부족도 지적되었다.

"아마도 1심처럼 전문적으로 하시지는 못하고 일반 민사사건 항소심처럼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분들한테는 과외업무에요. 1년에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전문성을 요구하기는 어렵죠."

가정법원과 달리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진행되는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인력의 부족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문제가 심각했다. 부모의 보호력이 약한 경우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감호하는 위탁보호위원(「소년심판규칙」 제33조)을 붙이는데, **지방법원의 경우 한 지역 전체를 관할하고 있음에도 조사관 2명과 (전담)위탁보호위원 1명이 집행감독업무 보조도 겸하고 있는 곳으로 보고되었다. 소년이 어느 지역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열악한 사법환경에 처하게 되는 문제는 심각했다.

"서울이나 지역이나 할 일은 똑같은데. **도 전체를 관할하니까 일은 되게 많은데 사람은 없어요. 의욕 있는 분들이 자신을 희생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조직이 필요해요. 소년법원 신설은 나중 문제고 (지금은) 가정법원부터 설치해야 해요."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 조력의 편차, 역량이 균질하지 못한 문제, 전문성 부족도 지적되었다. 국선보조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선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느낌입니다. 국선보조인 업무에 관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평균 접견시간이 15분이었습니다."
"국선보조인의 역할 하나는 재판부를 도와주는 것, 특히 증거가 명백한데 아이가 부인하는 경우 아이를 설득해서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이 있고, 또 하나 역할은 아이에게 좋은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보호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들어주고 아이에게 잘못한 부분도 잘 설명해 주고 아이들에게 보호자의 마음도 전달해 주는 국선보조인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국선보조인이 있으면 (법원은) 너무 좋습니다."
"국선보조인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3일 정도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6호 시설, 소년원도 직접 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⑩ 사회복귀의 지원

아동의 사회복귀에 장애가 되는 소년사법의 가장 큰 문제는 분절된 지원체계로 나타났다. 처분하는 집행기관 간, 소년사법 시스템과 아동복지시스템 간, 아동을 지원하는 단체 내지 기관 간, 사람 간에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복지시스템과 사법시스템을 통합하여 아동을 관할하는 컨트럴타워 구축이 제시되었고, 컨트럴타워로 (가정)법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소년원 퇴소 이후 지역에서 (아이를) 잘 잡아주면 재범을 안 할 것 같은데 연계가 안 되죠.

그룹홈, 쉼터 분들은 이런 아이들을 꺼려해요. 그래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만든 것인데, 이 센터를 운영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가정법원의 위탁보호위원,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등 아이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붙는데 사회복귀를 하려면 한 사람이 쭉 잡고 아이를 도와줘야 하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관, 기간 안에서만 산발적으로 지원해서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소년사법제도에서 법원의 역할은 소년이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그러나 법원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더라도 소년이 돌아가 생활할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사회복귀는 법원에서 노력을 해서 해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6호 시설에서 되게 잘 지내던 애들도 집에 가서 도루묵이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법원은 계기를 주는 거예요. 계속 애들한테. 처음 비행해서 왔을 때 교육시키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더 심해져서 오면 위탁해서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애들이 재판을 계속 받으면서 애들이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잖아요."

[추가 문항]

① 형사책임연령, 촉법·우범소년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해 응답자들은 모두 연령 하향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14세 미만 기준이 형법 제정 기준이라서... 지금 애들이 더 영악해 졌다는 근거로 들지만 애들이 지식이 더 늘어난 것은 맞지만 관계형성에 있어 더 부족해졌어요. EQ(감정지수, Emotional Quotient)는 예전이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연령의 어린 아이들은 가정환경이 어려워 생긴 비행의 경우 가정환경을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해)반대해요. 사실 애들 죄명은 무시무시해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언론에서 너무 과대하게 보도하는 경우가 있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애(소년)를 위한 조치를 보완해야지 연령을 낮춰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②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통합

소년보호사건에서 억울하다고 무죄를 다투게 될 경우가 문제라고 했다. 증인신문을 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소년이 범죄사실을 다툴 경우 소년보호재판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못하고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판결이 전과가 되지 않지만, 만약 형사재판에서 소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죄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결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소년법정의 경우 공소장 일본주의도 아니고 예단도 다 형성되도록 자료가 만들어져서 (판사에게) 옵니다. 실제로 증거조사를 다시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조사된 목격자 진술과 불일치한다고 해도 국선보조인이 이것을 다 지적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타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 국선보조인

① 정보 접근 및 알 권리

국선보조인의 경우 아동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공통적으로 답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죄를 인정하면 전과가 남지 않은 반면, 범죄사실을 다퉈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만약 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전과가 남기 때문이다. 범죄의 가담 정도나 행위 태양 정도는 다툰 적이 있지만 무죄를 다투는 경험은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 아동에게 죄에 대한 책임감을 설명하는 어려움도 확인되었다. 소년보호재판 결과에 대해 억울해 하는 이유는 아동이 스스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소년보호사건 판사들이 반말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 아동을 하대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소년보호사건은) 경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니라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면 판사가 싫어해요. 판사가 싫어하면 아이들이 꺾이죠. 싸울 마음이 있는지 충분히 물어보는데 판사가 '정식재판 넘어가면 불리하고 전과 남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보통 부모가 포기하더라구요."

"제일 어려운 것은 형사사건과 달리 판사님들이 사실관계를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데, 무죄주장을 했는데 판사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이 되죠. 그래서 무죄를 주장한 경험은 별로 없어요."

"아이들은 자기들의 처지에 대해 '반성해서 잘 받아야지'라기보다는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렵죠."

소년보호사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아동들이 불이익 없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을 특별히 배려해 마련한 제도라는 이유로 오히려 아동들이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응답도 있었다.

"아이들이 충분히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꼭 필요해요. 아이들이 판사 앞에서 말을 못해요. 제대로 말하는 것을 못 봤어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도 불이익이 없어야 진정한 보호죠. 그래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소년재판은 소년에게 '네가 저지른 것에 비해 경하게, 유리하게 해 주는 것이니 감사해라. 그러니까 (죄를) 인정해.'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불복절차와 관련해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조치에 대해 다툴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아이들이 보통 억울해하는 것은 항고보다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에요. 심사원 위탁을 억울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툴 수가 없죠."

②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보호자가 합의하였거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위탁시설에 면회를 잘 가는 경우 실제로 사건 처분 결정에 영향이 있고, 아동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다만,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아동이 보호자에게 연락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경찰이 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보호자를 동석시키지 않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보호자의 보호력과 보호의지가 없는 경우의 어려움도 보고되었다.

"소년이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고, 반대로 부모가 연락하지 말라고 한 적은 있었어요. 이런 경우까지 국선이 설득을 할 수는 없어요. 부모가 아이를 강하게 처벌해 달라고 하는 보호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모의 애정을 받지 못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의견서를 써요."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여부와 관계없이 국선보조인 조력이 필요하고 수사 초기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국선보조인 선정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응답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는 경우에도 붙여야죠. 심사원 이전 사건 초반에 붙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다가 말도 안 되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녹취록을 만들어 증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로 다시 제출한 적도 있어요. 변호사가 없으면 위축될 것이고, 경찰이 (죄를) 인정하라고 하면 인정할 거예요. 보조인은 당연히 (모든 사건에서) 있는 줄 알았어요."

변호사의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들도 지적되었다. 법원에서는 국선보조인들이 사건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선정하고 국선보조인이 등사, 열람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심리기일 기준으로 국선보조인 선정 시점이 법원마다 다르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4주 전까지도 있었다. 현재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약 18만원 상당인데 비용의 실질화 문제도 지적되었다.

"(심리기일) 1주일 전에 붙으니까 보조인이 너무 늦게 개입하기 때문에 아이를 1번 만나고 의견을 쓰게 돼요.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선보조인의 의견이 탄탄해 지려면 소년분류심사원 보고서, 수사보고서를 다 봐야 하는데 열람·등사가 되지 않아 조력하기 힘들어요. 사실관계나 주변환경 파악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견서를 쓰게 되니까 판사님들도 보조인 의견서보다 아이 반성문을 더 비중 있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④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

대부분 성인 형사재판에 비하면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바로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더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충분히 아동을 조력할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사건이 일어난 후 상당시간이 지나 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아이들은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까먹는 경향이 있어요.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1년이 지나서 사건이 오면 (…)."

신속한 수사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에 잘 대응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사 초기에 변호인이 아동을 조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일단 가정법원(소년부)에 송치되고 나서는 사실관계를 다툴 기회가 없는 것이 아쉬워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해 다투지 못했을 경우에는 더욱."

⑤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소년사법제도에서 아동의 개별적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국선보조인을 포함한 종사자들이 아동을 면밀하게 살펴볼 시간과 여력이 부족한 현실도 지적했다. 소년사법절차에 놓인 아동들이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 개별적인 처우를 받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이 아동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간은 곧 인력과 예산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했다. 10가지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관을 모두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우리 소년사법체계는 빨리 끝내려고만 하고 적은 인력으로만 하다 보니 개개인을 볼 시간이 없어요. 불구속 상태에서 가사조사관이 아이를 오래 만나고, 국선보조인도 아이를 여러 번 만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심사원에서도 2주 내지 4주에 그 아이의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하고, 국선보조인도 접견 1번으로 아이의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하는 현실이죠. 판사가 아이를 심층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 역시 없죠."
"사실 드러나지 않은 자료들이 매우 많아요. 한 번 만난 것만으로는 다 알 수 없죠. 관계가 풀려야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단편적인 것만 알 수 있어요. 재판 때 판사랑 아이는 아는데 나(국선보조인)만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지적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아동을 대리한 적이 있는데, 아동에게 사건이 무엇이고 행동이 왜 범죄가 되는지 이해시키기 어려웠지만, 짧은 재판 시간 탓인지 법원에서 특별한 배려를 받지는 못했다고 응답했다.

"장애아동을 만난 적 있어요. 장애가 없더라도 힘든데 사건이 무엇인지 왜 범죄가 되는지 이해시키기 힘들었죠. 판사가 더 신경 쓰는 것은 없었어요. 재판이 길어야 5분이니까."

임신한 여자아동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임신한 여자아동이 도움을 받아야 할 종사자로부터 2차, 3차 피해를 입기도 하고 임신한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가 전무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른 활동을 하다가 상담한 건데요. 심사원에서 임신한 것이 밝혀졌어요. 소년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보호관찰소에서는 '너 낙태하면 낙태죄로 신고할 거야.'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미혼모시설로 전원시키려고 하는데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서 총체적 난국이었죠. 결국 임신 7개월 가량 되었을 때 소년이 인터넷 통해 구한 약을 먹어서 (태아는) 사산되었어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과 분리되어야 하나(「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구치소에서 성인과 함께 3-4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구금된 사례가 있었다. 형사사건에서 성인과 함께 구치소에서 생활한 이 아동은 결국 소년보호재판을 받았다. 아동만을 위한 구치소가 없다는 점, 처음 수사단계에서부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못한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에서 만난 아이인데, 공갈, 강도를 많이 해서 구치소에서 성인과 같이 구금되어 있었어요. 재판을 받는 내내 3-4개월 정도였어요. 아이가 되게 힘들어했어요. 결국 형사법원에서 소년부로 보내줘서 소년재판으로 소년원에 갔어요."

개별처우를 통해 아동의 재범을 예방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으며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단기간에 적절한 효과를 보고자 하는 소년사법제도는 응보 관점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된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호처분을 하는 이유는 '(사회가) 귀찮으니까'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합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제대로 구조를 만드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죠.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가장 (효율적으로) 간단한 조치가 겁주는 거죠. 구속을 시키고요."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를 위해 중요한 종사자로는 판사를 꼽기도 했다.

"모든 가족이 아이와 연을 끊었던 사건이었어요. 가족이 서울에 있으니까 아이는 무조건 서울에 오고 싶어 했죠. 아이가 있던 시설들에 전화를 하던 중 판사님도 시설에 연락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판사님이 '아이를 맡아줄 수 있냐'고 6호 시설도 아닌 시설까지 수소문해서 아이가 가고 싶은 곳에서 아이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자료를 다 볼 수 있는 분이 판사님이니까 이런 역할을 (판사님들이)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소년사법제도가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낙인예방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년재판경력을 아무도 알지 못해 아이들이 자랑을 할 수 없어야 해요. 아이들에게 소년사법이 자랑도 흉도 아니어야 해요."

사법체계 안(범죄도 처벌도 아니다)과 밖(범죄자다, 전과자다)에서 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점이 주요 문제로 제시되었다. 초범이지만 주변의 낙인으로 인해 계속 비행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완전 초범이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였어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어머니가 소년재판 받은 것으로 '우리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다. 전과자'라고 생각하시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이를 옥죄고 학교 선생님도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큰일 난다'고 압박해 결국 아이가 엇나가게 된 것 같아요."
"법원 절차에서는 전과가 아니다, 처벌이 아니라는 시각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와 가족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학기 중에는 심사원만 가게 되어도 친구들이 의심을 하죠."

소년보호재판이 아무리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낙인이 찍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낙인이 더 심한 경우가 있고 취업이 어려운 사례도 보고되었다.

"형사사건에서 소년사건 출신 성인을 변호한 적이 있어요. 낙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사회에서의 낙인은 서울보다 심하다고 했어요.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요. 일도 못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 아쉬워요. 스스로 자기를 낙인찍는 것도 있죠."
"소년이 취업을 했을 경우, 업주가 아동을 케어하는 역할도 해야 하는데, 아동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죠."

낙인 때문에 사회복귀가 어렵다는 답변도 있었다. 아동은 변화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특수성을 고려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강력범죄만 언론에 보도되는 문제, 대중의 시선도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⑦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소년분류심사원, 6호 시설, 소년원 처분에 대해서는 아동이 일정한 장소를 자유롭게 나갈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어 신체활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구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응답했다. 성인의 경우 영장제도가 적용되는 것에 비해 소년분류심사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위탁이 일정 기준 없이 이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형사재판과 달리 신체구속 조치가 남발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이들이 너무 쉽게 심사원에 가는 것 같아요. 영장도 없이. 구체적으로 엄격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범소년 통고로 심사원에 있는 아이를 만날 때도 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서는 조사, 교육이라는 주된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개방적 운영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자는 지적이 있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 다툴 방법이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심사원에서 주된 기능에 비해 안 좋은 기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이를 가둬놓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요."
"국선보조인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이미 들어간 아이들만 만나니까 심사원 위탁처분 자체를 다투기 어렵죠."

자유박탈조치는 시설을 소규모화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년원이 왜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 보면, 결국 인력과 돈이에요. 담당하는 아이들이 적어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아이들 개개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⑧ 모니터링 및 진정에 관한 권리

'아동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소년사법제도를 가장 잘 알고 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라는 점 때문이다.

소년사법제도는 관련 기관들이 폐쇄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제도로는 모니터링이 운영되기에는 어렵다고 응답했다. 모니터링이 실시되려면 별도의 법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선보조인이 소년보호재판의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은 법원이 좀 더 적극적인 모니터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⑨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관계자의 '역량'의 문제보다 '지원'의 문제라는 응답이 있었다. 현재 소년사법제도에서 종사하는 관계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 자체의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역량이 뛰어난 종사자들이 소년사법제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국선보조인 모두 국선보조인을 대상으로 아동권리나 아동발달,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고 응답했다. 판사 혹은 경험이 많은 국선보조인이 일회성으로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은 있다고 했다. 아동권리교육 뿐만 아니라 가능할 경우 아동상담 교육도 받고 싶다고 답변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야 할 사건인데 형사재판으로 와서 실형을 받은 사례를 보고하면서, 일반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의 판단 기준의 모호성도 지적되었다.

"16살이었어요. 보이스피싱 사건이고 합의도 했는데 소년부로 안 가고 형사재판에서 실형(단기 2년 반, 장기 3년)이 나왔어요. 소년부로 가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조선족이었는데, 외국인이어서 그랬나(형이 세게 나왔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선보조인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소년이 자신의 비행 내지 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이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대화하고 잘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년사법절차에 관계된 종사자들 간 교류의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지난 번 교육(본 연구 교육파일럿) 때 처음 다른 종사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 동안 보조인 활동하면서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요. 서로 배우는 점이 많았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직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 수 있어 좋았어요. 다만 아이들이 없는 것이 아쉬웠어요."

⑩ 사회복귀의 지원

사회복귀는 사회 전체의 복지지원체계와 맞물려 함께 가야한다고 응답했다. 범죄를 저지른 아동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적 빈곤 상황에 처해진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동만 바뀌고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동도 사회복귀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복귀에서 국선보조인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처분 이후 사회복귀를 위한 국선보조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국선보조인 개인의 신념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 번 만나게 된 아동은 국선보조인이 다른 사건에서도 조력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 "지금은 처분 이후에는 보조인 개인의 신념에 달려있어요. 한 번 처분 받은 아이들은 경찰에서 조사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부담 없이 (전에 사건을 같이 했던) 국선보조인에게 연락을 하고 국선보조인도 부담 없이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되면 좋겠어요. 처분 이후 일정기간 아이가 도움을 요청해서 국선보조인이 응했을 때 (국선보조인에게)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소년사법에 들어온 아동들의 학업중단도 사회복귀에 장애로 작용한다고 응답했다. 학령기 아동을 수용하는 6호 처분시설 및 소년원이 학교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검정고시 또는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체험 수준의 직업훈련교육도 문제라고 했다. 칭찬받고 성취하는 경험의 중요성도 언급되었다.

[추가문항]

① 형사책임연령, 촉법·우범소년제도

응답자들은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해 모두 반대했다. 형사책임연령 하향에는 피해자의 회복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인데, 피해자에 대한 부모의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모의 민사책임을 강화할 경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보호력을 간접적으로 강하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소년원 종사자

① 정보 접근 및 알 권리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아동은 이미 소년분류심사원과 재판을 거쳐 왔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어떻게 소년사법절차가 진행되는지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하였다. 소년원 생활과 관련된 안내는 입소 직후 '신입반'에서 열흘간 생활하면서 고지한다는 점을 밝혔다. 신입교육 담당교사가 별도로 배정된 소년원도 있었다. 정신장애가 심각하거나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 어떤 이유로 소년원에 오게 되었

는지 이해한다고 했다.

한편, 소년사법제도와 관련된 용어를 아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은 비교적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욕설 사용을 막고자 '-다, 나, 까' 어체만을 사용하도록 교육한다는 소년원도 있었다. 소년원에서 항고는 대체적으로 1년에 1-2건 정도 있는데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하였다. 소년원에서 항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선생님들이 항고장을 작성해 주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소년원의 경우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월 1회 여론조사(서면작성)를 통해 의견을 듣고 개별 상담을 통해 보완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아이들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답변이 일반적이었다.

"아이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들을 위해 시정한 것은 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경우입니다. 면회시간 10분 연장, 온수 목욕이 있었어요."

②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보호자의 보호력은 소년의 갱생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부모 기타 보호자는 면회, 담임과의 전화통화 등으로 참여권을 보장받고 있었다. 재판 때 동행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문자나 우편으로 소년원 입원을 통보한다고 했다. 면회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일정시간에 최대 50분간 가능하고 가족과 함께 식사도 가능하다고 했다. 단 외부음식을 먹을 수 없으며, 면회 중 직원들이 한 공간에 대기하고 있는 점, 독립된 면회 확보되지 않은 한계를 찾아볼 수 있었다.

'가족사랑캠프'로 1년에 두 번 합동면회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족과 함께 1박 2일 머물 수 있는 '가족동'을 마련해 둔 소년원도 있었다(다만 '가족동'은 일정 수용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많은 아이들이 면회를 하고 있는데 지도하는 직원은 2-3명이고, 그런 상황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카톡을 몰래 보낼 때 뭐라고 하기도 어렵죠. 교도소 차입 제도도, 소년원에 교육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강요행위도 있을 수 있고요. 외부음식을 먹고 식중독, 장염에 걸릴 수도 있죠."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아동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교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이가 부모를 만나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한다고 했다.

"아이가 정신분열, 우울이 너무 심했는데, 아이 아빠가 아이에게 혈육의 정을 끊는 편지를 썼더라구요. 아이에게 주지는 못했어요."
"아이가 아버지 면회를 안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보호자에게 한 달에 한 번 의무과(의료처치) 이용에 대해 통보가 간다고 했다. 다만 징계를 받는 경우 보호자 면회권이 제한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사유와 징계기간을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소년원도 있었지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는 소년원도 있었다.

"보호자가 면회를 오시면 언제든지 학생들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혹시 안에서 징계를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아닌 이상은 언제든지 면회가 가능하고요. (…) 학생이 징계를 받으면 면회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메시지를 (부모님께) 남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날은 면회를 안 오시죠."

소년원에서 보호자교육은 대부분 일시적,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했다. 판사가 별도의 보호자교육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부모자 교육은 소년원 생활을 이야기하고 소년원을 둘러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보호자 교육은) 하루 밖에 안하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고. (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같이 이루어지면 재범률 줄이는 데는, 애들이 사회인으로 정착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는 방법입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 비해 시설 선생님들이 잘 연락을 잘 하지 않는다고 했다. 시설 거주 아동인 경우 보호자의 보호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양육시설의 장이 통고해 소년원에 오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학교장이나 보호자가 통고해 우범소년으로 소년원에 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학교장이 통고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보호자가 넣어달라고 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충격요법이 될 수 있는데..."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보조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평가가 상반되었다. 과거와 달리 직접 아동을 찾아와 사건 변론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하면서 가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종사자가 있는 반면, 국선보조인 역할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평가한 종사자도 있었다. 지역별, 사람별로 국선보조인 역량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비변호사 국선보조인의 경우에도 아동을 위해 성의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변론하는 사람들이 있어 변호사인 국선보조인과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10년 전만 해도 재판 앉으면 '반성합니다. 열심히 하겠죠.' 딱 두 마디 밖에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선보조인들이 직접 아이들을 찾아와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고 변론할 준비를 충분히 하시더라구요. 지금 국선보조인리라면 가치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국선보조인을 엄청 의지하는 애들도 있지만, 조금 형식적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좀 더 마음을 담아 변론을 했으면, 진정성 있게 아이들을 사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국선보조인 역할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년범죄는 법령이나 판례에 근거한다기보다는 환경적인 부분, 아이의 성향 등 비계량적인 부분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소년원을 와야 할 아이인데 (국선보조인이 역할을 잘 하지 못해)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소년분류심사원 기능을 하는 **소년원의 경우, 해당 지역 국선보조인은 대부분 청소년 단체 종사자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선보조인이 접견을 오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지역마다 국선보조인의 변호사 비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④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

소년범들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성인과 분리되지 않고 구치소에 수용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비행 초기에 아동이 구치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년분류심사원에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서에 가면 구치소에 갑니다. 어른들하고 같이 수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 경험, 비행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른들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중략) 초기에 구치소 거치지 말고 바로 심사원으로 보내면 심사원에서 애들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조사도 하고 심리해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되면 앞으로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절차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형사처분을 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사절차를 거치고 나서 소년보호절차로 오게 될 경우 수용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도 확인되었다. 구치소, 교도소에 있는 기간은 보호사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문제이다.

"교도소에 1년 있고, 그 동안 1심, 2심, 3심까지 받는 동안 저희들(소년원)한테는 기간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건 보호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애는 사회랑 격리되는 시간은 더 많아지고 사회 복귀하는 데도 그만큼의 기간이 걸립니다. 구치소, 교도소를 안 거치고 심사원으로 와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소년원에서의 항고 절차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데, 항고 과정에서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이라고 답변했다.

⑤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보장은 소년원 과밀수용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렵다. 그러나 정원 대비 수용인원이 140% 가까이 되는 소년원도 있었으며(정원 80명 대비 110명 수용), 소년원 대부분이 정원을 초과하여 아동을 수용하고 있었다. 면접조사를 위해 방문한 소년원 세 곳 모두 전국 단위에서 아동이 수용되는 시설이었는데, 아동의 기존 생활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현실도 나타났다. 여성소년원은 전국 두 곳에 불과하여, 아동의 생활터전인 지역과 멀리 떨어져 수용되는 문제가 더 컸다. 관련하여, 한 소년원당 20-30명 정도면 집중적으로 교육해 볼 수 있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직 우리 사회가 소년원이 1인 1실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법적 감정이. 1인 1실로 가야 합니다."

소년원의 경우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면접조사에 응했던 소년원의 경우, 수용된 소년 가운데 적게는 약 25%에서 많게는 50% 정도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소년원의 경우 처방한 약을 아동에게 건네고, 실제로 약을 먹었는지 혓바닥을 내밀게 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한다고

답변했다. 정신과 의사가 1주일에 한 번 소년원을 방문한다고 했지만, 약을 먹다가 호전되어 약 복용을 중단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했다.

정신과적 치료를 전문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임상적인 진단기준'이라기보다는 '경험적 근거'라고 답했다.

"전체 100명 중 50% 정도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10명 정도는 폐쇄병동에 가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나머지 10명은 약은 먹지만 약이 잘 듣지 않고 있습니다. 20명 정도는 직원들의 통제나 교육 범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치료를 전문적으로 받아야 하는 친구들과 특별한 친구들을 분류하는 기준은 경험적 근거일까요? 아니면 임상적 진단기준의 평가사정이 이루어진 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그 분류는 경험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처우할 수 있는 물적·인적 자원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관련하여, 면접조사에 응한 소년원 종사자는 모두 최근 3년 동안 채용한 임상심리사들의 역할이 소년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심리상담은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임상심리사) 그 분들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 분들은 끊임없이 학생들을 면담하고 상담하고 불러서 커버를 해 주는 바람에 담임선생님들이 조금 여유가 생겼죠. 학생들 인원에 비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 긍정적 변화인 거죠."
"임상심리사를 최근에 2명 채용했어요. 직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상담도 깊게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임상심리사들이 집단상담을 하고 주로 담임교사가 개별상담을 하는데, 아이들은 임상심리사에게 더 많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소년원에서는 (보호관찰소에서 사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와 같은) 객관적인 판단기준, 체크리스트는 없다고 답변했다. 아동이 소년원에 입소하면 재범위험성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기 때문에 상·벌점 제도 운영, 아이들의 생활상에 맞추어 지도한다는 것이다.

인력 부족은 개별처우가 어려운 가장 큰 요소로 나타났다. 2곳만 있는 여성소년원의 경우, 예산과 인력 지원 없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여건임을 알 수 있었다. 휴직 인력은 상시 근무자 인력의 10%(종사자 50명이라면 5명)를 고려해 추가 채용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휴직, 외출, 소환, 호송(재판)

을 위한 인력에 담임이 나가지 않도록 여유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종사자 정원에 비해 적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여성분들 육아휴직 가시면 대체인력이 없습니다. 그 인력을 메꿀 수 있는 여유인력, 대체인력이 생긴다면 업무가 좀 수월하게 되는데..."

남성소년원이 소년분류심사원 기능을 하는 경우, 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여자아동은 소수자가 된다. 그러나 여자아동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보호가 제공되는지 모니터링 절차는 부재하였다.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교육과 분류심사를 분리하여, 각 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낙인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입소한 아동 중에 성소수자 아동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입소 중이라고 답변한 종사자가 있었다. 다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종사자는 성소수자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아동을 다른 아동과 분리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었다.

임신한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부족했다. 출산, 양육에 대한 아동의 자기결정권이 진지하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었다.

"(임신) 8개월까지는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3-4개월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사고(유산)가 생기면 그 책임은 저희가 져야 하니까요. 혼자 아니면 최대 두 명까지 생활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질문: 부모로써의 역할을 습득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실은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엄마인 선생님들이 경험에서 알려주고 교육하는 정도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한 명을 위해서 교육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편, 개선가능성, 변화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한 결과, 사회에 긍정적으로 복귀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보호처분은 환경을 많이 봐야 할 것 같아요. 걔들도 순간이거든요. 사회진출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형사처분을 했었다면 애들은 그렇게 잘 풀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발적인 (범죄는) 보호처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재범이 아닌 보호관찰 위반 사실만으로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동의 성행이 완전히 개선되었다는 판단 하에 소년원 임시퇴원을 결정한 경우라면, 보호관찰을 붙이지 않는 개별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임시'퇴원이 아닌 '조기'퇴원이 가능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절도, 폭행, 재범이 아니라 보호관찰을 안 받아서 (소년원에) 들어온 경우, 예를 들어 장기 보호관찰 중인데 보호관찰 잘 안 받고 가출한 경우, 재범은 없지만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구인해서 판사가 9호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호관찰법을 위반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년원, 보호관찰을 반복해서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소년원은 마지막까지 온 거잖아요. 소년원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성적도 좋고 자격증도 많이 따는 친구들은 임시퇴원이 아닌 조기퇴원할 수 있는, 보호관찰이 붙지 않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기퇴원제도가 2000년대 초반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임시퇴원에 100% 보호관찰이 다 붙어요. 열심히 했을 때에는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게 마지막 기회를 줘야 좋지 않겠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비율은 10명 중에 3명은 있는 것 같아요."

직업훈련이 특화된 소년원인 경우에도, 해당 영역이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소년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다만, 현재 소년원에 마련된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이 현재의 구직 흐름에 맞지 않게 설계된 점은 한계로 제시되었다.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을 정할 때 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개선방향으로 제안되었다. 직업훈련을 포함한 어떠한 활동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무기력한 아동의 경우, 적절한 처우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직업훈련교육을 트렌드에 맞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재는 전혀 트렌드에 맞지 않게 설계돼 있어요. 본부에서 애들한테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좋아하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초등학생 연령 아동이 소년원에 수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나이가 어린 경우 중학교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소년원으로 보내는데, 해당 소년원의 수용인원이 꽉 차 있는 경우에는 대안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소년원에서 같이 생활하는 선임 아동에 의해 다른 아동을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종사자도 있었다.

"선임(아동)이 관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 소년원의 해악이죠. 이런 경우 효과는 강력해 보일 수는 있어요. (아이가) 권력을 지게 됩니다. 선임 역할을 하는 아이가 계속 다른 아이를 괴롭히고 욕하고 뺏고 하는 행동을 할 위험성. 이런 상황을 만드는 종사자는 담임으로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소년원에서 CCTV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는 소수의 인력이 많은 인원의 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현실적인 여건이 제시되었다. 자해나 폭력상황이 우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CCTV의 설치 정보를 아동에게 고지한다고 답변한 종사자는 없었다.

CCTV 운영과 관련하여, 방에서 큰 소리가 나면 CCTV 화면 팝업창이 뜬다는 사례가 보고되었고, 아동과 종사자의 성별이 다른 경우에는 생활관에 설치된 CCTV를 볼 수 없다고 하였지만, 엄격하게 금지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CCTV가 없는 목욕탕에서 아동이 싸우는 경우에는 시의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특히 성별이 같은 직원만 목욕탕 등에서 발생한 싸움에 개입할 수 있기에, 제한된 인력은 문제해결이 어려운 주요 요소였다.

"CCTV 필요성은 저희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사실은 직원이 1:1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1:1로 보려면 방이 10개면 직원이 10명이 있어야 하고요. 야간 같은 경우에는 3시간씩 돌아가면서 1명이 100명을 관리합니다. CCTV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학생들도 '나를 보고 있구나' 하기 때문에 큰 사고들이 나지가 않습니다."

소년원 처분을 받은 아동이 실형을 받은 사례도 보고되었다. 생계형 절도 범죄로 소년원 처분을 받고 퇴원 이후 재범을 하자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였다.

"부모가 지적장애인인 아이였어요. 오빠도 지적장애인이었죠. 얘가 사실은 절도를 해서 경제적으로 살림에 보탰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도가 상습이 되어서 저희들(소년원)에게 왔죠.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회식하면서 찜질방에서 자면서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또 가져갔어요. 소년원 오기 전에 딴 게 같이 물려서 걔가 실형을 6개월 받았습니다. (…) 얼마 전에 통화를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나오니까 애초에 입사하기 전에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걸 차라리 오픈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얘기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소년원 출신이라는 낙인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소년사법

제도를 경험한 아동에 대한 낙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학교 선생님이 소년원 출신인 거 알거든요. 반에 문제가 일어나면 이 아이 먼저 부릅니다. 그거 애가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떠나는 애들이 많습니다."
"피부샵에 한 명 보냈는데 워낙 실력이 좋으니까 옆에 있는 직원들이 자꾸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요. 처음에는 직업학교라고 말하다가 나중에는 친해져보니까 **학교다, 인터넷 치면 소년원 나오거든요. 그 이후부터 학생이 라커룸에 들어갔다 나오면 모든 직원들이 라커룸 다 들어갑니다. 자기 라커룸 확인하러."
"취업을 하고 난 뒤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스스로 못 견디고 눈치를 보면서 나오게 되죠."
"밖의 사람들은 소년원을 '교도소 새끼'라고 하거든요. '새끼 교도소'라고 보고 있으니까. 교도소의 이미지가 안 바뀌면 저희들에 대한 것도 안 바뀝니다. 소년원하고 교도소를 일반사람들은 구분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게 언론에서 한 번씩 터지면 홍보해 놨던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한편, 소년원에서는 아동이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을 종사자가 미리 살펴본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편지는 제한 없이 주고받을 수 있어요. 욕설이 들어있거나 공범 친구인 경우에는 제한을 하죠."

⑦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독방처우는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되었으며, 최대 20일까지 가능하였다. 독방에 있는 동안에는 징계 목적 달성을 위해 수업 수강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소년원에서 사용되는 보호장비로는 수갑, 포승 정도였다. 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제2의 폭력을 쓸 경우 보호장비가 사용되었다. 법령상 전자충격기 사용도 가능하지만, 실제 사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했다. 아동 간 싸움을 말릴 때 별도로 채용한 '감호실무관'의 역할이 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신체구속 및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사라져야 할 고참행위 100가지'를 정해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소년원도 있었다.

"수갑은 싸움을 말렸을 때 얘가 도저히 안 된다. 선생님들이 말리는 데도 진정이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우리 애들 100kg 넘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들이 싸우면 못 말리시거든요. 그럴 때는 보안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호실무관이라고 해서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이 몇 명 있습니다. 복도에 낮에도 순찰도 하시고 근무도 하시고 (…). 저희들은 몸으로 말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호실무관을 채용할 때는 무도 실무관을 주로 많이 채용합니다."

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 중 신체의 자유를 가장 많이 제약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1호, 6호 등 다른 보호처분을 거치기 이전에 소년원 처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의견이 여럿 있었다. 비행초기에 소년원에 보내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이 적다는 점에서, 소년교도소에 가야 할 상당수의 인원이 소년원에 배치되는 현실적인 여건도 이유로 제시되었다.

"제발 6호나 1호 기관에 보내지 마시고 바로 초기에 저희들에게 보내 달라. 비행 초기에. 더 속성화되기 전에 보내 달라. 이렇게 (판사님들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잘못으로 소년원 보내기는 안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장비(수갑, 포승)를 이용해 신체를 구속해 이동하는 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인력이 늘어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움직일 때에는 신체 제한을 합니다. 오늘도 피부샵에 5명이 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선생님을 많이 붙여서 맨투맨으로 나가 있습니다. 선생들하고의 관계, 라포를 봐서... 청소년들의 특징이 보는 선생님 눈 앞에서는 절대 나쁜 짓을 안 합니다."

⑧ 모니터링 및 진정에 관한 권리

소년원은 관할 부처인 법무부 외에도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모니터링 대상기관이었다.

한편, 소년원 처우심사위원회는 (임시)퇴원, 징계 등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중요한 처우를 결정하는데, 사실상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보호소년법」 시행령 제3조), 외부위원이더라도 퇴임한 소년원장 등이었다. 객관적인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판사의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 소년원에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우심사위원회는 원장, 교무과장, 행정지원과장, 직업훈련과장 등이 들어가죠. 외부위원은 퇴임원장님과 한 분 더 계셨는데, 사실상 거의 안 오셔서 기억이..."

아동과 관련된 인권교육으로는 진정처리절차가 거론되었다. 신입교육 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절차,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되는 정도라고 답했다. 아동이 오히려 진정절차를 악용한다는 응답도 있었는데, 진정한 의미의 인권교육이 적절히 실시되지 못하는 실태를 반증한다 할 것이다. 아동을 위하는 것은 아동과 함께하는 성인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부족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선생님 인권위에 쓰겠습니다. 인권종이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중략) 인권적인 측면을 애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오면서, 많은 기관을 거쳐 오면서 애들한테 바른 인권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줘야 하는데 애들은 오직 수단, 그 순간을 피하는 방법의 수단으로 인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매우 힘이 듭니다."

⑨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각기 다른 사람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명확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주는 체계도 필요하지만, 이때에도 관계자의 역량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누가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보고 있으며,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아동과 어떻게 함께 하는 성인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종사자의 역량 편차는 곧 아동에 대한 처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일반 가정도 같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어떤 문제로 오시느냐,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이 기관장으로 와서 기관을 리드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절실히 필요한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정을 자극하면서 경미한 규율을 위반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빨리 내보내려고 처우심사위원회에 올릴 자료를 잘 써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는, 종사자의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와야 합니다."

우연적인 종사자의 개별 역량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학교는 물론 가정의 기능까지 갖출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어쨌든 소년원은 학교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일반 학교처럼 수업이 있고, 교육계획이 있고 방학이 있어요. 우리에게 생활지도를 강조하고 있고 단순히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 행정관, 상담사로서의 역할까지 강조해요. 시스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열정, 사명, 책임만을 강조해요."
"교도소에 근무했던 직원이 교도소보다 5배 업무량이 많다고 했어요. 보호자 기능까지 해야 하는 문제가 있죠."

충분한 인력 확보와 함께 종사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무교육의 중요성도 제기되었다. 소년사법제도는 심리학, 교육학 전공과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이며, 종사자가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체인력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아동의 권리나 발달 관련 교육은 정기적으로 단편적으로 실시되거나 개별 소년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선생님은 유자격자가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심리학, 교육학 전공 등. 아이들 교육이나 상담은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 자체 내에서 청소년 발달심리 전공하시는 분들 모셔서 한 번씩 특강을 합니다. 그 기회가 극소수죠.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강사비를 드려야 하는데 박사님 오시면 강사비를 많이 드려야 해서..."
"아동에 특화된 권리교육은 부족했어요."

'아동인권 침해상황의 약한 고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종사자가 자의적으로 보호장비를 남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직원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웬만하면 인권이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만약 (저촉되는 점이)있다면...애들이 자해를 한다거나 하면 보안장비를 쓰는데, 애들이 밉다는 이유로 묶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어느 (소년)원이나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남용하면 안 됩니다. 인권침해예요."

부모와 단절된 경우 부모와 소년 간의 관계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와 관련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부모와 아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자질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년원에서 나가면 같은 환경에 방치되는데, 재비행을 막으려면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년원 종사자에게 필요한 역량으로는 '마음을 터놓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자질', '정서적으로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답변했다.

"애들에게 봉사한다는 그런 희생정신이 없으면 여기서 근무를 못 합니다. 소년원 선생님들의 자질이 한 가지 필요하다면 애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자질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 애들이 수업을 거부한다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러면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들과의 관계형성 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공무원 같은 마인드는 안 돼요. 정이 많은 사람, 정서적으로 사랑이 풍부한 사람을 봅으면 좋겠어요."

소년원 업무가 체계적으로 개선·보완되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 유행을 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힘들다는 지적도 있었다.

"시스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탄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이게 강조되다가 어떤 때는 다른 게 강조되고. (제가) 처음 근무 시작할 때에는 정보통신, 어학이 강조됐습니다. 몇 십억 투입되어 랜선, 전산실 설치했죠. 한 때에는 외국어 교육까지 하라고 하고. 기초교육도 부실한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는 인성교육. 그 다음에는 단기 9호인 아이들도 직업훈련이 생기고. 최근까지는 퇴원한 아이에 대한 정착 지원이 트렌드였는데 강제적 업무가 임의적인 업무로 많이 줄었어요. 그게 한 5년 가니까 사그라들었죠. 소년원 안에 있는 아이들 남기고 밖으로 돌면서 밖의 아이들 붙잡고 다녔어요. 지금은 병리적인 부분. 정신건강. 이쪽이. 최근 그래서 임상심리사들이 채용되었죠."

소년원은 업무 특성상 분업화가 쉽지 않으며, 종사자 간 적절한 업무 분배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소년원은 교도소와 달리 당직 서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 행정하는 사람, 분업화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당직은 공통의 업무입니다.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려면 교육 전문화, 전담화가 이루어져야 해요."

보호관찰관과 소년원 종사자 간 직제를 통합한 것에 대한 어려움도 확인되었다. 아동을 이해하고 아동을 위한 종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아동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소년원 경력이 최소 4-5년은 되어야 업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근무할 수 있는데, 전국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 근속기간이 매우 짧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인사는 전국으로 돌아야 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지방으로도 막 갑니다. 소년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노하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금방 오셨다가 금방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종사자에 따라 소년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지향점이 다른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은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소년보호처분을 하기 때문에 소년원 처분이 의미 있다고 답변한 종사자가 있었다. 종사자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아동에 대한 이해를 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소년원이 교육적 기능(학교)보다 징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청소년들은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소년보호처분을 하거든요. 보호처분의 이념이자 소년원이 존재하는 이념입니다. 청소년이 바뀌고 있다는 가능성 그거는 정말 진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소년원은 보호, 격리의 기능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규칙, 규율, 규정이 강화되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응보적인 부분보다는 선도, 교화, 교육적 기능으로 가다보니 너무 관대하다고 해야 하나..."

면접조사에 참여한 종사자가 속한 소년원 대부분이 소년분류심사원 기능도 수행하고 있었는데,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은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이 작성한 조사서 의견과 약 90% 정도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조사서가 아동의 재판 처우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분류심사원 종사자 역량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소년원이 다른 처분에 비해 가지는 강점으로는, 규칙과 규율의 의미와 필요성을 경험으로 학습하는 기능이라고 답했다.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아이들이 변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⑩ 사회복귀의 지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모두 아동이 사회에 적응해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소년원에서는 '사회복귀반'을 편성해 퇴원 20일 전부터 집중적으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러나 소년원 외부와의 단절 및 소년원 내부에서 제공되는 사회복귀프로그램은 사회복귀의 장애물로 확인되었다. 보호관찰 등 다른 시스템과의 상호연계가 부족한 어려움도 있었다. 소년

보호위원, 소년보호협회 등 외부의 지원인력은 아동과의 식사자리 한 번, 일시적인 만남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개인별 인생 설계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협회 소속의 예스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또한 사회복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문제는 밖입니다. 밖과의 연계에요. 16-17세가 헤어자격증을 땄습니다. 나가서 그 학생이 헤어샵에 갔어요. 뭘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호관찰하고 우리(소년원)는 사실은 소년보호관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7-8년 전부터는 소년원에서 아동의 사회복귀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담임교사는 6개월 간 의무적으로 아이들을 만나면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사회복귀정책지원금으로 제공되었던 월 6만원의 금액이 최근 5만원으로 삭감되는 등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재정적·인적 자원의 부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소년원 밖의 환경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도 주요하게 제시되었다. 부득이하게 환경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아동 스스로가 자립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시설수용]

① 물리적 환경과 시설

② 외부와의 교류

③ 여가활동

매일 야외 운동하는 시간이 일정시간 주어진다고 했다.

④ 종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불교 종교활동이 가능했고, 무교인 경우에는 종교활동을 하지 않을 자유가 보장된다고 답했다.

⑤ 적절한 의료조치에 대한 문항

도주, 이탈의 위험을 안고 있어 외부 병원진료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외부진료는 의무과장이 진료할 수 없는 치과나 (여자소년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제공되었다. 아동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종사자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외부병원에 장기입원을 하면 저희 직원들이 좀 힘들죠. 애는 한 명, 직원은 교대를 해야 해서 두 명 있어야 하니까. 만약 그런 경우 담임이 나가게 됩니다. 담임이 나가면 인원이 비니 (소년원) 안의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아요."

4) 보호관찰관[121]

① 정보 접근 및 알 권리

10가지 원칙 가운데 정보접근 및 알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있었다. 소년에게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을 때 비로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려줬을 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거예요."
"아동 자신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처분되는지를 알려줘야 하는데 아이들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잘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주죠."

보호관찰이 시작되는 시점에 개시교육은 보호자와 함께 실시하며, 심층면접을 통해 다시 개별적으로 보호관찰에 대해 설명한다고 하였다. '보호관찰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 반영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재범위험성평가와 관련해 동적인 요인은 아동의 진술이나 태도 등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답했다.

②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보호관찰을 받을 때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동이 보호관찰을 여러 번 반복했거나 보호자가 아동(자녀)의 반복되는 범행에 지쳐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보호자의 보호력은 보호관찰 중인 아동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 등 보호자가 관심을

121) 법무부 직제에 따라 5급 이상을 보호관찰관, 나머지는 담당직원이라 칭하나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소년형사·보호사건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종사자를 '보호관찰관'이라 칭하기로 한다.

갖고 보호관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고 하였다.

"아이들도 보호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가 매우 달라요. 일부러 생업을 위해 참석하기 어렵다거나 아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부모와) 같이 오라고 해요. 부모가 창피해 하더라도 관심을 갖게 하려고 더욱 오게 하죠."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면접조사에 참여한 보호관찰관 대부분 국선보조인을 만난 경험이 없었다. 관련 종사자 간의 교류가 부족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년사법제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변호인, 법률대리인의 역할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다. 소년사건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력이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변호사가 법률조력자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보호자 부재를 이유로 적절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보완될 것이라는 이유였다.

④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

보호관찰관 가운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소년 대부분이 학적을 둔 학생이라는 점에서 절차 지연은 아동의 사회복귀에 가장 큰 방해요소라는 것이다. 소년부 판사를 비롯해, 소년사법 종사자들의 인력부족은 절차의 신속성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으로 제시되었다.

⑤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보호관찰관 1명이 소년 120여명을 담당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업무량을 고려할 때, 개별처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참여자의 답변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에 소속된 소년을 담당하는 직원은 관찰소별로 최대 10명 이내에 불과하였다. 담당자 역량에 따라 처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표준화가 필요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종사자가 적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보호관찰관 1명이 보호하기 적정한 소년의 수는 25명으로서, 현재 담당인원의 1/4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1명당 110명, 120명을 담당해요. 아이들은 점점 다루기 어려워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지침이 굉장히 빡빡해지고 있어요. 직원의 인원을 늘려야 해요."
"개별처우 원칙이 중요합니다.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위해 표준화시키고자 하죠. 개별처우를 하려면 담당자 한 사람이 멘토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꾸 매뉴얼로 표준화를 시키려고 해요. 이 정도 적정선은 유지하라는 의미로."
"지도감독 지침은 하나인데 절차, 해야 할 일, 가이드라인이 빡빡해요. 1개월 안에 가족관계 파악, 심층면접, 처우계획서 수립 등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죠."
"법무부에 있을 때에도 매뉴얼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있더라고요. 최근 적용하라는 면담기법이 생겼는데 매뉴얼은 참 좋지만, 적용하면 좋겠지만, 그걸 적용하기에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한계가 많죠."
"50명? 50명만 되어도 충분할 것 같지만 아이들한테는 충분하지 않아요. 제도상 보호관찰이 실현되려면 25명은 되어야 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보호관찰관들은 개별처우를 실천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소년이 보호관찰을 개시하면 신고 이후 아동의 집을 방문하며, 아동에 관한 재판자료, 결정 전 조사 자료 및 범죄경력자료 등을 수집해 1개월 이내에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소년재범위험성 평가를 거쳐 '일반, 주요1, 주요2, 집중'으로 분류한 등급에 따라 다른 처우를 제공하고 있었다(예를 들어 면담의 경우 집중은 주 1회 이상, 주요1은 월 2회 이상, 주요2는 월 1회 이상 등). 집중에 해당하는 소년 40명은 일반으로 분류된 소년 100명을 담당하는 업무강도와 비교할 수 있는데, 이들 아동은 전담 보호관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아동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별면접 및 상담조사가 가장 중요해요. 보호관찰관 1명이 소년 120명을 담당해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장기간 노력을 들여야 하지만 지금 제도로는 개개인을 들여다 볼 시간이 없어요. 개별면접 및 상담조사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낙인하지 않고 사회로 복귀시키려면 아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처방', 즉 상담과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호관찰소 소장의 역량으로 단계별 처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도 보고되었다.

"**보호관찰소 **지소에서는 소장님이 단계별 처우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일반 아이들은 A 프로그램, 주의는 B, 집중은 C 프로그램 같이. 그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면 아이들 단계를 낮춰주고요."

인력이 부족한 현실적인 여건상 외부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단지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계한 자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보호관찰소와 아동 거주지 간 거리 문제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멀리 있는 애들은 집중이 아니고서는 하루 날을 정해 우리가 가죠. 현지상담이 아니면 힘들어요."

장애아동, 임신한 아동, 이주배경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한계도 찾아볼 수 있었다. 외국인 등은 '특별관리대상자'로 관리하지만 체계적인 지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인 친구는 임신사실이 얼마나 알려졌는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의논해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성소수자 아동이 있었는데 본인이 밝히고 싶지 않아 해서 집단 프로그램에 넣지 않았어요. 결국 다 자원과 예산의 문제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혼자 온 소년이 있었어요. 직원이 일일이 영어로 다 번역을 했죠."
"장애가 있는 여자아동의 경우 성적 학대행위가 없었는지, 가정방문 때 유심히 잘 살피긴 해요. 그런데 이게 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아동이 보호관찰 받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아이들 스스로 소년보호재판을 괘념치 않아 하는 것이 문제라는 응답자도 있었다. 보호관찰 신고서에는 공개 범위를 표시하도록 해 낙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강명령 등으로 학교를 결석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결국 학교에 알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

"신고서에 우편물 고지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표시되어 있으면, 문자만 보내죠."
"저희는 엄청 조심하죠. 그런 게 저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집에 현지 방문을 갔는데 '누구 찾아왔어요? 어떻게 오셨는데요?' 물으면 보호관찰관으로 답하기 어려운..."
"동사무소에서 왔다고, 사회복지사 담당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수강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하게 되면 학교에서 결석처리가 되죠. 학교에 알리면 결석처리는 안 되니까 그럴 경우 학교에 알릴 것인가 어려운 선택을 할 상황이 생기죠."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낙인을 조심해야 하면서도 보호관찰 자체가 가지는 위하적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호관찰 받으러) 오는 게, 두근두근 하는 게, 처벌의 효과잖아요."

⑦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보호관찰관 면접조사에서는 특별히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해 유의미한 답변은 없었다.

⑧ 모니터링 및 진정에 관한 권리

법무부 내부에서 보호관찰 관련 모니터링은 지도감사 명목으로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력상황 등에 대한 면밀히 검토 없이, 지침 준수 여부 위주로 형식적으로만 살펴본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⑨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보호관찰 종사자가 성인을 담당하지 않고 소년(아동)만을 담당하는 흐름은 긍정적이었다. 직제의 개편으로 지역 몇 개의 일부 지소를 제외하고는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은 성인을 담당하지 않았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은 소년형사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아동도 같이 담당하는데, 범죄학습 등의 우려가 있어 각 대상아동을 분리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아동을 담당할 경우 성인에게 쓸 에너지의 두 배가 든다고 표현은 소년 전담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및 역량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한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결정 전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소년만을 전담하지는 않는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인들은 책임감이 있는데 소년들은 이런 게 없죠. 성인들은 잘 넘지 않는 선도 아이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그 선을 계속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소년보호관찰이 (성인보다) 훨씬 더 어렵죠."
"소년 100명보다 성인 200명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소년원과 보호관찰 직제가 합쳐진 것은 약 8년 정도 되었는데, 보호관찰관과 소년원 직역 모두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했다.

"보호관찰은 지침들이 너무 세밀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들어해요. 소년원은 당직의 어려움이 있고, 주말이 없는 것, 신경을 쓰느라 잠을 못 자죠."

보호관찰 종사자에게 필요한 역할은 '멘토'였다. 개별 직원의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어려움을 찾아볼 수 있다. 아동에게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사회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역량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들의 특성은 지금까지 지지도 칭찬도 받아보지 않았고, 대부분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죠. 보호관찰관은 아이들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해요. 아빠, 엄마, 사회복지사, 상담가. 그런 역할을 지금은 보호관찰관 혼자 하다시피 하고 있죠. 직원의 역량에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역량이나 역할은) 멘토라고 생각해요. 보호관찰관들은 자질이 훌륭해야 해요. 언어적인 것보다 비언어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죠. 세상을 잘 모르고 부적응해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잘 알려주는 역할인데, 보호관찰관은 아무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사회자원을 잘 끌어다가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이 멘토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호관찰관이 부모의 보호력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주거지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면 부모님과도 라포가 형성돼요. 부모님이 아이 훈육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전화를 하시죠. 그런 중간자 역할을 (보호관찰관이) 할 수 밖에 없어요."

소년사법제도 유관기관과의 접촉과 협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1년에 두 번, 법원 주관으로 각 지방법원 판사, 보호관찰소 소장과 지소의 소장,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위원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간담회 정도가 언급되었다.

법무연수원에서 보호관찰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교육,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지만 아동인권에 특화된 교육은 없다고 답변했다.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욕구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권리교육은 꼭 필요한 것 같더라구요."

⑩ 사회복귀의 지원

사회복귀는 기존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동시에 부처 간 분절로 인해 지원체계가 연결되지 못하는 현실이었다. 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을 하나로 묶어 정리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부모님들 면담해 보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원제도를 잘 모르기도 하고, 안 가려고도 하고, 그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선진국인지 보려면 '교정복지'를 보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참 멀었죠."

사회복귀의 차원에서는 보호관찰이 6호, 8호처분보다 효과가 좋다는 답변도 있었다.

"아이에게 맞는 것들을 맞춤형으로 개별처우를 해야 하는데, 8호도 디테일은 보호관찰만 못하죠. 사회복귀에 있어 (보호관찰이) 6호, 8호보다 강점이 있어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복지체계를 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자 단체, 특별범죄예방위원도 중요하죠.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생계비 지원도 해 줘야 하구요."
"보호관찰관들이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잘 알고 적재적소에 연결해야 해요."

(나) 아동인권 유형별 분석 결과

이하 (나)항에서는 판사, 국선보조인, 소년원 종사자, 보호관찰소 종사자의 심층면접조사 응답을 종합해 10가지 아동인권유형별로 분류해 정리했다.

① 정보 접근 및 알 권리

- 종사자들은 대부분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고 설명되고 있다고 답했

다. 다만, 소년사법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이 비중 있게 고려되는 경험은 찾기 어려웠다.

- 재판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가 표현되기 힘든 환경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처벌할 것을 특별히 배려해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이니, 네 의견이 있더라도 참아야 한다.' 혹은 의견을 개진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설령 의사가 표현되더라도 비중 있게 고려되지 않는 현실도 작용한다고 했다. 법원이 사건 처리의 수를 줄여 좀 더 아동을 들여다 볼 시간과 여력을 확보하고, 아동의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두는 등 아동친화적인 재판환경을 만들기 위한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 소년보호사건 결정서(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동의 정보 접근 및 알 권리뿐만 아니라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는 제외하고 작성하는 등)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불복절차와 관련해,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조치에 대해, 소년부 판사만이 결정으로써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소년법」 제18조 참조), 아동이 직접 다툴 방법이 없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조치를 다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국선보조인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에서 아동이 범죄사실을 다투는 경우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호소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무죄를 받지 않을 경우 전과가 남는 반면, 다소 억울해도 소년보호재판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이 이원화되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 이주배경 아동, 외국인인 경우 통역, 번역지원에 대한 체계가 없이, 종사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 종사자 모두 보호자의 참여 정도가 소년보호사건 처분 결정 및 아동의 회복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답변했다.
- 보호자의 보호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시설 내 처우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도 확인되었다. 보호자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할 필요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있다. 찾아가는 상담, 야간프로그램 등으로 보호자특별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시설 내 처우를 받은 경우 보호자가 정기적으로 면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아동이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아동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답했다.
- 소년원의 경우 징계를 받는 경우 보호자 면회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가족과의 접촉 제한 내지 거부는 그 어떤 목적으로든 금지된다는 점에서,[122] 징계의 수단으로 보호자 면회를 제한하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때 좀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는 점도 발견되었다. 별다른 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시설에서 보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동양육시설의 장이 통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시설장 통고로 소년원에 온 사례도 확인됐다. 소년보호재판으로 시설 처분을 받은 시설 거주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연락을 하거나 잘 찾아오지 않는 등 보호환경이 비시설 아동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종사자들은 소년사법제도에서 아동의 권익을 옹호해 줄 법률 조력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있었다.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에 의해 국선보조인이 선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보호처분 결정 이후에는 국선보조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더라도 시기를 앞당겨 수사 초기부터 국선보조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 초기에서부터 처분 결정 이후까지 국선보조인이 개입, 조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맞닿아 있는데, 국선보조인 역량의 편차가 크다는 점이 많이 보고되었다.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차이 및 아동에 대한 이해 부족, 범죄사실

122) 하바나규칙, A/RES/45/113.

을 다투는 경우 미흡한 대응, 비변호사 국선보조인의 법률적 조력 부족 등이었다. 아동 전문 변호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도 지적되었다. 국선보조인이 사건에 접근하고 개입할 수 있는 허용범위가 너무 좁다는 한계도 보고되었다. 국선보조인을 신속하게 선정해 국선보조인이 사건을 조력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선 비용을 실질화하며, 열람·등사범위를 넓혀야 한다.

④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

- 경찰단계에서 조건부 훈방 과정에서 진행되는 사랑의 교실, 검찰단계에서의 선도 교육, 형사조정, 법원단계에서의 수강명령 등 교육이 중복 부과되면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각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단계별 교육에 대한 기관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법원선의주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경찰, 검찰, 법원, 청소년회복지원시설, 6호 시설,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소년사법절차 과정에서 관련되는 기관이 많은 데다, 기관 간 연계가 잘 되지 않는 점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었다. 각 직역별로 소년전담인력을 양성해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기관 간 연계를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 지역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를 저해하는 큰 장애요소로 평가되었다. 우선 지방법원이 있는 지역은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나아가 각급 법원의 지원에서도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 아동이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구치소에서 성인과 분리되지 않고 수용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구치소에서 성인과 3-4개월 구금되고 나서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아동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구치소를 거치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위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이원화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는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형사절차를 거치고 나서 소년보호절차로 오게 될 경우 수용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다. 구치소, 교도소에 있는 기간은 보호사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 경찰에서 아동을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14세 이상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에서 바로 법원으로 보내 벌금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참조). 조기 개입이 중요한 초범인 아동 상당수가 체계적인 소년사법시스템으로 편입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일 수 있다.
- 신속한 수사와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의 충실한 대응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권이 보장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권, 방어권 등 다른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⑤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 대안적 처분(다이버전)을 확대해야 한다. 「소년법」에 명시된 10가지 보호처분을 담당하는 기관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이버전은 종사자 개인의 역량, 의지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지, 조직·체계적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수사 초기부터 화해권고제도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별도의 조치, 처우가 필요하다. 특히 임신한 아동, 성매수범죄에 이용당한 아동, 성소수자인 아동에 대한 종사자의 부적절한 대처는 아동에게 2차, 3차 피해를 가할 수 있다. 임신한 아동, 성매수범죄에 이용당한 아동, 성소수자인 아동을 위한 기관 별 매뉴얼, 기존 지원체계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는 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보장할 수 없다. 특히 여성소년원의 경우 두 곳에 불과하다. 소년원 추가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
-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은 그 역할과 기능이 달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이 전국에 한 곳밖에 없어, 소년원에서 소년분류심사원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 소년사법 종사자의 인력이 부족해 처리할 사건의 수가 많다보니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하루에 약 50-60건, 보호관찰관은 상시 담당하는 소년이 약 110-120명이다. 소년사법 직역 별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의 확보,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소년재판을 받는 우범소년 통고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아동양육시설장의 통고 문제는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시설에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년부로 통고해 시설 내 처우를 받게 한 다음, 퇴원한 아동의 입소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비시설 아동에 비해 사회로 복귀하는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 6호 시설의 경우 관리·감독기관이 명확하지 않고 국가지원이 미흡한 점, 시설마다 허용되는 자유의 범위가 균질하지 않은 문제가 지적되었다. 6호 시설이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6호 시설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소년원 조기퇴원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시퇴원 시 부과되는 보호관찰 또한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아동의 다양한 개별적인 욕구를 고려해 재편할 필요가 있다.
- 소년원에서의 정신과 치료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소년원에 오는 아동은 방임 등 학대, 폭력 등의 경험으로 인해 충동장애 등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비율이 높을 수 있다. 다만 각 소년원에 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년원 중 많게는 수용된 아동의 50% 정도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혓바닥을 검사하는 등) 약 복용이 강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청소년기의 특성에 따른 감정의 기복, 과잉행동까지 모두 정신과적 문제로 치부되어 과도하게 정신과적 약물이 남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지, 효과적인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지 정신과적 치료의 적절성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소년원의 임상심리사 채용 확대가 아동의 개별 처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종사자의 응답은 그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 소년사건에서 형사재판과 같은 양형기준표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더라도, 공식적으로 사례를 수집·축적하고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는 있다. 법원 내부에서 소년보호사건의 양형기준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아동의 특수성,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해 적절하지 않아 양형 관련 연구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언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보고되었다. 같은 행위를 성인이 했더라면 보도되지 않았을 사건이 소년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도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 소년부 송치는 전과는 남지 않지만, 검찰 기소유예와 달리 (법무부, 법원 내부) 기록이 삭제되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습성을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87 판결 등), 공소장에서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소년법원 송치처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한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향후 아동이 직업을 선택할 때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는 낙인과 연결된다. 아무리 소년사법 관계 종사자들이 소년보호절차 안에서 낙인을 막으려고 노력해도 아동들은 사회, 학교에서 범죄자로 취급되고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소년사법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사회에서 낙인 예방이 온전히 기능할 때 사회복귀와 회복, 재사회화라는 소년사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과밀수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CCTV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화장실, 목욕탕과 같이 내밀한 장소는 설치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보호소년법」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참조). CCTV

설치에 관한 정보는 아동 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영상정보의 수집, 보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외부에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소년교도소와 달리, 소년원 내 편지는 종사자가 미리 내용을 살펴본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보호의 명목으로 가하는 서신에 관한 (실질적) 검열은 아동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⑦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명확한 기준 없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건이 너무 많아 재판할 시간이 없을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었다.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조치라는 점에서 위탁의 기준이 마련되고, 위탁조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소년분류심사원이 원래의 목적대로 조사와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밀수용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세심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을 고려할 때 개방형(출·퇴근 방식)으로 상담 및 조사,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6호 시설도 일정기간 이후에는 (예를 들어, 주말에는 집에 갈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법원(또는 검사)의 조사·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아동을 호송하는 경우 수갑, 포승줄이 사용되고 있다(「보호소년법」 제14조의2 제2항), 이탈을 방지하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소년원에서 신체구속 및 무력의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종사자의 부적절한 무력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제한할 방안이 없는 점도 지적되었다.
- 소년원에서의 최대 20일까지 부과되는 독방처우(근신)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하바나규칙은 독거구금 등 소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처벌을 포함한 징계조치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⑧ 모니터링 및 진정에 관한 권리

- 법원과 더불어 법무부 관할의 소년원, 보호관찰 등 소년사법 관련 기관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경우 외부의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련 기관들의 모니터링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에 대한 별도의 법률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국선보조인이 법원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 소년보호사건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경우 법원과 여성가족부, 아동보호치료시설인 6호 시설은 보건복지부와 법원(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이 관할하는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법원이 관련 기관 지정 권한이 있어 감독을 실시하더라도 시설 조사 항목에 '아동의 인권침해' 항목은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 법원의 관련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권한을 확대하되,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게 될 전문조사관 인력 확충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소년원의 경우 징계, 퇴원 등 아동의 중요한 처우를 결정하는 처우심사위원회(「보호소년법」 시행령 제3조)에 대해서도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위원을 의무적으로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아동당사자가 직접 소년사법제도 관련 시설과 종사자,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 아동의 진정제도와 관련해서는 형식적으로 진정절차 정도를 안내하고 있었다. 종사자들은 아동의 진정절차가 악용되고 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성 있는 인권교육이 전제되었을 때 진정제도가 활성화되고 진정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⑨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종사자들은 공통적으로 소년사법은 별도의 전문성 있는 전담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실은 종사자 직역에 대한 역량의 편차, 전문성의 부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전담 인력은 곧 교육되고 훈련된 전문가를 말한다.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판사, 국선보조인, 소년원 및 보호관찰 종사자의 경우, 아동의 발달과 권리 등 아동에 특화된 아동인권에 관한 체계적, 정기적인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인

권 교육·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종사자 역량의 문제는 지원체계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역량이 뛰어난 종사자들이 소년사법제도에 들어오고, 장기 근속하면서 전문성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 역량 강화를 매뉴얼에 의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매뉴얼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소년사법제도는 보호자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각 종사자들이 '보호자', 아동이 결국 돌아갈 가정환경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보호자의 기능 회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 지역 간 사법환경의 편차 문제도 심각했다. 한 지방법원의 경우 소년보호사건 담당 인력이 판사 1명, 위탁보호위원 1명, 조사관 2명이 전부였다. 소년보호사건 항고심의 (소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 법원 내의 전문조사관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 경찰단계 조사의 전문화도 필요하다. 범죄심리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는 '비행성 예측자료표' 작성 제도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소년업무규칙」 제25조).
- 관계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는 인력난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하루에 5-60명의 재판을 하는 판사, 아동 110명 이상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종사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소년원, 보호관찰소 종사자의 경우 전국 순환보직 이동의 시스템으로 인해, 직역에 대한 전문성을 쌓을 시간이 부족했다. 아이들과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고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소년사법 관련 다양한 종사자 간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각기 다른 배경, 분야, 직무에 따른 어려움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하면서 지원, 보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종사자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동의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까지 소년사법 종사자 간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예를 들어 보호관찰소 종사자의 경우 국선보조인을 만나는 경험이 거의 없었다). 본 연구용역이 실시한 교육자문 당시, 종사자 간 교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피드백이 많았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 반면, 소년사법 종사자는 아동에 대한 다양한 역할이 부과되면서 부담과 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란을 느끼고 있었다. 보호관찰소나 소년원 종사자는 멘토, 보호자, 상담가,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아동을 구인시키거나 통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아동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어야 하는 동시에 아동의 신체를 구속하고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안정성을 야기한다고 했다.

⑩ 사회복귀의 지원

- 사회복귀를 막는 문제로 지원체계의 분절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처분하는 집행기관 간, 소년사법시스템과 아동복지시스템 간, 아동을 지원하는 단체·기관 간, 종사자 간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상 아동들의 특성과 생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재편해야 한다고 답했다. 부처 간 분절로 인해 지원체계가 연결되지 못하고, 기존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다.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one-stop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아동 및 종사자에게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 종사자들의 사회복귀에 대한 이해가 다른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복귀의 문제는 소년사법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의 문제라고 응답한 종사자도 있는 반면,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 모두 아동의 사회복귀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한 종사자도 있었다. 소년원 직업훈련이 실제 취업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문제와 같이 소년사법 안과 밖 지원체계의 분절 문제도 지적되었다.
- 소년사법을 경험한 아동에 대한 낙인, 대중의 부정적인 시선, 편견이 아동의 사회복귀를 저해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 사회복귀지원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복지지원체계와 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궁극적으로 아동의 자립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소년재판을 경험한 아동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성취감 등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더불어 소년원이 교육적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 제한점

- 첫째, 아동 대상 면접조사의 한계로 제시한 것과 같이, 종사자 대상 면접조사에 참여자들의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면접조사 참여자들의 경력과 근무지역,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협력관계 등에 따라 소년사법제도 운영에 각 종사자간 활동 내용에 편차가 나타나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종사자 대상 조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를 직역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지방자치단체 권역별, 활동경력 및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정도를 기준으로 참여자를 분류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 둘째, 자기보고에 따른 답변 내용으로서, 스스로의 주관적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응답내용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제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아동 및 종사자 대상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년사법제도 전반에서 모니터링과 진정에 대한 권리는 거의 실천되지 않았다. 객관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관계 종사자들의 인식이 부족하며, 소년사법제도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결과 절차 전반의 적절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알 수 있다. 대외적 시선을 의식해 '아동보호 및 교육'을 명목으로 실제와 다르게 답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향후 보완된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모니터링 제도가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조사 내용의 객관성과 진실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라) 시사점

1. 정보접근 및 알 권리
2.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4.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
5.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6.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7.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8. 모니터링 및 진정에 관한 권리
9.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10. 사회복귀의 지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 종사자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10가지 권리유형이 분절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정보 접근 및 알 권리'는 모든 권리 보장의 출발점이다. 아동이 자신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권리 보장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
-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를 잘 제공하고 설명해 '정보접근 및 알 권리'가 실현되는 것은 곧 개별적 욕구의 충족으로 이어져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보장에 가까워진다.
-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를 잘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에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소년사법 절차의 지연은 '사회복귀'의 방해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 면접조사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소년사법제도 종사자의 인력 부족을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꼽았다.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이 강화'되어 전문성이 보장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고, 확보된 인력이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소년들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받을 수 있게 되고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제한받아 소년사법을 경험한 아동이 낙인, 대중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점은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했다. 바꾸어 말하면 사생활을 잘 보호해 낙인을 예방하는 일이 곧 아동의 사회복귀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 소년재판을 받는 아동은 보호자의 보호상황이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변호인이 법률적 조력'을 충분히 해낼 경우 '보호자의 참여권'이 보완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보호자의 보호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자신의 권익을 옹호해 줄 변호사가 있는 경우 소년사법절차에서 상당부분 조력권이 해결될 수 있다.

4. 결론: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본 국내 소년사법체계의 한계

1. 정보접근 및 알 권리

정보접근 및 알 권리에는 ① 적절한 시기에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 ② 아동 측의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에 대한 접근권, ③ 필요한 경우 통역 또는 번역을 제공받을 권리 및 ④ 수사·조사·재판시 아동친화적 면접 및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이 중 적절한 시기에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몇 가지 근거 조문이 마련되어 있다. 가령 수사단계나 형사재판단계에서는 체포 또는 구속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나 변호사 선임권·진술거부권 등에 대해,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때에는 소년보호사건 접수시부터 보호처분시까지 각종의 결정과 처분의 취지 등에 대해, 형 집행단계에서는 수용자의 권리나 징계 등에 관해 소년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근거조문들만으로는 부족하다.[123] 수사기관에 대한 아동의 열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강압적·회유적 수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아직 체포나 구속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진술거부권을 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부모 기타 보호자와 동석할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소년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3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리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나, 적어도 아동의 법정대리인이나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또는 아동과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되어 피고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안내되어야 할 정보라 할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9조). 성인과 비교하여 공권력을 접한 경험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아동에게 심리적 지지자가 동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종사자에 따르면,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이와 같은 정보는 일반적으로 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이 해당 내용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아동 참여자 대부분 '진술거부권이나 범죄사실의 고지, 기타 아동의 권리'

123) 홍관표, "소년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저스티스 통권 제161호(2017), 239면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사건 본인의 출석권에 관한 규정이 「소년법」이 아닌 「소년심판규칙」에 있는 것도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와 관련된 사항을 들은 것 같기는 하나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응답한 점, 소년보호사건 전반에서 정보에 입각한 항소권 또는 이의제기권, 의견진술권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점은 대상아동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현실을 뒷받침한다. 특히 어린 연령의 아동인 경우, 제공된 정보에 대한 이해 정도가 현저히 낮았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또는 '6호 처분'이라는 판사의 언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로 경험하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아동 참여자도 있었다.

한편, 정보접근 및 알 권리는 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도 중요하다. 그러나 소년원 내 CCTV의 필요성 및 위치, 소년원 시설 내 규칙, 면회 및 서신 등 외부와 소통할 권리를 안내하는 공식적인 절차는 없었다. 하바나규칙을 고려하여, 소년원 입소 아동의 정보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근거조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이러한 정보가 아동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는 조문(「소년법」 제24조)만으로는 사법 절차 내에서의 아동친화적 환경을 보장할 수 없다. 아동친화적 환경에서의 정보전달은 소년보호사건 뿐만 아니라, 수사절차부터 집행단계까지 모든 사법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그 방식 또한 단순히 친절하고 온화한 것을 넘어서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충분한 설명을 덧붙여 이루어져야 하고, 아동의 관점에서 그와 같은 설명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더불어 아동이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물적 환경까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법제는 이러한 아동의 정보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 재판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소년부 판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아동은 거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소년부 판사 1인이 부담하는 과다한 재판 업무 및 그로 인한 5-10분 남짓한 재판 시간은 판사가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현재의 절차를 안내하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국선보조인은 아동과의 소통을 어려워했다. 아동이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결정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하는 문제 또한 국선보조인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였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배경 아동이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수용되었을 때 통역이나 번역을 제공해

주기 위한 근거조문 역시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보호관찰관의 경우, 이주배경 아동의 보호관찰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 문건을 영어로 번역한 사례도 있었다. 번역지원과 관련된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어, 종사자 개인의 역량에 좌우되는 현실이었다.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에 관한 접근권 보장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현행「형사소송법」및 「소년법」에 따르면 아동 또는 그의 보조인이나 변호사·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에게는 기록이나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소년법」제30조의2는 심리개시결정 전에는 보조인이라도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고, 심리결정 후라도 등사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보호사건에서 실제로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한 기록의 범위는 극히 한정적이다. 종사자 면접조사에 따르면, 국선보조인이 등사할 수 있는 기록은 피의자신문조서 정도에 불과했고 판사가 허가하지 않으면 수사보고서, 소년분류심사원 보고서도 열람·등사할 수 없어 사실관계나 주변환경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동을 조력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2.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에는 ① 적절한 시기에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및 ② 참여권과 의견청취권이 포함된다. 현재 소년보호사건에 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의 접수·이송결정·송치결정·심리개시결정·불개시결정·임시조치결정 및 보호처분 결정시 보호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다수 마련되어 있다. 또한 아동이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경우에는 가족에게 수용사실에 관해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형집행법」제21조), 소년원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보호소년 수용사실, 수용경위, 처우 개요, 면회 및 통신방법, 징계 등에 관해 알려주어야 하며, 징계의 경우에는 원장이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도 있다(「보호소년법」제15조). 하지만 일부 소년원에서는 징계를 받는 경우 보호자의 면회권을 제한하거나, 징계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는 사례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징계사실은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접촉 제한 내지 거부는 그 어떤 목적으로든 금지된다는 점에서, 징계의 수단으로 보호자 면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수사단계나 형사재판 단계에서 보호자에 대한 고려 역시 극히 미흡한 상황이다. 가령 경찰 수사 단계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법률이 아닌 경찰청 예규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실무상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결정 전 조사에 있어 관계인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때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소년법」 제49조의2). 아동이 부모 등 보호자에게 수사사실을 알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실제로 보호자에게 연락이 취해지지 않았거나 보호자 동석 없이 수사가 진행된 아동 참여자도 찾아볼 수 있었다. 수사단계에서 부모 등 보호자는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를 이용하여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은 보호자가 위 제도를 알고 적극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보장되는 것일 뿐, 수사기관이 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제도에 대해 알리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취지는 아니다. 통지의 대상이 되는 보호자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124]

한편, 보호자의 존재가 아동에 대한 처우의 종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같은 법을 위반해도 보호자가 없거나 가출 중이어서 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가 고려돼 10호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았다고 보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아동양육시설장 등의 통고로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된 경우에는, 시설 종사자가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아동의 보호력을 강화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시설에서 아동을 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수단으로 통고제도를 사용할 우려는 판사 대상 면접조사에서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보호관찰관은 보호자의 참여도가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 및 보호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주요 업무 범위 중 하나임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의 국제규범은, 그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이상, 부모의 참여권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한편, 부모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내지 부모의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완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 수사와 재판의 객체가 되어 있는 경우에 보호자의 존재는 단순한 심리적·정서적 버팀목일 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현행 국내법의 규정은 현저히 미흡한 수준이다.

---

124) 같은 취지로 홍관표(2017), 236-237면.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① 자유롭게 변호사와 접촉하고, 조력을 받을 권리와 ② 변호사 접견시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 ③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가 모두 포함된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4항). 위와 같은 원칙은 아동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아동이 체포 또는 구속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는 등 아동의 신체적 자유가 제한된 경우에는 필수적 국선변호인 내지 필수적 국선보조인 제도가 적용된다(「소년법」 제17조의2). 소년형사재판을 받는 모든 미성년자에게도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을 두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33조). 또한 변호인이 소년과 접견 내지 면회를 하거나 서신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그 비밀이 보장된다(「형사소송법」 제91조 등).

하지만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필수적 국선변호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이 아닌 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거나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법원이 임의적으로 국선보조인을 선정해줄 수 있을 뿐이다(「소년법」 제17조의2).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는 한, 실제로 국선보조인이 선정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은 판사 및 국선보조인 대상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소년보호재판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필수적 국선보조인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난다거나, 취약한 상태에 있는 아동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에도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25]

현행 법·제도는 처음 범죄용의자로 특정된 시점부터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경찰·검찰·법원 등 모든 형사사법절차에서 필수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최근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

125) 류병관, "최근 미국소년사법의 현황과 전망",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2호(2015); 현소혜(2016), 234-236면; 홍관표(2017), 239면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계가 있다. 국선보조인 선정 시기는 심리 약 1주일 전부터 4주 전까지 각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났는데, 많은 경우 아동과의 상호신뢰관계(라포) 형성을 통한 적절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아동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피의자신문조서가 불충분·부적절하게 작성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고 나서야 국선보조인이 선임됨에 따라 변호인이 사실상 신체구속을 막는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126] 이는 신체구속 최소화를 위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역할에 장애요소가 되었다. 일부 아동 참여자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당시 국선보조인의 접견이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국선보조인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동 참여자 대부분 회의적이었다. 특히 변호사 자격이 없는 국선보조인의 경우, 아동의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었다.

4.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에는 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의 원칙과 ② 이송에 따른 재판지연 방지의 필요가 포함된다. 이 중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해서는 이미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3항이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가 실무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형사절차를 거치고 소년보호절차로 오게 될 경우 구치소, 교도소에 있는 기간이 소년보호사건 시설 수용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문제, 구치소에서 성인과 함께 3-4개월 구금되고 나서야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면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제도적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적 이유이다.

먼저 대한민국은 검사선의주의에 따라 검사가 이를 형사재판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하지만 그 결정이 완전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건을 심리한 소년부가 이를 다시 검찰청으로 송치할 수도 있고, 형사법원이 이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도 있다(「소년법」 제7조, 제50조). 그 결과 아동에 대한 신체적 자유의 박탈기간을 장기화시킴은 물론, 재판의

126) 이혜선, 토론문, 본 연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국회의원 금태섭・사단법인 두루(2018), 318면 참조.

지연을 야기한다.[127] 이는 근본적으로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우리 소년법 특유의 구조와 맞물려 있는 문제이다. 실제로 2017년 '19세 미만 소년에 대한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관할 소년부에 송치된 아동'은 2017년 기준 전체 2,716명 중 1,428명(단독사건 1,110명, 합의사건 318명)으로서, 약 52.6%였다.[128]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소년부로 송치된 인원도 28명이었다.[129]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에서도 경찰, 검찰, 법원의 모든 단계에서 소년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소년비행에 관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저해하는 두 번째 요인은 물적·인적 자원의 부족이다. 2018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대상 인원은 총 34,110명이었으나, 전국 가정법원·지방법원의 소년보호사건 담당 법관은 1심 총 25명이었다.[130]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법원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절차가 지연되고,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인력의 부족으로 법원에서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아,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를 아동 및 판사 대상 면접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소년사건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해당 아동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종국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기간이 오래 소요될수록 적시의 개입을 통한 소년의 탄력적 회복이 어려워지고, 그 기간 동안 범죄가 누적되어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131] 신속한 재판을 실천하는 것은 소년사법의 대상 아동 자신의 인권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재범의 예방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

127) 하지만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기소 후 송치된 아동일수록 재판절차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법원이 구금의 장기화 · 절차 지연으로 인한 불안정성의 조기 해소 등에 유념하여 우선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윤웅장(2017), 44면 참조.

128) 「2018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18, 971면.

129) 「2018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18, 929면.

130) 금태섭 의원이 법원행정처에 "소년보호사건 담당자 현황: 소년보호사건 담당 법관, 직원 현황(인원 등)"을 요청하여 송부 받은 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131)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문헌으로 윤웅장(2017), 41면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5.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에는 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② 개별 면접 및 상담조사에 따른 개별적 수요의 평가를 받을 권리, ③ 다이버전 등 다양한 대안적 조치를 제공받을 권리, ④ 처분 또는 재판 후 정기적 심사를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수사단계에서 개별처우의 원칙 실현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은 비행 아동이 소년사법제도를 최초로 접하게 되는 경찰 단계에서 개별 면접 및 상담조사에 따른 개별적 수요를 평가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점이다. 물론 비행소년에 대한 조사를 맡은 경찰관은 소년환경조사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경찰청 예규에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조사서를 작성하는 경찰관에게 아동의 개별 상황 파악 및 상담에 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고려도 없다. 아동의 개별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관이 선도조건부 훈방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형태의 다이버전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선도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132)]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결정전 조사 제도에 따라 소년부 송치 등의 결정전에 보호관찰소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을 통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가 가능하나(「소년법」 제49조의2), 그렇다고 하여 소년의 개별 사정에 맞는 적절한 처우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가능한 다이버전은 조건부 기소유예 뿐이며(「소년법」 제49조의3), 그나마도 단기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학교 및 가정과 지속적 연계가 되지 않은 단발성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의 경우 소년법 규정에 따른 조사관 제도와 전문가 진단,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통한 분류심사 제도 등을 통해 아동의 개별적 사정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으나, 법원마다 편차가 크고 현실적으로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결과 피상적인 조사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상담평가의 결과 및 의미를 알고 있는 아동은 거의 없었으며, 심사원은 '죄 지은 아이들이 재판을 기다리는 곳' 정도로 이해되고 있었다. 심리 전, 아동에 대해 보호처분 결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국선보조인은 아동을 면밀하게 살펴볼 시간과 여건이 부족하여 형식적인 운영에 치우치게 되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

132) 동일한 지적을 하고 있는 문헌으로 윤웅장(2017), 61면.

설령 법원이 아동의 개별적 수요를 정당하게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처분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보호처분은 10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이 중 병과처분이 가능한 유형도 법률에 열거되어 있다. 최근 들어 상담 및 교육명령이나 외출제한명령, 보호자특별교육 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비구금 처우의 유형은 제한적이며, 법관의 개별적인 의지와 지역사회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 등만으로는 비행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가정환경과 지역환경을 가지고 있는 아동 또는 죄질이 경미하고 교육을 통한 회복 가능성이 높은 초범 아동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어려운 현실이다. 법관이 활용할 수 있는 다이버전 역시 화해권고결정 외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법원은 처분 전 교육(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저연령, 초범의 소년들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법원에서 1-2시간 조사관이 간단한 교육을 시행한 후 선처를 함), 심리상담, 청소년참여법정(청소년참여인단이 소년에게 부과과제를 선정해 주고 소년이 부과과제를 이행하면 심리불개시결정 또는 불처분결정을 함), 전문가진단 등 법원마다 다양한 다이버전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제도화와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133]

구금처우의 유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위탁·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단기 소년원 송치·장기 소년원 송치 등으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소년원 송치기간이 법정화 되어 있어 당해 소년에게 필요한 기간 동안 소년원 송치 처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실태조사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소년사법제도의 부족한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은 아동별로 개별처우계획을 세워 적절한 교육과 치료·교화조치가 제공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라 할 것이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소년원 종사자는 아동보호를 위한 인력부족을 호소하였다. 부족한 인력은 아동 대상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시설 내 아동의 의료조치, 교육환경 및 사생활 보호 문제 등과 직결되었다.

소년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최근의 법 개정으로 조사관에게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위촉하는 것이 가능해지기는 하였으나, 책임주의 원칙의 제한을 받는 형사재판에서는 아동의 개별적 수요에 부합하는 재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134]

---

133) 신한미, 토론문, 본 연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 국회의원 금태섭 · 사단법인 두루(2018), 307-308면 참조.

134)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문헌으로 현소혜(2016), 232-234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물론 현행 소년법은 소년비행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소년법」 제60조), 형사재판에서 종국적인 판결은 유·무죄 판단 및 형법에 따른 형벌의 부과로 종결될 수밖에 없으며, 다이버전 그밖에 아동의 개별적 수요에 맞는 판결의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볼 때 현행법이 택하고 있는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분리 정책은 근본적으로 소년형사사건에서는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의 침해를, 소년보호사건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를 수반하는 문제점[135]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다.

처분이나 재판 후 아동의 성행 교정 또는 환경 조정에 따라 그 처분이나 재판이 변경될 가능성이 현저히 제약되어 있는 것도 우리 소년사법제도의 한계 중 하나이다. 소년사법제도의 이념이 회복과 사회복귀에 있는 이상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보호처분의 유형이나 기간 등을 조정하는 조치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보호처분에 대해 위탁받은 자 또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 변경을 허용하고 있을 뿐(「소년법」 제37조), 아동에게 처분 변경을 위해 적법절차에 따라 정기적 심사를 받을 권리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형사재판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을 뿐이다(「소년법」 제60조). 이는 소년의 지위를 처분 또는 형벌의 집행자의 권위에 종속시키고, 신체를 구속당해 취약한 상태에 있는 아동의 인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는바, 정기적 심사를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36] 관련하여, 소년원 송치 중 임시퇴원이 아닌 '조기퇴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소년원 종사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임시퇴원 중 보호관찰 위반을 이유로 다시 소년원에 송치되는데, 이는 오히려 아동의 회복가능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임시퇴원을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해당 아동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사회정착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반복될 수 있는 실수 또는 문제행위를 감시하는 기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보호관찰 처분은 개별처우에 대한 권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단계였다. 보

135) 소년보호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문헌으로 이승현(2017a), 134-135면 참조.

136) 같은 취지로 현소혜(2016), 249면.

호관찰은 소년재범위험성평가에 바탕하여 방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였다. 보호관찰은 아동과 보호관찰관의 상호신뢰관계(라포) 형성을 전제로 진행됨에 따라, 아동 개인의 의사가 가능한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특히 아동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다만, 이때에도 보호관찰관 1인이 120여명의 아동을 담당하는데 인력부족으로 인한 현실적인 한계는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처럼 소년에 대한 개별처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행 법·제도하에서 우범소년이나 촉법소년에 대해서까지 경찰서장이나 시설장 통고에 의해 보호처분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범소년이나 촉법소년의 특수한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낙인의 효과만을 공고히 하여, 회복과 사회복귀를 오히려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6.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에는 ① 수사·조사·심리 등 절차의 비공개 원칙, ② 형사기록 보존의 최소화, ③ 언론보도에 따른 낙인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198조 및 「소년법」 제49조의2 등), 특히 언론보도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소년업무규칙」 제22조). 소년보호사건에서도 심리와 처분이 공개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관계인들은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소년의 인적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소년법」 제24조, 제68조 및 「소년심판규칙」 제10조 등).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소년법」 제57조). 또한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137] 소년형사사건으로 처리된 경우에도 당해 사건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내지 결정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성년에 비해 확연히 짧다(「형의 실효 등에

137) 이에서 더 나아가 소년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사자료표의 작성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년부 송치 후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견해로 이영근, "한국 소년사법제도의 발전방안",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4호(2015), 21-22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관한 법률」 제8조의2).

하지만 형사재판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형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며,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비행소년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역시 비일비재하게 등장하고 있다.[138] 같은 행위를 성인이 했더라면 보도되지 않았을 사건이 소년이라는 이유로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 소년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의심을 받는 사례, 소년원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진 이후 사람들의 편견을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는 사례 등이 실태조사에서 확인되었다.

7.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에는 ① 자유박탈조치의 보충성과 최소성, ② 자유가 박탈된 아동의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③ 자유가 박탈된 아동을 위한 특별한 보호의 제공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 중 우리의 소년사법제도가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는 거의 없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아동의 구금이 최후의 수단으로만, 최소한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물론 각종의 법규는 구속의 보충성을 선언하고 있으나(「소년법」 제55조 제1항,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2조 등),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비행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며,[139] 그 기간도 지나치게 긴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간의 송치로 인한 것도 있지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일종의 충격구금이나 거주시설을 제공하는 방편으로 활용하는 실무 관행과도 관련이 있다. 특히 아동양육시설장의 통고로 인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고 있었다. 그러나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법제 하에서는 수사기관과 법관이 사용할 수 있는 다이버전과 비구금처우의 유형이 매우 한정적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관이 개별처우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구금처우에 의존할 위험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소년심판규칙은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

138) 이러한 우려에 입각하여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사건보도 금지 또는 댓글 금지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 문헌으로 이은영, "소년사법제도의 엄벌화 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정복지연구 제42권(2016), 49-53면 참조.

139) 현소혜(2016), 246-248면.

다는 이유만으로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실무의 관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어, 영장실질심사나 체포구속적부심사 등 인신의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겹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형사수사절차보다도 오히려 자유박탈조치가 남용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140]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처분에 대해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141] 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년원 송치 기간을 법정화해 놓은 현행 규정 역시 자유박탈조치의 보충성과 최소성을 실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

구금처우에 의해 자유가 박탈된 아동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소년원에서 징계의 하나로 독방처우가 존재하고, 징계 중 부모님을 만날 권리가 제한되기도 하며, CCTV로 일상생활 대부분이 즉각적으로 감시되었다. 최근 일부 소년원에서 화장실, 샤워실의 CCTV는 철거했다는 점을 아동과 종사자 면접조사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사생활 보호보다 관리 및 통제가 우선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소년원뿐만 아니라 청소년회복지원센터 등 1호 감호위탁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수탁되는 6호 시설들도 CCTV 설치 및 외출·면회·서신 제한 등 사실상의 자유박탈 시설로 운영되는 현실이다.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이원화된 현행 소년사법제도가 구금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문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경찰조사 당시 유치장을 포함하여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 구치소에 구금될 수 있으며,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금 및 위탁 기간들은 6호 처분과 소년원 처분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실태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을 위해 국제규범이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법정화하고 있지 않은 우리 소년법과 보호소년법 기타 관련 규정들의 한계에 기인한 바 크다. 아동의 사생활 보호·실외운동과 다양한 교육기회의 보장·건강검진과 적절한 의료적 조치·징계·수용시설에서의 무기소지 등에 관한 규정이 극히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선행연구가 존재하므로 규정상의 문제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복하지 않는다.[142]

---

140) 같은 취지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요건 중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부분은 지나치게 추상적임을 지적하고 있는 문헌으로 이승현(2017a), 132면 참조.

141) 같은 취지로 이승현(2017a), 132-133면 참조.

142) 현소혜(2016), 236-240면; 홍관표,(2017), 246-264면 참조.

신체구속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미결구금 아동이 성인과 함께 수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래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 성인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수용하는 것이 원칙이고(「소년법」 제55조 제2항), 이는 소년사법과 관련된 거의 모든 국제규범이 일치하여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다. 성인과 함께 구금되는 경우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아동기의 특성상 범죄오염의 가능성이 높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성인에 의한 인권 침해의 위험도 크다. 즉, 회복과 사회복귀라는 소년사법의 이념 달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집행법」 제11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의 경우 연령 구분 없이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실제로 유치장에서 성인과 함께 있었다는 아동 참여자도 있었으며, 구치소는 소년수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관리를 목적으로 소위 '모범수'가 아동과 한 방에서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분리수용 취지에 반하는 실태도 확인할 수 있었다.

8. 모니터링과 진정에 관한 권리

모니터링과 진정에 관한 권리에는 ① 정기적 모니터링과 신뢰성의 제고, ② 진정제도의 마련과 아동의 접근 가능성 제고가 포함된다.

소년사법 관련 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은 규범 자체에 공백이 많았다. 1호, 6호 및 7호 감호위탁 시설은 법원 직권 집행감독(「소년심판규칙」 제34조)이 가능한 경우로서 최소한 판사의 외부 모니터링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리감독은 동일한 기준 없이 각 개별법원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 항목에 아동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문항은 없다는 점을 종사자 면접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은 처우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만 가능한데(「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8조), 현재 처우심사위원회를 모니터링하는 단위가 없으며, 처우심사위원도 소년원 내부 인력으로만 구성되어 사실상 모니터링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진정 제도에 대한 아동의 접근 가능성은 특히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소년교도소의 경우에는 성년자와 마찬가지로 청원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이 완비되어 있는 반면, 소년원의 경우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규정이 있을 뿐이다(「보호소년법」 제

11조). 소년원은 아동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와 방법을 형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그치거나 청원함 등의 마련도 요식적인 행위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소년원장에게 청원서를 폐기할 권한도 있다(「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8조).[143] 6호 시설 및 소년원을 포함한 구금 보호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진정함'을 설치해야 하고(「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과 제출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 단지 진정함 설치에 그칠 뿐이다. 예컨대, 6호 시설에 감호위탁된 아동 참여자는 "40-50여명의 아동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아무도 모르게 진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면접조사에 참여한 아동이 송치되었던 소년원 모두 "진정에 필요한 종이는 소년원 종사자에게 직접 요청하여야 하기에, 비밀이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때에도 진정절차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음을 아동 및 종사자 면접조사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진정에 대한 충분한 권리행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악용사례'는 진정제도 자체의 문제로 보기는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의 인권보장이 인권존중의 경험으로 학습되고, 그것이 곧 종사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아동이 소년사법제도 내에서 자신의 처우를 확인하고 능동적인 권리주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9.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관계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에는 ① 다학제적 접근 채택의 필요성, ②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에 의한 제도 운영, ③ 전문가 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의 제공이 포함된다. 하지만 현재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는 아동 전문가에 의한 수사가 담보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 전담 경찰이나 담당검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동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전담 수사인력이 아닌 담당자에게 배당되기 때문이다. 물론 경찰 수사시에는 경찰청 예규에 따라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검사는 결정전 조사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으나, 임의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수사조직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는 전담법관제도 및 조사관 제도 등을 통해 상당한 전문성이 확보

143) 같은 취지로 홍관표(2017), 262-263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되어 있는 상황이나,[144] 소년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형사재판부에 임의배당되므로, 이때에도 역시 심리과정에서 소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 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것은 모든 직역에 두루 나타나는 문제이다.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판사, 국선보조인, 소년원 및 보호관찰 종사자 모두 아동의 발달과 권리와 같이 아동에 특화된 아동인권교육을 체계적, 정기적,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아동인권교육에 대한 공통된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주고, 실수를 인정하는 종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면접조사 참여아동의 응답에 비추어 볼 때, 아동 및 아동권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소년사법이 그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10. 사회복귀의 지원

본 연구의 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소년사법제도에서 사회복귀를 지원받을 아동의 권리는 모든 종사자에게 주요한 항목으로 언급되었으며, 이에 대한 아동 당사자의 욕구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소년사법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며,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짚어두는 범위에서 실태조사에 드러난 나타난 사회복귀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밝힌다.

즉, “아동은 변화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소년의 사회복귀와 재사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소년사법제도는 아동 개인의 의지와 변화만으로 가능할 수 없다. 종사자들이 대상 아동에 대한 분절된 지원체계를 가장 큰 문제로 제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아동에게 생각할 계기를 마련해준다면, 자기반성과 변화를 조력하고 촉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체계가 맞물려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호 시설 또는 소년원에서의 제한적인 학업기회 및 체험 수준에 그치는 단기직업훈련교육은 충분할 수 없으며, 사회 내에서 활용가능한 지원이 계속적으로 뒷받침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활용가능한 자원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만 되어도” 보

144) 다만, 이승현(2017a), 122면은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 자체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로 혼재되어 있고, 가사사건이 전체 사건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소년부 판사 자체가 순환보직이라는 점을 들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호관찰관의 업무지원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동일한 국선보조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한편,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것을 이유로 하는 낙인도 아동의 사회복귀에 장애가 되었다.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이 아동의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소년사법제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은 물론,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한 시점이다. 실수에 대한 인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아동기에 대한 이해는 소년사법제도가 적용되는 아동이라고 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Ⅵ.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방안

1. 소년사법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연구 목적에서 밝힌 것처럼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폭화, 높은 재범률이 문제로 지적되며 최근 일각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사형과 무기징역 선고를 제한하는 소년법 규정의 폐지, 처벌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고, 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 역시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보다는 응보와 강력한 처벌을 옹호하는 여론이 점차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11년 최종견해에서 대한민국에 "비행아동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원인을 다루기보다 징계조치를 늘리는 식으로 아동 범죄대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는 언급을 한 것처럼, 소년범죄의 비행률, 재범률 증가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지 않고 소년사법의 대상 아동을 비난과 낙인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엄벌주의를 내세우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145] 오히려 재범률 등의 증가는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이라는 소년사법의 목적과 국제기준에 합치되지 않은 제도 운영의 현실을 반증한다. 국내 소년사법제도가 국제인권규범에 완전히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소년사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145) 같은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문헌으로 박호현/김종호(2018), 1-26면; 이은영(2016), 25-55면; 정희철, "소년사법 개선 및 소년법 개정 논의의 쟁점과 평가", 보호관찰 제17권 제2호(2017), 76-106면 참조. 이와 반대되는 시각으로 박광현, "소년사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경상대학교) 제24권4호(2016), 97-115면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본 연구에서는 국제인권규범이 제시하고 있는 소년사법의 이상적 모델로부터 아동의 10대 인권 유형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수사 단계・소년보호사건에서의 조사 및 심리 단계・소년형사사건에서의 조사 및 심리 단계・재판 단계에서 각 유형의 인권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고 있으며, 어느 영역이 특히 취약한지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아동 대상의 심층면접과 관계 종사자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해 문제의식을 보충, 심화할 수 있었다.

우리의 소년사법제도를 국제적 인권 규범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각 절차단계별로 살펴보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형사절차단계별 개선방안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규범에 비추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형사절차 단계에 따라 검토해본다.

가. 수사 또는 조사단계

(1) 수사 대상이 된 아동 피의자에 대한 필요적 국선변호, 국선보조

기소되기 전 단계 또는 소년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체포・구속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만 필수적 국선변호 내지 필수적 국선보조인제도가 적용되나 체포, 구속되지 않은 아동 피의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적 조력의 제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146] 처음 범죄용의자로 특정된 시점부터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경찰・검찰・법원 등 모든 형사사법절차에서 필수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비추어 보아도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친화적 소년사법을 구현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필수적 국선변호인은 단순한 법률적 조력을 넘어 아동의 알 권리(자신에게 내려지는 각종 처분의 의미)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

146) 류병관(2015); 현소혜(2016), 234-236면; 홍관표(2017), 238-239면.

(2)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보장

수사단계에서 부모 등 보호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도를 이용하여 수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보호자에게 이 제도를 사전에 알리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취지는 아니다.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 결과 수사시 아동이 원하지 않으면 구체적 사정 고려 없이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이상 아동의 조사, 수사시 부모 기타 보호자의 동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는 단지 아동의 의사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아동의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는 주체, 기준, 부모의 참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할 경우 보호자 역할을 해줄 사람을 선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세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147]

(3) 전문적 조사제도 실질화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실현과 관련하여 아동이 소년사법제도를 최초로 접하게 되는 경찰 단계에서 대상 아동이 개별 면접 및 상담조사에 따른 개별적 수요 평가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초기단계에 첫 번째 조사가 충실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초기 전문조사에 기초한 적시 상담 및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조사라는 이유로 동일한 내용의 조사가 절차나 단계별로 반복되는 것은 오히려 아동에게 해악이 될 수 있다.[148] 경찰의 소년환경조사, 검찰의 결정전 조사제도의 실질화를 위해 조사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경찰 단계에서 아동의 개별적 사정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149]

---

147) 특히 홍관표(2017), 237면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동행영장이 집행되는 경우에 법률상의 보호자와 사실상의 보호자가 다른 때에는 양자 모두에게 동행영장 집행을 통지할 것과 양자가 모두 사건 본인의 방어권 행사에 소극적인 경우에 대비하여 보호자 외의 자 중에서 사건 본인이 통지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할 것, 그리고 통지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48) 중복조사나 중복 개입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문헌으로 윤웅장(2017), 63-65면도 참조.

149) 같은 취지로 신한미, 토론문, 본 연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국회의원 금태섭・사단법인 두루(2018), 306면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4) 선도조건부 훈방 조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현재 실무상 활용되고 있는 경찰의 선도조건부 훈방 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150] 다이버전의 일종으로 경찰 훈방을 인정하고자 한다면 법률에서 그 요건과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선도 프로그램 및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찰의 전문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151]

나. 재판단계

(1) 필요적 보조사건의 범위 확대 및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현행 소년법상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모든 아동이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는 없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이 아닌 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거나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법원이 임의적으로 국선보조인을 선정해 줄 수 있을 뿐이다(「소년법」 제17조의2). 필요적 보조사건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소년보호사건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152] 현행 국선보조인제도는 보조인을 변호사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조력하는 비변호사 국선보조인의 강점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현행 국선보조인 제도 자체가 변호인 조력권과 충돌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다만, 비변호사 보조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법률적 한계(예컨대, 소년보호사건에서 무죄를 다투는 아동에게 비변호사 국선보조인이 선정되었을 때),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최근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은 모든 형사사법절차에서 필수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150) 박광현, "소년사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경상대학교) 제24권4호(2016), 106, 108면; 윤웅장(2017), 61면; 이영근(2015), 20-21면도 같은 취지이다. 이영근(2015), 13면은 이에서 더 나아가 경찰조사 단계에서 화해권고 형태의 다이버전 제도를, 박광현(2016), 108-109면은 소년형사재판 단계에서 화해권고 형태의 다이버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1) 그 밖에 선도조건부 형태의 다이버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선도조건부 소년부송치 유예제도로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로 윤웅장(2017), 52-56면 참조.

152) 같은 취지로 신한미, 토론문, 본 연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국회의원 금태섭・사단법인 두루(2018), 302-303면 참조.

점, 비변호사 보조인 제도 도입이 아동에 대한 이해가 깊은 변호사 수의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률적 측면에서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고 이익을 옹호하는 국선보조인 역할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가급적 변호사 국선보조인의 선정이 확대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 전문 변호사의 양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2) 신속한 국선보조인의 선정, 수사 재판기록의 열람, 등사범위 확대

국선보조인이 사건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선정시점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 각 법원마다 국선보조인 선정시점이 일관되지 않는데, 짧게는 1주일 전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기록의 열람, 등사 범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소년법」 제30조의2는 심리개시결정 전에는 보조인이라도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고, 심리결정 후라도 등사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실제로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한 기록의 범위는 극히 한정적이다. 종사자 면접조사에 따르면, 국선보조인이 등사할 수 있는 기록은 피의자신문조서 정도에 불과했고 판사가 허가하지 않으면 조력에 필요한 필수적 자료인 수사보고서, 소년분류심사원 보고서도 열람・등사할 수 없어 사실관계나 주변환경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동을 조력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되도록 수사・재판기록의 열람, 등사범위가 현재 관행보다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3) 임시조치 결정의 요건 마련 및 이의제기권 보장

구금의 최후수단, 보충성과 관련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임시조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임시조치의 요건(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특히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아동의 경우가 문제다. 수사 또는 형사재판 단계의 인신구속과 관련된 요건과 미결수용자 처우 규정이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는 점과 대비된다. 더구나 현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비율이 매우 높고, 기간도 장기가 많다.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아동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 특히 통고로 소년보호사건 심리를 받게 된 경우 예외 없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 구금처우에 의존할 위험과 일종의 충격구금으로 남용될 위험성을 고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려할 때,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할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소년법 규정은 개정이 필요하며, 허용 여부에 관한 별도의 가중된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아동 측에서 그 결정의 취소나 변경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을 법에 명시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다.[153]

(4) 소년보호사건 결정서 이유 기재 개선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판사가 결정을 할 때 주문 이외에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소년심판규칙」 제2조 제2항). 실무상 거의 모든 결정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아동의 정보 접근 및 알 권리 뿐만 아니라 적정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는 제외하는 방법으로) 결정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는 법관의 역량강화 및 인력 충원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154]

(5) 보호처분의 다양화

소년법이 정하는 10가지 보호처분을 다양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기관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의 재범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과 같이 현행 보호처분의 한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다. 보호처분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영국의 ‘강화된 가정위탁(intensive fostering)’과 같이 법원이 아동에게 사회복귀명령을 하면서 가정위탁프로그램(최소 6개월 이상 다면적 치료위탁 양육프로그램의 구조적・집중적 실시)을 병과하는 프로그램은 고려할 만하다.[155]

(6) 회복적 사법 실천을 위한 다이버전(대안적 처분)의 제도화

형벌을 대체할 다양한 대안적 처분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아동이 지역사회 구성

---

153) 같은 취지로 이승현(2017a), 133면 참조.

154) 신한미, 토론문, 본 연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국회의원 금태섭・사단법인 두루(2018), 300-301면 참조.

155) 그 밖에 보호처분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문헌으로 이영근(2015), 15-20면; 정희철(2017), 97-98면 참조.

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아동의 반성과 회복을 위한 변화과정이 상대방의 피해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 즉, 다이버전(대안적 처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원과 기존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체계와 긴밀한 연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재판단계의 다이버전(대안적 처분)은 화해권고, 청소년참여법정, 보호처분 전 교육명령, 심리상담조사, 대전가정법원 '길 위 학교'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판사 개인의 의지와 역량에 의존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법원과 법무부 차원에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아동의 개별적 특성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그 적용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국외사례에서 제시한 벨기에의 '서면 제안에 따른 처분'은 도입 가능한 예로 고려할 수 있다. 판사는 아동에게 스스로 활동계획을 제안할 기회를 주고, 아동이 서면으로 제안한 활동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7) 소년보호재판의 관할 개선

현재 소년보호재판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담당하고 있다(「소년법」 제3조 제2항).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법원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넓은 지역을 관할하다보니 재판을 받기 위해 아동이 3시간 가까이 이동해야 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는 조속히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법원 지원 및 시・군법원에서도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156]

156) 같은 취지로 윤웅장, 토론문, 본 연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국회의원 금태섭・사단법인 두루(2018), 331-332면에서는 소년보호사건의 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은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주된 것이므로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 지원과 시・군법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할 경우 전국 거의 모든 지방법원과 지원 소재지에 설치된 57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해 신속한 재판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다. 집행단계

(1)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원의 지역별 확대설치, 과밀화 해소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시설 대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화 현상으로 개별처우와 인도적, 인격적 존중을 통한 사회복귀가 쉽지 않다.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역시 형해화되고 있다.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는 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보장할 수 없다.[157] 1인 1실을 원칙으로 소규모 시설로 재편하고, 설치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 분역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정되어야 한다.

(2) 소년분류심사원의 증설 및 독립적 운영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현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제외하고는 소년원이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년분류심사 업무의 독립적 운영이 필요하다.[158] 소년원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업무를 분리해 소년분류심사원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3) 수용 아동의 면회, 서신 교류의 실질적 보장

「보호소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회 등을 제한할 수 있어 매우 폭넓은 기준에 따라 면회나 서신 교류가 사실상 허가사항으로 규율되고 있다. 면회시에도 소속 공무원이 언제나 참석하여 지도할 수 있고, 면회를 중지할 수도 있다. 면회와 서신 교류는 외부와의 기본적 소통수단이므로, 형집행법에서 보장하는 수준에 준하여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징계의 일환으로 면회, 서신왕래, 전화통화 등을 제한하는 관행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159] 또한 소년원에 수용된 아동이 가족과 면회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참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보호소년에 대한 서신검열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 있음이 확인되었는바, 검열의 근거사유

---

157) 같은 취지로 김경태(2017), 172면; 이영근(2015), 5면; 현소혜(2016), 241-242면.
158) 같은 취지로 이승현(2017a), 136-140면; 이영근(2015), 7면; 현소혜(2016), 241-242면.
159) 같은 취지로 현소혜(2016), 244면. 외부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년사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문헌으로 이영근(2015), 22-23면 참조.

인 '보호소년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 지나치게 남용될 수 있는 서신의 내용검열을 제한해야 한다.

(4) 처분변경을 위한 정기적 심사를 받을 권리 보장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자신에 대한 결정에 관해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기회를 보장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였다.[160] 그러나 현행법은 보호처분에 대해 위탁받은 자 또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 변경을 허용하고 있을 뿐(「소년법」 제37조), 아동에게 처분 변경을 위해 적법절차에 따라 정기적 심사를 받을 권리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처분 이후 아동의 성행 교정 또는 환경 조정에 따라 그 처분이나 재판이 변경될 가능성이 현저히 제약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소년사법제도의 이념이 회복과 사회복귀에 있는 이상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보호처분의 유형이나 기간 등을 조정하는 조치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의 처분변경을 위한 심사 신청권과 정기적인 심사의무를 소년법에 명문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161] 현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7호 처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법원의 집행감독 조사를 확대해, 모든 사건에 대해 정기적・수시적으로 조사관이 아동의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아동의 정기적 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162]

(5) CCTV 등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관리방식의 개선

과밀수용과 소년원 종사자들의 인력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CCTV 등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관리 및 계호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사고발생의 우려, 관리・감독 문제는 소년원이 1인 1실을 마련해 각 생활실에 화장실과 샤워실을 개별적으로 구비하거나 1명씩 개별 이용이 가능하도록 화장실과 샤워실 구조를 리모델링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인 고려에 따라 당장 CCTV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화장실, 목욕탕과 같은 내밀한 장소까지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할 수 있도록 한

160) CRC/C/KOR/CO/3-4, para.81.d)

161) 같은 취지로 현소혜, (2016), 249면.

162) 신한미, 토론문, 본 연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국회의원 금태섭・사단법인 두루(2018), 308면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보호소년법」에 따르면, 자해의 우려가 큰 때에만 목욕탕, 화장실에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감호는 동성의 소속공무원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보호소년법」 제14조의3), 하위 법령 및 훈령이 법의 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163] 실태조사 결과 일부 소년원의 CCTV는 음성형으로 설치장소에 큰 소리가 나면 이를 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설치된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CCTV의 녹음기능을 금지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CCTV 설치에 관한 정보는 아동 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성별이 다른 종사자가 CCTV를 통해 상시 감시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고, 영상정보의 수집, 보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외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6) 진정제도에 관한 아동 접근가능성 확대

성년자와 마찬가지로 청원에 관한 권리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게 완비되어 있는 소년교도소와 달리 소년원의 경우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라는 추상적인 규정이 있고(「보호소년법」 제11조), 보호소년 처우지침은 청원 대상을 소년원장이 제한하면서 일정한 경우 청원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함 또는 형식적인 설치에 그치는 현실이었다. 진정제도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 및 구체화가 필요하다.[164]

(7) 미결구금시 성년자와의 분리구금

아동의 신체구속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이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 성년자와 분리수용하는 것이 원칙이고(「소년법」 제55조 제2항), 이는 소년사법과 관련된 거의 모든 국제규범이 일치하여 강조하는 사항이다. 성년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 범죄오염의 가능성이나 성년자에 의한 인권 침해의 위험이 매우 높아 회복과 사회복귀라는 이념을 달성하는 것이

163) 같은 취지로 홍관표(2017), 256-258면.
164) 같은 취지로 이영근(2015), 25면; 현소혜(2016), 245-246면; 홍관표(2017), 262-263면 참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집행법 제11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의 경우 연령 구분 없이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치소에서 성인과 함께 3-4개월 동안 함께 수용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구치소뿐만 아니라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에서의 성인과 혼거수용 문제 또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8) 소년분류심사원, 6호 처분시설, 소년원의 개방적 운영

소년분류심사원과 6호 처분시설 및 소년원이 '조사와 교육'이라는 주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아동들이 개방형(출·퇴근 방식)으로 상담 및 조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 면접조사를 통해 소년분류심사원과 6호 처분시설의 개방적 운영가능성을 적극 고려하자는 점이 제안되었다. 소년에 대한 조사와 교육은 반드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신병 확보는 관련 시설을 소규모화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해결될 수 있다.

(9) 소년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임상심리 전문인력 충원

종사자 면접조사를 통해 소년원에 상근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게는 수용된 아동의 50% 가까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년원에 오는 아동은 방임 등 학대, 폭력 등의 경험으로 인해 충동장애 등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비율이 높을 수 있다. 다만 청소년기의 특성에 따른 감정의 기복, 과잉행동까지 모두 정신과적 문제로 치부되어 과도하게 정신과적 약물이 남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효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진행되고 있는 지 정신과적 치료의 적절성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소년원에 추가 배치된 임상심리사가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면접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임상심리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상담의 질을 높이는 것도 과도한 정신과적 치료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 구치소 수용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에 따라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된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이 반영된 규정이다.[165] 즉, 소년형사사건에 따른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보아 집행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소년법」 제61조)은 그 실질이 자유박탈에 해당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의 성격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아동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가 법원이 「소년법」 제50조에 의해 소년부로 송치하여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경우, 미결구금일수는 소년원에의 수용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아동이 소년보호사건에 따른 6호 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호처분의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박탈 조치에 해당함에도 역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이 보호처분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자유박탈의 최소화를 천명한 국제인권규범의 지향점을 고려할 때,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불문하고 유치장, 구치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모두를 포함하는 수용처분 기간은 보호처분 또는 형 집행기간에 산입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수용시설로 기능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운영의 변화, 시설 수용 처분 외 다양한 대안적 처분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11) 신체구속과 무력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대안적 조치 활용

시설 수용 처분에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없이 종사자의 임의적 판단에 기초한 신체구속 및 무력을 사용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소년사법제도는 통제와 관리라는 관점을 넘어 아동의 자존감 증진과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즉, 소년사법제도 전반에서 누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무력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징계조치 과정에서 해당 소년의 의견진술 및 의견청취권을 보장하며, 대안적 조치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곧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기여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소년사법제도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165)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참조.

라. 형사절차 단계 전반

(1) 소년전문법원의 설립

실태조사를 통해 구치소에서 3-4개월 성인들과 함께 구금되어 형사재판을 받다가 결국 소년부로 송치되면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구치소에 이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원에 송치되는 동안 자유박탈 기간도 장기화되었다. 조건부 기소유예가 취소되어 소년부로 송치되는 사건의 경우, 특히 절차지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66]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제도의 영향이다.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기까지 경찰단계에서 사랑의 교실 등을 통해 훈방되거나 검찰단계에서는 선도 교육, 법원단계에서 조사, 보호처분 등 중복된 서비스가 과하게 부과되면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종사자들은 소년사법 영역은 별도의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소년사법체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소년전문법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2011년 제3・4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전문법원의 설립을 권고 받았다. 나아가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절차를 통합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167]

(2) 형사절차 단계별 소년사법 전담 인력의 확보

실태조사 결과 종사자들은 소년사법 종사자에 대해 역량의 편차, 전문성의 부족을 공통으로 지적하면서 소년사법 영역은 아동 및 소년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전담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검사, 판사는 오직 소년사건만을 전담하고 있지 않다. 특히 소년사건에서 상당한 권한과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법원의 경우 순환보직에서 자유롭게 소년보호사건만을 전담하는 판사 및 가사조사관 인력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훈련에

166) 신한미, 토론문, 본 연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국회의원 금태섭・사단법인 두루(2018), 305면 참조.

167) 사회복귀 이념이라는 측면에서 절차 통합을 주장하는 견해로 현소혜(2016), 229-230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절차 통합을 주장하는 견해로 이승현(2017a), 131면; 이영근(2015), 13-14면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168]

(3) 종사자 아동인권교육・훈련 실시, 아동권리 교육체계 마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도화되고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전문가 대상 아동인권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제10호는 소년사법 집행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소년사법 관련 모든 전문가, 특히 법집행과 사법부의 전문가 집단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 전반의 내용과 의미에 관해 교육을 받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베이징규칙은 소년사건을 취급하는 모든 종사자는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한다. 아동인권교육과 훈련을 정기화, 의무화하고, 관련 전문가 확보와 교육매뉴얼 마련, 관련 교육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법원을 매개로 한 종사자 간 교류와 협력 제도화

소년사법절차에는 각기 다른 단계에서 여러 종사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에게 개입한다. 예를 들면, 경찰에서의 선도프로그램, 검사의 결정전 조사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법원 조사관의 조사, 소년분류심사원의 심사, 상담조사, 보호관찰소의 결정 전 조사, 법원의 재판, 수강명령, 보호관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위탁보호위원, 6호 처분시설, 소년원 등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종사자 간 교류의 기회가 거의 없을 뿐더러 각 단계에서의 프로그램이나 조사, 교육 내용이 종사자 간 서로 공유되지 않는 점을 알 수 있었다.[169] 종사자 간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하며, 이때 소년사법절차에 관한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을 직접 결정하고, 보호처분 이후 단계까지 개입할 수 있는 법원이 컨트럴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례회의를 상설화하고 소년보호협의회를 실질화하는 등 종사자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170]

---

168) 이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문헌으로 이승현(2017a), 130-131면 참조.
169) 같은 취지로 이승현, 토론문, 본 연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국회의원 금태섭・사단법인 두루(2018), 345면 참조.
170) 같은 취지로 이혜선, 토론문, 본 연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국회의원 금태섭・사단법인 두루(2018), 319-320면 참조.

3. 관련 법 정비방향

소년사법제도의 단계별 개선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법 개정 또는 근거조문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로 「소년법」과 「보호소년법」에 해당한다.

가. 초기 단계 아동에 대한 법적 조력 보장 및 확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여부와 무관하게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된 모든 아동에 대해 국선보조인 선임제도를 도입하려면 「소년법」 제17조의2에 규정된 필요적 국선보조사건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되기 전에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 국선변호인 또는 보조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소년법」 또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조치 요건 마련 및 이의제기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 결정 허용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부가하려면 「소년법」 제18조 등에 근거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 측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소년법 제18조 제6항 등에 적절히 명시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일반논평 제10호는 아동의 자유박탈 조치는 법에 따라 오직 마지막 수단으로서 적절한 최단기간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미결구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b항의 심각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사실상 구금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미결구금이 필요하다면 영장실질심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아동의 처우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분리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해 비행·범죄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보호처분 결정을 받기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된 아동과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과 처우가 필요하다. 소년분류심사원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소년원과 같은 법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률로 규율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접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을 하나의 법으로 같이 규율하고 있는 「보호소년법」을 개정하여, 각각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예산 등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라.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징계결정을 위한 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징계, 퇴원과 같이 아동의 중요한 처우를 결정하는 처우심사위원회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보호소년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종사자 면접조사를 통해 현재 처우심사위원회를 모니터링하는 단위가 없으며 소년원 내부 인력으로만 주로 구성되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처우심사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위원을 일정 수 이상 의무적으로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정기적인 외부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 징계로서 독방처우의 금지

징계로서 독방 처우를 금지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171] 하바나규칙은 독거구금 등 소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징계조치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종사자와 아동 면접조사를 통해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에서 징계, 처벌의 일환으로 독방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아동 면접조사에서는 독방처우와 관련해서, 독방에 있는 동안 독서와 반성문 작성 외에 운동을 포함한 일체의 활동이 금지되고 면회나 편지도 받아 볼 수 없었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종사자 설문조사에서 소년원 종사자는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할 원칙 14가지 항목 가운데 '독방처분 등의 징계절차'가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바. 처분변경을 위한 정기적 심사를 받을 권리 보장

현행법은 보호처분에 대해 위탁받은 자 또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 변경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소년법」 제37조). 아동에게 처분 변경을 위해 적법절차에 따라 정기적 심사를 받을 권리 자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소년법」 제37

171) 같은 취지로 현소혜(2016), 244면; 홍관표(2017), 254-255, 258-261면 참조.

조의 수정 또는 심사신청권, 정기적 심사의무를 반영한 조문이 신설되어야 한다.

사. 수용 아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 기타 기본적 사항에 대한 고지 규정 마련(알 권리 보장)

실태조사를 통해 소년원 규칙, 면회 및 서신 등 외부와 소통할 권리, CCTV의 필요성 및 위치 등을 아동에게 안내하는 공식적인 절차는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하바나규칙이 요구하는 것과 같이, 소년원에 입소하는 아동에게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접견・서신 등 수용자의 권리, 진정 등 권리구제, 징계·규율 등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의 고지에 대한 근거 조문을 「보호소년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172] 신입자와 다른 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형기, 접견・서신, 청원과 진정, 징벌・규율 등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형집행법」 제17조를 참고할 수 있다.[173]

아. 실외운동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 입소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 있는 소년들에게 실외운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바나규칙은 모든 소년은 기후가 허용하는 한 매일 밖에서 적절한 시간 동안 자유로운 운동을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는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을 매일 1시간 이내 원칙으로 보장해야 하고, 심지어 소년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동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형집행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6 및 제46조). 반면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아동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훈령에 “휴일에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40조

---

172) 이승현, 토론문, 본 연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국회의원 금태섭・사단법인 두루(2018), 344-345면에서는 소년사법단계별로 알 권리 제공에 대한 공백이 생기는 부분을 긴급 진단하고 고지의무를 지침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절차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어권 행사에 관한 규정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73) 같은 취지로 홍관표(2017), 246-247면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참조).[174] 교도소에 수용된 아동보다 소년원에 수용된 아동의 처우가 더욱 열악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175] 종사자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판사의 경우 92.3%가 14세가 되지 아니한 아동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규정은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 '촉법소년' 규정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든 종사자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실태조사에서 종사자들은 소년사법의 문제는 연령이나 처벌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과 회복가능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년범죄 중 14세 미만 비율은 0.1%에 불과하며 14세 이하 저연령 소년범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2012년 12.9%에서 2016년 10%로 감소).[176]

차. 우범소년 규정 삭제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재판을 받는 우범소년 규정(「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177]을 삭제해야 한다.[178] 실태조사 결

---

174) 같은 취지로 홍관표(2017), 251-252면 참조.

175) 최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7년 채택한 일반논평 제10호를 수정하는 일반논평 제24호를 준비하고 있다. 이 일반논평 초안에서는 형사책임의 최저연령을 기존 12세에서 14세로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문은 https://www.ohchr.org/Documents/HRBodies/CRC/GC24/GeneralComment24.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종방문: 2018. 11. 27.).

176) 박준휘 외 30명/이승현 집필부분,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8), 103-128면.

177)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과, 우범소년으로 통고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소년원 처분을 받은 사례가 여럿 확인되었다. 리야드 가이드라인은 소년에 대하여 '일탈'(deviant), '비행'(delinquent), '우범'(pre-delinquent)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결국 범죄로 진행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지적하며 아동의 행동에 대하여 범죄시하고 형벌화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기본원칙의 하나로 채택하였으며,[179] 그러면서 성인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소년이라고 하여 낙인화하고 범죄시하는 입법이 없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180] 일반논평 제10호에서도 각국이 이러한 소위 '지위비행(status offences)' 규정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을 삭제하고 나아가 우범소년 규정 전체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권고하였다.[181] '우범소년' 이 규율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문제는 사법시스템이 아닌 복지지원체계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우범소년' 규정 삭제는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의 개정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 밖 청소년 등을 위한 지원, 보호대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점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국제인권규범에서 도출한 10가지 권리유형을 기초로 국내 소년사법제도가 국제인권규범에 부합되게 설계, 운영되는지 그 이행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내 최초로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아동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178) 같은 취지로 오영근, "소년사법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방안,"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2, 9-10면; 최병각,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2007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7, 38면; 현소혜(2016), 250면; 홍관표(2017), 235면 외 다수.

179) A/RES/45/112, para.5.; 김지혜, "가출의 비범죄화 – 소년법상 가출규정과 가정밖 청소년의 인권-", 소년보호연구 제23호(2013), 42면 참조.

180) A/RES/45/112, para.56.

181)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24.자 결정,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실시해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를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판사, 국선보조인, 소년원 종사자, 보호관찰 종사자 등 소년사법제도 종사자 전반에 걸쳐 양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양적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진들은 소년범죄에 대한 응보와 강력한 처벌, 엄벌주의를 옹호하는 일각의 흐름과 달리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이라는 소년사법의 목적과 국제인권규범에 합치되지 않은 제도운영이 근본적 문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고,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에 응한 대상 아동 및 종사자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과거 소년분류심사원의 폐쇄에 이어 최근 민영소년원 설립 추진까지 아동의 인권문제를 경제적 효율성 논리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부정기형 또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에 대한 형량 상향,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에 대한 소년부 송치 제한 등 처벌 강화의 응보적 관점으로 소년사법제도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충실한 역할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민간의 역할과 대중의 인식을 기대할 수는 없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소년사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현실을 우려하며, 2019년 새롭게 채택하고자 하는 일반논평 제24호 초안에서 아동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한 소년사법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였다.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2016년부터 시작된 자유박탈 아동에 관한 국제연구(Children Deprived of Liberty-The United Nations Global Study)도 진행 중이다.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노력에 발맞춰 우리 역시 진정한 고민이 필요하며, 소년사법제도 전반에 아동권리에 기반한 접근이 실천되어야 한다. 나아가 아동권리 실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의 주체는 국가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사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도개선방안 중 2000년대 이후 소년사법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정책개선방안에서 이미 제안되어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된 쟁점도 상당히 많다. 소년사법 전담인력의 확보와 재정적, 물적 지원, 관련 종사자에 대한 아동인권교육 제도화, 소년사법제도 전반에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 및 지침 마련, 소년사법 종사자간 교류와 협력체계 제도화 및 구축 등 소년사법의 직접 당사자인 아동 중심적 관점의 다양한 제도개선 조치가 이제는 현실화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아동・청소년 당사자 중심적 관점에서 연구하다 보니 피해자와 피해회복, 나아가 회복적 사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대상이 비행예방이 아닌 비행 후 처분에 한정되어 있어 '사회복귀와 회복'은 매우 중요한 쟁점임에도 연구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인 '사회복귀와 회복'은 추후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어야 하며, 아동복지 시스템 전체와 맞물려 있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정부부처가 함께 고민했을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후속 연구를 통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제2부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를 위한 아동인권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Ⅰ. 교육훈련 프로그램 필요성

'소년[182]'이란 아동 중에서도 조금은 더 특별한 보호 조치를 필요로 하는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소년에 대한 특별한 이해와 그에 따른 적절한 보호 체계 및 사회 서비스 제공 등은 상대적으로 위험・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소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해석된다. 조금은 더 특별한 권리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성인 종사자들 또한 아동인권에 관한 보다 민감하고 세심한 이해와 실천을 필요로 함을 의미하며, 아동인권에 관한 종사자들의 역량은 아동인권교육훈련을 통하여 강화할 수 있다.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들에 관한 아동인권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특히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을 통해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제10호를 비롯하여 베이징규칙, 하바나규칙, 리야드 가이드라인, 더불어 유럽평의회 각료회의 아동친화적 사법체계에 대한 지침(2010), 제재 또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위한 유럽 규칙에 관한 각료 위원회 권고 등에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아동인권교육・훈련은 종사자들의 전문성 확보 방안이자 아동인권에 기반한 소년사법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과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보고서에서 종사자(판사, 국선보조인, 소년원 및 보호관찰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아동인권교육은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서 살펴 본 아동당사자가 경험한 소년사법제도와 의무이행자들의 역할 또한 아동인권교육훈련의 단계적인 이해와 확장을 필요한 현실을 뒷받침한다. 이와 더불어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년사법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아동인권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의 필요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인권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고안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국제인권규범에 기반한 국내 소년사법제도 구축에 일조하고자 한다.

---

182) 소년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을 위반하였거나 법 위반이 우려되는 이유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Ⅱ.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요

1. 교육 대상

☑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
(판사, 국선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 종사자, 1~10호 관련 시설 종사자, 보호관찰관, 경찰 등)

2. 개발 목적

☑ 본 교육 프로그램은 소년사법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종사자들이 아동인권옹호가로서의 역량을 개발하고 의무이행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소년사법의 대상인 아동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둘째, 국내 소년사법제도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제시한다.

☑ 소년사법제도에서 만나게 되는 아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기의 보편적 발달 특성 뿐 아니라, 소년사법의 대상이 되는 개별 아동들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하여 본 매뉴얼은 아동의 보편적이면서도 개별적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함과 동시에,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아동에 관한 자신의 시각을 성찰하고 재정립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국내 소년사법제도를 이해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조가 가능한 기준점들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하여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다양한 국제인권규범들을 통해 소년사법에 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 본 매뉴얼은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을 알고,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하여 국내 소년사법제도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 마지막으로, 본 매뉴얼은 소년사법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종사자들이 아동인권옹

호가로서 역량을 개발하고 각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업 구도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소년사법제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그 안에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의무이행자들이 아동인권옹호가로서 자신의 역할을 설정하고, 상호협력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 교육이 촉진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육 목표 및 기대효과

☑ 아동인권에 기반하여 아동과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아동(소년)을 이해한다.
☑ 국내 소년사법제도를 이해하고, 관련 종사자들 간의 상호연계성을 인식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을 이해하며, 국제인권 규범에 근거하여 현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점검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설계한다.

4. 프로그램 특징

☑ 본 프로그램은 연구보고서에 기반하여 개발되었으므로 교육 전 연구보고서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진행자는 연구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소년사법과 관련된 국내 체계와 국제사회의 규범 등 전문적 지식을 숙지 한 후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교육 중 사용되는 용어와 개념들에 있어서 충분한 이해와 통일된 사용이 필요하다.

☑ 본 프로그램은 소년사법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의 종사자들이 함께 할 때 보다 긍정적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소년사법제도가 아동인권 보장과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각 종사자들이 서로의 역할을 알고, 협업할 수 있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한 소년사법과 관련된 다양한 종사자들이 함께하는 교육훈련을 권장한다.

☑ 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정원 25-30명, 5-6개의 모둠(1모둠 당 5-6명)을 기

준으로 시간을 제시한다.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 교육 시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 프로그램은 소년사법제도가 진행되는 일련의 흐름 및 교육 내용의 점진적인 확장과 구체화를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시된 바와 동일한 순서대로 진행하기를 권장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축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프로그램의 일부만을 재구성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 · 진행 할 때 적절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3의 활동2. Crisis or Chances] 와 [프로그램4의 활동3.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 그 절차의 복잡함?!], [프로그램5의 활동2. 우리들의 연결고리]는 제시된 순서대로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이때 각 활동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

☑ 본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소년사법의 본래 취지와 국제인권규범에 맞춘 지식, 기술,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며,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교육을 지향한다. 교육 참여자들은 다양한 활동과 적극적인 의견교류를 통해 소년사법제도를 보다 민감하게 이해할 수 있다. 진행자는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교육의 유연한 적용과 전달력 및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5. 프로그램 구성

☑ 본 프로그램은 8개의 프로그램, 18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각 프로그램은 2시간 씩, 총 1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별 시간은 상이하다(아래의 〈표 1〉, 〈표 2〉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표 1〉 프로그램 구성 및 프로그램별 목표

연번	프로그램	목 표
1	아동과 소년	1) 라포(rapport)를 형성한다. 2) 아동과 소년에 대한 개인의 관점을 성찰한다. 3) 나의 유년시절 경험을 통해 아동기 특성을 이해한다.
2	인권과 아동인권	1) 보편적인 인권의 맥락에서 아동인권을 이해한다. 2) 아동인권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요성과 의의,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4)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제도 간의 연관성을 이해한다.
3	소년과 나	1) 소년사법제도 유경험 아동에 대한 나의 인식을 성찰하고 재정립한다. 2) 아동의 주체성과 능동성, evolving capacity에 관하여 이해한다. 3) 소년의 주변 생태체계를 이해하고 균형적으로 인식한다.
4	소년사법의 현재	1)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점검한다. 2) 국내 소년사법제도를 이해하고, 제도 내 각 체계 간의 복합적이고도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조망한다.
5	소년사법과 나(1)	1) 소년사법제도에서의 나의 구체적인 역할을 점검하고 재설정한다. 2)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들 간의 상호연계성을 인식하고, 상호이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6	소년사법에서의 국제인권규범(1)	1)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의 역사적 흐름과 주요 내용을 탐구한다. 2) 국제인권규범에 준거하여 국내 소년사법 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언어 표현들을 민감히 점검한다.
7	소년사법에서의 국제인권규범(2)	1) 개인적 경험을 통해 소년사법에 대한 국제인권규범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2)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한 국내 소년사법제도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8	소년사법에서의 국제인권규범(3)	1) 국내 소년사법제도의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고민한다. 2)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하여 국내 소년사법제도의 발전 방향을 탐구한다. 3) 소년사법제도에서의 아동인권 실현을 위해 다양한 의무이행자들의 구체적인 역할을 모색한다.

〈표2〉 프로그램별 세부 활동 및 소요 시간

연번	프로그램	세부 활동	
		활동명	시간
1	아동과 소년	(1) '아동'과 '소년'	30분
		(2) 내가 어렸을 때...	90분
2	인권과 아동인권	(1) Wants & Needs	30분
		(2) 인권과 아동인권	30분
		(3) 아동인권과 소년사법	60분
3	소년과 나	(1) 내가 만난 소년	60분
		(2) Crisis or Chance	60분
4	소년사법의 현재	(1) 「소년사법」이란?	40분
		(2) Q & A	30분
		(3)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 그 절차의 복잡함?!	50분
5	소년사법과 나(1)	(1) 가치와 역할	60분
		(2) 우리들의 연결고리	60분
6	소년사법에서의 국제인권규범(1)	(1) 소년사법의 역사: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30분
		(2) 소년사법 체계와 국제인권규범	30분
		(3) Self Dictionary	60분
7	소년사법에서의 국제인권규범(2)	(1) Check the dictionary	40분
		(2) 1부터 10까지	80분
8	소년사법에서의 국제인권규범(3)	(1) 5+1	120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Ⅲ. 교육훈련 프로그램 세부내용

[프로그램 1] 아동과 소년

● 프로그램 목표

- 라포(rapport)를 형성한다.
- 아동과 소년에 대한 개인의 관점을 성찰한다.
- 유년시절 경험을 통해 아동기 특성을 이해한다.

● 소요시간

- 총 2시간

● 교육방법

- 개인&모둠 활동형

● 기대효과

- 집단 구성원들 간의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와 참여 동기를 끌어낸다.
- 아동과 소년에 관한 개인의 관점을 점검하고 소년에 관한 자신의 시각을 재설정한다.
- 자신의 유년시절 경험을 통해 아동기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소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 세부 활동

연번	활동명	활동 목표	소요 시간
1	'아동'과 '소년'	• 아동과 소년에 관한 자신의 태도와 인식을 성찰한다. • 아동기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한다.	30분
2	내가 어렸을 때...	• 나의 유년시절 경험을 통해 아동기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기의 일탈 행동에 관하여 성찰한다.	90분

[활동 1-1] '아동'과 '소년'

● 활동목표

- 아동과 소년에 관한 자신의 태도와 인식을 성찰한다.
- 아동기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한다.

● 소요시간

- 30분

● 교육방법

- 개인&모둠 활동형

● 기대효과

- 아동의 존재론적 성찰을 통해 아동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이자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는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다.

● 준비물

- PPT 1
- 활동지['아동'이란?] (인원수만큼)
- 활동지['소년'이란?] (인원수만큼)
- 필기구 (인원수만큼)

● 진행방법

〈 '아동'이란? 〉

- 1인당 1장의 활동지['아동'이란?]을 나누어준다.
- '아동'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관하여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여 적어보도록 한다.

<활동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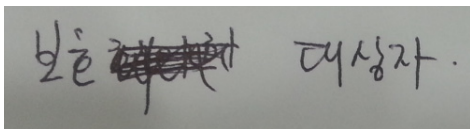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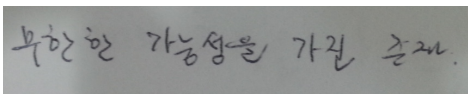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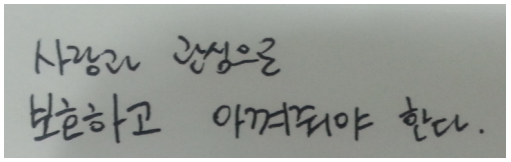

〈 '소년'이란? 〉

- 1인당 1장의 활동지['소년'이란?]을 나누어준다.
- '소년'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관하여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여 적어보도록 한다.

<활동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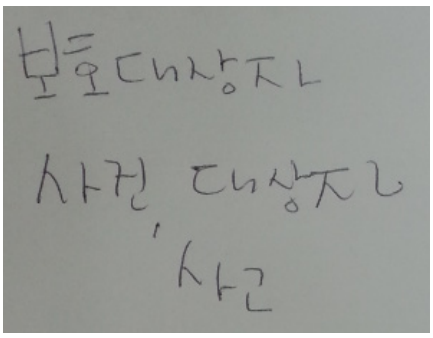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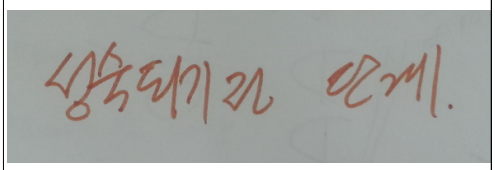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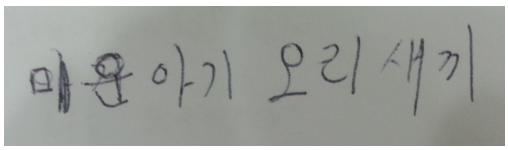

- 모둠 구성원들과 각자 활동지에 적은 '아동'에 관한 정의와 '소년'에 관한 정의 간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며 이야기 나누고, '아동'과 '소년'에 관한 정의를 정리하여 모둠 별 발표를 하도록 한다.
- [PPT 1]과 함께 '소년'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며 참여자 모두와 본 교육에서 사용될 '소년'이라는 단어의 조작적 정의를 공유하고 약속한다.

● Tips

- 본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평소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동’과 ‘소년’이란 존재에 관하여 자신의 생각을 성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진행자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보편적인 ‘아동’에 관한 이해와 ‘소년’간의 이해에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는지, 차이를 두고 있다면 그것이 다름에 대한 이해와 인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자신도 몰랐던 편견의 시각인지를 성찰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또한 ‘소년’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관점이 평소 생활에서, 현장에서 어떠한 언어와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과 실제로 소년을 대하는 행동 간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본 활동은 본 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사용하게 될 ‘소년’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약속하는 중요한 시작 활동임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 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소년'은 소년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을 위반하였거나 법 위반이 우려되는 이유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아동에 대한 존재론적 성찰의 변화는 아동인권의 탄생 배경과 연관되어 설명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활동 1-2] 내가 어렸을 때...

● 활동목표

- 유년시절 경험을 통해 아동기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기의 일탈 행동에 관하여 성찰한다.

● 소요시간

- 90분

● 교육방법

- 개인&모둠 활동형

● 기대효과

- 자신의 유년시절을 회상하면서 아동기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소년들에 관한 자신의 시각을 재설정한다.

● 준비물

- PPT 1
- 활동지[내가 어렸을 때...] (인원수만큼)
- 라벨지 (인원수만큼)
- 매직set (모둠수만큼)
- 필기구 (인원수만큼)

● 진행방법

- 1인당 1장의 활동지[내가 어렸을 때...] 를 나누어준다.
- 내가 어렸을 때 경험한 다양한 사건, 사고, 일탈의 경험들을 회고하고,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단어를 활동지에 적도록 한다.

<활동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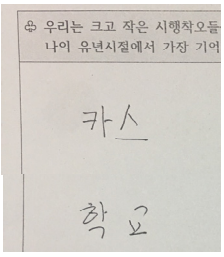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신입생 환영회를 했다. 선배들이 술을 권했고 처음으로 술을 마셔보게 됐다. 또래 문화 내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접했고, 그 이후로 가끔 친구들과 공부가 힘들거나 시험 마치고 나서 등 술을 마셨다. 하루는 술에 취해 담임 선생님 댁에 찾아서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쳤던 적이 있는데 그 때 담임 선생님이 그냥 문을 열어 주시며 재워주셨다... 〈중략〉 ... 아이들을 보면 가정이나 집 둘 중에 한 곳만이라도 안정적이면 엄청나게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고 자라는 것 같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맘 붙일 곳 없고, 안정적이지 못하면 그럼 문제가 커지는 것 같다."*

- 활동지에 적은 단어들을 모둠 구성원들에게 소개하고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나누도록 한다.
- 모둠 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 하나를 선정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 Tips

- 본 활동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유년시절을 회고함으로써 현재 아동기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아동기의 일탈 행동에 관하여 성찰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 할 수 있다. 이는 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접근으로 진행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참여자들의 발표에서 유의미한 내용들을 활용하여 활동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humanrights.go.kr KOR 국가인권위원회

[프로그램 2] 인권과 아동인권

● 프로그램 목표

- 보편적인 인권의 맥락에서 아동인권을 이해한다.
- 아동인권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요성과 의의,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의 관계를 이해하고 적용해 볼 수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제도 간의 연관성을 이해한다.

● 소요시간

- 총 2시간

● 교육방법

- 개인&모둠 활동형, 강의

● 기대효과

- 인권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소들을 탐색하고 확인함으로써 소년들에게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인식한다.
- 아동인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아동인권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내적 동기를 형성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해함으로써 아동인권에 기반한 소년사법제도 실현을 위한 지식적인 역량을 강화한다.

● 세부 활동

연번	활동명	활동 목표	소요 시간
1	Wants & Needs	• 아동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이해한다. • 아동권리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30분
2	인권과 아동인권	• 인권의 탄생 배경과 국제인권규범을 이해한다. • 아동기 특수성이 반영된 구체적인 결과물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인식하고, 그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둘 간의 순환적 관계를 이해한다.	30분
3	아동인권과 소년사법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구체적인 조항 내용을 살펴본다. •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제도 간의 연관성을 탐구한다. • 소년사법제도와 연관이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 내용을 탐구한다.	60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활동 2-1] Wants & Needs

● 활동목표

- 아동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이해한다.
- 아동권리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 소요시간

- 30분

● 교육방법

- 모둠 활동형

● 기대효과

- 아동인권은 모든 아동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임을 안다.

● 준비물

- PPT 2
- 활동 교구 [Wants&Needs] (모둠수만큼)
- A4용지 1/2사이즈 (모둠수x4)
- 색연필set (모둠수만큼)
- 싸인펜set (모둠수만큼)

● 진행방법

- 1모둠 당 활동 교구 [Wants&Needs] 한 세트와 A4 반절지 4장씩을 나누어 준다.
- Wants&Needs 20장의 카드를 살펴보고, 20장의 카드 외에 아동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4가지를 A4 반절지에 단어카드로 만들도록 한다.

- 추가한 4개의 단어카드를 모둠별 간략한 발표를 통해 소개하도록 한다.

<활동 예시-추가한 4장의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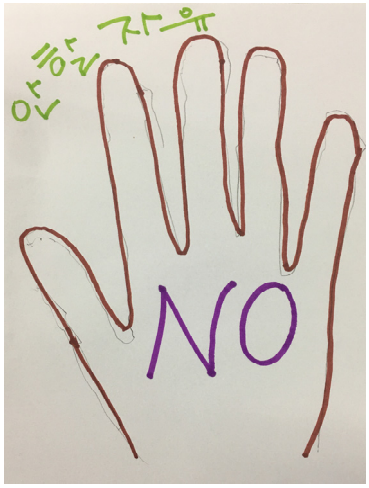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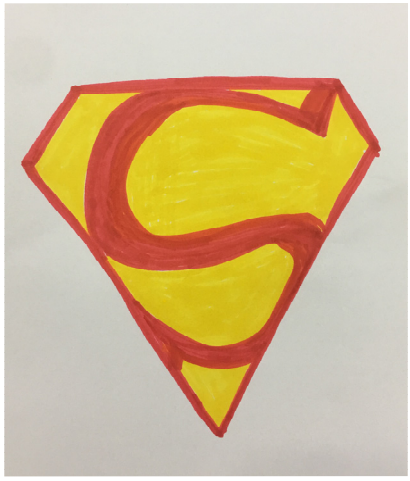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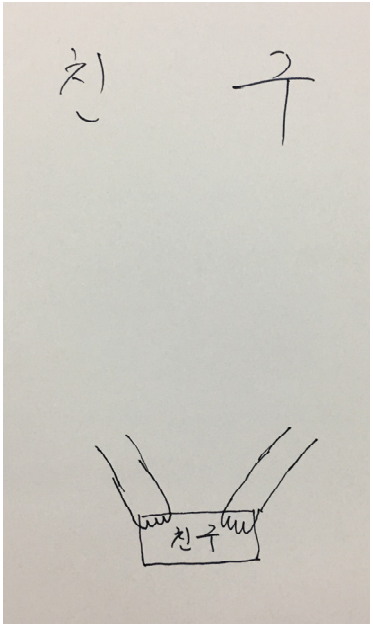

- 총 24장의 카드 중에서 가뭄,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 상황으로 인해 8장의 카드를 포기해야 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포기할지 모둠별 토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 총 16장의 카드 중에서 외환위기, 전쟁 등의 인재로 또 다시 8장의 카드를 포기해야 한다고 하면 무엇을 포기할지 모둠별 토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 최종적으로 남은 8장의 카드를 모둠별로 나와 화이트보드에 붙이도록 한다. 비교/대조가 쉽도록 동일한 카드끼리 위아래에 위치하도록 한다.

<활동 예시>

- 동일하게 남겨진 카드들과 다르게 남겨진 카드들을 살펴보며 활동 피드백을 나눈다. 필요에 따라 다른 모둠 결과물 대비 다르게 남겨진 카드가 있는 경우, 그 카드를 남긴 해당 모둠의 이야기를 들어 본 후, 활동 피드백을 나눈다.

● Tips

- 참여자들은 Wants&Needs 활동을 통하여 아동인권을 구성하는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아동인권은 이 세상의 모든 아동이라면 반드시 존중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개념임을 이해할 수 있다. 진행자는 이러한 이해들을 소년 또한 아동으로서 반드시 동일하게 아동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만큼 특별한 아동인권 존중의 접근이 필요함으로 연결 지어 전달할 수 있다.
- 4장의 추가 단어카드 만들기 활동을 아동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4가지 단어 카드 만들기 활동으로 안내하는 것 대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소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내가 해주고 싶은 4가지를 카드로 만들도록 안내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조금 더 소년에게 초점을 맞춘 인권의 요소들을 생각하도록 이끌 수 있다.

[활동 2-2] 인권과 아동인권

● 활동목표

- 인권의 탄생 배경과 국제인권규범을 이해한다.
- 아동기 특수성이 반영된 구체적인 결과물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인식하고, 그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둘 간의 순환적 관계를 이해한다.

● 소요시간

- 30분

● 교육방법

- 대집단 강의

● 기대효과

- 국제사회의 인권규범들을 인권과 아동인권에 있어 준거로 인식하고, 아동인권에 있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요 지표로 습득한다.
-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둘 간의 순환적 관계를 인식함으로써 의무이행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강화한다.

● 준비물

- PPT 2

● 진행방법

- [PPT 2] 화면과 함께 아동과 아동인권을 주제로 강의식 교육을 진행한다.

〈 강의 주요 내용 〉

- 인권이란?
-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범
- 아동인권의 특수성
-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

● Tips

- 본 활동은 지식 및 정보를 전달하고자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활동인 만큼 진행자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습득하고 참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보고서 「아동 ·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의 [Ⅰ.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국제인권규범 / 1.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의 종류와 내용]을 참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활동 2-3] 아동인권과 소년사법

● 활동목표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구체적인 조항 내용을 살펴본다.
-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제도 간의 연관성을 탐구한다.
- 소년사법제도와 연관이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 내용을 탐구한다.

● 소요시간

- 60분

● 교육방법

- 모둠 활동형

● 기대효과

- 아동의 권리가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하고, 아동인권이 모든 아동들에게 보편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성찰한다.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년들에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비차별적이면서도 특수성이 반영된 실질적 적용 방안에 관하여 고민을 시작한다.

● 준비물

- PPT 2
- 조항카드 (모둠수만큼)
- 스카치 테이프 (모둠수만큼)

● 진행방법

- 1모둠 당 조항카드 1묶음을 나누어 준다.
- 조항카드는 총 54개의 조항 중 제1조부터 제42조까지 담겨져 있음을 전달하며, 조항 카드 내용을 상세히 살펴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5분가량의 시간을 제공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중 소년사법제도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조항들을 찾고, 그 이유에 관하여 모둠 구성원들과 논의하도록 한다. 모둠 내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10장 정도의 조항카드를 고르도록 안내하며, 20-25분간의 모둠 활동 시간을 제공한다.
- 모둠별로 도출된 조항카드들을 화이트보드에 붙이고, 모둠 간 활동 결과물을 비교 · 대조한다. 활동 결과에 따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활동 예시>

● Tips

- 본 활동은 아동인권에 대한 이론 강의 후에 진행되는 활동으로 모둠별 활동 결과물을 충분히 비교 · 대조한 후에,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원칙(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에 기반하여 검토되고 설계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전달할 수 있다.
- 진행자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소년들이 아동인권의 보편적인 맥락 안에서 비차별적으로 권리를 존중받고 있는가를 성찰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과 동시에 분명 특별한 보호조치 또한 필요함을 인정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프로그램 3] 소년과 나

● 프로그램 목표

- 소년사법제도 유경험 아동에 대한 나의 인식을 성찰하고 재정립한다.
- 아동의 주체성과 능동성, evolving capacity에 관하여 이해한다.
- 소년의 주변 생태체계를 이해하고 균형적으로 인식한다.

● 소요시간

- 총 2시간

● 교육방법

- 개인&모둠 활동형

● 기대효과

-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소년과 그들의 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성찰함으로써 소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강점에 기반을 둔 접근 방식을 탐색 할 수 있다.
- 특별한 보호 체계이자 건강한 발달에 대한 안내로써 소년사법제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년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한 학습 과정에 내적 동기를 형성한다.

● 세부 활동

연번	활동명	활동 목표	소요시간
1	내가 만난 소년	•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아동에 관한 자신의 인식을 성찰하고 재정립한다. • 아동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내적 자원을 인지한다.	60분
2	Crisis or Chance	• 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안에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탐색하고, 보호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60분

[활동 3-1] 내가 만난 소년

● 활동목표

- 소년에 관한 자신의 인식을 성찰하고 재정립한다.
- 아동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내적 자원을 인지한다.

● 소요시간

- 60분

● 교육방법

- 모둠 활동형

● 기대효과

- '처벌'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과 맥락을 고려하여 소년을 이해한다.
- 소년 또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주체적 존재임을 성찰하고 아동 당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관해 모색한다.

● 준비물

- PPT 3
- 활동지[내가 만난 소년] (인원수만큼)
- 활동지[내가 만난 '멋진' 소년] (인원수만큼)
- 필기구 (인원수만큼)

● 진행방법

- 1인당 1장의 활동지[내가 만난 소년]을 나누어 준다.
- 이제까지 만났던 아동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아동 한 명을 떠올리도록 한다.

• 활동지[내가 만난 소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아동 한 명에 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활동 예시>

어느 한 보호관찰관의 이야기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지만 기본 심성이 고운 여자 아이가 있었다. 과거에 유도로 각종 메달을 따는 등 실력을 발휘했었으나, 운동을 그만 둔 후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힘들어 했었다. 외향적인 성격이었으나 여자 친구들과 유달리 잘 친해지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화장을 안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소위 '왕따'를 당하다 결국 학교를 중퇴하였다. 친구들과의 갈등 외에도 선생님과의 갈등으로 교사를 폭행한 적도 있었는데, 엄마는 아이에게 "교도소 갈 애"라고 비난하는 등 모와의 갈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내가 그 아이를 만나게 된 것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절도로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서였다. 재능이 많고 심성이 고운 장점이 있음에도 또래 사이에 인정받지 못한 채, 거듭 상처를 받던 아이었던지라 지도하면서도 매우 안타까웠던 마음이 컸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아이가 기억에 남는다."

• 모둠 구성원들과 자신이 만난 가장 기억에 남는 아동에 관하여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안내하며, 25-30분가량의 모둠 활동 시간을 제공한다.
• 모둠별 이야기 나누기를 정리하고, 1인당 1장의 활동지[내가 만난 '멋진' 소년]을 나누어 준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아동의 강점과 약점을 정리하여 적도록 안내하며, 10-15분가량의 개인 활동 시간을 제공한다.
• 아동의 강점과 약점에 관하여 정리하는 동안 어떠한 생각을 하였는지 모둠별로 활동 피드백을 나누도록 한다.
• 모둠별로 나눈 활동 피드백을 발표하도록 한다.

● Tips

• 때때로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의식적으로 성찰하려 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다. 소년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환경적 요소와 상황적 맥락 모두가 소년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때때로 아동 자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아동을 대할 때가 있다. 아동 자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과 배경과 상황적 맥락 모두를 고려하여 아동을 인식하는 것은 아동을 대하는 태도와 감정, 문제 해결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행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참여자들 스스로 다시 한 번 소년에 관한 자신의 인식을 성찰하고 재정립 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

- 아동 당사자 또한 자신이 주체적이고 역량 있는 존재임을 알고, 스스로를 위한 보호체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만 아동 스스로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성장에 긍정적인 방향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진행자는 참여자들이 주체적이고 역량 있는 존재로써 소년들을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함으로써 소년사법 아동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종사자로서의 역할 설정에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활동 3-2] Crisis or Chance

● 활동목표

- 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안에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탐색하고, 보호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소요시간

- 60분

● 교육방법

- 개인&모둠 활동형

● 기대효과

- 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세계 등의 다양한 체계를 이해하고, 각각에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 한 아동이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를 단계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과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 및 실제적 운영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 준비물

- PPT 3
- 활동지[Crisis or Chance] (모둠수만큼)
- 전지 (모둠수만큼)
- 매직set (모둠수만큼)
- 필기구 (인원수만큼)

● 진행방법

- 1모둠 당 1장의 활동지[Crisis or Chance]를 나누어 준다.
- 모둠 별로 '내가 만난 그 소년' 활동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정하도록 한다.
- 선정된 하나의 사례를 바탕으로 모둠 구성원들과 논의를 통해 가정, 지역사회, 국가, 세계, 시간 체계별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분석 · 정리하도록 한다.
- 전지에 발표용으로 정리하여 모둠별 발표를 하도록 한다.

<활동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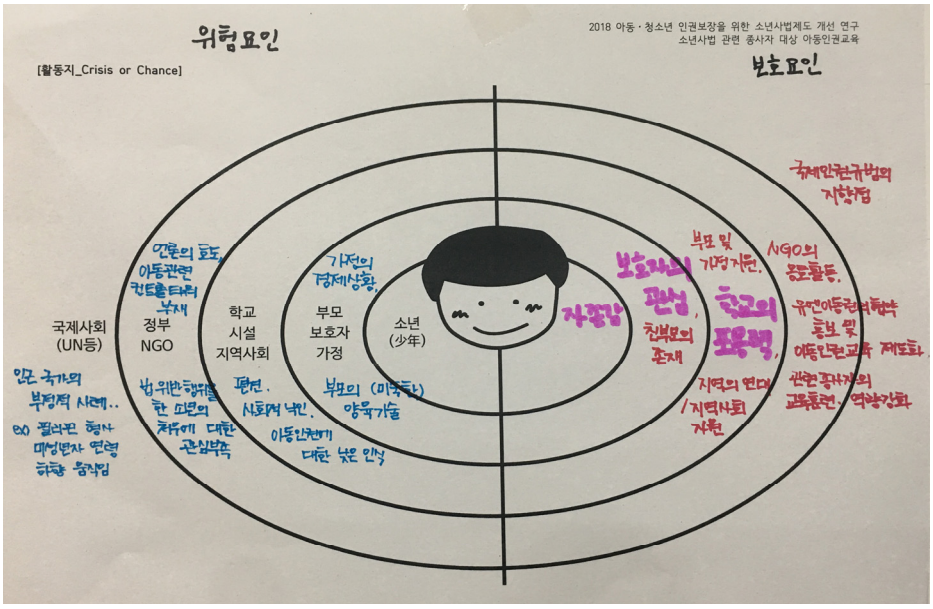

● Tips

- 참여자들은 아동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계별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보호요인의 확충과 강화가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대표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사회적 보호요인의 확충과 강화 방안으로써 소년사법제도의 발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프로그램 4] 소년사법의 현재

● 프로그램 목표

-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점검한다.
- 국내 소년사법제도를 이해하고, 제도 내 각 체계 간의 복합적이고도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조망한다.

● 소요시간

- 2시간

● 교육방법

- 개인&모둠 활동형, 대집단 활동형, 강의

● 기대효과

-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개인의 생각과 관점에서부터 현행 제도까지 현재의 국내 소년사법제도를 이해함으로써 소년사법제도와 종사자 역할에 있어 향후 발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한다.

● 세부 활동

연번	활동명	활동 목표	소요시간
1	「소년사법」 이란?	• 소년사법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해 정도를 점검한다.	40분
2	Q & A	• 연구보고서 결과를 살펴본다. • 국내 소년사법제도의 주요 이슈들에 관하여 논한다.	30분
3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 그 절차의 복잡함?!	• 국내 소년사법제도를 조망한다.	50분

[활동 4-1] '소년사법'이란?

● 활동목표

- 소년사법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해 정도를 점검한다.

● 소요시간

- 40분

● 교육방법

- 개인&모둠 활동형

● 기대효과

- 소년사법제도의 의의와 목표를 성찰하고 설정한다.

● 준비물

- PPT 4
- 활동지['소년사법' 이란?] (인원수만큼)
- 필기구 (인원수만큼)

● 진행방법

- 1인당 1장의 활동지['소년사법' 이란?]을 나누어 준다.
- '소년사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소년사법에 관한 나만의 정의를 기술해보도록 안내하며 5분가량의 개인 활동 시간을 제공한다.

<활동 예시>

어느 한 소년원 종사자의 답변

"소년사법이란, 청소년들은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보호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 모둠 구성원들과 자신이 생각하는 소년사법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면서 모둠별 발표를 준비하도록 안내하며 20분가량의 모둠 활동 시간을 제공한다.
- 각 모둠별로 정리된 '소년사법'의 정의를 발표하도록 한다.

● Tips

- 참여자들의 활동성을 보다 이끌어 내고자 할 경우, '소년사법' 하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들을 개인적으로 적고, 개별적으로 적은 단어들을 모두 조합하여 소년사법을 정의해보는 활동으로 변형하여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 소년사법에 관한 참여자들의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나눔으로써 참여자들 내에서 소년사법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관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의 이야기와 모둠 발표 내용에 기반한 피드백 나눔이 필요하다.

[활동 4-2] Q & A

● 활동목표

- 연구보고서 결과를 살펴본다.
- 국내 소년사법제도의 주요 이슈들에 관하여 논한다.

● 소요시간

- 30분

● 교육방법

- 개인&모둠 활동형, 강의

● 기대효과

- 현재 국내의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주요 이슈를 논함으로써 국내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이해를 확장시킨다.

● 준비물

- PPT 4
- 활동지 [Q&A] (모둠수만큼)

● 진행방법

- 1인 당 1장의 활동지 [Q&A]를 나누어 준다.
- 활동지의 질문 사항을 개별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5분가량의 개인 활동 시간을 제공한다.
- 모둠 구성원들과 활동지 결과를 공유하며 이야기 나눈다.
- [PPT 4] 화면과 함께 연구보고서의 주요 결과들을 살펴보며, 자신의 활동지 결과와 비교 · 대조해본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Tips

- 본 활동은 본 프로그램이 연구보고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부각되는 활동이다. 진행자는 반드시 사전에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교육을 준비하여야 한다.
- 본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동일한 사안이라도 종사자의 직군이나 역할,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이해 등의 다양한 이유로 각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나와는 다른 종사자들의 관점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하기보다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나눌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활동 4-3]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 그 절차의 복잡함?!

● 활동목표

- 국내 소년사법제도를 조망한다.

● 소요시간

- 50분

● 교육방법

- 모둠 활동형

● 기대효과

- 국내 소년사법제도를 조망하는 과정을 통해 국내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심화적인 이해와 제도 속에서 자신의 위치 및 역할을 인식한다.
- 국내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과 보완점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

● 준비물

- PPT 4
- 활동지[소년사법 체계도 만들기: 사례] (인원수만큼)
- 활동지[소년사법 체계도 만들기: 단어 목록] (인원수만큼)
- 포스트잇 (76x76mm사이즈, 1모둠 당 2-3가지 색상)
- 전지 또는 반전지 (모둠수만큼)
- 매직set (모둠수만큼)

● 진행방법

- 1인당 1장의 활동지[소년사법 체계도 만들기: 사례]를 제공한다.
- 활동지의 사례를 읽도록 안내하며, 2-3분간의 시간을 제공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 1모둠 당 1장의 활동지[소년사법 체계도 만들기: 단어 목록]과 포스트잇, 전지 또는 반전지, 매직set를 제공한다.
- 활동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며, 2-30분가량의 모둠 활동 시간을 제공한다.

<활동 안내>

1. 모둠구성원들과 논의를 통하여 사례 속 아동이 경험하였을 소년사법제도 내 체계들을 만드는 것이 주요 활동입니다.
2. 활동지[소년사법 체계도 만들기: 단어 목록]의 단어들을 참고하여 포스트잇에 필요한 단어들을 적고, 그 포스트잇을 전지(또는 반전지)에 붙여 만들어주세요.
3. 동일한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해도 되며, 단어 목록 외에 필요한 단어 또한 활용하셔도 됩니다. 보호처분의 경우, 사례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4. 매직을 활용하여 화살표, 기타 표현하고 싶은 사항들을 표현해 주세요!

<활동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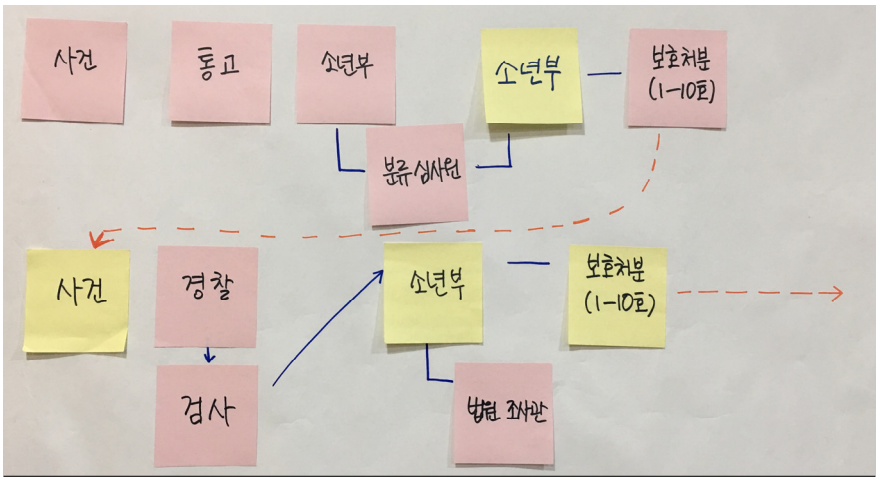

<사례1>에 관한 활동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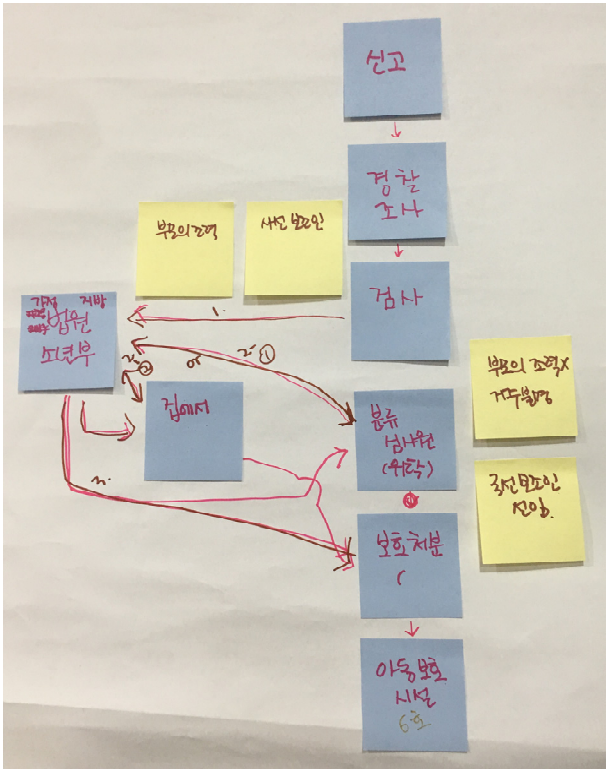

<사례2>에 관한 활동 결과물

- 모둠별로 구성한 소년사법 체계도를 화이트보드에 붙이도록 하여 모둠별 활동 결과물을 비교/대조 할 수 있도록 한다.
- 연구진이 연구 · 분석하여 완성한 국내 소년사법 체계도와 모둠별 결과물을 비교/대조하고, 국내 소년사법제도를 정리하여 정보 제공한다.

● Tips

- 활동 사례는 모둠별로 1개씩, 각기 다르게 제공하도록 한다.
- 참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야 할지 어려워 할 경우, 예시를 잠시 보여주며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예시 화면을 계속 띄워놓고 있을 경우, 비슷하게 모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제공하는 시간은 5-10초 정도로 짧게 할 것을 권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속해 있는 영역 그 이상의 전체를 조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소년사법 종사자들은 소년사법제도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인식하는 것 그 이상의 확장된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여 본 활동은 소년사법제도 전체를 조망하고 소년사법제도를 구성하는 각기 다른 종사자들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더불어 각각의 역할이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이라는 점과 협력 구도를 구축해야 함을 전달하고자 한다. 진행자는 국내 소년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본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 본 활동의 확장형으로 의무이행자의 긍정적인 역할 수행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사례1〉에서 '친구네 엄마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어른들과 아이를 달 다독여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면?', '사건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국선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어른들을 설득시키고 부의 역할을 강화하였다면?' 등등의 질문은 소년사법제도 내 각기 다른 위치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어떠한 판단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소년 삶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프로그램 5] 소년사법과 나 (part1)

● 프로그램 목표

- 소년사법제도에서의 나의 구체적인 역할을 점검하고 재설정한다.
-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들 간의 상호연계성을 인식하고, 상호이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소요시간

- 2시간

● 교육방법

- 개인&모둠 활동형

● 기대효과

-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로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와 핵심 역량을 설정하고 각 종사자들 간의 업무 연계성을 파악함으로써 발전적인 역할 수행을 한다.

● 세부 활동

연번	활동명	활동 목표	소요시간
1	가치와 역할	•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로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탐색한다. • 소년사법제도 내에서 자신의 역할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극복해야 할 한계를 탐구한다.	60분
2	우리들의 연결고리	• 소년사법제도 내의 다양한 종사자들을 탐구하고, 종사자들 간의 상호연계성을 인식한다.	60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활동 5-1] 가치와 역할

● 활동목표

-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로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탐색한다.
- 소년사법제도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극복해야 할 한계를 탐구한다.

● 소요시간

- 60분

● 교육방법

- 개인&모둠 활동형

● 기대효과

-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로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구체화하고,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자기 역할을 설정한다.
- 가치 실현을 위해 극복해야 할 한계와 필요한 자원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나아갈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한다.

● 준비물

- PPT 5
- 활동지[가치 키워드] (인원수만큼)
- 활동지[가치와 역할] (모둠수만큼)
- 전지 (모둠수만큼)
- 매직set (모둠수만큼)
- 필기구 (인원수만큼)

● 진행방법

- 1인당 1장의 활동지[가치 키워드]를 나누어 준다.
-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안내하며, 1개의 가치 키워드와 그 가치 키워드를 생각하게 된 이유를 적도록 5-10분가량의 개인 활동 시간을 제공한다.
- 1모둠 당 1장의 활동지[가치와 역할]을 나누어 준다. 각자 적은 가치 단어를 모둠 구성원들과 공유하며 우리 모둠의 가치 키워드를 선정하도록 안내하며 활동지[가치와 역할]에 따라 모둠 토의 및 발표 준비를 하도록 한다. 25-30분가량의 모둠 활동 시간을 제공한다.

<활동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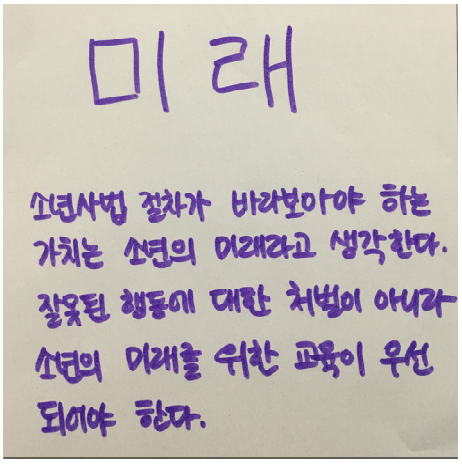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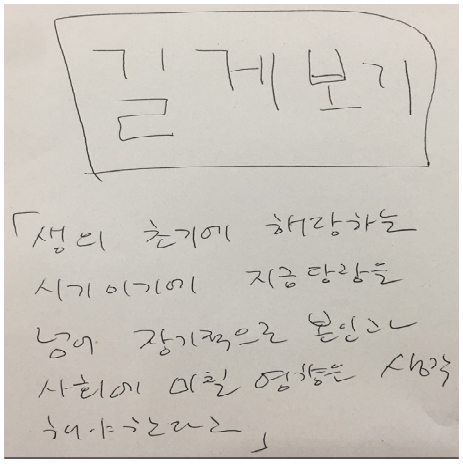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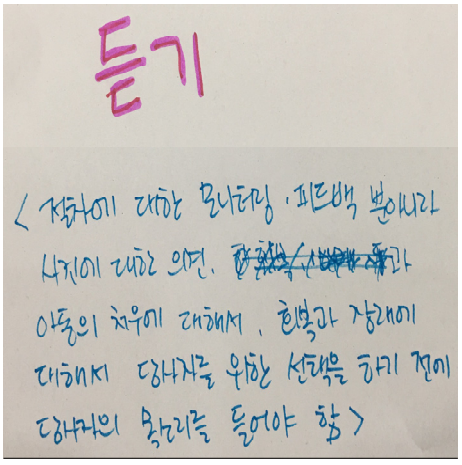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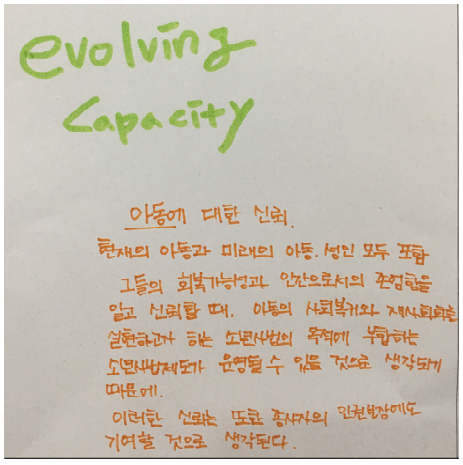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 모둠별 발표를 진행한다.

● Tips

•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거나, 참여자들이 가치 단어를 탐색하고 정하는데 매우 어려워하는 경우, 몇 가지의 예시(보호, 성장, 변화, 존중, 안전, 정의 실현, 교화, 사회화 등)를 제시하여 활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 참여자들이 동일한 직업군일 경우, 모둠별 1개의 가치 키워드를 도출해 내도록 안내하고, 각기 다른 직업군이 함께하는 경우, 구성원들의 각기 다른 생각을 충분히 나누고 발표하는 형태로도 진행할 수 있다.
• 시간이 부족하다 생각될 경우, 전지에 적지 않고 구두 발표로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무엇 하나가 옳고 그르다던가, 무엇이 더 바람직하다는 식의 평가보다 각기 다른 관점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나누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활동을 운영하는 것은 중요하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나누는 것은 참여자 개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각기 다른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종사자들에 대한 이해로 연결될 수 있다.
• 진행자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소들을 탐색하는 과정이 현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문제를 깊이 있기 다루거나 비판하는 장으로 나아가지는 않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문제와 분석 및 문제 해결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뒤에 이어지는 활동들에서 충분히 다뤄질 것임을 언급하며 본 활동에서는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정도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한다.
•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소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 · 구조적인 요인 모두를 균형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활동 5-2] 우리들의 연결고리

● 활동목표

- 소년사법제도 내의 다양한 종사자들을 탐구하고, 종사자들 간의 상호연계성을 인식한다.

● 소요시간

- 60분

● 교육방법

- 개인&모둠 활동형

● 기대효과

- 소년사법제도 내 종사자들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다.

● 준비물

- PPT
- 활동지[국내 소년사법 체계도] (인원수만큼)
- 활동지[우리들의 연결고리] (인원수만큼)
- 필기구 (인원수만큼)

● 진행방법

- 1인당 1장의 활동지[국내 소년사법 체계도]를 나누어 준다.
- 활동지[국내 소년사법 체계도]를 보며 자신의 위치를 표시하고, 자신의 직업적 역할과 연관도가 높은 사람들에 관한 고민을 시작하도록 안내한다.
- 1인당 1장의 활동지[우리들의 연결고리]를 나누어 주며, 자신의 직업적 역할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연관도가 높은 사람 1, 2위를 적고 활동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 모둠 구성원 각각의 결과물을 공유하며 이야기 나누도록 한다.

<활동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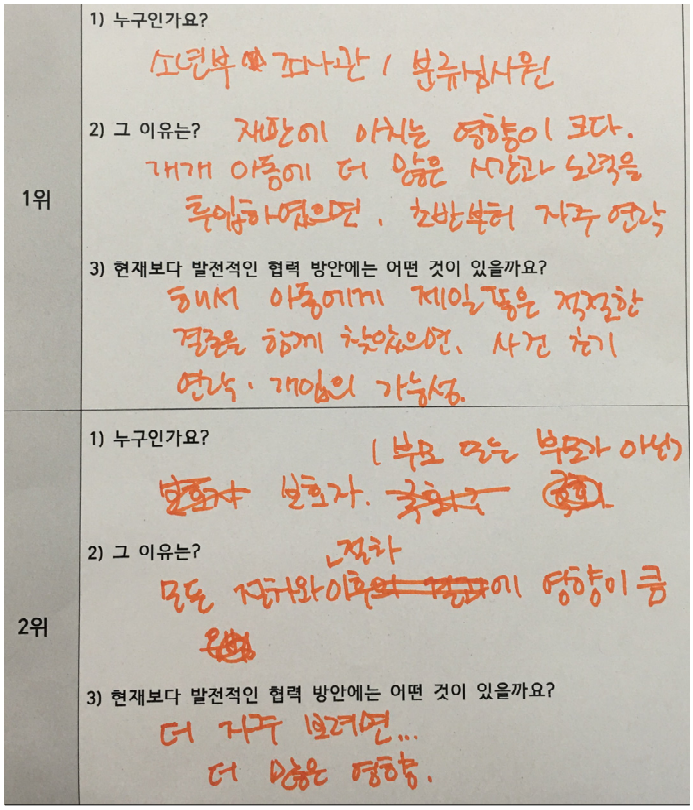

1위	1) 누구인가요? 소년부 판사 / 보호관찰관 2) 그 이유는? 재판이 아주 영향이 크다. 개개 아동이 더 많은 사회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보호관찰관 자주 연락 3) 현재보다 발전적인 협력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원에서 아동에게 제일 좋은 적절한 결정을 함께 찾아야 한다. 사건 초기 연락, 개입의 가능성.
2위	1) 누구인가요? (부모 또는 부모가 아닌) 보호자. 국회의원 변호사 2) 그 이유는? 모든 재판과 처분에 영향이 큼 변호사 선정 3) 현재보다 발전적인 협력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더 자주 보려면... 더 많은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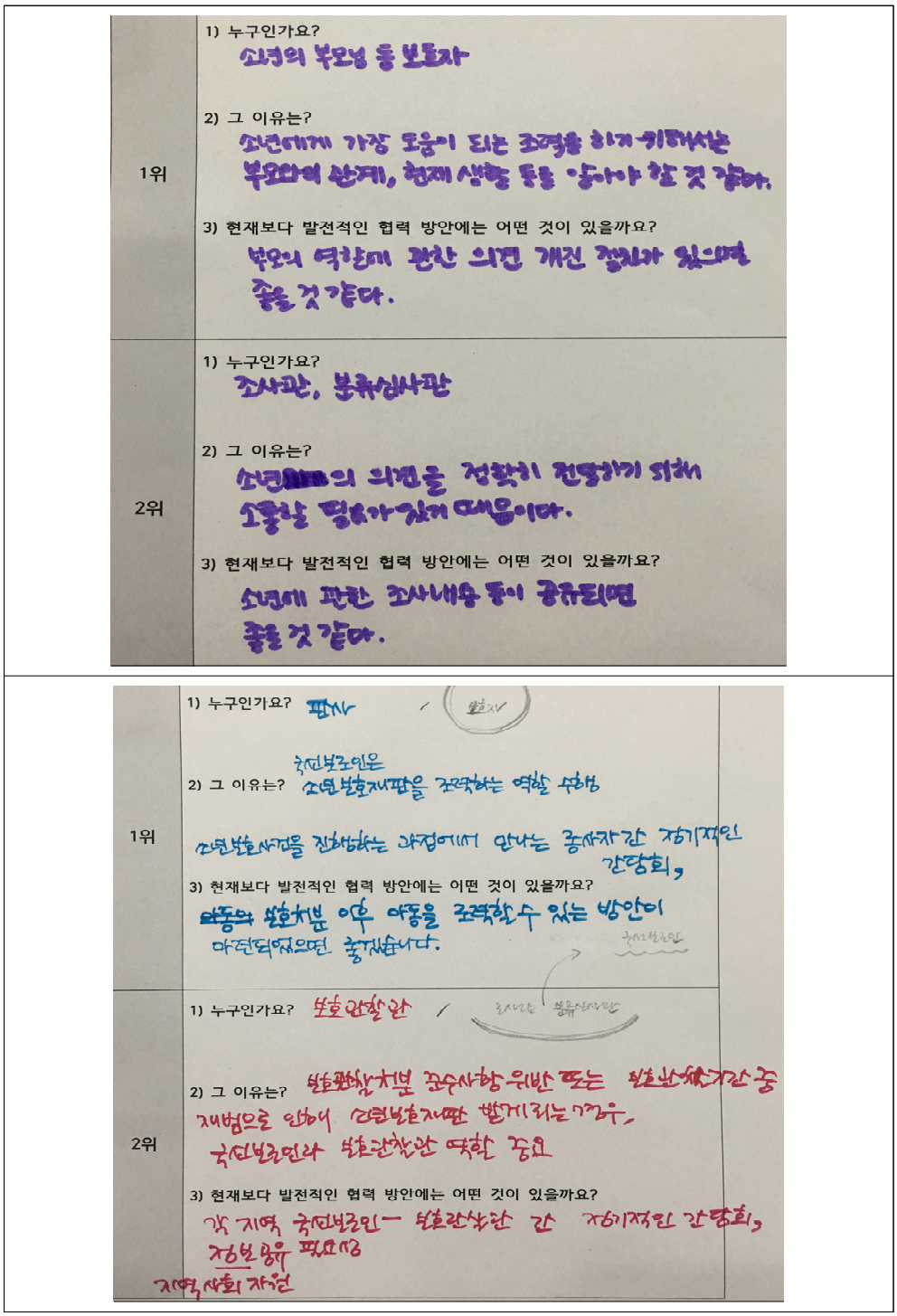

1위

1) 누구인가요?
소년의 부모님 등 보호자

2) 그 이유는?
소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조력을 하게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 현재 생활 등을 알아야 할 것 같아.

3) 현재보다 발전적인 협력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모의 역할에 관한 의견 개진 절차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2위

1) 누구인가요?
조사관, 분류심사관

2) 그 이유는?
소년[redacted]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소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현재보다 발전적인 협력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년에 관한 조사내용 등이 공유되면 좋을 것 같다.

1위

1) 누구인가요? 판사

2) 그 이유는? 참관보조인은 소년보호재판을 관할하는 역할 수행함

소년보호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종사자간 정기적인 간담회,

3) 현재보다 발전적인 협력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동의 보호처분 이후 아동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위

1) 누구인가요? 보호관찰관

2) 그 이유는? 보호관찰처분 준수사항 위반 또는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으로 인해 소년보호재판 받게되는 경우, 국선보조인과 보호관찰관 역할 중요

3) 현재보다 발전적인 협력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각 지역 국선보조인-보호관찰관 간 정기적인 간담회, 정보공유 필요함

지역사회 자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 Tips

- 본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마다 각기 다른 관계도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자신의 역할에 따라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두고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할 종사자군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종사자 간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관하여 모색하고 논의할 수 있다.
- 진행자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직·간접적으로 모든 종사자들이 연결되어 대한민국의 소년사법제도를 이루고 있으며, 의무이행자 한 명 한 명의 온전한 역할 수행이 궁극적으로 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전달할 수 있다.

[프로그램 6] 소년사법에서의 국제인권규범 (part1)

● 프로그램 목표

-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의 역사적 흐름과 주요 내용을 탐구한다.
- 국제인권규범에 준거하여 국내 소년사법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언어 표현들을 민감히 점검한다.

● 소요시간

- 2시간

● 교육방법

- 개인&모둠 활동형, 강의

● 기대효과

-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의 역사적 흐름과 그 주요 내용을 습득한다.
- 소년사법에 대한 국제인권규범의 시각을 형성한다.
- 국내 소년사법제도와 관련되어 법적 ·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언어 표현들을 인식하고 보다 긍정적인 표현으로의 변화를 모색한다.

● 세부 활동

연번	활동명	활동 목표	소요시간
1	소년사법의 역사 :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의 역사적 흐름을 유추해본다. • 국제인권규범에 관한 이해 정도를 점검한다.	30분
2	소년사법제도와 국제인권규범	•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 •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의 주요 내용과 특성을 이해한다.	30분
3	Self Dictionary	• 국제인권규범을 준거로 하여 국내 소년사법제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점검한다.	60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활동 6-1] 소년사법의 역사: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 활동목표

- 국제인권규범에 관한 이해 정도를 점검한다.

● 소요시간

- 30분

● 교육방법

- 개인&모둠 활동형

● 기대효과

-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탐구를 시작한다.

● 준비물

- PPT 6
- 활동 교구[소년사법의 역사: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인원수+모둠수만큼)
- 스카치 테이프 (모둠수 만큼)

● 진행방법

- 1인당 1세트의 활동 교구[소년사법의 역사: 국제사회를 중심으로]를 나누어 준다.
-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목록들임을 설명하며,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해보도록 한다.
- 1모둠 당 1세트의 활동 교구[소년사법의 역사: 국제사회를 중심으로]를 나누어 주며, 모둠구성원 각각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하나의 배열을 만들도록 한다.

- 모둠별 결과물을 화이트보드에 붙여 모둠 간 비교/대조의 시간을 갖는다.
- 정답 화면과 함께 모둠별 결과물을 비교/대조한다.

● Tips

- 진행자는 본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의 생각과 지식수준을 파악하여 [활동 6-4]의 강의 내용을 수정, 추가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활동 6-2] 소년사법제도와 국제인권규범

● 활동목표

-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
-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의 주요 내용과 특성을 이해한다.

● 소요시간

- 30분

● 교육방법

- 개인&모둠 활동형

● 기대효과

-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의 역사과 주요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소년사법에 있어서의 국제인권규범을 습득한다.

● 준비물

- PPT 6

● 진행방법

- 준비된 [PPT 6]을 보며,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에 관하여 설명한다.

● Tips

- 본 활동은 지식 및 정보를 전달하고자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활동인 만큼 진행자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습득하고 참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보고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의 [Ⅰ.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국제인권규범 / 1.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의 종류와 내용]을 참고 할 수 있다.

[활동 6-3] Self Dictionary

● 활동목표

- 국제인권규범을 준거로 하여 국내 소년사법제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점검한다.

● 소요시간

- 60분

● 교육방법

- 개인&모둠 활동형

● 기대효과

- 국제인권규범을 준거로 하여 국내 소년사법제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과 관련된 법적, 관례적 정의를 살펴보고. 보다 긍정적인 의미가 담긴 표현으로 재정의 해본다.

● 준비물

- PPT 6
- 활동지[Self Dictionary] (인원수만큼)
- 전지 (모둠수만큼)
- 매직set (모둠수만큼)
- 필기구

● 진행방법

- 1인당 1장의 활동지[Self Dictionary]를 제공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활동 예시>

♧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이해하고 정의를 적어주세요. 조금 더 나은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용어로 대체하여 표현할 수 있을지 또한 적어봅시다.

소년사법 관련 단어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의미	대안적 용어 적어보기
1. 촉법 소년	범죄는 아닌듯 애매하지만 법을 어긴 것으로 처벌되는.	촉법 관심 아동
2. 우범 소년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관심 아동

♣ 언어 표현 하나가 바뀌면 그 언어와 연관된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느낌과 이미지 또한 바뀌는 것 같습니다. 혹, 현장에서 다른 용어를 쓰거나 표현이 바뀌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던 단어나 용어, 특정 표현 등이 있을까요? 있다면 아래의 표에 적어주세요!

소년사법 관련 단어	내포하고 있는 의미	대안적 용어 적어보기
1-1호 처분.	보호의 범위의 경우들에 대한 조치	도가가 양육 가족 위탁
[redacted]		[redacted]
분류심사	소년의 상황에서 처리되는 등의 대가 조치는 결정하는 절차	상황진단 (평가)

♧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이해하고 정의를 적어주세요. 조금 더 나은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용어로 대체하여 표현할 수 있을지 또한 적어봅시다.

소년사법 관련 단어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의미	대안적 용어 적어보기
1. 촉법 소년	14세 미만 범법 위반 아동	[redacted] ?
2. 우범 소년	자위 비행. (법위반 의도적 우려가 아닌 아동)	X

♣ 언어 표현 하나가 바뀌면 그 언어와 연관된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느낌과 이미지 또한 바뀌는 것 같습니다. 혹, 현장에서 다른 용어를 쓰거나 표현이 바뀌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던 단어나 용어, 특정 표현 등이 있을까요? 있다면 아래의 표에 적어주세요!

소년사법 관련 단어	내포하고 있는 의미	대안적 용어 적어보기
가해진 폐쇄, 가정 파괴	정서적, 신체적 고통에 노출되어 반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가정	회복, 보호.
보호.	부모, 보호자, 여성 가장인 경우 등 남성 아동을 양육하고, 가족 사랑이라는 점.	아동, 자립
분류 심사.	분류라는 두 단어는 인식, 개념을 이해하고 심사한다는 점.	아동 진단 개별적 조사.

♧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이해하고 정의를 적어주세요. 조금 더 나은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떤 용어로 대체하여 표현할 수 있을지 또한 적어봅시다.

소년사법 관련 단어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의미	대안적 용어 적어보기
1. 촉법 소년	법을 위반한, (형사미성년 이하연령으로,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10세 이상 아동	대안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단, 형사미성년 이하인 10세 이상 아동을 말한다)
2. 우범 소년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아동 10세 이상 19세 미만	X

♣ 언어 표현 하나가 바뀌면 그 언어와 연관된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느낌과 이미지 또한 바뀌는 것 같습니다. 혹, 현장에서 다른 용어를 쓰거나 표현이 바뀌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던 단어나 용어, 특징 표현 등이 있을까요? 있다면 아래의 표에 적어주세요!

소년사법 관련 단어	내포하고 있는 의미	대안적 용어 적어보기
소년	범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아동	아동
감호위탁	감시·보호를 목적으로 (시설에) 위탁함	보호조치
소년보호시설	6호 처분을 받은 아동을 보호(감호위탁) 하는 시설	아동보호시설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의 개별적 성향,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는 시설	조사된 아동 수용시설
소년원	장단기 구금시설이나, 사회와 격리하는 형사처분 수용시설은 아님	아동회복지원시설/ 꿈지원 학교

♣ 언어 표현 하나가 바뀌면 그 언어와 연관된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느낌과 이미지 또한 바뀌는 것 같습니다. 혹, 현장에서 다른 용어를 쓰거나 표현이 바뀌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던 단어나 용어, 특징 표현 등이 있을까요? 있다면 아래의 표에 적어주세요!

소년사법 관련 단어	내포하고 있는 의미	대안적 용어 적어보기
전문가의 진단	소년의 상태에 정확 정밀한 답이 있는 것 같은 표현이라, 이 역시 의견이라는 점을 간파할 수 있을 것 같다.	전문가의 의견
동행명장	소년보호사건에 형사 절차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다. 판사님과 조사관에 대한 명장을 뜻하는 것 같다.	동행장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활동지에 제시된 용어들을 살펴보고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 정의를 내려 보고, 다른 용어로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안내한다. 더불어 현장에서 무심코 혹은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바뀌면 보다 좋을 것 같은 언어 표현을 생각해보도록 안내한다. 10-15분가량의 개별 활동 시간을 제공한다.
- 모둠 구성원들과 활동 결과물을 공유하며,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모둠별 주요 내용을 발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30-35분가량의 모둠 활동 시간을 제공한다.
- 모둠별 결과물을 발표하도록 한다.

● Tips

- 본 활동은 참여자들 간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인권감수성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참여자들 간의 논의 시간을 최대한 제공하고, 그로 인해 활동 시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지에 적는 활동을 생략하고 발표만 진행하는 것으로 활동을 운영 할 수 있다.
-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소년사법제도에 있어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개념이다. 국제인권규범에서 제시하는 소년사법 연령 규준을 비롯하여 소년사법의 보호적 기능, 낙인 효과 예방 등의 내용들은 참여자들 간의 논의 끝에 우리가 지향해 가야 할 기준점들로 제시될 수 있다.
- 본 활동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소년사법제도와 소년들에게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찰하도록 안내한다. 참여자들은 평소 당연하게 혹은 무심코 사용했던 언어 표현들이 소년사법과 소년들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작은 생활 속 표현부터 법적 용어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언어 표현의 변화가 필요하며 중요함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때 특정 언어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근거는 관련 국제인권규범에 준거해야 하며, 보다 바람직한 표현으로의 변화 또한 관련 국제인권규범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7] 소년사법에서의 국제인권규범 (part2)

● 프로그램 목표

- 개인적 경험을 통해 소년사법에 대한 국제인권규범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한 국내 소년사법제도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 소요시간

- 2시간

● 교육방법

- 개인&모둠 활동형

● 기대효과

- 각기 다른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들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국제인권규범에서 제시하는 주요 개념들에 대한 현실적인 가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 세부 활동

연번	활동명	활동 목표	소요시간
1	Check the Dictionary	• 국제인권규범에서 제시하는 주요 개념들의 조작적 정의를 내려 본다. • 국제인권규범에서 제시하는 주요 개념들을 이해한다.	40분
2	1부터 10까지	• 국제인권규범의 주요 항목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해보고 논한다. • 국제인권규범의 중요성과 주요 항목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 국제인권규범에 관한 종사자들 간의 시각 차이를 경험하고 이해한다.	80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활동 7-1] Check the Dictionary

● 활동목표

- 국제인권규범에서 제시하는 주요 개념들의 조작적 정의를 내려 본다.
- 국제인권규범에서 제시하는 주요 개념들을 이해한다.

● 소요시간

- 40분

● 교육방법

- 개인 활동형, 강의

● 기대효과

- 국제인권규범에서 제시하는 주요 키워드들과 각각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과 의미를 활용 가능한 지식으로써 습득한다.
-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국내 소년사법제도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각을 형성한다.

● 준비물

- PPT 7
- 활동지 [Check the Dictionary] (인원수만큼)
- 필기구 (인원수만큼)

● 진행방법

- 1인당 1장의 활동지 [Check the Dictionary]를 나누어 준다.
- 국제인권규범에서 제시하는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개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자의 정의를 내리도록 안내하며, 10분가량의 개인 활동 시간을

제공한다.

- 각자 정리한 내용들을 모둠 내에서 공유하고 각기 다른 이해를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모둠 활동 시간을 10-15분가량 제공한다.

<활동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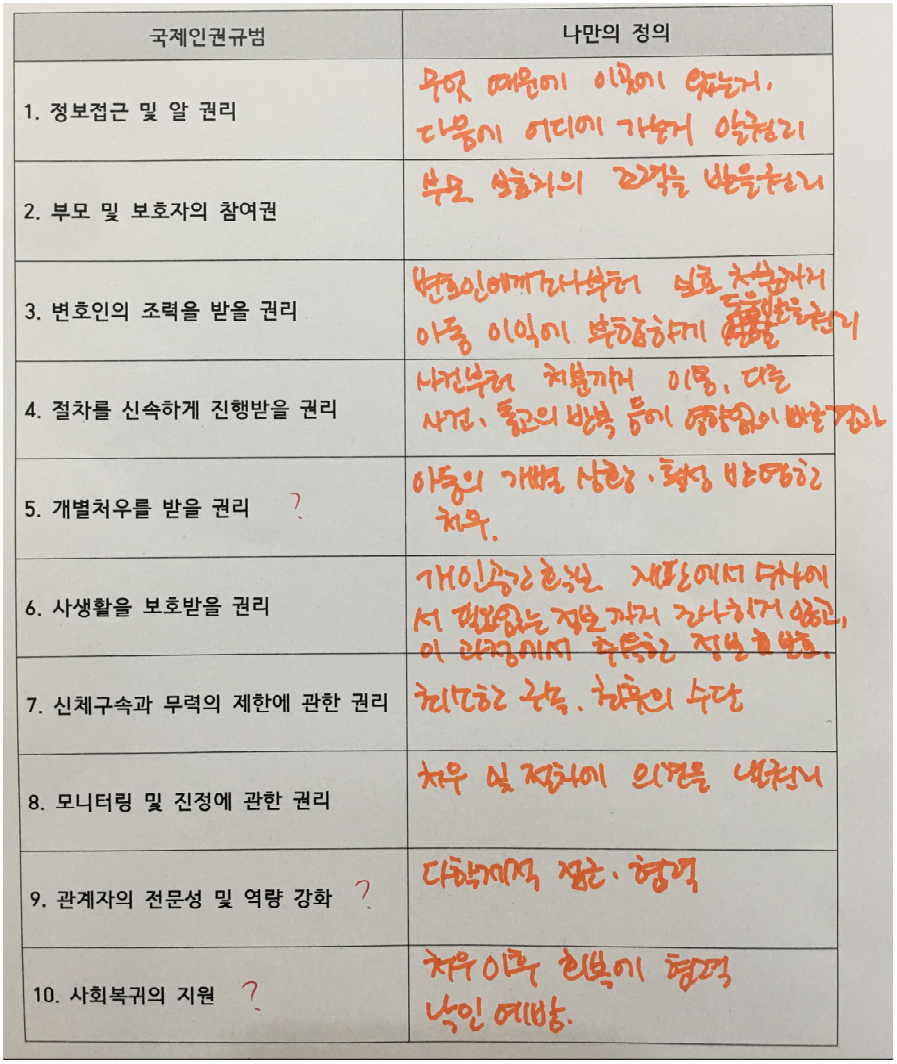

국제인권규범	나만의 정의
1. 정보접근 및 알 권리	무엇 때문에 이것이 있는지, 다음에 어디에 가서 알아보기
2. 부모 및 보호자의 참여권	부모 상호간의 교감을 받을수있다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에게 감사하다 의료 치료과정에 아동 이익이 확보하게 [illegible]
4.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받을 권리	사건부터 처벌까지 이동, 대질 사건, 통고의 반복 등이 영향없이 빨리진행
5.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	아동의 개별 상황, 특성 반영한 처우.
6.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개인정보 유출 제한에서 다수에서 필요한 정보까지 감추지 않고, 이 과정에서 추출한 정보 보호.
7.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처벌하고 구속, 처우의 수단
8. 모니터링 및 진정에 관한 권리	처우 및 지하에 의견을 내놓다
9.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다학제적 접근, 협력
10. 사회복귀의 지원 ?	처우이후 회복이 협력 나온 예방.

- 준비된 [PPT 7]을 보며, 국제인권규범의 주요 개념들에 관하여 설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 Tips

- 본 활동은 지식 및 정보를 전달하고자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활동인 만큼 진행자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습득하고 참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보고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의 [Ⅰ.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국제인권규범 / 1.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의 종류와 내용]을 참고 할 수 있다.
- 진행자는 설명을 제공하는데 있어 참여자들의 활동 결과물을 바탕으로 정보제공의 정도와 난이도를 조율 할 수 있으며, 활동에서 나온 참여자들의 문장이나 표현 방식을 고려·반영함으로써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

[활동 7-2] 1부터 10까지

● 활동목표

- 국제인권규범의 주요 항목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해보고 논한다.
- 국제인권규범의 중요성과 주요 항목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 국제인권규범에 관한 종사자들 간의 시각 차이를 경험하고 이해한다.

● 소요시간

- 80분

● 교육방법

- 개별&모둠 활동형

● 기대효과

- 각기 다른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들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국제인권규범에서 제시하는 주요 개념들에 대한 현실적인 가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 준비물

- PPT 7
- 활동 교구[1부터 10까지] (인원수+모둠수만큼)
- 스카치테잎 (모둠수만큼)

● 진행방법

- 1인당 1세트의 활동 교구[1부터 10까지]를 나누어 준다.
- 개별적으로 교구에 있는 국제인권규범의 항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나열해보도록 안내하며, 15분가량의 개인 활동 시간을 제공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 모둠 내에서 각자의 활동 결과물을 그 이유와 함께 공유하도록 한다.
- 모둠 내 구성원들 간의 공유를 마친 후에 논의와 합의를 통하여 우리 모둠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한다.
- 모둠별 활동 결과물을 화이트보드에 붙여 모둠 간 비교/대조를 한다.

<활동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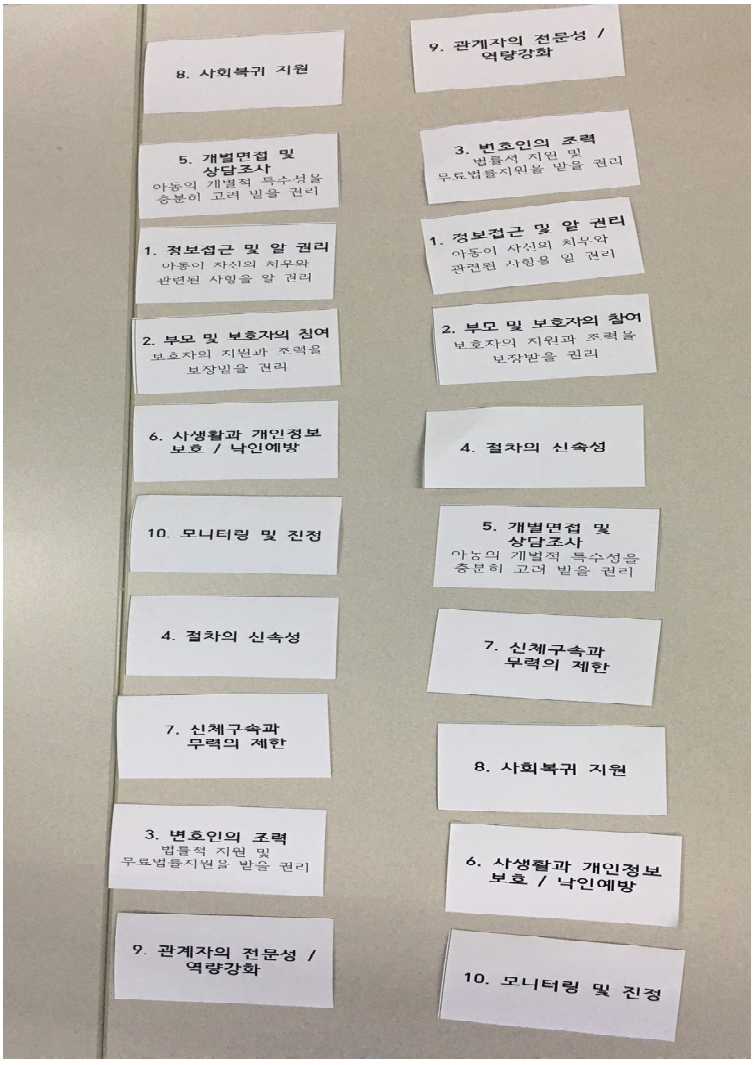

● Tips

-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 각 참여자들의 직업적 특성, 이제까지의 경험, 가치관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할 것이다. 참여자들로 하여금 각기 다른 생각과 관점을 존중하는 가운데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논의 과정에서 국내의 현재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문제의식, 평가와 분석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본 활동에서 이러한 논의들은 다음 활동에서 보다 활발히 깊이 있게 다뤄지게 될 것임을 참여자들과 공유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프로그램 8] 소년사법에서의 국제인권규범 (part3)

● 프로그램 목표

- 국내 소년사법제도의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고민한다.
-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하여 국내 소년사법제도의 발전 방향을 탐구한다.
- 소년사법제도에서의 아동인권 실현을 위해 다양한 의무이행자들의 구체적인 역할을 모색한다.

● 소요시간

- 2시간

● 교육방법

- 개별&모둠 활동형

● 기대효과

- 국제인권규범에 기반한 국내 소년사법제도의 현실 적용 가능한 발전 방향을 설계한다.
- 소년사법제도에서의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의무이행자 각각의 역할을 설정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세부 활동

연번	활동명	활동 목표	소요시간
1	5+1	• 국제인권규범에 준거하여 국내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논하고 분석한다. • 국제인권규범에 준거하여 국내 소년사법제도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설계한다.	120분

[활동 8-1] 5+1

● 활동목표

- 국제인권규범에 준거하여 국내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논하고 분석한다.
- 국제인권규범에 준거하여 국내 소년사법제도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설계한다.
-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소년사법제도가 발전하는데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탐색한다.
- 소년사법제도 하에 여러 종사자들 간의 협력 체계에 관하여 논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한다.

● 소요시간

- 120분

● 교육방법

- 개별&모둠 활동형

● 기대효과

- 아동인권의 시각으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킨다.
- 국제인권규범에 기반한 국내 소년사법제도의 현실 적용 가능한 발전 방향을 설계한다.
- 소년사법제도에서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나의 역할을 설정한다.
- 종사자들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설계한다.

● 준비물

- PPT 8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 활동지 [다섯 가지 질문] (인원수만큼)
- 활동지 [6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원수만큼)
- 전지 (모둠수x2)
- 매직set (모둠수만큼)
- 필기구 (인원수만큼)

● 진행방법

〈 5가지 질문 〉 (소요시간 80분)

- 1인당 1장의 활동지[다섯 가지]을 나누어 준다.
- 국제인권규범 항목 10가지 화면과 함께 개별적으로 현재 국내 소년사법제도에서 가장 문제시 되어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고민을 시작하도록 안내한다.
- 활동지에 제시되어 있는 5개의 질문에 따라 개별 활동을 수행하도록 15분가량의 시간을 제공한다.

<활동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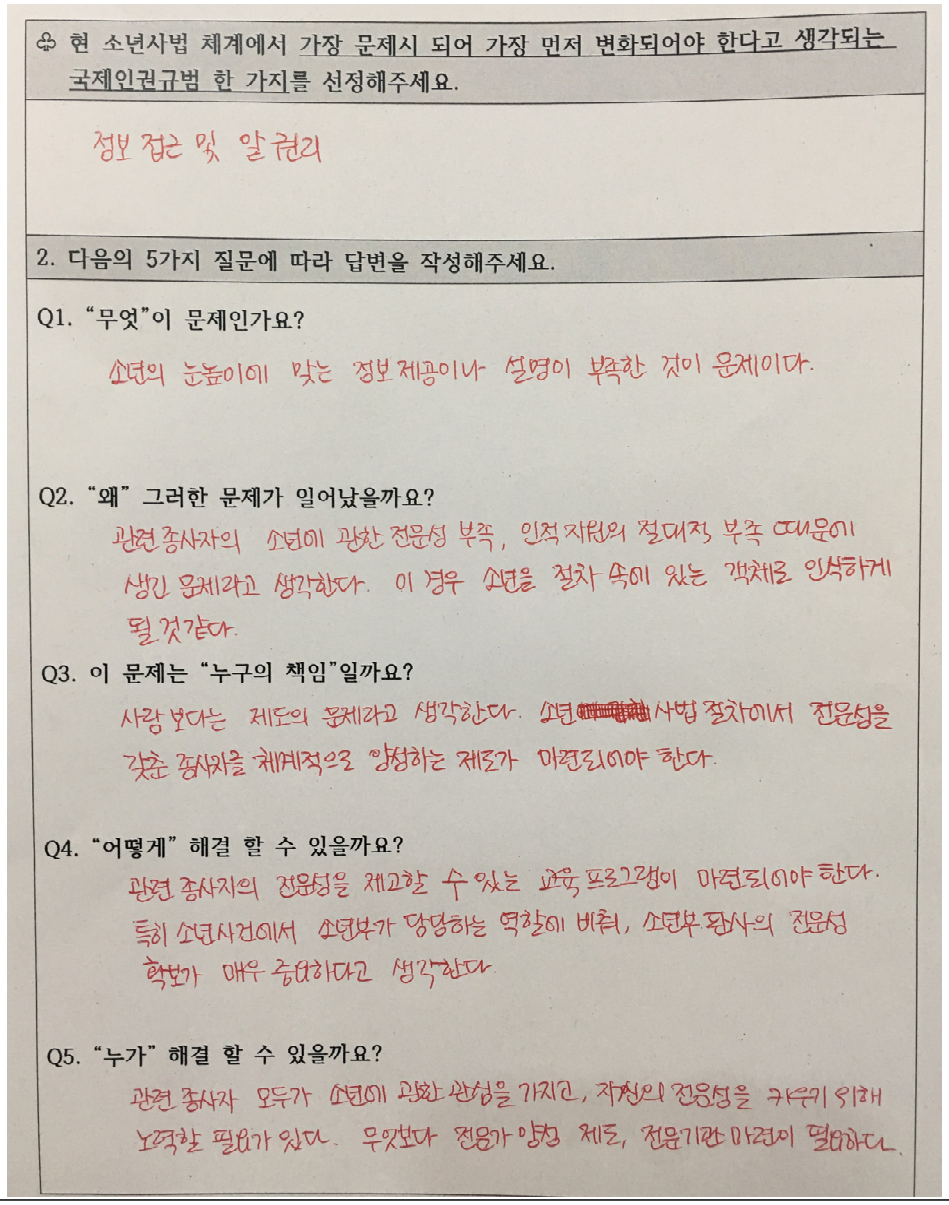

♧ 현 소년사법 체계에서 가장 문제시 되어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국제인권규범 한 가지를 선정해주세요.

정보 접근 및 알 권리

2. 다음의 5가지 질문에 따라 답변을 작성해주세요.

Q1. "무엇"이 문제인가요?

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이나 설명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Q2. "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관련 종사자의 소년에 관한 전문성 부족, 인적 지원의 절대적 부족 때문이 생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소년을 절차 속에 있는 객체로 인식하게 될 것같다.

Q3. 이 문제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사람 보다는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년[redacted]사법 절차에서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Q4.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소년사건에서 소년부가 담당하는 역할에 비춰, 소년부 판사의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5. "누가" 해결 할 수 있을까요?

관련 종사자 모두가 소년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전문가 양성 제도, 전문기관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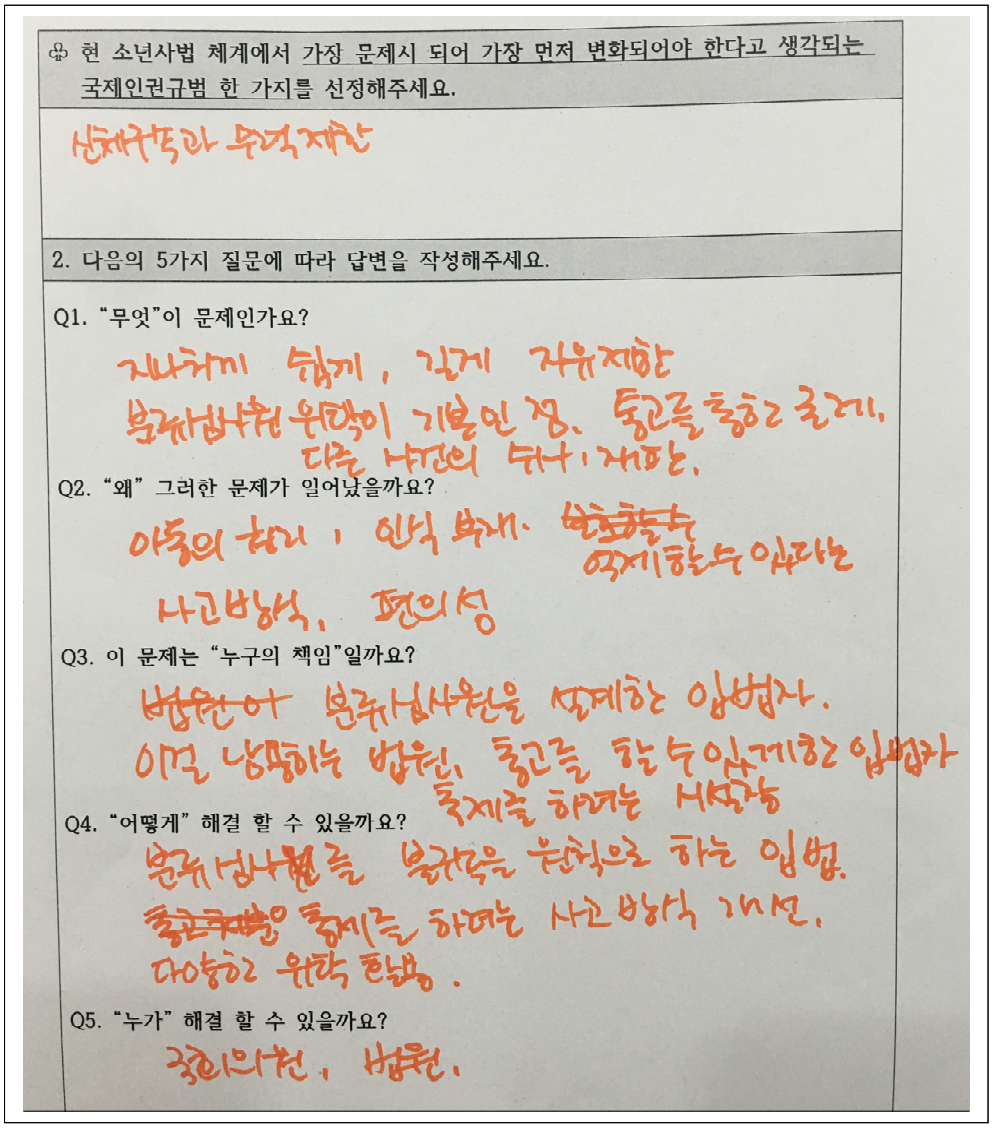

♧ 현 소년사법 체계에서 가장 문제시 되어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국제인권규범 한 가지를 선정해주세요.

신체구속과 무력제한

2. 다음의 5가지 질문에 따라 답변을 작성해주세요.

Q1. "무엇"이 문제인가요?

지나치게 쉽게, 길게 자유제한
보호관찰관 위탁이 기본인 점. 통고를 통한 조기,
다른 사건의 수사, 재판.

Q2. "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아동의 힘, 인식 부재. 범죄율보다
억제한다는 입장과
사고방식, 편의성

Q3. 이 문제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법원과 보호관찰관을 설계한 입법자.
이를 남용하는 법원, 통고를 할 수 있게한 입법과
집행을 하려는 사법부

Q4.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보호관찰관을 보호자를 우선으로 하는 입법.
통고제도의 집행을 하려는 사고방식 개선.
다양한 위탁 환경.

Q5. "누가" 해결 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법원.

- 활동지[다섯 가지 질문]의 개별 활동 결과물을 모둠 내에서 공유하며, 모둠 구성원들 간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모둠 내 의견을 정리하도록 한다. 35분가량의 모둠 활동 시간을 제공한다.
- 모둠 활동 결과물을 모둠별로 발표하도록 한다.

〈 +1 질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소요시간 40분)

- 1인당 1장의 활동지 [6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나누어 준다.
- 다섯 가지 질문에 관해 모둠별로 정리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에 관하여 고민하고 적어보도록 한다. 더불어 나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국제인권규범은 무엇인지 탐색하여 적도록 한다. 15분가량의 개인 활동 시간을 제공한다.

〈활동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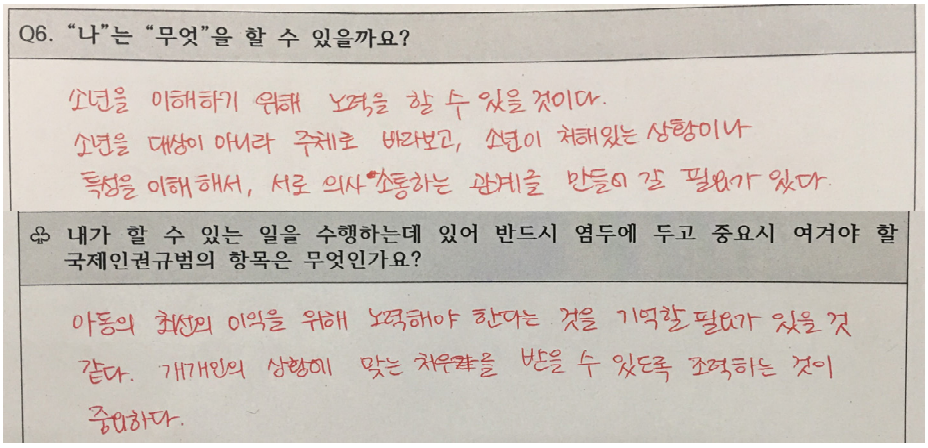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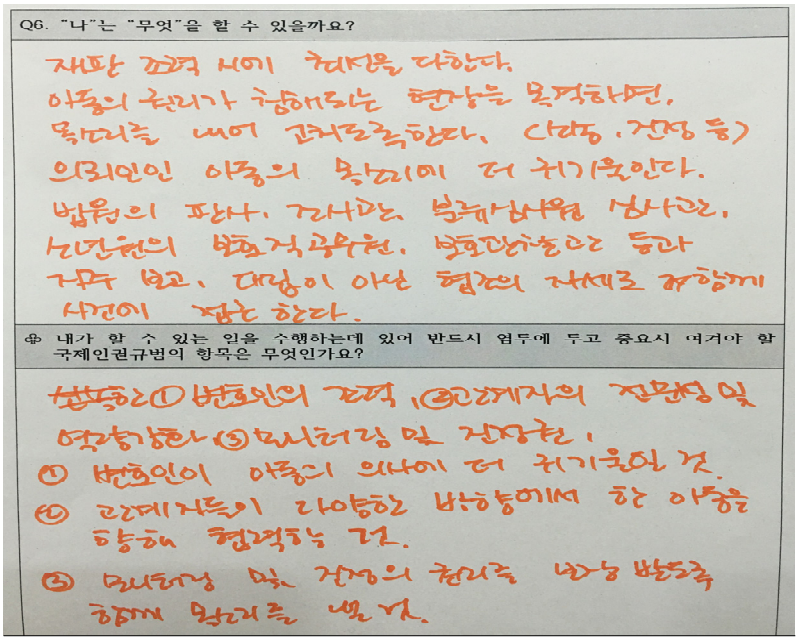

humanrights.go.kr KOR 국가인권위원회

- 개별 활동 결과물을 모둠 내에서 공유하도록 한다.
- 전체 참여자들과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 Tips

- 문제의식과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각기 다른 종사자들의 시각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충분한 논의 시간을 제공하여 종사자들 간의 시각 차이를 좁히고 '국내 소년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교육 시간에 따라 5가지의 질문들 중, [무엇이 문제일까?]에 관한 부분까지만 개별 활동으로 진행하고, 모둠별 토의를 통해 모둠에서 가장 문제시 되어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선정,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기술하고 나머지 4가지 질문은 모둠 활동으로 수행하도록 진행할 수 있다.
- 마지막 질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서 여러 가지 한계 상황들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도록 촉진한다.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수행하는 것이 제도의 변화만큼이나 중요함을 참여자들이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 나의 역할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사자들 모두의 역할이 상호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잘 수행되어야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종사자들 간 협력의 중요성으로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다. 더불어 이는 곧 소년사법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임을 전달 할 수 있다.
- 가장 문제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특정 국제규범과 그 특정 국제규범을 실현시키기 위한 의무이행자로서 중요시하게 여겨야 하는 국제규범은 동일 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인권은 상호유기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되어 잘 지키고자 선정한 특정 인권규범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관련 인권규범에 대한 지킴 또한 수반되어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에 대한 최종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

Ⅳ.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동지

활 동 지

☑ '아동'이란?
☑ '소년'이란?
☑ 내가 어렸을 때
☑ 내가 만난 소년
☑ 내가 만난 '멋진' 소년
☑ Chance or Crisis
☑ '소년사법'이란?
☑ Q&A
☑ 가치 키워드
☑ 가치와 역할
☑ 소년사법 체계도 만들기: 사례
☑ 소년사법 체계도 만들기: 단어 목록
☑ Self Dictionary
☑ Check the Dictionary
☑ 5가지 질문
☑ +1 질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활동지_'아동'이란?]

♧ '아동'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아동'에 관한 나의 생각을 단어 또는 문장으로 표현해 봅시다.

[활동지_'소년'이란?]

♧ '소년'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소년'에 관한 나의 생각을 단어 또는 문장으로 표현해 봅시다.

[활동지_내가 어렸을 때...]

♧ 우리는 크고 작은 시행착오들을 경험하며 성장합니다.
나의 유년시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사고 혹은 일탈경험은 무엇일까요?

[활동지_내가 만난 소년]

♧ 이제까지 소년사법 관련 경험을 하시면서 만난 아이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에 관해 이야기 해 주세요.

(1)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나요?
(2) 그 아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humanrights.go.kr KOR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지_내가 만난 '멋진' 소년]

♧ '내가 만난 소년'에서 소개한 소년의 강점과 약점을 생각해보고 적어주세요.

강 점	약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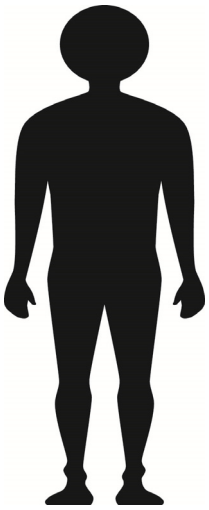

[활동지_Crisis or Ch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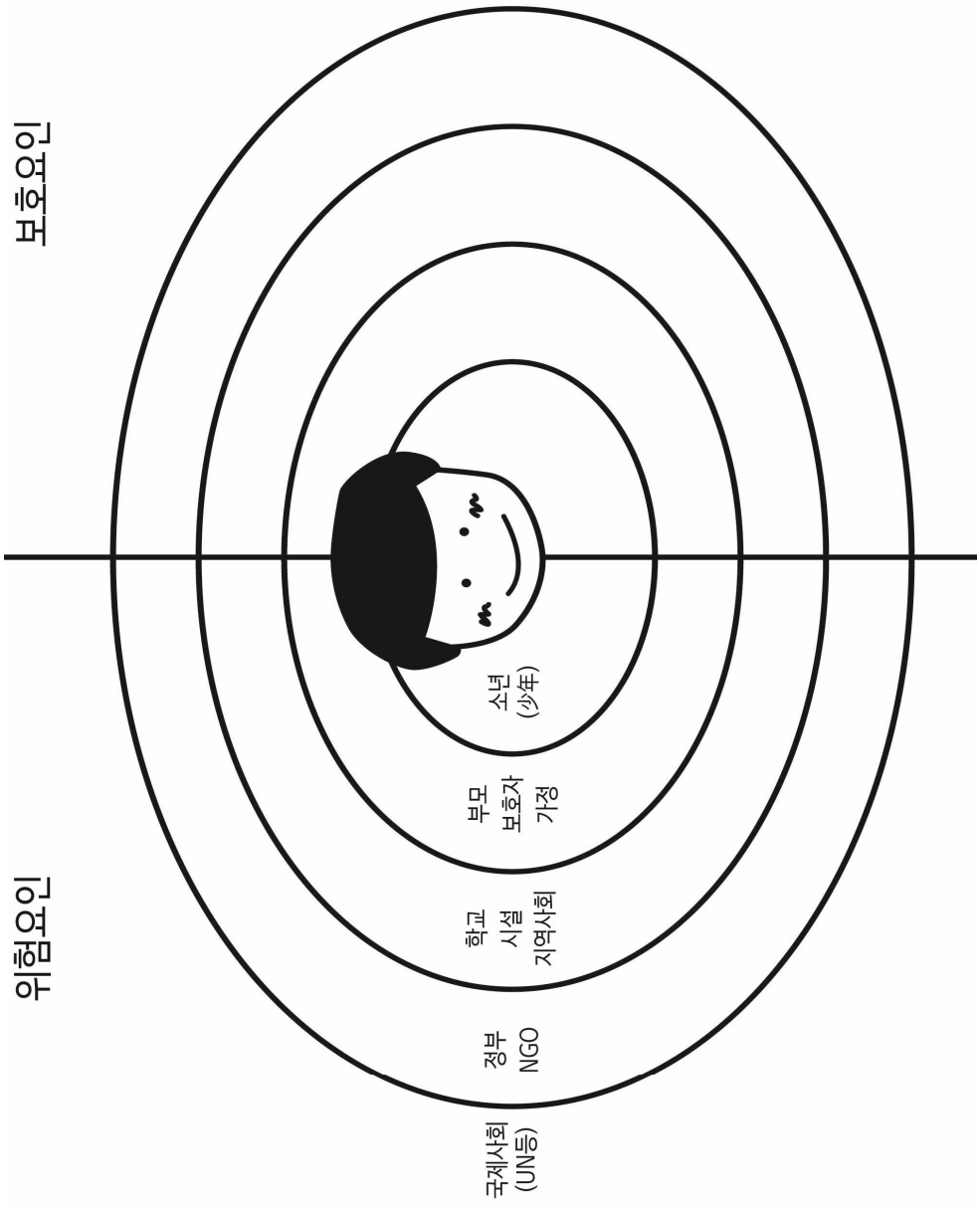

[활동지_'소년사법' 이란?]

♧ 내가 생각하는 [소년사법]이란 무엇인가요? 나만의 소년사법을 정의해주세요!

[활동지_Q&A]

♧ 다음은 연구보고서 「2018 아동 ·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에서 실시한 종사자 대상 설문지 문항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각 문항에 답변 후, 그렇게 답변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1) 귀하는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아동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의미와 절차 진행 전반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별로	보통	약간	매우	해당사항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⑥

▶ 위와 같이 답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귀하는 언론이나 대중으로부터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의 사생활을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별로	보통	약간	매우	해당사항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⑥

▶ 위와 같이 답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활동지_소년사법 체계도 만들기: 사례]

♧ 다음의 사례를 읽어주세요.

<사례 1>
17세, 여아 친생 부모의 이혼 부가 재혼한 가정에서 거주하다 가출 친구네 엄마 카드 절도하여 50만원 인출 *결과: 5, 6호 처분
<사례 2>
3세에 양육시설 입소 시설 내 갈등으로 양육시설 2회 이동 시설장의 통고로 재판, 소년분류심사원 3주 후 6호 시설 6호 시설 퇴소와 동시에 자립, 생활 기반 없음 음주 후 길거리에서 또래 집단과 시비 붙어 큰 소리로 다투던 중 동네 주민이 신고 (신체 폭력 발생하지 않았음) *결과: 5, 8호 처분

[활동지_소년사법 체계도 만들기: 단어 목록]

♧ 사례에 제시된 아동은 어떤 절차들을 경험하였을까요? 사례 속 아동이 경험하였을 소년사법 체계 내 절차들을 다음의 단어들을 활용하여 만들어주세요!

단어 목록
사 건
신 고
통 고
경 찰
검 사
소년부
형사법원
분류심사원
법원조사관
보호처분 (1~10호) (사례에 해당하는 보호처분 적어서 활용^^)
심리불개시
불처분
형 벌

[활동지_가치 키워드]

♧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가치 키워드를 적어주세요.

[활동지_가치와 역할]

♧ 모둠 구성원들과 아래의 질문에 따라 활동해주세요.

1)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들로서 우리 모둠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 키워드
2) 선정 이유
3) 가치 키워드에 기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4) 3)에서 제시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활동지_국내 소년사법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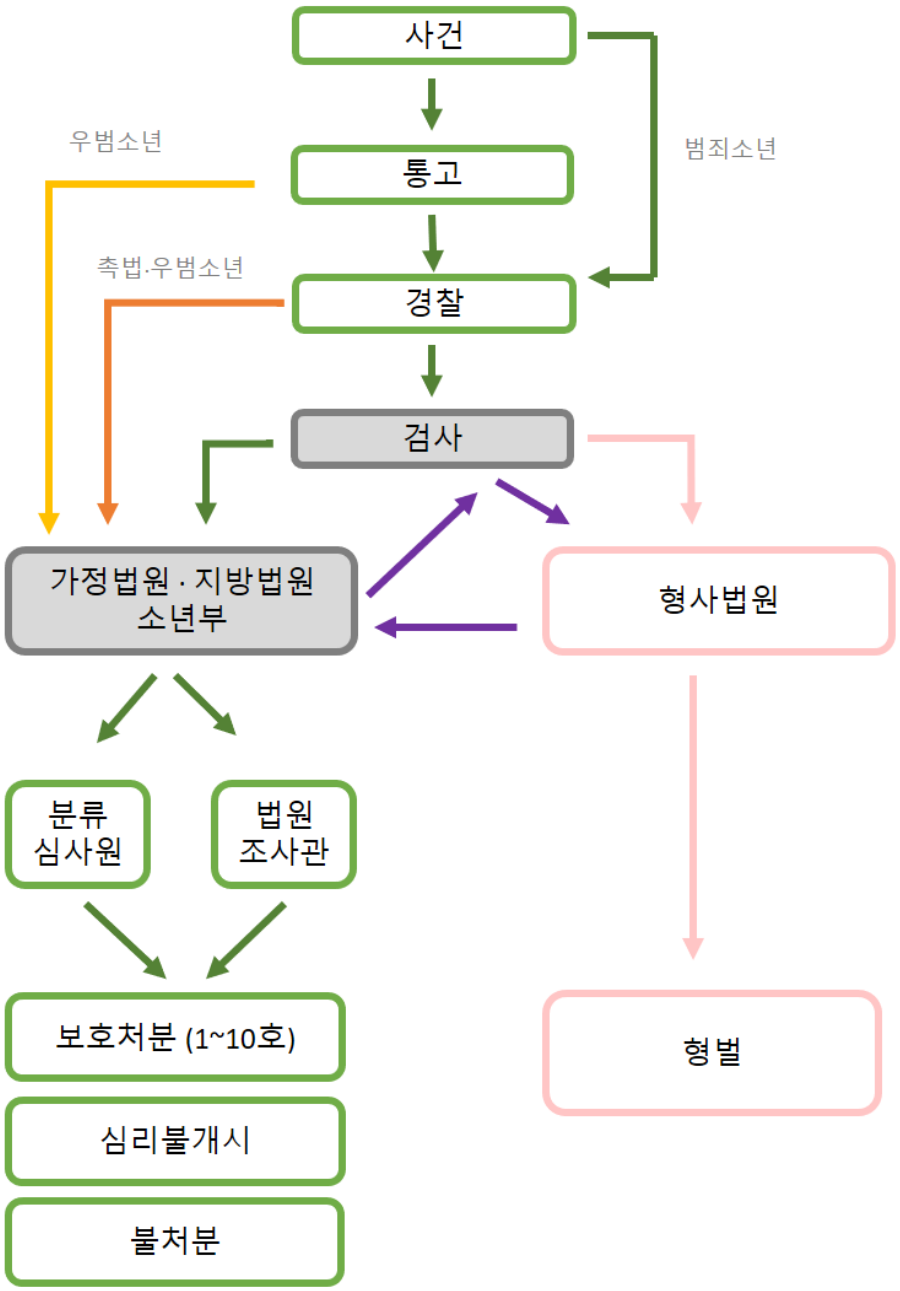

[활동지_우리들의 연결고리]

♧ 활동지 [국내 소년사법 체계도]를 살펴보며, 자신의 역할과 연관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혹은 사람 1, 2위를 적어주세요.

♣ 소년사법 체계 안에 있는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구성원이나 기타 조력자들이 있다면 그 분들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1위	1) 누구인가요? 2) 그 이유는? 3) 현재보다 발전적인 협력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위	1) 누구인가요? 2) 그 이유는? 3) 현재보다 발전적인 협력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활동지_Self Dictionary]

♧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정의를 적어주세요. 조금 더 나은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용어로 대체하여 표현할 수 있을지 또한 적어봅시다.

소년사법 관련 단어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의미	대안적 용어 적어보기
1. 촉법 소년		
2. 우범 소년		

♣ 언어 표현 하나가 바뀌면 그 언어와 연관된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느낌과 이미지 또한 바뀌는 것 같습니다. 혹, 현장에서 다른 용어를 쓰거나 표현이 바뀌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던 단어나 용어, 특정 표현 등이 있을까요? 있다면 아래의 표에 적어주세요!

소년사법 관련 단어	내포하고 있는 의미	대안적 용어 적어보기

[활동지_Check the Dictionary]

♣ 다음은 국제인권규범에서 제시하는 소년사법 체계의 주요 개념들입니다.
각각의 개념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정리하여 적어주세요.

국제인권규범	나만의 정의
1. 정보접근 및 알 권리	
2. 부모 및 보호자의 참여권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4.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받을 권리	
5.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6.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7.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8. 모니터링 및 진정에 관한 권리	
9.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10. 사회복귀의 지원	

[활동지_5가지 질문]

♧ 다음의 질문에 따라 답변을 작성해주세요.

♧ 현 소년사법 체계에서 **가장 문제시 되어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국제인권규범 한 가지**를 선정해주세요.
2. 다음의 5가지 질문에 따라 답변을 작성해주세요.
Q1. “무엇”이 문제인가요? Q2. “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Q3. 이 문제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Q4.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Q5. “누가” 해결 할 수 있을까요?

[활동지_+1 질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Q6.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염두에 두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국제인권규범의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Ⅴ.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동 교구

활동 교구

☑ Wants & Needs
☑ 유엔아동권리협약(제1조~제42조)
☑ 소년사법의 역사: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 1부터 10까지

[활동 교구_Wants&Needs][183]

영양가 있는 음식	집과 가족
적절한 의료혜택	혼자만의 침실
깨끗한 물	간 식
깨끗한 공기	자전거
차별로부터의 보호	텔레비전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휴대폰
교 육	컴퓨터
운동장과 놀이공간	최신 유행하는 옷
생각하고 말할 기회	휴가와 여행
종교	원하는 만큼의 돈

183) 본 활동 교구는 기본적으로 Wants&Needs에서 활동되는 단어들만을 제시한다. 제시된 단어들과 관련된 그림 자료를 첨부하는 등 교구는 진행자에 따라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Wants&Needs 교구는 국제아동인권센터(www.incrc.org) 등의 기관에서 구매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활동 교구_유엔아동권리협약(제1조~제42조)][184]

제1조.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평등하며 동등한 권리가 있다.
제2조. 아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3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제4조.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5조, 아동의 가족은 아동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제6조. 아동은 생존할 권리가 있다.
제7조. 아동은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제8조. 아동은 부모를 알 권리가 있으며,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제9~11조. 부모가 아동에게 해롭지 않는 한 아동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하며, 부모와 연락을 지속할 권리가 있다.
제12조. 아동은 아동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의견은 존중되고 고려되어야만 한다.
제13조. 아동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져야 하며, 아동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해롭지 않는 한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이야기 할 수 있다.
제14조. 아동은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제15조. 아동은 단체와 그룹에 가입할 수 있고 친구를 선택할 수 있다.
제16조. 아동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17조. 아동은 유해한 물질로부터 보호받아야만 한다.
제18조.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발달과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19조. 만약 아동이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고통 받는다면, 아동은 도움과 서비스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184) 본 활동 교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에서 제42조까지 조항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출처는 [2016 서울시 어린이 · 청소년 인권교육 자료집]으로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번역하였다. 진행자는 해당 조항 내용과 의미가 변질되지 않는 방식으로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및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카드 교구는 국제아동인권센터(www.incrc.org) 등의 기관에서 구매 가능하다.

제20-21조. 만약 아동이 가족과 살 수 없거나 위탁 보호 또는 입양이 된다면, 아동은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2조. 난민아동은 도움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가족과 재결합 할 권리가 있다.
제23조. 장애아동은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25조. 아동은 깨끗한 환경, 의료서비스, 안전한 물, 영양가 있는 음식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만약 아동이 보호시설에 있다면, 아동의 상황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한다.
제26-27조. 아동은 적절한 주거 수준과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8-29조. 아동은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와 존중 가치를 발달시킬 수 있는 질 좋은 초등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30조. 소수집단 도는 선주민 아동은 그들의 문화, 언어, 종교를 가질 권리가 있다.
제31조. 아동은 예술 활동과 문화를 접하고 놀이와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제32-33조. 아동은 불법 마약 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제34조. 아동은 포르노그래피 매체와 성매매를 포함한 성착취로부터 보호받고 도움 받을 권리가 있다.
제35-37조. 누구도 아동을 해치거나 또는 잔혹하게 벌주고, 팔거나 납치할 수 없다.
제38조. 16세 미만 아동은 절대로 군대에 입대해서는 안 되며, 전쟁지역에서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제39조. 착취, 고문, 무력분쟁의 피해자는 자존감 회복을 위해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40조. 범죄에 기소된 아동은 존엄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1조. 만약 국가의 법들이 이 협약의 조항들보다 아동을 잘 보호한다면, 그 법들은 유지되어야 한다.
제42조. 모든 아동과 성인은 본 협약의 권리들을 알아야 한다.

[활동 교구_소년사법의 역사: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일명 '**베이징규칙**')

-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최초의 국제인권규준
- 범죄를 행한 아동인 경우에도 발달하는 능력(evolving capacity 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그 가능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며, 소년의 인권 보장을 통한 사회복귀와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적 조치의 최저기준을 제시
- 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9개의 규칙을 선언 ① 소년사법의 기본이념과 목적, ② 규칙의 적용범위, ③ 지위비행과 갓 성년이 된 범죄자에 대한 확대 적용, ④ 형사책임의 최저연령, ⑤ 아동의 복리와 공정성 실현의 요청, ⑥ 종사자의 재량권 보장과 전문성 확보, ⑦ 절차적 기본권의 보장, ⑧ 낙인예방 및 사생활의 보호, ⑨ 다른 국제규범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최초의 아동인권 국제법
- 제37조 및 제40조에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제40조는 사회복귀와 재활이라는 소년사법제도의 이념과 함께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소년사법 절차 내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아동의 절차적 기본권의 중요성을 강조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인권보호에 관한 유엔규칙

(UN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일명 '**하바나규칙**')

-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을 보호하고 나아가 모든 종류의 구금으로 인한 유해한 결과를 방지할 목적으로, 신체의 자유 제한과 관련하여 유엔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
-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과는 별도로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만을 위한 특별한 규칙을 제정한 것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지침

(UN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일명 '**리야드 가이드라인**')

- 소년비행의 방지야말로 전체 사회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동을 사회화나 관리의 대상이 아닌 절차의 주체로 보아야 하며, 소년비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인격을 존중·향상시킴으로써 조화로운 사춘기의 성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형사사법체계에서 아동을 위한 비엔나 행동지침

(UN Guidelines for Action on Childre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유엔경제 및 사회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채택
-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 및 기타 국제규준의 이행방법을 제시하면서 각 당사국이 협약 및 관련 국제문서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
- 출생등록·형사책임능력·아동 중심적 관점 및 독립적 전문가의 검토 필요성·소년전문법원 및 별도의 소년보호절차·다이버전 등 대안적 조치·아동을 위한 법률지원 프로그램의 신설·시설 외 처우 중심의 원칙과 구금최소화의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채택 일반논평 제10호

(General Comment No. 10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소년사법제도를 협약에 맞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및 제40조와 함께 제2조(비차별), 제3조(아동 최상의 이익), 제6조(생명·생존 및 발달) 및 제12조(아동참여와 의견존중) 등이 더불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
- 특히 소년사법제도가 협약의 정신에 따라 운영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6가지 핵심요소(비행예방, 개입/다이버전, 형사책임 최저연령, 공정한 재판 보장, 조치, 미결구금과 기결수감 등 자유박탈)를 확인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식제고와 교육,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평가·연구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권고

유엔사무총장 안내 지침 : 아동을 위한 사법체계에 관한 유엔의 접근방식

(Guidance Note of the Secretary-General : UN Approach to Justice for Children)

- 아동은 소년사법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 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자·증인 등 사법절차와 관련된 모든 아동을 의미하는바, 본 지침이 사법제도 전반에서 모든 아동들에게 국제 규범과 기준이 완전히 적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재 또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위한 유럽 규칙에 관한 각료 위원회 권고

(Recommendation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the European Rules for juvenile offenders subject to sanctions or measures)

- 제재 또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년의 권리와 안전의 보호 및 신체구속, 그리고 소년사법 대상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적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EU 각 회원국 정부에 대하여 ① 소년사법제도가 본 권고의 부록에 포함된 규칙(Rules)에 따라 입법, 정책 입안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및 ② 본 권고와 그에 따른 해설이 자국어로 번역되어 사법당국, 수사기관, 소년범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집행 기관, 소년범 수용기관, 복지시설, 정신건강기관 및 언론과 일반대중에 광범위하게 보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유럽평의회 각료회의 아동친화적 사법체계에 대한 지침

(Guidelines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on a Child-Friendly Justice)

- 유엔사무총장 안내지침을 반영하여 민사·형사·행정 등 모든 사법절차 내에서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인권과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① 참여, ② 아동의 최상의 이익, ③ 존엄성, ④ 비차별 및 ⑤ 법치주의라는 5가지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정보제공·사생활과 가족생활의 보호·안전·전문가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다학제적 접근·자유의 박탈과 관련된 각 영역에서 아동인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

형사절차에서 범죄혐의를 받거나 기소된 아동의 절차적 보호를 위한 EU 지침

(Directive on Procedural Safeguards for Children Who Are Suspects or Accused Persons in Criminal Proceedings)

- 아동에게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을 성년자와 동일한 정도로 보장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동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다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특히 아동에게 알 권리와 변호사 조력권을 강력하게 보장하였다는 중요성이 있음

[활동 교구_1부터 10까지]

1. 정보접근 및 알 권리 아동이 자신의 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권리	**2.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적절한 시기에 보호자의 지원과 조력을 보장받을 권리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유롭게 변호사와 접촉하고, 법률상담에 대한 비밀보장 및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권리	**4.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받을 권리** 신속한 수사와 재판 보장 및 이송에 따른 재판 지연 방지
5.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아동의 개별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처분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	**6.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절차의 비공개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및 낙인예방
7.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자유박탈 조치의 보충성과 최소성, 자유박탈 아동의 권리보장 및 교육과 사회복귀 지원	**8. 모니터링 및 진정에 관한 권리**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신뢰성 제고 및 진정제도와 아동의 접근 가능성
9.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적 접근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10. 사회복귀 지원** 교육적 · 사회적 · 경제적 모든 측면에서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받을 권리 및 낙인예방을 위한 조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참고문헌

1. 단행본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박영사, 2018

『2018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18

2. 논문

김경태, “소년사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경찰학논총 제12권제4호(2017)

김지혜, “가출의 비범죄화 – 소년법상 가출규정과 가정밖 청소년의 인권-”, 소년보호연구 제23호(2013)

류병관, “최근 미국소년사법의 현황과 전망”, 소년보호연구 제28권 2호(2015)

박광현, “소년사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경상대학교) 제24권4호(2016)

박호현/김종효, “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소년사법의 보호이념 강화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78호(2018)

윤웅장, “소년사법절차에서 신속성의 문제와 개선방안”, 보호관찰 제17권제2호(2017)

이승현, “영국 소년사법제도의 최근 동향”, 소년보호연구 제18호(2012)

이승현, “소년사법에서 국제기준의 국내이행방안”, 교정담론 제11권 제3호(2017)

이영근, “한국 소년사법제도의 발전방안”,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4호(2015)

이은영, “소년사법제도의 엄벌화 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정복지연구 제42권(2016)

정경수, “국제법상 연성법의 재인식”, 안암법학 제34권 하(2011)

정희철, “소년사법 개선 및 소년법 개정 논의의 쟁점과 평가”, 보호관찰 제17권 제2호(2017)

최병문, “한국의 소년사법과 국제준칙,”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2호(2008)

현소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소년사법 제도”, 가족법연구 제30권 2호(2016)

홍관표, “소년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저스티스 통권 제161호(2017)

3. 연구용역보고서

김은경/김지선/이승현/김성언/원혜욱/이호중,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Ⅰ) -제Ⅲ부 대안의 모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박준휘 외 30명,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오영근, “소년사법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방안”,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2

정재준/원혜욱,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소년보호기관의 역할확대 및 강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최병각,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2007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7

황지태/김지영/원혜욱/김지연,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4. 자료집

국제아동인권센터, 『보건복지부 위탁 아동인권증진사업 2017 아동권리인식도조사 자료집』, 보건복지부(2017)

김철호,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과 역할 강화”, 『소년범죄 감소를 위한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5

이승현, “소년 강력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실천적 대응 방안”, 『소년 강력범죄 대책과 입법 개선 방안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2017)

〈판례 및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미성년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방어권 침해’ 결정(17-진정-0330600)

국가인권위원회 ‘미성년 피의자 부당조사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10-진정-00161100)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의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조사’ 결정(11-진정-0696500),

국가인권위원회 ‘불법체포 등 인권침해’ 결정(13-진정-0035600)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24.자 결정,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87 판결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S.C. v. the United Kingdom(No. 60958/00).

유럽인권법원의 2011. 2. 3.자 DUSHKA v. UKRAINE 판결(No. 29175/04)

S.C. v. the United Kingdom(No. 60958/00).

유럽인권법원의 2011. 2. 3.자 DUSHKA v. UKRAINE 판결(No. 29175/04).

Salduz v. Turkey(No. 36391/02).

〈유엔 문서〉

A/RES/40/33.

A/RES/45/112.

A/RES/45/113.

CRC/C/GC/10.

CM/Rec(2008) 11.

CRC/C/KOR/CO/3-4.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1997/30.

〈외국 문헌〉

Directive 2016/80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Jenneke Christiaens, "A History of Belgium's Child Protection Act of 1912: The Redefinition of the Juvenile Offender and His Punishment", European Journal of Crime, Criminal Law & Criminal Justice, 1999, Vol.7 Issue 1

Steven Cras, "The Directive on Procedural Safeguards for Children who Are Suspects or Accused Persons in Criminal Proceedings: Genesis and Descriptive Comments Relating to Selected Articles", eucrim 2/2016

Andrea Păroşanu/Ineke Pruin/Joanna Grzywa-Holten/Philip Horsfield, Alternatives To Custody For Young Offenders And The Influence Of Foster Care In European Juvenile Justice, 2014

Johan Put/Inge Vanfraechem/Lode Walgrave, "Restorative Dimensions in Belgian Youth Justice", Youth Justice, August 2012, Vol.12 Issue 2

Study on Children's involvement in judicial proceedings: Contextual overview for the criminal justice phase - Belgium, European Commission, 2014

〈인터넷 자료〉

'유엔사무총장 안내 지침: 아동을 위한 사법체계에 관한 유엔의 접근방식(2008)': https://www.un.org/ruleoflaw/files/RoL_Guidance_Note_UN_Approach_Justice_for_Children_FINAL.pdf(최종방문: 2018. 10. 22.).

Fact Sheet No.10 (Rev.1), The Rights of the Child(1993): https://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FactSheet10rev.1en.pdf(최종방문: 2018. 11. 22.).

'유럽평의회 각료회의 아동친화적 사법체계에 대한 지침(2010)': https://rm.coe.int/16804b2cf3(최종방문: 2018. 10. 22.).

'벨기에의 국제아동옹호팀, 2018 나의 변호사·나의 권리 프로젝트': http://www.mylawyermyrights.eu/partners/(최종방문: 2018. 10. 22.).

General Comment No. 24 (201x), replacing General Comment No. 10 (2007)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https://www.ohchr.org/Documents/HRBodies/CRC/GC24/GeneralComment24.pdf(최종방문: 2018. 11. 27.).

https://efus.eu/en/policies/national/belgium/public/902/(최종방문: 2018. 10. 22.).

YTN 2018. 1. 23.자 보도, "[단독] 소년원 10대 이번엔 실명...외부진료 요청 외면", http://www.ytn.co.kr/_ln/0103_201801230509341129(최종방문: 2018. 10. 23.).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별첨자료

[별첨1] 아동의 권리 기준 소년사법 국제인권규범 분류표

[별첨2] 아동 면접조사 조사지

[별첨3] 종사자 설문조사 조사지

[별첨4] 종사자 면접조사 조사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별첨1] 아동의 권리 기준 소년사법 국제인권규범 분류표

소년사법 관련 국제또는 지역규범 연성법		아동의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정보접근 및 알권리		청취되어야 할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아동의 최선의 이익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변호사 접근/ 조력권	비밀 보장의 권리	무료 법률 구조 접근권	정보 및 조언을 받을 권리	아동 친화적 방식의 정보 제공	청취 되어야 할 권리/ 참여권	절차적 안전 보장 : 아동 친화적인 면접 및 환경	통번역 권리	사생활 및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비공개 진행의 실행	아동 최선의 이익의 고려	수요의 개별적 평가	무기한 지체 방지 (신속한 재판)	최후의 수단으로 자유의 박탈 제한	다학제적 접근 채용의 요구	전문가훈련 및 역량 강화
국제 규범	베이징규칙	규정 7.1, 15.1		규정 15.1	규정 7		규정 14.2	규정 14.2		규정 8		규정14.2, 15.2, 17.1 (d), 24.1	규정 16.1 (사회조사보고)	규정 20	규정 11, 13.1, 18.1, 19	규정 25	규정 12.1, 22
	리야드지침				IV. 사회화 절차 - B.교육-가이드라인 23											VII. 연구, 정책 개발과 협력 - 가이드라인 60-63	VI. 입법과 소년사법행정 -가이드라인58
	법률가의 역할에 대한 유엔기본원칙	법률가 및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 (1-4) 형사사법 문제에서 특별한 안전장치 (6,7)	형사사법문제에서 특별한 안정장치(8) 법률가역할의 보장(16b,22)	형사사법문제에서 특별한 안정장치(6)	형사사법문제에서 특별한 안정장치(5)												자격 요건 및 훈련 (9-11) 법률 전문가 단체 (24)
	하바나규칙	규정 18(a)	규정 18(a), 60	규정 18(a)				규정 31-32					규정27			규정81, 84	규정 85
	형사사법체계에서 아동에 대한 유엔 행동지침	가이드라인 16		가이드라인 16					가이드라인 16						가이드라인 15, 18		가이드라인 24

소년사법 관련 국제또는 지역규범 연성법	아동의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정보접근 및 알권리		청취되어야 할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아동의 최선의 이익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변호사 접근/ 조력권	비밀 보장의 권리	무료 법률 구조 접근권	정보 및 조언을 받을 권리	아동 친화적 방식의 정보 제공	청취 되어야 할 권리/ 참여권	절차적 안전 보장 : 아동 친화적인 면접 및 환경	통번역 권리	사생활 및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비공개 진행의 실행	아동 최선의 이익의 고려	수요의 개별적 평가	무기한 지체 방지 (신속한 재판)	최후의 수단으로 자유의 박탈 제한	다학제적 접근 채용의 요구	전문가훈련 및 역량 강화
CRC 일반논평 제10호와 제20호	제10호 (49-50, 52, 58, 82) 제12호(36,37,59)	제10호 (50)		제10호 (12, 47-48. 59) 제12호 (41,45,60.80.134a, b,h,i)	제12호 (60. 82. 134a)	제10호 (43-46) 제12호15,16,18,19-31,32-33 (아동에게 영향을주는 모든 사법 행정 절차에서 청치되어야할 권리) 57-58 (제재적재판 절차에서청치되어야할권리)	제10호 (46) 제12호 (34,42,60,134e)	제10호 (47, 62)	제10호 (64, 67)	제12호 (43,61)	제10호 (10, 13) 제12호 (70-74)		제10호(51-52)	제10호 (24-27. 68-69. 79-80) 제12호 (59,97)		제10호 (40, 49, 58, 62, 63, 92, 97) 제12호 (134g)
형사사법체계에서 법률조력 접근권에 대한 유엔 원칙과 지침	지침10. 아동을 위한 특별 조치 (53 a, b, c)	원칙 12 법률조력 제공자의 독립과 보호 지침10. 아동을 위한 특별 조치 (53d)	원칙 1 법률 조력권 원칙2 국가의 책임 원칙3 형사 기소 되거나 혐의가있는 사람을 위한 법률 조력 원칙6 비차별 원칙7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조력 제공	원칙 8 통지받을 권리 지침2 법률 조력에 관해 통지 받을 권리 지침100아동을 위한 특별 조치 (53e)	지침10. 아동을 위한 특별 조치 (53 e)		지침10. 아동을 위한 특별 조치 (53, h)		지침10. 아동을 위한 특별 조치 (54)		원칙 11. 아동 최선의 이익인 법률 조력 지침10.아동을위한 특별 조치 (53b,c)			지침10. 아동을 위한 특별 조치 (53 f,g)	원칙 11. 아동 최선의 이익인 법률 조력 (35)	원칙 13. 법률 조력 제공자의 권한과 의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소년사법 관련 국제또는 지역규범 연성법	아동의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정보접근 및 알권리		청취되어야 할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아동의 최선의 이익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변호사 접근/ 조력권	비밀 보장의 권리	무료 법률 구조 접근권	정보 및 조언을 받을 권리	아동 친화적 방식의 정보 제공	청취 되어야 할 권리/ 참여권	절차적 안전 보장 : 아동 친화적인 면접 및 환경	통번역 권리	사생활 및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비공개 진행의 실행	아동 최선의 이익의 고려	수요의 개별적 평가	무기한 지체 방지 (신속한 재판)	최후의 수단으로 자유의 박탈 제한	다학제적 접근 채용의 요구	전문가훈련 및 역량 강화
			원칙10 법률 조력 접근의 평등 원칙11 아동 최선의 이익인 법률 조력 자침1 법률 조력의제공 (41c) 자침3형사 기소 되거나 고발 되거나 혐의가있거나 체포 되거나구금된 자의 기타 권리 자침4 재판 전 단계에서 법률 조력 자침5 재판 절차에서 법률 조력 자침6. 재판 후 단계에서 법률 조력													

소년사법 관련 국제또는 지역규범 연성법			아동의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정보접근 및 알권리		청취되어야 할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아동의 최선의 이익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변호사 접근/ 조력권	비밀 보장의 권리	무료 법률 구조 접근권	정보 및 조언을 받을 권리	아동 친화적 방식의 정보 제공	청취 되어야 할 권리/ 참여권	절차적 안전 보장 : 아동 친화적인 면접 및 환경	통번역 권리	사생활 및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비공개 진행의 실행	아동 최선의 이익의 고려	수요의 개별적 평가	무기한 지체 방지 (신속한 재판)	최후의 수단으로 자유의 박탈 제한	다학제적 접근 채용의 요구	전문가훈련 및 역량 강화
지역규범	유럽회의	아동친화적 사법에 대한 유럽회의 장관의 지침	C. 아동과 경찰 (28, 30) D. 재판 절차에서 아동친화적인 사법 2.법률상담및 대리 (37,40-43) E. 재판 절차 이후 아동 친화적인 사법 (81) 참고 자료-2.법률 상담 및 대리 (101-105)		D. 재판 절차에서 아동 친화적인 사법 2.법률상담 및 대리 (38) 참고 자료-2.법률 상담및대리 (102)	A. 아동 친화적 사법의 일반 요소 1.정보와 조언 (1,3-5) C. 아동과경찰 (28) D. 재판 절차에서 아동친화적인 사법 2.법률상담및 대리 (41) E. 재판 절차 이후 아동 친화적인사법 (75,77,80) 참고 자료- A. 아동친화적 사법의일반 요소 1. 정보와조언 (50-56)	A. 아동친화적 사법의 일반 요소 1. 정보와조언(2) C.아동과 경찰 (28) D. 재판 절차에서 아동 친화적인 사법 3.청취되어야 할 권리와 의견 표현의 권리 (44) E. 재판 절차 이후 아동 친화적인사법 (75)	A. 참여 (1-2) D.재판절차에서아동친화적인사법 3.청취되어야 할권리와의견 표현의권리(44-49) 참고자료- A.참여(32-35) 참고자료- 3.청취되어야 할권리와의견 표현의권리(106-117)	D. 재판 절차에서 아동 친화적인 사법- 5.아동친화적인 환경과 아동친화적인 언어의 소송 기관 (54-63) D. 재판 절차에서아동 친화적 인사법- 6. 아동의 진술/ 증거 (64,66-68,70,71) 참고 자료- 5. 아동 친화적인환경과 아동 친화적인 언어의 소송 기관 (121-125) 참고 자료- 6. 아동의 진술/ 증거 (127-133)	A. 아동 친화적 사법의 일반 요소 1.정보와 조언 (1k)	A. 아동 친화적 사법의 일반 요소 1. 사생활 및 가족 생활의보호 (6-10) E. 재판 절차 이후 아동 친화적인 사법 (83) 참고 자료- A. 아동 친화적사법의 일반 요소 2. 사생활 및 가족 생활의보호 (57-62)	참고 자료 - A. 아동친화적 사법의일반 요소 2. 사생활 및 가족 생활의보호 (58)	B. 아동의 최선의 이익 (1-4) A.아동친화적 사법의일반 요소 - 6. 자유의 박탈 (20-21) 참고 자료- B. 아동의 최선의 이익 (36-38) 참고 자료- 2.법률상담과 대리 (104)		D. 재판 절차에서 아동 친화적인 사법- 4.무기한연기의 방지 (50-53) 참고 자료- 4.무기한 연기의방지 (118-120)	A. 아동 친화적 사법의 일반 요소 - 6. 자유의박탈 (19) B. 재판 절차전의 아동 친화적사법 (24-26) 참고 자료- 6. 자요의박탈 (74)	A. 아동 친화적 사법의 일반 요소 - 5.다학제적접근 (16-18) 참고 자료- 5. 다학제적 접근 (70-72)	A. 아동 친화적 사법의 일반 요소 - 4. 전문가 훈련 (14-15) D. 재판 절차에서 아동 친화적인사법 2. 법률 상담과 대리 (39) 참고 자료- 2.법률상담과 대리 (104) 참고 자료- 4. 전문가훈련 (67-69)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소년사법 관련 국제또는 지역규범 연성법		아동의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정보접근 및 알권리		청취되어야 할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아동의 최선의 이익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변호사 접근/ 조력권	비밀 보장의 권리	무료 법률 구조 접근권	정보 및 조언을 받을 권리	아동 친화적 방식의 정보 제공	청취 되어야 할 권리/ 참여권	절차적 안전 보장 : 아동 친화적인 면접 및 환경	통번역 권리	사생활 및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비공개 진행의 실행	아동 최선의 이익의 고려	수요의 개별적 평가	무기한 지체 방지 (신속한 재판)	최후의 수단으로 자유의 박탈 제한	다학제적 접근 채용의 요구	전문가훈련 및 역량 강화
	자유에 기인하한 청소년에 대한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또는 처벌규정의 방지를 위한 유럽 위원회	2. 경찰에 체포된 청소년(포인트 98 : 자유박탈개시 및 경찰조사 동안 법률가 접근) 3.청소년보호기관(포인트131:불만에대한법률상담)		3. 청소년 보호기관 (포인트 131)	2. 경찰에 체포된 청소년(포인트 98 : 정보표는 경찰에 체포된 모든 청소년에게 그들의 도착과 동시에 바로 주어져야 함)	2.경찰에 체포된 청소년(포인트 98 : 정보표는 아동 친화적이어야 함)						2. 경찰에 체포된 청소년(포인트 99: 경찰에 체포된 청소년은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에서 어른과 분리되어 수용되어야 함)					2. 경찰에 체포된 청소년 (포인트 100 : 청소년 관련 업무 공무원의 특별, 최초 그리고 계속적 훈련의 법적 강제) 3.청소년보호기관 (포인트101과 120:직원은 청소년을대처하는훈련을 받아야함)
	제재 또는 처분으 대상이 되는 청소년 범법자를 위한 유럽 규칙	규칙120.1	규칙120.2	규칙120.3			규칙13			규칙 16		규칙 5, 14			규칙10, 12	규칙15	규칙 18
유럽	형사절차의 협의가 있거나 고발된 취약한 자를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에 대한 유럽 위원회의 권고	제3절 - 취약한 사람의 권리 : 정보권 (9,10) 변호사접근권 (11)			제3절 - 취약한 사람의 권리 : 정보권 (8-9)			제3절 - 취약한 사람의 권리 : 조사의 기록 (13)		제3절 - 취약한 사람의 권리 : 사생활 (15)					제3절 - 취약한 사람의 권리 : 자유의 박탈 (14)		제3절 - 취약한 사람의 권리 : 훈련(17)

소년사법 관련 국제또는 지역규범 연성법	아동의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정보접근 및 알권리		청취되어야 할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아동의 최선의 이익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변호사 접근/ 조력권	비밀 보장의 권리	무료 법률 구조 접근권	정보 및 조언을 받을 권리	아동 친화적 방식의 정보 제공	청취 되어야 할 권리/ 참여권	절차적 안전 보장 : 아동 친화적인 면접 및 환경	통번역 권리	사생활 및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비공개 진행의 실행	아동 최선의 이익의 고려	수요의 개별적 평가	무기한 지체 방지 (신속한 재판)	최후의 수단으로 자유의 박탈 제한	다학제적 접근 채용의 요구	전문가훈련 및 역량 강화
형사절차의 협의가 있거나 고발된 자를 위한 법률 조력권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권고	제3절 - 효과적이고 양질인 법률조력 (17-20, 25)		제2절 - 법률조력의 접근 (3, 4+6 아동을 위한 법률조력) 제3절-효과적이고양질인법률조력(26)	제2절 - 법률 조력의 접근 (5)												제3절 - 효과적이고 양질의 법률 지원 : 훈련 (21-23)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소년사법 관련 국제또는 지역규범 경성법			아동의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정보접근 및 알 권리		청취되어야 할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아동의 최선의 이익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변호사 접근/ 조력권	비밀보장의 권리	무료 법률구조 접근권	정보 및 조언을 받을 권리	아동친화적 방식의 정보제공	청취되어야 할 권리/ 참여권	절차적 안전 보장 : 아동친화적인 면접 및 환경	통번역 권리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비공개 진행의 실행	아동 최선의 이익의 고려	수요의 개별적 평가	부당한 지체 방지 (신속한 재판)	최후의 수단으로 자유의 박탈 제한	다학제적 접근 채용의 요구	전문가훈련 및 역량 강화
국제 규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자유권규약)		14조 3(d)		14조 3(d)	9조 2, 14조3(a)		14조 3(d)		14조 3(f)		14조 1	10조 3, 14조4, 24조1		10조 2(b)			
	아동권리협약		37조 (d) 40조(2) (ii,iii)			40조 (2) (ii)		12조	40조 3	40조(2) (vi)	16조 40조 (2) (vii)		3조 37조(c) 40조	37조(c)		37조(b) 40조3(b) 40조4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조 3조2					
	유럽 회의	유럽 인권 조약	6조 3(c)		6조 3(c)	5조 2 6조3(a)				6조 3(e)		6조 1						
		유럽 사회권헌장											17조					
	유럽 연합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47조 2 48조2		47조 3			24조 1					24조 2		47조 2			
		형사 절차에서 통번역권리에 관한 지시 /2010/64/ 유럽연합	상술 27 (취약한 사람) 2조2							2조-5조								6조
		형사 절차에서 정보 접근권에 관한 지시 /2012/13/ 유럽연합	3조 1(a)		3조 1(b)	3조 - 6조	3조 2 4조4 5조2 (취약한 사람일반)			3조 1(d) 4조5								
		형사 절차에서 변호사 접근권에 관한 지시 /2013/48/ 유럽연합	3조 8조-10조, 13조(취약한 사람)	4조	11조	3조 4 9조1 (a) 10조4-5	9조1 (a) (혐의가 있거나 고발된 사람일반)											

소년사법 관련 국제또는 지역규범 경성법			아동의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정보접근 및 알 권리		청취되어야 할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아동의 최선의 이익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변호사 접근/ 조력권	비밀보장의 권리	무료 법률구조 접근권	정보 및 조언을 받을 권리	아동친화적 방식의 정보제공	청취되어야 할 권리/ 참여권	절차적 안전 보장 : 아동친화적인 면접 및 환경	통번역 권리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비공개 진행의 실행	아동 최선의 이익의 고려	수요의 개별적 평가	부당한 지체 방지 (신속한 재판)	최후의 수단으로 자유의 박탈 제한	다학제적 접근 채용의 요구	전문가훈련 및 역량 강화
지역 규범		고발되거나 혐의가 있는 아동을 위한 절차적 안전 보장에 관한 지시 /2016/800/ 유럽연합	상술 25-27 6조	6조 5	18조	4조 - 5조	4조2 4조3	16조	9조		14조	14조 2	상술 8 5조 6조6 6조8 7조9 9조1 12조 15조	7조	13조 1	10조 11조	7조 7	20조
		형사 절차에서 협의가 있거나 고발된 사람을 위한 법률조력에 지시 /2016/1919/유럽연합			상술 9, 상술29, 1조2 4조-7조 9조(취약한사람)											7조 2 7조3		

[별첨2] 아동 면접조사 조사지

일반요소 (공통)	관련 질문
(1) 범죄사실을 고지받을 권리	-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경찰조사를 받는지, 재판을 받는지 안내받았나요?
(2) 진술거부권	- 경찰·검찰 조사나 재판단계에서 나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진술거부'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았나요?
(3)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수사 이후 소년분류심사원에 가지 않은 경우에도, 나에게 보조인이 선임된 경험이 있나요?
(4) 부모 및 보호자 참여	- 경찰이 나를 조사하기 전에, 보호자에게 연락하였나요? - 만약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 절차의 신속성	- 소년분류심사원에 얼마나 있었나요? 처음 분류심사원에 가야 한다고 통지받은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러야 했을 때, 그 이유를 안내받았나요? -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얼마나 뒤에 재판을 받았나요? 재판이 연기된 적이 있나요?
(6) 항소권	- 나에 대한 판결이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느꼈던 적이 있었나요? 만약 있었다면, 그 때 다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 알고 있었다면, 다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나요? -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7) 정보접근 및 알 권리	- 내가 어떤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안내받았나요? - 내가 조사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들었나요?
(8) 사생활의 보호	- (시설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었나요? -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CCTV의 설치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관하여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었나요? -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CCTV 설치가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했을 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CCTV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시설에 입소하기 전 소지하고 있던 소지품들은 입소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 샤워를 하거나 화장실을 갈 때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보장되었나요?
(9) 자유박탈의 제한	-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금된 적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왜 구금되는지 이유를 알았나요? 얼마나(몇 시간 또는 며칠) 구금되어 있었나요? - 경찰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에서 수갑을 찬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그 경험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수갑을 채우기 전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등) - 시설에서 독방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독방에서 생활하였나요?

일반요소 (공통)	관련 질문
(10) 성인과 분리수용	- 성인과 같은 장소에 함께 구금된 적이 있었나요? 있다면, 그 경험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11) 대안적 처분 / 다이버전	- 내가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어도 성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 어떤 보호처분을 받았나요? 그 보호처분을 받는 동안 내가 내 잘못을 반성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 나에게 보호처분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 나에 대한 보호처분과 함께 나의 보호자에게도 법원에서 특별한 명령을 받은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부모교육이나 상담을 반드시 받을 것 등)
(12) 낙인 예방	- 소년사법 기록 때문에 부당한 대우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 경험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 내가 범죄자로서 조사받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왜 그러한 느낌을 들었나요?
(13) 관계자의 전문성 / 역량강화	-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판사님 등 나를 존중한다고 느껴졌던 어른은 있었나요?

시설수용	관련 질문
(1) 부모 및 보호자의 알 권리	- 보호자와 교류할 수 있는 행사가 있을 때, 적기에 잘 전달되었나요? - 내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6호 시설 또는 소년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나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받았나요? (판결 당시 함께 있었음, 이송 중에 법원 또는 시설이 전화로 통지함, 시설에 도착 후 선생님이 전화로 알림, 내가 부모님께 알림 등) - 시설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예를 들면 아프다거나 규칙을 어겨 처벌을 받은 사실을 나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알고 있었나요? 부모님은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2) 개별면접 및 상담조사	- 나는 소년분류심사원 / 6호시설 / 소년원에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이때의 상담은 집단상담이 아닌 개별상담을 말합니다. - 상담은 일주일에 몇 번 이루어졌으며, 누구에게 상담을 받았나요? - 상담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 상담 과정에서 심리검사나 직업적성테스트 등을 받은 적이 있나요?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전달받았나요?
(3) 물리적 환경과 시설	- 의식주 - 지금 한 방을 몇 명이 사용하고 있나요? 인원으로 인해 불편함 점은 없나요? - 냉난방은 잘 틀어주나요? 춥거나 더워서 냉난방을 틀어야 할 때, 선생님들이 잘 틀어주시나요? - 수도사용: 샤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샤워횟수나 시간에 대한 규칙이 따로 있나요? 그 규칙은 괜찮나요? - 빨래는 어떻게 하나요? 세탁(손빨래 및 세탁기 이용 포함)에 대한 규칙이 따로 있나요?

시설수용	관련 질문
(3) 물리적 환경과 시설	- (여성아동의 경우) 생리대를 어떻게 받아 사용하나요? 생리대 사용 관련 규칙이 있나요? - 내가 식사를 하고 싶지 않을 때, 내 의사에 따라 식사를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생활하는데 있어 다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나, 위험하다고(예를 들면, 가파른 계단, 깨졌는데 수리되지 않은 생활용품이나 유리 등) 장소나 물건 등이 있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4) 외부와의 교류	- 면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었나요? - 편지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었나요? 제한되는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 외출은 언제 가능했나요? 소년분류심사원 / 6호시설 / 소년원에 있는 동안 외출한 경험이 있나요? - TV 시청 규칙은 어떤가요? - 컴퓨터나 핸드폰 등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 규칙은 어떠했나요?
(5) 여가활동	- 어떤 여가활동을 하였나요? - 여가활동 중 특히 농구, 축구 등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 야외활동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충분했나요, 부족했나요? - 여가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내가 원하는 여가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었나요?
(6) 종교	- 시설 내에서 종교활동을 하였나요? - 종교활동을 하였다면,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참여한 것인가요? - 종교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7) 적절한 의료조치	-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적절한 의료조치가 곧바로 취해졌나요? - 제공받은 의료서비스가 적절했나요? -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였나요?
(8)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	- 선생님들이 힘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제압했던 일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일이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9) 징계절차	- 왜 징계를 받았으며, 어떤 징계를 받았나요? - 불복절차는 알고 있었나요? - 징계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10) 모니터링 및 진정	- 시설에서 부당한 결정이나 인권침해가 있을 때, 인권위 진정함에 진정서를 제출한 경험이 있나요? 진정해 본 경험이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고,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진정서를 제출한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외부에서 시설을 방문한 적 있나요? 있다면, 그 일에 관하여 가능한 자세히 이야기 해주세요.

시설수용	관련 질문
(11) 사회복귀 지원	**① 부모와의 교류: 서신, 전화, 면회 등** - 부모님과의 편지, 전화, 면회를 하는 것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었나요? **② 교육** -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 - 교육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이 퇴소 후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들었나요? - 개인적으로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한 수업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③ 직업훈련** - 어떤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경험하였나요? -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나의 퇴소 후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들었나요? - 개인적으로 배우고 좋겠다고 생각한 직업교육이 있었나요? **④ 주거지원 및 자립 가이드 제공 (퇴소 후 자립해야 하거나, 자립한 아동들 대상 질문)** **ⅰ) 현재 시설 생활 중인 아동 대상 질문: 자립해야 하는 아동** - 퇴소 후 어느 곳에서 누구와 함께 살 예정인가요? - 어느 곳에서 누구와 함께 살 예정인지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눈 바가 있나요? - 주거 및 생활비 지원과 마련 등에 관한 국가의 지원 정책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해 정보를 전달받은 경험이 있나요? **ⅱ) 퇴소한 아동 대상 질문: 자립한 아동** - 퇴소 전에 어누 곳에서 누구와 함께 살 예정인지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눈 바가 있나요? - 퇴소 전에 주거와 생활비 지원과 마련 등에 관한 국가의 지원 정책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해 정보를 전달받은 경험이 있나요? - 퇴소 후 지금까지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나요? (주거지 및 생활비 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수집 필요) **⑤ 사회적 지지자** - 시설 퇴소하고 나서도 만나고 싶은 (시설 안) 선생님이 있었나요? - 퇴소 후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시설에서 알려준 적, 소개해준 적, 만나게 해 준 적이 있었나요? - (현재 시설에 있는 소년 중) 퇴소 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믿고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의미 있는 어른이 있었다면, 시설에서 그 어른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나요?

시설수용	관련 질문
(12) 존엄성 보장 및 증진	- 시설에서 아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교육을 한 선생님은 누구인가요? (시설 선생님, 외부사람 등) 기억에 남는 내용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 시설에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교육을 한 선생님은 누구인가요? (시설 선생님, 외부사람 등) 기억에 남는 내용이나 느낌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 상벌제도에 따른 계급제도, 지위에 따른 제한되는 권리 내용 등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지위에 따른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나요? - 형·언니·동생 사이에 폭력이나 폭언이 발생한 적이 있나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과정은 어떠했나요? (나의 경험과 목격내용 모두 포함) - 나를 비롯한 아동과 선생님 사이에 폭력이나 폭언이 발생한 적이 있나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과정은 어떠했나요?

[별첨3] 종사자 설문조사 조사지

Ⅰ. 판사 설문조사 조사지

ID					TYPE	판사

소년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종사자 조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두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은 소년사법과 관련된 실무가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의 결과는 소년사법제도의 개별 단계가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아동인권에 기반하여 소년사법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질문지에 대한 응답은 이메일(jekang@jipyong.com)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 10.

세상을 두루 살피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사단법인 두루

연구 주관기관: 사단법인 두루
연구 책임자: 최정규 변호사
설문조사 담당: 강정은 변호사
(문의처: 02-6200-1853,
jekang@jipyong.com)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③ 기타
2. 나이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현재 근무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인천 ④ 대구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4. 경력	**1) 소년 담당 판사 재직 총 기간** (년 개월)
	2) 법원 판사 재직 총 기간 (년 개월)

Ⅱ. 다음은 소년사법 절차 일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소년범죄자 중 이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범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골라주세요.

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미비
②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③ 처벌 중심의 처분
④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의 미비
⑤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⑥ 기타 (직접 기재) _____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2)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물적 자원(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5)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6)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낙인*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에서 '낙인'이란 범죄자로 취급되거나 재비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고려되어 격리나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등 소년사법 경험을 이유로 부정적 평가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7)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범죄의 특수성에 관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8)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아동의 권리에 관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② 부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2) 귀하는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② 부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3) 귀하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에서 '우범소년'이란 가출 등 객관적으로 일정한 우범사유(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 내지 다목)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우범성)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말합니다.

① 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② 부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3. 아동 권리의 일반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을 성별에 따라 달리 처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을 보호력*에 따라 달리 처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에서 '보호력'이란 부모의 유무, 보호자의 재산 정도,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애정과 관심 정도 등을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3)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그가 행한 범죄 기타 행위에 비추어 대체로 적절한 처분*을 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에서 '처분'이란 형사처분, 보호처분(1호 내지 10호), 조건부 기소유예 등 해당 기관에서 하는 모든 종류의 최종결정을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5)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그 아동의 연령과 개인적 특성 기타 환경에 비추어 대체로 적절한 처분을 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 관하여 무죄추정 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범죄(비행) 사실에 대한 고지 절차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3)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진술거부권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변호사나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5)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의 부모 기타 보호자에게 재판절차 및 선고내용 등 관련 사실을 잘 알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6)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아동의 부모 기타 보호자가 조사나 심리절차에 원칙적으로 동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7)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8)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항소권을 잘 안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9)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아동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의미와 절차 진행 전반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0)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언론이나 대중으로부터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의 사생활을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1)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의 구금 기타 자유박탈조치를 보충적으로 그리고 최소한으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체계에서 범죄를 저지른 아동들을 위해 충분한 다이버전(대안적 처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에서 '다이버전'이란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 등 기존의 사법절차에서 전환하여 소년에 대한 낙인 예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적 처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상 화해권고, 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그 예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추가로 도입되기를 희망하는 다이버전의 유형에 대해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_____

2) 현행 소년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10호) 유형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유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또는 추가로 도입되어야 할 보호처분의 유형에 대해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_____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약간 영향을 준다	매우 영향을 준다
1. 범죄 관련사항(동기, 죄질)	①	②	③	④	⑤
2. 범죄 경력	①	②	③	④	⑤
3. 생활환경(주거 및 경제여건)	①	②	③	④	⑤
4. 성장과정	①	②	③	④	⑤
5.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①	②	③	④	⑤
6. 학력 및 학교생활	①	②	③	④	⑤
7. 교우관계	①	②	③	④	⑤
8. 보호자 존부, 관심 및 보호능력	①	②	③	④	⑤
9. 소년분류심사원 생활태도	①	②	③	④	⑤
10. 법원 진술태도	①	②	③	④	⑤
11. 반성 여부와 피해회복노력	①	②	③	④	⑤
12. 향후 생활계획	①	②	③	④	⑤
13. 재범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6.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아동의 범죄에 대해 현재와 같이 소년형사사건(일반 형사법원)과 소년보호사건(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을 분리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매우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2) 소년형사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3)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II. 국선보조인 설문조사 조사지

ID					TYPE	국선보조인

소년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종사자 조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두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은 소년사법과 관련된 실무가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의 결과는 소년사법제도의 개별 단계가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아동인권에 기반하여 소년사법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질문지에 대한 응답은 이메일(jekang@jipyong.com)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 10.

세상을 두루 살피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사단법인 두루

연구 주관기관: 사단법인 두루
연구 책임자: 최정규 변호사
설문조사 담당: 강정은 변호사
(문의처: 02-6200-1853,
jekang@jipyong.com)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③ 기타
2. 나이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현재 근무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인천 ④ 대구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4. 경력	**1) 소년담당 국선보조인 재직 총 기간** (년 개월)
	다음 질문은 변호사만 응답 바랍니다. **2) 변호사 재직 총 기간** (년 개월)

Ⅱ. 다음은 소년사법 절차 일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소년범죄자 중 이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범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골라주세요.

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미비
②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③ 처벌 중심의 처분
④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의 미비
⑤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⑥ 기타 (직접 기재) _____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2) 국선보조인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국선보조인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4) 국선보조인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5) 국선보조인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낙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적절히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에서 '낙인'이란 범죄자로 취급되거나 재비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고려되어 격리나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등 소년사법 경험을 이유로 부정적 평가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6) 국선보조인 제도는 소년범죄의 특수성에 관한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7) 국선보조인 제도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② 부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2) 귀하는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② 부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3) 귀하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에서 '우범소년'이란 가출 등 객관적으로 일정한 우범사유(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 내지 다목)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우범성)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말합니다.

① 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② 부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3.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는 국선보조인들이 아동의 부모 기타 보호자가 조사나 심리절차에 원칙적으로 동석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국선보조인들이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항소권을 잘 안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국선보조인들이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아동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의미와 절차 진행 전반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국선보조인들이 언론이나 대중으로부터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의 사생활을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4.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현행 소년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10호) 유형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유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또는 추가로 도입되어야 할 보호처분의 유형에 대해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_____

2)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약간 영향을 준다	매우 영향을 준다
1. 범죄 관련사항(동기, 죄질)	①	②	③	④	⑤
2. 범죄 경력	①	②	③	④	⑤
3. 생활환경(주거 및 경제여건)	①	②	③	④	⑤
4. 성장과정	①	②	③	④	⑤
5.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①	②	③	④	⑤
6. 학력 및 학교생활	①	②	③	④	⑤
7. 교우관계	①	②	③	④	⑤
8. 보호자 존부, 관심 및 보호능력	①	②	③	④	⑤
9. 소년분류심사원 생활태도	①	②	③	④	⑤
10. 법원 진술태도	①	②	③	④	⑤
11. 반성 여부와 피해회복노력	①	②	③	④	⑤
12. 향후 생활계획	①	②	③	④	⑤
13. 재범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5.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아동의 범죄에 대해 현재와 같이 소년형사사건(일반 형사법원)과 소년보호사건(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을 분리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매우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_____

2) 소년형사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_____

3)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Ⅲ. 소년원 종사자 설문조사 조사지

ID					TYPE	소년원 종사자

소년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종사자 조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두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은 소년사법과 관련된 실무가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의 결과는 소년사법제도의 개별 단계가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아동인권에 기반하여 소년사법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질문지에 대한 응답은 이메일(jekang@jipyong.com)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 10.

세상을 두루 살피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사단법인 두루

연구 주관기관: 사단법인 두루
연구 책임자: 최정규 변호사
설문조사 담당: 강정은 변호사
(문의처: 02-6200-1853,
jekang@jipyong.com)

※ 이 설문은 소년원에서 보호소년을 생활지도, 교육, 상담하는 종사자만 응답 바랍니다 (사무 기능직 제외).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③ 기타
2. 나이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현재 근무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인천 ④ 대구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4. 경력	**1) 소년원 재직 총 기간** (년 개월)
	2) 보호/교도행정 관련 재직 총 기간 (년 개월)

Ⅱ. 다음은 소년사법 절차 일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소년범죄자 중 이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범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골라주세요.

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미비
②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③ 처벌 중심의 처분
④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의 미비
⑤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⑥ 기타 (직접 기재) _____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2)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물적 자원(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5)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6)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낙인*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에서 '낙인'이란 범죄자로 취급되거나 재비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고려되어 격리나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등 소년사법 경험을 이유로 부정적 평가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7)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범죄의 특수성에 관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8)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아동의 권리에 관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② 부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2) 귀하는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② 부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3) 귀하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에서 '우범소년'이란 가출 등 객관적으로 일정한 우범사유(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 내지 다목)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우범성)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말합니다.

① 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② 부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3. 아동 권리의 일반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을 성별에 따라 달리 처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을 보호력*에 따라 달리 처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에서 '보호력'이란 부모의 유무, 보호자의 재산 정도,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애정과 관심 정도 등을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3)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원 입원 단계에서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의 부모 기타 보호자에게 아동의 생활내용 및 시설에서의 처우 등 관련 사실을 잘 알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아동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년원 처분의 의미와 절차 진행 전반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3)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 대한 개별면접 또는 상담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5)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면회·편지·외출 등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이 외부와 교류할 권리를 적절히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6)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여가의 신체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7)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종교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8)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9) 귀하는 종사하는 기관에서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거나 그러한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0) 귀하는 종사하는 기관에서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폭력(언어폭력 포함)을 행사하는 것을 보거나 그러한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1)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에서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 대한 독방처분 등의 징계절차가 이루어지거나 그러한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2)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에 대한 외부의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3)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청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4)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언론이나 대중으로부터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의 사생활을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5. 소년원 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② 부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2)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9호)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② 부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3)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10호)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② 부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4) 보호소년을 위한 소년원 송치처분의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_____

6.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아동의 범죄에 대해 현재와 같이 소년형사사건(일반 형사법원)과 소년보호사건(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을 분리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매우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_____

2) 소년형사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3)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Ⅳ. 보호관찰관(보호관찰소 종사자) 설문조사 조사지

ID					TYPE	보호관찰관

소년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종사자 조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두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은 소년사법과 관련된 실무가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의 결과는 소년사법제도의 개별 단계가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아동인권에 기반하여 소년사법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질문지에 대한 응답은 이메일(jekang@jipyong.com)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 10.

세상을 두루 살피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사단법인 두루

연구 주관기관: 사단법인 두루
연구 책임자: 최정규 변호사
설문조사 담당: 강정은 변호사
(문의처: 02-6200-1853,
jekang@jipyong.com)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③ 기타
2. 나이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현재 근무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인천 ④ 대구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4. 경력	**1) 소년 담당 보호관찰 재직 총 기간** (년 개월)
	2) 보호/교도행정 관련 재직 총 기간 (년 개월)

Ⅱ. 다음은 소년사법 절차 일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소년범죄자 중 이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범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골라주세요.

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미비
②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③ 처벌 중심의 처분
④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의 미비
⑤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⑥ 기타 (직접 기재) _____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2)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물적 자원(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5)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6)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낙인*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에서 '낙인'이란 범죄자로 취급되거나 재비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고려되어 격리나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등 소년사법 경험을 이유로 부정적 평가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7)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범죄의 특수성에 관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8)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아동의 권리에 관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② 부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2) 귀하는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② 부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3) 귀하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에서 '우범소년'이란 가출 등 객관적으로 일정한 우범사유(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 내지 다목)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우범성)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말합니다.

① 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② 부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3.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의 부모 기타 보호자에게 보호관찰 관련 사실을 잘 알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에서 '보호관찰 관련 사실'이란 보호관찰을 위반하여 구인을 당할 때 구인사유 등을 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아동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 단계의 의미와 절차 진행 전반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3)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 대한 개별면접 또는 상담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언론이나 대중으로부터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의 사생활을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4. 보호관찰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현행 보호소년을 위한 보호관찰처분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② 부적절하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2) 보호소년을 위한 보호관찰처분 중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_____

5.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소년형사사건에 관한 보호관찰도 담당하십니까?

① 담당한다. (아래 1-1) 문항에 답변해 주십시오)
② 담당하지 않는다.

1-1)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아동을 보는 시각(사회복귀의 관점) 등 보호관찰 업무대응방식이 다릅니까?

①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면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② 다르다.
[다르다고 답변하실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2) 아동의 범죄에 대해 현재와 같이 소년형사사건(일반 형사법원)과 소년보호사건(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을 분리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매우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3) 소년형사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4)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별첨4] 종사자 면접조사 조사지

Ⅰ. 판사

1. 정보접근 및 알 권리

- 어떤 사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재판의 절차와 소년보호사건의 특수성, 진술거부권, 항소권 등에 대하여 소년에게 설명을 하시나요?
- 하신다면, 언제 어떤 내용을 설명 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 추가로 이러한 내용(범죄사실, 소년보호사건의 특수성과 재판 절차, 변호사의 역할, 진술거부권 등)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혹 용어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이야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 안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 조사나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소년의 의견을 판단에 고려하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 전체 사건에서 항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중 어느 정도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나요?

2. 부모 및 보호자 참여

- 경찰 및 검찰조사, 재판 과정에서 소년의 보호자에게 절차 진행상황이 전달되고 보호자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 소년사건에서 보호자 및 부모의 역할이나 신분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선택) 소년이 보호자에게 연락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다른 유형의 사건을 담당하는 국선보조인(형사사건 국선변호인)과 구분되는 소년사건 국선보조인의 역할과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소년사건의 경우 국선보조인을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도 맡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국선보조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4.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

- 사건 발생 이후 재판을 받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어느 정도 일까요?
- 심리기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전에 국선보조인으로 선임될까요? 그 기간은 충분한가요?
- 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국선보조인의 선임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 소년사건에서 보호자의 보호력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내려진다고 생각하시나요?

5.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 개별 처우의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 법원의 조사 및 심리 시간은 최소한 어느 정도 보장받아야 할까요?
- 소년의 개별적 특수성(처한 상황 등)을 고려한 보호처분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6.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소년사건을 담당하며 경험하는 내용 중 소년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회복지원시설, 6호, 7호, 소년원에서) 소년으로부터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들었던 적이 있나요?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소년에 대한 처분이나 결정에 있어 낙인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나요?
- 낙인 예방을 위해 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7.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어느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 소년사법제도에서 구금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예: 구치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6호시설 등)
- 소년을 만나시면서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에 매이거나 힘이나 도구 등으로 제압당하거나 독방에 갇히는 등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관련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세요.
- 혹 이러한 신체구속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경우에 필요하고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혹 성인과 같은 장소에 구금된 소년의 이야기를 듣거나 목격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야기 해주세요.

8. 모니터링 및 진정에 관한 권리

- 소년사법제도에 관련된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진정 제도는 원활히 이루진다고 생각하시나요?
- 모니터링이 보다 원활히 기능하기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9.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국선보조인에게 어떤 종류의 정보나 교육이 제공되면 좋을까요?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교육은?)
- 판사/국선보조인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 아동권리나 아동발달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받으셨나요?
- 소년사건에서 여성, 성소수자, 장애아동, 이주배경아과 같이 좀 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까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10. 사회복귀의 지원

- 소년사법은 소년의 사회복귀와 10가지 보호처분을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 좀 더 다양한 대안적 처분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 소년보호재판이 소년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판사는 소년의 사회복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소년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도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등등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추가문항〉

1. 형사책임연령, 촉법·우범소년제도

- 우범소년 규정, 통고제도는 소년에게 도움이 되나요? 그 이유는?
- (선택) 전체 소년보호사건 중 우범소년 비율, 통고제도 활용 정도
- 최근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현행 만14세인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2.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통합

-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아동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3. 아동친화적인 사법환경

- 소년사건에서 아동친화적인 환경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Ⅱ. 국선보조인

1. 정보접근 및 알 권리

- 어떤 사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재판의 절차와 소년보호사건의 특수성, 국선보조인의 역할, 진술거부권, 항소권 등에 대하여 소년에게 설명을 하시나요?
- 하신다면, 언제 어떤 내용을 설명 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 추가로 이러한 내용(범죄사실, 소년보호사건의 특수성과 재판 절차, 변호사의 역할, 진술거부권 등)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혹 용어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이야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 안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 소년이 항고를 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다면, 항고할 수 있음을 안내한 적 있나요?

2.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 사건을 담당하시는 과정(경찰·검찰조사, 재판 등)에서 소년의 보호자(부모, 시설종사자 등)와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신 적이 있나요?
- 소년사건에서 보호자 및 부모의 역할이나 신분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선택) 소년이 보호자에게 연락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다른 유형의 사건을 담당하는 국선보조인(형사사건 국선변호인)과 구분되는 소년사건 국선보조인의 역할과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소년사건의 경우 국선보조인을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도 맡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선보조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4.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

- 사건 발생 이후 재판을 받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어느 정도 일까요?
- 심리기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전에 국선보조인으로 선임될까요? 그 기간은 충분한가요?
- 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국선보조인의 선임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 소년사건에서 보호자의 보호력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내려진다고 생각하시나요?

5.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 소년 접견의 횟수, 평균 시간 등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소년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선보조인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필요한 접견 횟수 및 시간은 최소한 어느 정도 보장받아야 할까요?
- 소년의 개별적 특수성(처한 상황 등)을 고려한 보호처분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6.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소년사건을 담당하며 경험하는 내용 중 소년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회복지원시설, 6호, 7호, 소년원에서) 소년으로부터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들었던 적이 있나요?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7.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 소년사법제도에서 구금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며 그 이유는 무엇인

가요?(예: 구치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6호시설 등)
- 소년을 만나시면서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에 매이거나 힘이나 도구 등으로 제압당하거나 독방에 갇히는 등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관련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세요.
- 혹 이러한 신체구속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경우에 필요하고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혹 성인과 같은 장소에 구금된 소년의 이야기를 듣거나 목격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야기 해주세요.

8. 모니터링 및 진정에 관한 권리

- 소년사법제도에 관련된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진정 제도는 원활히 이루진다고 생각하시나요?
- 모니터링이 보다 원활히 기능하기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9.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국선보조인에게 어떤 종류의 정보나 교육이 제공되면 좋을까요?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교육은?)
- 국선보조인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 아동권리나 아동발달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받으셨나요?
- 소년사건에서 여성, 성소수자,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과 같이 좀 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까요?

10. 사회복귀의 지원

- 소년사법은 소년의 사회복귀와 10가지 보호처분을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 좀 더 다양한 대안적 처분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 국선보조인 제도가 소년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국선보조인은 소년의 사회복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소년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도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등등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 소년에 대한 처분이나 결정에 있어 낙인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나요?
- 낙인예방을 위해 국선보조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추가문항〉

1. 형사책임연령, 촉법·우범소년제도

-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 규정(통고제도 포함)과 관련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 최근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현행 만14세인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2.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통합

-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아동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3. 아동친화적인 사법환경

- 소년사건에서 아동친화적인 환경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Ⅲ. 소년원 종사자

1. 정보접근 및 알 권리

- 어떤 사유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소년원 송치의 의미와 절

차, 소년보호사건의 특수성, 소년원 종사자의 역할 등에 대하여 소년에게 설명을 하시나요? 하신다면, 언제 어떤 내용을 설명 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 추가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혹 용어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이야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 안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 소년원 생활에서 소년의 의견을 듣고, 고려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소년원 송치처분에 대해 항고하는 경우를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2.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 소년원 송치 사실을 소년의 보호자는 어떻게 전달받나요?
-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소년은 보호자와 어느 정도 교류할 수 있나요?
- 보호자와 교류할 수 있는 행사가 있을 때, 보호자에게 어떻게 전달하시나요?
- 소년원에서 소년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예를 들면 아프다거나 규칙을 어겨 징계를 받은 사실을 보호자에게 전달하시나요?
- 보호자의 보호력이 소년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보호자가 소년원에서 받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 (선택) 소년이 보호자에게 연락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국선보조인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의 조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선보조인의 역할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4.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

5.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 소년에 대한 개별면접 또는 상담은 누구에 의해, 언제, 얼마나 이루어지나요?
- 심리검사나 직업적성테스트도 이루어지나요?
- 소년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년원 종사자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소년을 만나는 횟수와 시간은 최소한 어느 정도 보장받아야 할까요?
- 소년원 처분 집행은 소년의 개별적 특수성(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6.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소년원 생활 과정에서 소년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CCTV의 설치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관하여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나요? CCTV를 담당하는 인력이 별도로 배체되어 있나요?
-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소년원에 입소하기 전 소지하고 있던 소지품들은 입소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 샤워를 하거나 화장실을 갈 때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보장되고 있나요?
- (베이징규칙은) 소년은 특히 비행청소년, 범죄자로 간주되었을 때 낙인에 의한 상처, 유해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년이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사생활이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소년에 대한 처분이나 결정에 있어 낙인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나요?
- 낙인예방을 위해 소년원 종사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7.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 어떤 경우에 징계/보호장비 사용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징계는 독방 등, 보호장비는 포승줄 등)
- 현재 징계/보호장비 사용은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지나요?
- 징계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소년이 있을 경우 어떻

게 대처하시나요?
- 소년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장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소년원 송치처분이 '구금'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 모니터링 및 진정에 관한 권리

- (법무부 내부/외부) 소년원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소년사법제도에 관련된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진정 제도는 원활히 이루진다고 생각하시나요?
- 모니터링이 보다 원활히 기능하기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9.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소년사건에서 소년원 종사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유형(예를 들어 성인)의 사건을 담당하는 교정시설 종사자와 구분되는 소년원 종사자의 역할과 자질,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소년원 종사자에게 어떤 종류의 정보나 교육이 제공되면 좋을까요?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교육은?
- 아동권리나 아동발달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받으셨나요?
-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소년 가운데 여성(임신한 소년), 성소수자,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과 같이 좀 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까요? 소년원 생활에서 특별한 보호를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10. 사회복귀의 지원

- 소년원 교육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전국 10개의 소년원이 소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교육, 직업훈련, 주거지원 및 자립을 위한 정보를 소년은 어떻게 제공받고 있나요? 혹시 직접 도움을 주신 적이 있나요? 소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연계된 관련 지원기관이 있나요?
- 소년원은 지역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 소년의 사회정착지원을 위해 소년보호협회, 소년보호위원은 어떤 역할을 해 주시나요?
- 소년의 임시퇴원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게 되나요? 처우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소년사법은 소년의 사회복귀와 10가지 보호처분을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 좀 더 다양한 대안적 처분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 소년원 처분이 소년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소년원 종사자가 소년의 사회복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소년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도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등등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추가질문1〉 아동 면접조사 '시설수용' 문항 고려

1. 물리적 환경과 시설

- 의식주 (식사를 원하지 않는 소년이 있다면?)
- 지금 한 방을 몇 명이 사용하고 있나요?
- 춥거나 더워서 냉난방을 틀어야 할 때, 어떻게 틀어주시나요?
- 수도사용: 샤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샤워횟수나 시간에 대한 규칙이 따로 있나요?
- 빨래는 어떻게 하나요? 세탁(손빨래 및 세탁기 이용 포함)에 대한 규칙이 따로 있나요?
- (여자아동의 경우) 생리대를 어떻게 받아 사용하나요? 생리대 사용 관련 규칙이 있나요?

2. 외부와의 교류

- 면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나요? 제한되는 대상이 있나요?

- 외출은 언제 가능한가요?
- TV 시청 규칙은 어떤가요?
- 컴퓨터나 핸드폰 등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 규칙은 어떠한가요?

3. 여가활동

- 어떤 여가활동이 가능한가요?
- 여가활동 중 특히 농구, 축구 등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야외활동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소년이 원하는 여가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나요?

4. 종교

- 시설 내에서 종교활동이 이루어지나요?
- 종교활동은 소년이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나요?
- 종교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5. 적절한 의료조치

- 아픈 소년이 발생했을 때 의료조치는 어떻게 취해지나요? (소년원 내/외)

〈추가질문2〉

1. 형사책임연령, 촉법·우범소년제도

- 우범소년 규정으로 소년원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 최근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현행 만14세인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2.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통합

-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3. 아동친화적인 사법환경

- 소년사건에서 아동친화적인 환경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아동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 소년원 처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Ⅳ. 보호관찰관(보호관찰소 종사자)

1. 정보접근 및 알 권리

- 어떤 사유로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보호관찰의 의미와 절차, 소년보호사건의 특수성, 보호관찰 종사자의 역할 등에 대하여 소년에게 설명을 하시나요?
- 하신다면, 언제 어떤 내용을 설명 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 추가로 이러한 내용(범죄사실, 소년보호사건의 특수성과 재판 절차, 보호관찰의 역할, 진술거부권 등)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혹 용어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이야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 안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 소년에 대한 개별면접 또는 상담은 언제, 얼마나 이루어지나요?
- 보호관찰 진행 절차에서 소년의 의견을 고려하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2. 부모 기타 보호자의 참여권

- 보호관찰 과정에서 소년의 보호자(부모, 시설종사자 등)와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신 적이 있나요?
- 보호자의 보호력이 보호관찰 준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선택) 소년이 보호자에게 연락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국선보조인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의 조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선보조인의 역할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4.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

5.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 소년을 만나는 횟수, 상담 평균 시간 등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소년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년사건 보호관찰 종사자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소년을 만나는 횟수와 시간은 최소한 어느 정도 보장받아야 할까요?
- 소년의 개별적 특수성(처한 상황 등)을 고려한 보호관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6.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소년사건을 담당하며 경험하는 내용 중 소년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베이징규칙은 소년은 특히 비행청소년, 범죄자로 간주되었을 때 낙인에 의한 상처, 유해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호관찰 과정에서 바라보았을 때 소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사생활이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소년에 대한 처분이나 결정에 있어 낙인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나요?
- 낙인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종사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7. 신체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 소년사법제도에서 구금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예: 구치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6호시설 등)
- 소년을 만나시면서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에 매이거나 힘이나 도구 등으로 제압당하거나 독방에 갇히는 등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관련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세요.
- 혹 이러한 신체구속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경우에 필요하고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혹 성인과 같은 장소에 구금된 소년의 이야기를 듣거나 목격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야기 해주세요.

8. 모니터링 및 진정에 관한 권리

- (법무부 내부/외부) 보호관찰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소년사법제도에 관련된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진정 제도는 원활히 이루진다고 생각하시나요?
- 모니터링이 보다 원활히 기능하기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9. 관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소년사건에서 보호관찰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유형(예를 들어 성인)의 사건을 담당하는 보호관찰 종사자와 구분되는 소년사건 보호관찰 종사자의 역할과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보호관찰 종사자에게 어떤 종류의 정보나 교육이 제공되면 좋을까요?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교육은? 지난 인권위 교육자문 프로그램은 어땠나요?)
- 소년사건 보호관찰 종사자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 아동권리나 아동발달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받으셨나요?

- 소년사건에서 여성(임신한 소년), 성소수자,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과 같이 좀 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까요? 보호관찰 과정에서 특별한 보호를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10. 사회복귀의 지원

- 보호관찰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단기와 장기) 어떤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든 소년에게 균질한 내용의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제공하나요?
- 보호관찰 과정에서 교육, 직업훈련, 주거지원 및 자립을 위한 정보를 소년은 어떻게 제공받고 있나요? 혹시 직접 도움을 주신 적이 있나요? 보호관찰소와 연계된 관련 지원기관이 있나요?
- 소년사법은 소년의 사회복귀와 10가지 보호처분을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 좀 더 다양한 대안적 처분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 보호관찰 제도가 소년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보호관찰 종사자가 소년의 사회복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소년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도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등등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추가질문〉

1. 형사책임연령, 촉법·우범소년제도

-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 규정(통고제도 포함)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 최근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현행 만14세인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2.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통합

- 소년형사사건을 담당하셨거나 담당하시나요?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소년을 바라보는 시각, 업무대응방식이 다르나요?

-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아동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 보호관찰제도가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3. 아동친화적인 사법환경

- 소년사건에서 아동친화적인 환경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 인쇄일 | 2018년 12월
| 발행일 | 2018년 12월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전 화 | 아동청소년인권과 02)2125-9644
| F A X | 02)2125-0929
| 제 작 |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代)

ISBN 978-89-6114-656-2 93360 비매품